기본연구보고서 2023-17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손은신 Son, Eunshin
이규철 Lee, Geauchul
송인헌 Song, Inheon
박채린 Park, Chaerin
길지혜 Gil, Jihye
임종현 Lim, Jonghyun

(aur

기본연구보고서 2023-17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지은이 손은신, 이규철, 송인헌, 박채린, 길지혜, 임종현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3년 12월 26일, 발행: 2023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443-7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손은신 부연구위원
연구진	이규철 연구위원 송인헌 초빙연구위원 박채린 연구원
외부연구진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장 임종현 헤리티지 스마트 역사보존 컨설팅 그룹 대표 길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김수빈 박진경 정유림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부원장 이상민 공간문화본부장 성은영 주거문화연구단장 조동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이수정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연구개발실장
연구자문위원	권채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김도형 (前)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병연 (前)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성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협력팀장 박선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 백현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사무관 서경희 서재필기념재단 이사 이경미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 연구사 이준학 흥사단 LA지부장 차만재 UC Fresno 명예교수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수 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창호 (前)흥사단 LA지부장 홍승모 포스트미디어 대표이사 Christina Park LA시 도시계획과 City Planner Gloria Koo USC한국학연구소 부소장 Ken Bernstein LA시 도시계획과 팀장

연구요약

Summary

제1장 서론

2017년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교·무역 등으로 정당하게 유출된 문화재 및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문화재인 국외사적지가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지에서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수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가, 현지 소재국 내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활용 방안으로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물·장소 등의 부동산문화재인 국외사적지는 해외 국가에 위치한다는 입지 특성상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외사적지는 2017년부터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조사·연구된 기간이 짧고, 특히 대한민국 영토 밖에 위치하므로 현황 조사 및 실태 파악, 유지관리 등이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국외사적지는 현황 조사 및 목록 구축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소재국 내 방치로 인한 멸실·훼손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국외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외사적지는 실질적으로 환수가 어려운 부동산 문화재의 특성상 현지 활용의 패러다임이 강조된다.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비롯하여 국외외교사적지, 재외동포이민사적지,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국외산업·무역사적지 등은 19-20세기 대한민국의 활발한 국제 교류의 증거이자 역사적 현장으로서, 현지에서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국가 간 교류의 역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23년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통해 소재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역사·문

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유산을 발굴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공유유산' 사업은 현지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유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K-공유유산의 대상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이를 보호·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사적지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K-공유유산'의 개념 정립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운영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제2장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2장에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기존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기초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내 부·처별 국외사적지의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문화재청과 국가보훈부, 외교부, 교육부, 산림청 등에서 각 부처의 여건에 따라 국외사적지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각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국외사적지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고 공유유산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K-공유유산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재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최근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된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공유유산이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유유산의 개념을 기초로 문화재청의 사업 추진 계획 및 여건에 부합하도록, K-공유유산의 개념을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으로 규정하였다. 이 때 '공유'는 소유의 공유가 아닌 가치의 공유 및 사용의 공유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상호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및 대상

구분	개념	대상
국제적 논의 (shared heritage)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산	- 보편적 인류 유산 - 초국경의 지역 유산 - 역사적 다문화 유산
본 연구 (K-공유유산)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	국외사적지(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산

제3장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2,216건의 유형 및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으며 활용·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주요 국외사적지 24개소의 활용·관리 현황과 공유유산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조사·취합한 통합 목록을 만든 후, K-공유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우선 대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국외사적지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을 도출하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활용하였다.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에서는 현재 비교적 활용·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는 국외사적지의 현황 및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K-공유유산의 대상은 양국 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의 공유와 함께 현지 소재국에서의 보호·활용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 이에 현지에서 해당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공유유산적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의 틀

구분	유형 분석 (3장 2절)	활용·관리 사례 분석 (3장 3절)
목적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K-공유유산 시범사업 운영 계획 마련을 위한 활용·관리 현황 및 공유유산적 가치 분석

구분	유형 분석 (3장 2절)	활용·관리 사례 분석 (3장 3절)
대상	주요 부·처·기관별 조사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 2,216건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주요 활용·관리 사례 24개소
방법	– 문화재청·국가보훈부·산림청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통합 및 정리, 2,216건의 통합 목록 도출 (전수조사·분석) –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 K-공유유산 시범사업 제외대상 기준 도출 – K-공유유산 우선 선정대상 기준 도출 –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지표 도출 및 정리	– 국외사적지 중 현지에서 활용·관리되고 있거나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국·유럽·일본 내 국외사적지 24개소 분석 – 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및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사례별 K-공유유산으로서 현지 소재국 내 가치 및 활용가능성 분석

유형 분석에서는 현재까지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한 국외사적지 목록을 취합하여 통합목록을 구축하고, 기존에 조사된 항목을 중심으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 적합한 시범사업 우선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이에 양국 간 공감을 얻기 어렵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유산과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없거나 형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유산 등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및 소재국에서 주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현지에서 보존 상태 및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유산을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을 판별하였다. 단,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관련 자료가 대부분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어 현지 소재국에서의 가치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과, 국가 간 관계 및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국외사적지는 검토대상으로 상정하였으며, 소재국과 시기 및 주제, 소유자 등의 항목은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주요 분류 항목이 아닌 모니터링 항목으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미국, 유럽, 일본의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 시에는 특히 소재국에서의 공유유산적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현재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등록 가치를 공유유산적 가치로 상정하였으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보존 상태와 활용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부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검토대상 또한 사례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검토대상 사례는 대부분 일본에 소재한 국외사적지로 도쿄 영친왕 저, 영친왕 별장, 보화종루 등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산 및 기타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그러나 소유자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관련 여건이 변화할 경우 K-공유유산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였다. 또한 조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문화유산으로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외사적지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현황을 잘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중요성 및 가치와 함께 현지 소재국 내 보존·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국외사적지를 제외하거나 검토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표와 항목을 명확하게 도출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국외사적지와 해당 지표를 사전에 추출하여 분류한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소재국에서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례를 공유유산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지 소재국에서 유명한 명소에 입지하였거나 주변 타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국외사적지는 실제 현지 소재국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 또한 주요한 사업대상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외사적지가 현재 역사기념관과 기념비 등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역사적·기념적 방식 외에 문화적·예술적·지역적·사회적·교육적 전략 등이 적용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4장에서는 K-공유유산의 활용·관리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해외 국가에서 타 국가에 위치한 국외문화유산을 공유유산으로서 관리·활용하는 사례와 자국 내에서 타국과 연계된 유산을 관리·활용하는 사례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 네덜란드의 국외 유산 지원 사례와 폴란드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공유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유산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해외 소재 공관의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는 국제기구 및 타 국가와 협력하여 자국 내 공유유

산을 보호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 지역과, 국가 제도 및 정책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국 내 공유유산을 발굴하여 보호·관리·활용하고 있는 중국, 스코틀랜드 및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조사 개요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네덜란드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공유유산 사업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도출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	
	미국	해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 보존·활용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정부 주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 기구를 마련하거나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기관·단체·국가와의 협력 방안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폴란드인데, 네덜란드는 해양유산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수리남,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상대국에서는 자국 내 문화유산에 대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의 경우 네덜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에 따라 자국 내 해당 유산을 공유유산으로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 또한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에 따라 자국 내 문화유산을 공유유산 사업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공유유산 개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해외 국가에서는 공유유산 사업의 국제협력 및 문화교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고 국가 간 협약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주관은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되 사업 추진 과정은 전담기구를 비롯하여 박물관, 대학,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거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전담기구를 두고 다양한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고려하는 방식은 공유유산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재국 내 관련 제도를 활용한 조사·연구 지원이 공유유산 사업의 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도적으로 국외 소재 공관을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며,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및 소수인종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등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신규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이민유산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가치 평가 시 이민사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평가 기준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재국 내 관련 제도를 기반으로 국외사적지의 공유유산적 가치를 조사·연구하고 신규 공유유산에 대한 발굴 및 가치 평가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유유산 사업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국외사적지가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공유유산 정책 대상의 다양한 유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K-공유유산의 사업 대상은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국외 소재문화재이나, 해외 사례의 경우 정책 사업 대상으로서 다양한 '공유유산'의 용례가 사용되고 있다.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유산을 공유유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유산의 관리·활용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물론, 자국에 소재하는 외국 관련 유산을 공유유산으로 보는 경우, 비슷한 문화적 속성을 가진 유산을 공유유산으로 보고 관련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 등 공유유산 사업 대상 및 정책 추진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당 공유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도 한다.

네 번째로 공유유산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관리·활용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별 공유유산 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보존·복원 및 복구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기초조사 연구수행, 전시 및 서적 출판, 아카이브 구축, 관리센터 설립, 관광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기금 지원, 제도화 및 법정계획 수립, 소재국 내 문화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공동등재 등 다양한 공유유산의 지원·관리·활용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유산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 단계 및 절차의 구축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 조사 결과, 공유유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사업은 대부분 공유유산 발굴·조사 연구 사업이다. 기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대상 및 내용은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시 이용되기도 하며, 데이터베이스나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향후 전시 콘텐츠로 활용되거나 전문가 및 대중에게 공유유산 관련 정보로 제공되기도 한다. 시범사업 대상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정해지면 전담 사업추진센터가 설립된다. 사업추진센터는 상호 국가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과 사업 운영 계획 등을 기획하며 기금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공유유산을 현지에서 복원·보수하는 경우, 유산을 조성한 국가와 문화적 영향을 끼친 국가 모두의 복원·보수 방식이 중요하므로 양국 간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 K-공유유산 활용·관리 정책 방안

5장에서는 K-공유유산의 활용·관리 정책 추진 방안을 크게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먼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시범사업의 대상 목록 도출 방안과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의 경우, 기존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하여 통합 목록을 작성하는 사전 작업을 거친 후, 1차로 대한민국 및 소재국에서의 가치와 보존 현황, 활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대상을 도출한다. 이어서 2차 단계에서는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려운 경우, 형태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아 거점시설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적합대상을 제외한다. 우선순위 또는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검토대상으로 상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 및 검토대상은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별로 해당 목록을 분류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방안에서는, 먼저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사업 추진 계획에 제시된 지원 내용과 함께 기존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사례, 해외 공유유산 활용·관리 사례 등을 참고하여 K-공유유산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문화유산의 일반 현황 등 개요와 함께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협력기관 및 지원 방안 등을 기획하고, 개별 시범사업 사례마다 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예비목록 도출 절차(안)

시범사업 대상 예비목록 도출 절차

사전 작업	기존 조사 국외사적지 목록 통합	- 국외사적지 통합목록 작성 및 조사 항목 정리 - 문헌 자료 및 디지털 자료 등을 통한 누락 정보 재조사
1차	우선순위 대상 도출	-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 현지에서 활용 중인 경우
2차	부적합 대상 제외	- 동북공정 갈등 유발 관련 제외 - 일본 식민통치 관련 제외 -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대상 제외 -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멸실, 다른 건조물 조성, 위치 추정 불가능한 대상 등 제외 - 동산문화재 및 자연물 등 제외 - 이미 반환된 사적지 제외
3차	검토대상 목록 정리	- 조사가 미흡하여 역사적 가치·보존현황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관리·활용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 갈등유발 가능 사적지 중 소재국 내 갈등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갈등유발 가능 사적지 중 갈등봉합 및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현재 상태에서 소재국 내 가치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4차	주기적 모니터링 대상 지표별 목록 정리	- (소재국) 국가 간 외교 여건 변화 모니터링 - (시기·주제) 동일한 시기·주제별 국외사적지 재조사 및 신규 발굴 모니터링 - (시기·주제) 유관 국내·외 비영리기관 및 단체 협력 가능성 검토 - (소유자) 국가·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외교 관계 및 협력가능성 모니터링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 사업 범위(안)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 사업' 범위(안)

-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지원
- 현지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 가능한 활용·관리사업 지원
- 보존·관리가 시급한 국외사적지 매입·보수·정비 지원(보조금, 전문 인력 등 지원)
- 현지 소재국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가치 증진 사업(홍보자료 제작, 안내판 제작, 교육 등)
- 문화유산 활용 국제 협력 증진 및 홍보 사업(공동 전시, 답사, 문화행사 등)
- 공유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사업
- 공유유산 대상 신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현황 조사를 위한 관리대상 정기조사 및 안전진단 지원
- 공유유산 국제 학술교류프로그램 지원 사업(대한민국 및 소재국 전문가, 관련 국제전문가 등)
-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등

제도화 방안에서는 (가칭)「K-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장기적 추진 과제로 제안하였다. 먼저 운영지침의 경우 즉각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운영지침 제정을 위해 국외 문화유산 및 현충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유관 행정규칙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K-공유유산 사업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4년부터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지원·관리 등을 규정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재발의 시 해당 내용 반영 등 법률 제·개정 사항을 제안하였다.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제안사항



본 연구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로, 향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로 기존 국외사적지의 가치 재검토와 이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신규 공유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을 연계한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칭)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사전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에 대한 기획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환수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현지 소재국 내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활용 방안으로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외사적지의 현황 분석 및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조사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화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K-공유유산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K-공유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공유유산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 평가 및 대상 발굴 등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현재 전세계 35개국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국외사적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국외사적지의 여건에 부합하는 단계적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유유산(shared heritage), K-공유유산,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차 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7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9
   1) 선행연구 검토 — 9
   2) 본 연구의 차별성 — 10
5. 연구의 흐름 — 12

제2장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정책 동향 — 13
   1) 문화재청 정책 동향 — 14
   2) 국가보훈부 정책 동향 — 19
   3) 외교부·교육부·산림청 정책 동향 — 22
   4) 기존 국외사적지 정책의 특성과 한계 — 23
2. 공유유산 개념의 국제적 논의와 적용 — 25
   1) 유네스코(UNESCO)의 공유유산 — 25
   2) 이코모스(ICOMOS)의 공유유산 — 28
   3) 유럽연합(EU)의 공유유산 — 32
3.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 34
   1)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 34
   2) K-공유유산의 속성과 국외사적지의 요건 — 37

제3장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 41
2.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 44
   1)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현황 — 44
   2)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제외 및 검토필요 유형 분석 — 51
   3)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유형 분석 — 61
   4) 국외사적지 유형에 따른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도출 기준 — 67

3.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 71
1) 미국 — 76
2) 유럽 — 104
3) 일본 — 128
4. 국외사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유산 개념 적용 방향 — 159

제4장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조사 개요 — 167
2.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 169
1) 네덜란드: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공유유산 사업 — 169
2)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 — 178
3) 미국: 재외공관 등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 184
3.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 188
1)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 188
2)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 191
3) 아프리카 지역: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 195
4.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 197
1)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 197
2)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의 보존·활용 — 203
3)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 205
5.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 218

제5장 K-공유유산 활용·관리 정책 방안

1.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 225
1)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방안 — 225
2)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방안 — 233
2.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 239
1)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운영지침 제정 — 239
2) K-공유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 261
3) 향후 정책 과제 — 269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 273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77

참고문헌 279

SUMMARY 289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최근 국외사적지 현지 보호 및 활용 사례(정부 매입 방식) 3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국외사적지 관련 유관 부처 현황 13
[표 2-2]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 기준) 17
[표 2-3]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의 연례회의 및 답사 29
[표 2-4]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및 대상 37
[표 3-1]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및 관리·활용 사례 분석의 틀 43
[표 3-2] 주요 부·처·기관별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자료 현황표 44
[표 3-3]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총목(2008년 기준, 일부) 45
[표 3-4] 조선~대한제국 시기 재외공관 건축물 목록(2020년 기준, 일부) 46
[표 3-5] 미국 현지지정 한국문화유산 목록(2023년 기준) 47
[표 3-6] (제외대상)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갈등 유발 지역에 위치한 국외사적지 예시 51
[표 3-7] (제외대상) 친일 관련 국외사적지 및 일본 내 독립운동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52
[표 3-8] (검토대상) 일본 식민통치 피해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53
[표 3-9] (검토대상) 일본에 위치한 기타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예시 55
[표 3-10] (검토대상) 이민사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56
[표 3-11] 문화재청(2008)의 역사 가치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 기준표(제외대상 기준) 57
[표 3-12] 문화재청(2008)의 보존현황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 기준표(제외대상 기준) 58
[표 3-13] (제외대상) 멸실되었거나 장소성 입증 및 위치 추정이 어려운 국외사적지 예시 59
[표 3-14] (제외대상) 부동산 형태가 아닌 국외사적지 예시 60
[표 3-15] 문화재청(2008)의 보존현황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표(우선순위 기준) 61
[표 3-16] 보존 현황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사례 예시 62
[표 3-17] 문화재청(2008)의 역사적 가치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표(우선순위 기준) 63
[표 3-18] 역사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사례 예시 63
[표 3-19]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사례 예시 65
[표 3-20] 소재국 내 활용 사례 예시 66
[표 3-21] 가치 유무 및 갈등 유발 여부에 따른 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69
[표 3-22] 보존 및 활용 현황에 따른 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69
[표 3-23] 기타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70
[표 3-24]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항목 71
[표 3-25]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사례 개요 72
[표 3-26]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분석 개요 76
[표 3-27]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분석 개요 80

[표 3-28] LA 흥사단소 분석 개요 83
[표 3-29] 서재필기념관 분석 개요 87
[표 3-30] USC 한국학연구소 분석 개요 92
[표 3-31]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분석 개요 95
[표 3-32] 한미 우정의 종각 분석 개요 98
[표 3-33]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분석 개요 101
[표 3-34] 미국 NPS 국가사적 잠정목록 중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관련 내용 102
[표 3-35]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분석 개요 104
[표 3-36]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분석 개요 107
[표 3-37]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분석 개요 110
[표 3-38] 한국 친우회 창립지(프랑스) 분석 개요 113
[표 3-39]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이준 열사 방문 및 순국지) 개요 115
[표 3-40] 영국 런던 주영대한제국공사관 개요 118
[표 3-41]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분석 개요 121
[표 3-42] 이응노 아뜰리에 분석 개요 123
[표 3-43]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분석 개요 125
[표 3-44] 일본 도쿄 영친왕 저 분석 개요 128
[표 3-45] 고려미술관 분석 개요 131
[표 3-46] 심수관요 분석 개요 134
[표 3-47] 보화종루 분석 개요 138
[표 3-48] 일본 시즈오카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개요 141
[표 3-49]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관련 소재국(일본) 내 문화유산 지정 현황 147
[표 3-50] 영친왕 별장 개요 149
[표 3-51] 조선식 산성 개요 153
[표 4-1]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조사 개요 168
[표 4-2] 네덜란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169
[표 4-3] 더치컬처센터 2020년 매칭펀드 지원사업 171
[표 4-4] 폴란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178
[표 4-5] 미국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개요 184
[표 4-6] 미국 국무부의 국외 소재 역사자산 등록 대상 목록 186
[표 4-7]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188
[표 4-8] 탄자니아 공유유산 사업 개요 191
[표 4-9] 아프리카 지역 공유유산 사업 개요 195
[표 4-10] 중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197
[표 4-11] 스코틀랜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203
[표 4-12] 미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205
[표 4-13] 미국 국립공원청(NPS) 미래전략 보고자료 비교 분석 206
[표 4-14] 미국 국립공원청의 최근 역사 자원 정책 목표 변화 비교 207
[표 4-15] 2011-12년 미국 내 이민유산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지정 현황 분석 209
[표 4-16] 2018년 미국 내 국가 역사 랜드마크 연구 보고서 주제 분석 209

[표 4-17] 미국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등재조건에 부합하는 아시아계 이민유산 잠정 목록 현황 — 210
[표 4-18]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지정현황 — 211
[표 4-19] 국가 유산으로 등재된 재미 일본계·중국계 사적의 지역별 분포 현황 — 212
[표 4-20] 동아시아계 국가 유산의 등재 시기별 분포 현황, 평가기준 및 중요성 핵심어 분석 — 213
[표 4-21] 해외 공유유산 활용·관리 사업별 주관·시행 및 협력·지원 기관 — 219
[표 4-22]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업 유형 — 222
[표 5-1] 본 연구에서 분석한 K-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및 건수 — 229
[표 5-2] K-공유유산 사업수행 계획 수립 항목 — 235
[표 5-3] 시범사업 운영계획 예시 (1)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 236
[표 5-4] 시범사업 운영계획 예시 (2) 일본 시즈오카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 237
[표 5-5]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구성 및 주요 내용 — 241
[표 5-6]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구성 및 주요 내용 — 244
[표 5-7]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구성 및 주요 내용 — 247
[표 5-8] 「현충시설 관리지침」 구성 및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보수 지원 관련 내용 — 249
[표 5-9] 국외 문화유산·현충시설 지원 관련 유관 행정규칙 비교 — 251
[표 5-10]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K-공유유산 지원사업 대체 심의(안) — 257
[표 5-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항 개정안 — 262
[표 5-1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내 K-공유유산 관련 발췌 조항 — 264
[표 5-1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신규 발의 시 수정 사항 — 266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국외소재문화재 조사 현황(2023년 1월 기준) 2
[그림 1-2] 연구의 흐름 12
[그림 2-1] 2017년 국외소재문화재 정의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 범위 확대 내용 15
[그림 2-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oversea.i815.or.kr) 내 국외사적지 정보 20
[그림 3-1]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2022), 영문판 47
[그림 3-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2023년 기준) 중국 독립운동사적지 예시 50
[그림 3-3]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 63
[그림 3-4] 미국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63
[그림 3-5]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거주지 65
[그림 3-6] 멕시코 메리다 이종오 거주지 65
[그림 3-7] 미국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66
[그림 3-8] 프랑스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66
[그림 3-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사진 77
[그림 3-10]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관련 사진 81
[그림 3-11] 흥사단소 관련 사진 85
[그림 3-12] 서재필기념관 관련 사진 89
[그림 3-13] 필라델피아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내 서재필 소개 패널 90
[그림 3-14] USC 한국학연구소 관련 사진 94
[그림 3-15]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관련 사진 96
[그림 3-16]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인근 국외사적지 97
[그림 3-17] 한미 우정의 종각 관련 사진 99
[그림 3-18]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관련 사진 103
[그림 3-19]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관련 사진 106
[그림 3-20]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관련 사진 109
[그림 3-21]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관련 사진 112
[그림 3-22] 한국 친우회 창립지 관련 사진 114
[그림 3-23]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관련 사진 116
[그림 3-24] 영국 런던 주영제국공사관 관련 사진 119
[그림 3-25]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외관 사진 122
[그림 3-26] 이응노 아뜰리에 관련 사진 124
[그림 3-27]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관련 사진 126
[그림 3-28] 일본 도쿄 영친왕 저 관련 사진 130
[그림 3-29] 고려미술관 관련 사진 132

[그림 3-30] 심수관요 관련 사진 136
[그림 3-31] 보화종루 관련 사진 140
[그림 3-32] 세이켄지 가람 배치도 143
[그림 3-33] 교고산 세이켄지 내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 및 기록 143
[그림 3-34] 삿타토우게 통신사길 145
[그림 3-35] 철도 부설 후 세이켄지 일대 전경 146
[그림 3-36] 현재 세이켄지 주변(해안) 경관 146
[그림 3-37] 삿타토우게 하이킹코스맵 146
[그림 3-38]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개최(2023) 148
[그림 3-39] 라쿠쥬칸 배치도 150
[그림 3-40] 라쿠쥬칸의 남쪽에 조성된 오하마이케(小浜池)와 정원 151
[그림 3-41] 일본 조선식 산성 관련 도면과 사진 155
[그림 4-1] 네덜란드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 선정 주요 기준 172
[그림 4-2] 네덜란드 2020년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 결과물 예시 173
[그림 4-3] 스리랑카 창고 건물 내부 복원 전(왼쪽)과 후(오른쪽) 174
[그림 4-4] 영국 Klein Hollandia 난파현장의 물병 176
[그림 4-5] 호주 Batavia 3D 스캔 모델링 176
[그림 4-6] 일본과 네덜란드 공유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보고서 176
[그림 4-7] 리비우 Garrison 교회 공사 현장(왼쪽) 및 리노베이션 이전(오른쪽) 모습 180
[그림 4-8] 조브크바 궁 건물 파사드의 사진 측량 작업 181
[그림 4-9]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위치 182
[그림 4-10]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문화유산의 복원 사례 183
[그림 4-11] 버그 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사례 183
[그림 4-12]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저 신축 전(위)과 신축 후 현재(아래) 모습 187
[그림 4-13] 제나덴달 연구 및 복원사업 사례 190
[그림 4-14] 아프리카 해방운동 관련 기록 193
[그림 4-15] 탄자니아 유산 아카이브 프로젝트 소개 193
[그림 4-16] Old Boma 건축물을 개조하여 조성된 다르에살람 건축유산센터 194
[그림 4-17] 다르에살람 건축유산 센터 내 아프리카 유산 관련 전시 모습 194
[그림 4-18]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자료와 전시회 195
[그림 4-19] 제임스 잭슨 체육관 보존 및 보수 사업 199
[그림 4-20] 1930년대 구랑위 전신국 전경 200
[그림 4-21] 구랑위 공유유산 전시관 200
[그림 4-22] 2006년 이탈리아 조계 복원 현장 202
[그림 4-23] 입구 표지판 202
[그림 4-24] 스코틀랜드의 대 폴란드 지도 3D 모델 복원 204
[그림 4-25] 폴란드 군의 보이테크 곰 204
[그림 5-1]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절차 226
[그림 5-2]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 사업 범위(안) 233
[그림 5-3] 법령-행정규칙 간 연계 제안사항 268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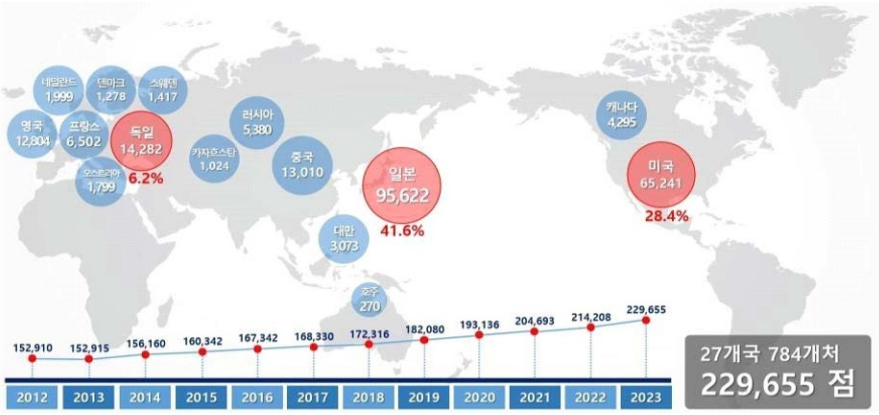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환수 중심의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다각화 필요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1]을 말한다. 2017년 「문화재보호법」개정 이전까지 국외소재문화재는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외교·무역 등으로 정당하게 유출된 문화재 및 건축물·공간환경 등 부동산 문화재인 국외사적지 또한 범위에 포함되면서, 현지에서 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 동산문화재의 환수 또는 매입 이외의 방식으로 현지에서 활용·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지 소재국 내 보호·활용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사업 운영·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법령 개정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에 따라, 환수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현지 소재국 내 보호·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1) 「문화재보호법」(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9호, 2022. 5. 3., 일부개정). 제2조제9항.



[그림 1-1] 국외소재문화재 조사 현황(2023년 1월 기준)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2023.

국외소재문화재의 수량은 범위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문화재 조사가 시작된 후 2009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이 발표되었고,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는 등 국외소재문화재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계획 수립, 기관 설립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꾸준한 조사 결과, 국외소재문화재는 현재 27개국 784개처에 229,655점이 파악되며[2], 이와 별개로 건축물·장소 등의 부동산유산인 국외사적지는 1천여 개소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3]

한편 현재까지 환수된 문화재는 11,034점으로 수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전체 국외소재문화재의 수량을 고려하였을 때 약 5%에 불과하다.[4] 이는 2017년 법령 개정 후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에 따른 대상 증가와 조사·연구를 통한 신규 국외소재문화재 발굴 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법에 근거한 수사 시 반출 경위에 대한 증명과 소재국의 반환 의지가 필요하여 문화재 환수 추진이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5]

특히 건축물·장소 등의 국외사적지는 부동산 유산의 특성상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해외 국가에 위치하여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2017

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2023.1.1.기준. https://www.overseaschf.or.kr/okchf/index.do(검색일: 2023.03.30.)

3) 문화재청 984개소(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 자료), 국가보훈처 1,386개소(2022년 기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제공 자료) 참고.

4) 문화재청. (2023a). 2023년 환수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29.

년부터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된 국외사적지는 상대적으로 조사·연구된 기간이 짧고, 대한민국 영토 밖에 위치하므로 현황 조사 및 실태 파악 또한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국외사적지는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한 목록 구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현지 소재국 내 방치로 인한 멸실·훼손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에 멸실·훼손 위기에 처한 주요 국외사적지의 현지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외사적지 방치 및 멸실·훼손 우려 관련 기사

-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대던 하와이 유적 방치", 인천일보, 2011.09.19.
- "박 대통령도 여고생 때 방문한 사모아, 한국관 철거 등 '위기의 격랑'", 경향신문, 2013.08.02.
- "잊히고 방치되는 항일독립 문화유산", EBS, 2018.08.14.
- "화장실로 방치된 위안소… "끔찍할수록 기억해야죠"", 한국일보, 2020.01.20.
- "LA 흥사단 건물 철거 위기…"허물고 아파트 짓겠다"", SBS, 2021.10.20.
- "항일독립운동 기리는 러 '신한촌 기념탑' 소유·관리 주체 논란", 연합뉴스, 2023.01.11.

출처: 인천일보. (2011).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대던 하와이 유적 방치". 2011.09.1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78 (검색일: 2023.06.01.); 경향신문. (2013). "박 대통령도 여고생 때 방문한 사모아, 한국관 철거 등 '위기의 격랑'". 2013.08.0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308022122545#c2b (검색일.2023.06.01.); EBS. (2018). "잊히고 방치되는 항일독립 문화유산".2018.08.14.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980631/H?eduNewsYn=N&newsFldDetlCd=CORNER_12 (검색일: 2023.06.01.); 한국일보. (2020). "화장실로 방치된 위안소… "끔찍할수록 기억해야죠"". 2020.01.2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1200202027265?rPrev=201908211475092541 (검색일: 2023.06.01.); SBS. (2021). "LA 흥사단 건물 철거 위기…"허물고 아파트 짓겠다"". 2021.10.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4797(검색일: 2023.06.01.); 연합뉴스. (2023). "항일독립운동 기리는 러 '신한촌 기념탑' 소유·관리 주체 논란". 2023.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92400096(검색일: 2023.06.01.)

□ 국제협력 및 문화외교 거점으로서 국외사적지의 현지 보호·활용 추진

국외사적지는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축물·공간환경으로, 실질적 환수가 어려운 부동산 문화재의 특성상 현지 활용의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6] 특히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비롯하여 국외외교사적지, 재외동포이민사적지,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국외산업·무역사적지 등은 19-20세기 대한민국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역사적 현장으로, 현지에서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국가 간 교류사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 및 현지 활용을 위한 별도 법률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고,[7] 국외사적지를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여 관리·활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2012년 매입한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

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66.

7)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320. 2021.7.5.

[표 1-1] 최근 국외사적지 현지 보호 및 활용 사례(정부 매입 방식)

	
미국 워싱턴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미국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 대한제국기 외교 공관, 일제강점기에 강제 매각 - 2012년 문화재청에서 매입하여 한미교류사와 공사관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 조성	-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 2023년 보훈처 매입으로 보존·활용 추진 - LA 시 사적 지정 및 건물 활용계획 수립 중

출처: 현지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는 다음과 같음: (좌)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 https://oldkoreanlegation.org/about/ (검색일: 2023.05.20.), (우)국가보훈처. (2023).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보도자료. 2023.02.02.

국공사관과 국가보훈부에서 2023년 매입한 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대표적이다. 매입 사례의 경우, 현지 소재국에서 국외사적지를 관리·활용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례로서 향후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례이자 거점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2023년 'K-공유유산 중장기 사업 모형 구축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소재국과 대한민국이 서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K-공유유산' 사업은 현지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K-공유유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발굴 및 활용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 조사 및 K-공유유산 사업모형 구축 등을 통해, 미국·프랑스 등지의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유유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8)]

□ 국제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동 보호·활용하는 '공유유산' 개념 주목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이란,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사용된 용례를 검토하였을 때, 2개 이상 국가들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말한다. 최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6년부터 파리국립도서관(BnF)에서 미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7개국 국립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프랑스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하고,

8) 문화재청. (2023).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붙임2). 보도자료. p.29.

이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부 주도적으로 '공유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 국가로, 2017년부터 호주,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동인도 회사 등 과거 네덜란드 유산을 통한 국제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9] 이처럼 공유유산은 현재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소재국과 원산국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의 훼손·멸실을 방지하고 문화외교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최근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과 출처 연구(provenance research) 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연구란 역사적 사건과 문헌 자료, 수집가 및 경매 정보 등을 참고로 문화재의 이력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출처 연구를 통한 나치 및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약탈·분실 문화재 연구와 함께 문화재 반환 사례[10]가 증가하고 있다.[11] 이에 유네스코는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 또는 불법 도용 시 배상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ICPRCP)를 설립하여, 문화재를 원산국으로 반환하도록 하거나 반환을 위한 양국 간 협상 및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12]

또한 문화유산에 '공유(shared)'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집단적 책임 및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인 UNESCO와 ICOMOS는 문화유산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shared heritage'를 주제로 각각 2018년과 2020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유유산의 관점에서는 소재국 및 관련 국가에서의 문화유산적 가치 또한 중요하며, 이에 K-공유유산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외사적지의 소재국 내 가치조사 및 발굴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국외사적지의 목록화 작업 및 가치조사는 주로 대한민국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 등의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소재국 내 해당 국외사적지의 가치를 새롭게 조사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 추진 등을 통해 현지 문화유산 관리 체계 내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9) 문화재청. (2023f). K-공유유산 중장기 사업모형 구축 연구용역. pp.13-19.

10) 해외에서는 미술관장 협회(Association or Art Museum Directors, AAMD)를 중심으로 2001년 관련 가이드가 제작되는 등 미술관 소장품 취득 시 대부분 출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arn Museum of Art 홈페이지. "Provenance Research". https://harn.ufl.edu/provenance-research/(검색일: 2023.06.03.)

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19.

12) 문화재의 원산국 반환 또는 불법 도용 시 배상을 위한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ICPRCP): UNESCO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fighttrafficking/icprcp(검색일: 2023.06.03.) 참고.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현지 소재국 내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외사적지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되는 'K-공유유산'의 개념 정립과 시범사례 선정 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국내 유관부처의 국외사적지 관련 최근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공유유산 개념 용례의 국제적 논의 현황과 국외사적지 관리·활용 현황을 검토한다. 이어서 공유유산 정책 수행을 위해 해외 국가의 공유유산 관련 정책 추진 사례 및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정책 사업 대상이 되는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해당 개념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유형 및 현황, 주요 사례의 관리·활용 사항을 분석하여 시범사례 선정 기준과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도출한다.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국외사적지

본 연구는 전 세계 35개국에 분포한 대한민국 관련 국외사적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외사적지'라는 용어는 주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독립운동 관련 국외 현충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보훈정책실)에 따르면 '(국내외) 사적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내외 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현재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DB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제6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외소재문화재에 부동산유산이 포함되었다. 국가보훈부의 '국외사적지'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의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현재까지 '국외사적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관계자 및 관련 연구자들은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사적지'로 지칭하여 널리 사용해 오고 있다.[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임산(2021)에 따른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장소, 시설 또는 그 자취가 남은 곳"[14]을 국외사적지로 정의하고,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및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 등을 주요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공유유산(shared heritage)과 K-공유유산

본 연구는 국제적 및 국가별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어 온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기반으로, 문화재청에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K-공유유산'의 개념과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경우,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거나 확정적인 개념은 아니며 '문화유산의 공유'라는 의미에서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13) 강임산. (202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례로 본 국외 사적지 활용 방안.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효시. 국립항공박물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p.135; 임종현, 한종수. (2022). 미국 현지 등재를 통한 국외사적지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사보존 정책 -아시아계 역사자산의 등재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8), p.4 등.

14) 강임산. (202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례로 본 국외 사적지 활용 방안.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효시. 국립항공박물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p.135.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유유산의 용례와 해외 국가의 공유유산 개념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2장에서 공유유산 개념의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4장에서는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공유유산의 개념과 해당 개념이 적용된 대상 전반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에 4장에서 다룬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경우, 네덜란드와 같이 과거 해외 식민지 국가 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 또는 아프리카와 같이 과거 식민 피해와 관련된 자국 내 건축물·장소 등을 공유유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부정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K-공유유산 대상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공유유산의 개념이 등장하고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가 길지 않고, 공유유산 정책 추진 방안 및 시범사례 추진 방안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례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K-공유유산 개념의 경우, 현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K-공유유산 사업 내용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15]의 개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해당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2장에서는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 및 속성을 토대로, 2.3에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로서 K-공유유산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3장에서는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유형 분석 및 관리·활용 사례를 분석하였고, 5장에서는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상호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며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외사적지의 시범사업 대상 선별 기준과 추진 방안, 제도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15) 문화재청. (2023f). K-공유유산 중장기 사업모형 구축 연구용역. p.6.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① 국외소재 동산문화재 및 기록물 관련 연구

기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정책의 주요 대상인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1-2)와 해외 소장기관의 기록물 DB 구축 관련 연구(1-1)가 수행되었다.

서재권(2020)은 문화재 국제 거래 관점에서 불법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정책 활성화 및 다각화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1-2), 강순애(2008)는 해외기관에 소재한 고문헌 조사 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 등 고문헌 DB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소장처와의 공동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1-1).

② 세계유산 공동등재 관련 연구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연속유산, 월경유산 등 초국경유산 등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방안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으로 등재된 세계유산은 2개 이상 국가가 서로 공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유산이자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이라는 점에서 확장된 공유유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우태 외(2021)의 연구는 북한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구려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사례와 공동 등재된 씨름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2-1). 안정화 외(2021)는 양면게임이론의 윈셋(win-set) 분석을 통해 한일 공동 세계유산 등재 성공 및 실패 사례의 특성과 조건을 분석하였다(2-2).

③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현황 및 활용방안 관련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까지 국외사적지 관련 연구는 주로 독립기념관에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발굴되지 않은 신규 국외사적지를 조사하고 현지 소재국 내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가별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목록을 구축하고 현지 소재국에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한 선행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김도형(2015)은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passport) 자료 기록을 바탕으로 안창호의 이동 경로와 행적을 통해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관련 국외사적지를 정리함으로써, 인물 중심의 국외사적지 현황 조사 및 발굴 방법을 제시하였다(3-1). 오대록(2020)은 독립기념관에서 조사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의 관리·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3-2).

한편 2017년 「문화재보호법」개정 이후 국외사적지가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문화재 관점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임종현 외(2021)는 최근 미국 내 아시아계 및 이민유산이 미국 내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화유산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미국 내 현지 등재를 통한 한인 국외사적지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3-3).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최근 국제적 동향 및 국내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등장한 K-공유유산의 개념 정립과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한 대한민국의 국외사적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먼저 동산문화재 및 기록물 DB 구축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경우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환수·조사·활용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환수하기 어려운 부동산문화재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외사적지와는 연구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2017년 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장소 등의 국외사적지가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존의 국외 반출 동산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환수 및 조사·활용 관련 선행연구와 접근 방식 및 관리·활용 측면에서 구별된다.

두 번째로 세계유산 공동등재 관련 선행연구의 대상은 주로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도를 바탕으로 특히 양국 간 '공동 등재' 사례에 주목한다. 이는 국내 지원 및 현지 소재국 내 법률 적용을 통해 국외사적지를 양국이 상호 관리하는 K-공유유산의 개념 및 보존·관리의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행된 국외사적지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 동일한 대상인 국외사적지의 현지 보존·관리 방안을 다루고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관리 정책을 마련하거나 우선적인 활용·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구별된다.

[표 1-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1	- 연구명: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 연구자(년도): 강순애(2008) - 연구목적: 해외기관의 한국 관련 소장 고문헌 DB 구축 현황 검토 및 공동 활용 방안 제안	- 문헌연구 - 현황 조사 - 전문가 자문	- 국내기관의 해외 소재 고문헌 목록화작업 조사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현황 조사 - 문제점 분석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1-2	- 연구명: 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 연구자(년도): 서재권(2020) - 연구목적: 문화재 국제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 현황조사 - 제도 분석 - 전문가 자문	- 문화재 국제거래 허용 범위 및 현황 분석 - 우리나라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수행 현황 검토 및 성과 평가 -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체계화를 위한 관련 정책 제언
2-1	- 과제명: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 연구자(년도): 이우태외(2021) - 수행기관: 통일연구원 - 연구목적: 유네스코 유산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 협력 방안 구상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전문가 자문	- 북한의 민족유산 정책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방안 및 사례 연구 - 유네스코 등재 관련 남북 협력사례 분석 -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협력방안 제시
2-2	- 연구명: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력에 관한 사례 연구 - 연구자(년도): 안정화외(2021) - 연구목적: 유네스코 유산 한일 공동 등재의 성공 및 실패 조건 분석	- 사례 조사 - 윈셋(win-set) 분석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기록유산 등재 제도 검토 - 양면게임이론의 윈셋(win-set) 활용 한일 공동등재 사례 분석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국제적 협력 방향 제안
3-1	- 연구명: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 연구자(년도): 김도형(2015) - 연구목적: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 (passport) 자료를 통한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코, 필리핀 등지의 독립운동 행적 연구	- 자료조사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passport) 자료 기반 이동 행적 검토 -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코, 필리핀 등지 이동경로와 행적, 관련 국외사적지 정리
3-2	- 연구명: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의 현황과 과제 - 연구자(년도): 오대록(2020) - 연구목적: 중국 내 임시정부 사적지 현황 종합 분석·정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	- 현황조사 - 사례조사 - 제도 분석 - 전문가 자문	-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 및 기념관 14개소 현황 검토 - 임시정부 청사 주변 국외사적지 67개소 보존 및 활용 현황 검토 - 임시정부 사적지 관련 문제 및 활용방안 도출
3-2	- 연구명: 미국 현지 등재를 통한 국외사적지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임종현외(2022) - 연구목적: 미국 내 국외사적지 보존을 위한 주정부 및 연방정부 역사자산 관리체계 분석	- 문헌연구 - 제도 분석 -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	- 미국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의 역사자산 관련 법제 분석 - 미국 내 아시아계 역사자산 관련 연구 및 등재 현황 검토 - 주요 등재기준별 한인유산 적용 가능 방안 검토 및 등재 방안 제시
본 연구	- 과제명: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 연구목적: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기반 마련 - K-공유유산 개념 정립 및 시범사업 추진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제도 분석 - 사례 조사 - 자료 조사	- K-공유유산 개념 정립 - 국외사적지 유형 및 관리·활용 현황 분석 -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분석 -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도출 -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제도화 방안 및 정책과제 도출

출처: 연구진 작성

5. 연구의 흐름

연구 배경

-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에 따른 환수 외 현지 보호·활용 방안 필요
- 조사·관리의 어려움으로 멸실·훼손되고 있는 국외사적지의 보존·관리 방안 필요
- 최근 국제협력을 통해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활용하는 '공유유산' 개념 주목
- 현지 활용·관리를 위한 공유유산의 개념·범위, 선정 기준 및 운영·관리 방안 미흡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정책 기반 마련 필요]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필요]

▼

개념 정립

국외사적지 정책 동향 검토	공유유산 개념 논의 현황 검토
-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외교부, 산림청, 교육부 등 정책 동향 검토	- 국제회의의 개념 논의 검토 - 문화재청 'K-공유유산' 사업 개념 검토

[K-공유유산 개념] 도출
-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대한민국 국외사적지로서 K-공유유산 개념 정립

▼

현황 분석

국외사적지 유형 및 공유유산 대상 분석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사례 분석
- 부·처별 국외사적지 현황 조사 및 정리 -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을 통한 K-공유유산 제외 대상 및 우선선정 대상 선정기준 도출	- 현지 소재국 내 주요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사례 분석 (미국/유럽/일본)

[국외사적지의 특성과 공유유산 개념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해외 사례 분석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분석]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 (네덜란드) 정부주도 국제교류 사업 -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 - (미국) 해외 소재 공관 등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 (남아공) 관련 국가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 활용 -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정책 추진을 위한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도출

▼

정책 추진 방안 제시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제도화 방안 및 정책 과제
- 시범사업 대상 선정 및 목록 도출 방안 -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방안	- K-공유유산 지원 운영지침 제정 방안 -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 향후 정책 과제

[그림 1-2] 연구의 흐름
출처: 연구진 작성.

제2장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정책 동향
2. 공유유산 개념의 국제적 논의와 적용
3.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국외사적지 조사·관리 정책 동향

현재 국외사적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문화재청과 국가보훈부, 외교부, 교육부, 산림청 등 5개 부처로 정리할 수 있다. 각 부처별 국외사적지 관련 주요 관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국외사적지 관련 유관 부처 현황

부처	담당	법적 근거	내용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보호법」	국외사적지 발굴·조사 및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매입, 복원 및 운영관리 등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매입·시설보수·전시개박 등 지원
외교부	재외동포과, 재외동포청 동포단체지원부	「재외동포기본법」	최재형 기념관(러시아) 매입, 안익태 유택(스페인) 개관, 우토로 마을(일본) 매입지원 등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모니터링 등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국립수목원 정원정책연구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외 한국정원 조성 현황 조사 및 K-Garden 관련 정책 수립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a). 국외사적지 국내 소관부처 현황(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및 추가 조사한 내용(산림청)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 문화재청 정책 동향

□ 1992년부터 동산문화재 중심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연구·지원 수행

문화재청에서 국외소재문화재 조사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1992년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국외소재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5년부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문화재보호법」에 '국외소재문화재'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7년 법령 개정 이전까지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환수·활용·연구 및 지원은 주로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2011년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의궤 297책 반환(대여방식),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시대 도서 1,205책 반환 등의 사례는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2012년에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전략 및 정책연구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었다.[16] 또한 2012년 2월 1일에는 국외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긴급 매입 관련 예규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문화재청예규 제248호)가 제정되어,[17]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비롯한 국외문화재의 환수·매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이후 동산문화재 환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784점이 환수되었으며,[18]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5점의 해외 문화재 대상 보존처리 지원 사업이 수행되었다.[19] 그러나 이 경우는 대부분 동산문화재 지원 사항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까지 문화재청에서 국외사적지 대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2012년 미국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이 유일하다.

---

16)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 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p.60-62.

17)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1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37.

19)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63.

□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국외사적지 조사 및 관리·활용 지원 추진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는 해외 반출 동산문화재 외에도 외교·무역 등으로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또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문화재와 함께 현지에서 조성된 건축물 및 장소 등 국외사적지(역사적 건축물과 장소)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조사 범위 또한 2017년 이후 확대되었는데, 기존의 국외 반출 동산문화재 외에도 조선통신사 및 이민사 관련 문화재, 근대기 외국인의 한국 관련 기록물 및 매체 등과 함께 국외사적지가 실태 조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2018년 독일 이미륵 유적지 조사, 미국 LA 국외사적지 답사 프로그램 수행, 영국 주영대한제국공사관 현지 조사 등 본격적으로 국외사적지 조사·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20]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개정 전(201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개정 후(2017)
⑧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재는 제외한다)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변경 전 실태조사 범위	**2017년 변경 이후 실태조사 범위**
- 국외 반출 일반동산문화재: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류, 고문서류, 서간, 서각, 근대매체(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고고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대한민국과 관련 있는 외국인 문화재	- 국외 반출 일반동산문화재 - 조선통신사, 해외 소재 개화파 일본 망명, 이민,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 - 근대기 외국인 한국 관련 기록물(저술), 근대매체(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등 국외사적지

[그림 2-1] 2017년 국외소재문화재 정의 변경에 따른 실태조사 범위 확대 내용

출처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12.

그러나 해외에 위치하는 국외사적지의 특성상 조사·연구 이후 본격적인 관리·활용 사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문화재청의 국외사적지 관련 사업은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및 운영·관리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외에는 현황 조사 및 홍보자료 발간, 재외공관 문화재 표지판 설치 등 여전히 동산문화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21] 이에 현재까지 국외사적지 활용 사업은 조사·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일부 답사 프로그램과 홍보자료 제작 등이 주로 추진되어 왔는데, 미국 LA 지역 국외사

20)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67.

2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 관계자 인터뷰 참고. 2023.06.02.

[표 2-2]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 기준)

· 전체 현황 (총 9개국 24개소)

구분	아 주	미 주	구 주	합 계
국가	2	2	5	9
개소	14	4	6	24

· 국가별 세부 현황

구분	국가	소재지	대상명	소유자	관리자	활용현황
아주 (14)	일본 (3)	가고시마	심수관요	심수관(15대)	심수관(15대)	전시관, 도자공방
		교토	고려미술관	고려미술관	고려미술관	한국미술품전시관
		교토	우토로마을	우토로민간기금재단	우토로민간기금재단	역사전시관
	중국 (11)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상해시	상해시	역사전시관
		항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항주시	항주시	역사전시관
		장사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장사시	장사시	역사전시관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중경시	중경시	역사전시관
		가흥	가흥김구피난처	가흥시	가흥시	역사전시관
		가흥	가흥임시정부요인주거지	가흥시	가흥시	역사전시관
		가흥	해염김구피난처	가흥시	남북호여유투자집단 유한공사	역사전시관
		진강	진강임시정부사료진열관	진강시	진강시	역사전시관
		류주	류주임시정부항일투쟁활동진열관	류주시	류주시	역사전시관
		중경	중경한국광복군총사령부	중경시	중경시	역사전시관
		뤼순	여순감옥	뤼순시	뤼순시	역사전시관
미주 (4)	미국 (3)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역사전시관
		LA	대한인국민회총회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역사전시관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서재필기념재단	서재필기념재단	역사전시관
	멕시코	메리다	메리다이민기념관	메리다한인회	메리다한인회	역사전시관
구주 (6)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	이준평화아카데미	이준평화아카데미	역사전시관
	독일	베를린	윤이상기념관	윤이상평화재단	국제윤이상협회	작가 레지던스
	스페인	마요르카	안익태유택	외교부	안익태 유족	역사전시관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기념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역사전시관
	프랑스 (2)	프레셍제르베	이응노 아뜰리에	이응노 일가	이응노 일가	작가 레지던스
		뚜레트쉬르루	이성자 아뜰리에(은사구)	이성자 유족(아들)	이성자 유족(아들)	갤러리, 기념관

출처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b).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적지 답사프로그램 운영(LA한국문화원, 2018), 독일 뮌헨지역 이미륵 관련 국외사적지 지도형 홍보자료 발간(2019), 미국 지역 국외사적지 홍보용 핸드북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발간(2021)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국외사적지 984개소 중 24개소만이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다[표 2-2].[22] 이 중 문화재청에서 매입한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례와 독립기념관에서 복원·전시를 지원한 중국 및 미주, 네덜란드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은 주로 민간 재단에서 역사전시관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 2023년 K-공유유산 정책 도입

- **K-공유유산 개념 도입을 통한 국외문화재 보존·활용 정책 추진 계획 발표**

2023년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이를 '공동의 유산'으로 함께 인식하고 보호하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K-공유유산 정책은 국외소재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공동으로 보호·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국제협력 및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23]

이러한 K-공유유산 정책 방향은 2017년 법령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이민·교류·외교·무역 등과 관련된 문화재가 포함되면서 구체화되었다. 특히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비롯한 국외외교사적지, 재외동포이민사적지, 국외문화예술사적지, 무역·산업 관련 국외사적지 등은 대부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대한민국의 이민·외교·무역 등 활발한 국제적 교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2024년도 K-공유유산 정책 추진 계획(안)**

현재 2024년도부터 추진될 K-공유유산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청과 프랑스국립도서관(BnF)간 협약(MOU) 체결(2023.4.11.)을 통해 해당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직지」 등 한국 관련 기록유산을 조사하고, 「직지」의 전시 개최를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유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현지 협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b).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23) 문화재청. (2023).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붙임2). 보도자료. p.29.

※ 문화재청 'K-공유유산' 사업 추진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국외소재문화재가 현지 소재국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공유유산(shared heritage)'으로 상호 인정하여 실질적 보호 강화 및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 **정책 방향**

- 현행법 상 국외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정체성만을 반영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 주권(행정권)의 관할 밖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실질적 보호·활용 한계
-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2개 이상 국가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재를 '공유유산'(shared heritage)으로 지정하여 국제 협력을 통한 보호·활용 추세
- 국외한국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보호·활용 추진

○ **사업 추진 계획**

도입기('23~'25)	▶	정착기('26~'28)	▶	확산기('29년 이후)
- 실태조사, 사업모형 구축 - 미국·프랑스 등 시범사업 실시		- 국가별 K-공유유산 공동 지정 -사업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유산의 다각적 보호·활용 - K-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 운영

○ **K-공유유산 사업 추진 절차**

연구 및 실태 조사	▶	공유유산 지정 협의 (한국-소재국)	▶	공유유산 양해각서 체결 (한국-소재국)	▶	보호·활용 추진 (협업 및 분업)

○ **K- 공유유산 주요 사업 내용**

① 브랜드정체성 개발: 상호 국가 간 상징물을 혼용한 공유유산 브랜드 정체성(BI)을 개발
② 공유유산 디지털도서관 운영 : 공유유산 정보 및 협력 사항을 디지털도서관에서 공
③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정부·학술기관(전문가), 청소년, 등 다층적 국제협력 구성
④ 공유유산 보호·활용 : 미국, 유럽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추진

○ **기대효과**

-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국외소재문화재(제2조제9항)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유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소재국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존 계기 마련
- 단순한 보전·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국외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외교 지평을 확대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 적극 홍보
- 정부기관, 학술기관, 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나라와 소재국 간 상호 문화 존중 및 이해 확산

출처: 문화재청. (2023).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붙임2). 보도자료. p.29; 문화재청. (2023g).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 문화재청 제공자료.

2) 국가보훈부 정책 동향

□ 2002년 현충시설 관리 규정 제정 및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실시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현충시설 조사·관리의 일환으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조사·연구 및 관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인 중국·러시아 등이 개방되면서 해당 국가에 위치한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의 훼손·멸실 실태가 알려졌고, 이는 처음으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문제에 주목하고 현황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24)]

2002년 3월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국내·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의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독립기념관에서는 2002년 처음으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에 착수하여,[25)] 2022년 기준 1,005개소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관리과와 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조사·연구 및 관리·홍보·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6)]

□ 독립기념관 중심 학술조사 및 DB 구축, 기록화·보수·전시지원·탐방 등 추진

독립기념관은 2002년 학술조사 시행 이후, 매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 멕시코, 쿠바, 동남아시아 등에 위치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또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oversea.i815.or.kr)를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외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위치한 전세계 국외독립운동사적지 DB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27)]

독립기념관 교류협력부에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시 및 홍보지원 업무, 시설보수, 관리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는 주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28)] 현재까지 대한인국민회기념관(LA), 서재필기념관(필라델피아), 최재형기념관(연해주), 뉴욕한인교회(NY), 이준열사기념관(헤이그) 등 국외독립운동사적지

2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인터뷰 내용 참고. 2022.5.10.

2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p.66.

26)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a). 국외사적지 국내 소관부처 현황(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27)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report_new/?&p=1(검색일: 2023.06.03.)

2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 2023.11.29.



[그림 2-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oversea.i815.or.kr) 내 국외사적지 정보

출처 : (좌)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l_cd=china(검색일:2023.06.03.); (우)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mode=L&l_cd=china&area=ARA030(검색일: 2023.06.03.)

대상 시설보수 및 전시 지원 등이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2023년 매입한 LA 소재 흥사단소를 대상으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 중이다.[29] 또한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을 통해 국내·외 보훈사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 2023년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현충시설과 기능 분리 및 정책 기능 확대·강화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현충시설과 기능 분리 및 확대

2023년 6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23.6.5)됨에 따라 기존 현충시설과가 보훈정책실 내 현충시설정책과와 현충시설관리과의 2개 과로 분리되어, 관련 정책 기능의 확대·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매입 및 관리·활용은 현충시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제정

국가보훈부는 미국 LA 옛 흥사단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외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매입 심의과정 및 관련 절차, 재산 소유권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국가보훈부예규제1호)을 제정하였다.[30] 이에 LA 옛 흥사단소 건물 매입 과정은 해당 운영지침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2월 최종 매입계약이 체결되었다.[31]

29) 국가보훈부. (2023b). LA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3.7.

30)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31) 국가보훈처. (2023).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보도자료. 2023.02.02.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 내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계획 수립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전세계에 산재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1:1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 산재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현지에서 대응 가능한 1:1 관리 체계(10개국, 120개소)를 수립하고, 특히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소재지 인근의 현지 진출 기업 또는 학교, 한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적지별로 1:1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매칭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계획의 주요 사례로서 2023년 2월 매입한 미국 LA 흥사단소를 소개하고 있다. LA 흥사단소는 매입 당시 LA시의 문화재(Historic Cultural Monument)로 등재되어 현지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향후 미주 독립운동연구의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32]

※ LA 흥사단 매입·보존 및 활용 방안

▸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인 美 흥사단 건물을 매입하여 미주 독립운동연구의 본산이자 LA시의 대표 역사문화 명소로 활용

– LA흥사단(목조 2층, 약261㎡) 매입완료('23.2.), 리모델링 방안 및 실측 완료, 리모델링공사('24)

▸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적지 최초 美 연방사적으로 등재하여 현지 법의 보호 아래 영구적 보존 추진

– LA시 사적지(Historic-Cultural Monument)는 기 등재완료('23.2.)

출처: 국가보훈부.(2023a).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2027. p.45.

- 현충시설 및 국외사적지를 활용한 보훈외교 사업 추진

국가보훈부는 국내 현충시설 및 국외사적지를 활용한 보훈외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2022년 추가 조성된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을 활용하여 한미 합동 추모·기억사업을 추진하고,[33] 유엔참전용사 방한 초청 국제행사 시 부산 유엔참전묘지 참배(7월)를 추진하는 등 현충시설 활용 보훈외교를 시행할 계획이다.[34]

32) 국가보훈부. (2023a).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2027. pp.44-45.
33) 국가보훈부. (2023a).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2027. p.66.
34) 국가보훈부. (2023a).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2027. p.71.

3) 외교부·교육부·산림청 정책 동향

□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정책동향[35]

외교부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제정을 통해 처음 국외사적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과 및 재외동포청 동포단체지원부를 통해 국외독립운동 및 이민 관련 사적지 확보 및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의 대표적인 국외사적지 사업 추진 사례로는 러시아 최재형 기념관 매입('14.7.) 및 개관지원('19.3), 스페인 안익태 유택 개관('16.12) 및 직접 운영, 일본 우토로마을 매입 지원('11.2.) 및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지원('22.4. 개관) 등이 있다.

최근 2023년 6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격상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한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인류 공동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6] 현재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임용 및 조직개편이 추진 중이다.

□ 교육부 및 동북아역사재단 정책동향[37]

교육부는 2006년 5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고, 고구려·발해 등 고대사 유적을 중심으로 발굴 및 조사·교육·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내 동북아교육대책팀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외사적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동북공정과 관련된 고구려·발해 유적의 발굴 및 조사보고서 발간, 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 정책동향[38]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해외 조성 및 국제교류·협력 근거 조항을 기반으로 해외 한국정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해외에 조성된 국제교류 관련 한국정원 조성 현황이 조사되었으며, 이후 2016년, 2020년, 2023년 재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공공조성 29개소 및 민간조성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51개소로 파악된다.[39]

3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a). 국외사적지 국내 소관부처 현황(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36) 이정관. (2023).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외교 147. p.15.
3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a). 국외사적지 국내 소관부처 현황(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38) 이하 내용은 산림청 국립수목원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 2023.11.13.
39) 국립수목원.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2023.10. 기준). 국립수목원 제공 자료.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은 대부분 한국 전통정원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국가 및 도시 간 교류의 산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양국 간 우호적 의미를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이나 대부분 최근에 조성된 곳이 많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규명하기 쉽지 않다. 단, 조성된 지 50년 내외로 등록문화재 이상의 연대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정원도 일부 존재한다. 외교부에서 조성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내 한국정원(1968), 서울시에서 조성한 튀르키예의 앙카라시 한국공원(1973), 민간에서 조성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s 내 한국정원(1952), 미국 국립수목원 내 Korean Hillside(1980),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시 내 한국정원(1986) 등이 대표적이다.[40]

2016년에는 한국 전통정원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K-Garden' 정책 추진을 위해 해외 한국정원 조성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41]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 전략에 '국내·외 K-Garden 조성 및 해외 한국정원 유지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나,[42] 현재 여건상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입지하는 한국정원은 유지·관리가 어렵고 조성 당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성 이후 관리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43]

4) 기존 국외사적지 정책의 특성과 한계

□ 조사·연구 수행 이후 적극적인 현지 보존·활용 정책 추진 한계

국외사적지는 해외 국가에 위치하여 국내 문화재에 비해 많은 조사·연구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현지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문화재청과 국가보훈부에서 약 1,000여건 내외의 국외사적지 목록이 공식적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24건에 불과하다.

또한 현지 활용 사례 24건 중 정부 부처에서 매입을 통해 관리·활용하는 사례는 4건(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러시아 최재형 고택, 스페인 안익태 유택, 미국 LA 흥사단소)이

40) 국립수목원.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2023.10. 기준). 국립수목원 제공 자료.

41) 산림청. (2015).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42) 산림청. (2021).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2021~2025. pp.20-23.

43)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해외 한국정원 관리실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전업농신문. (2023). 해외 조성된 '한국정원' 관리부실 '도마 위' 올라. 2023.10.16. https://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96(검색일: 2023.11.13.) 등 관련 기사 참고

며, 각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중국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외사적지가 민간 비영리단체 및 협회, 기관 등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부 현지 보존·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산문화재 중심의 조사와 디지털기록화 사업이 주로 추진되었다. 국외사적지의 경우,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운영·관리 사례를 제외하면 실태조사 외 현지 홍보·활용 자료 발간, 재외공관 동판 제작 등의 소규모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 부·처별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의 명칭·범위·기준·내용 등 상이

국외사적지는 현재까지 약 1,000여건 내외가 조사되었으나, 부·처별 조사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의 명칭과 범위, 조사 기준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며, 부·처 간 업무 내용과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기도 한다.

2002년부터 국외사적지 조사를 실시한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의 경우, 19-20세기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에 문화·예술, 외교·이민, 무역·산업 등과 관련된 사적지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독립운동가 등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국외사적지의 명칭 부여 및 설명 또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된다.[44]

문화재청은 독립기념관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을 토대로 984개소의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문화유산적 가치 중심의 조사·연구가 아직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기존 독립운동사적지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기념관에서 조사하지 않은 이민유산, 외교유산, 산업유산, 문화예술 관련 유산 등 새로운 주제의 유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외에도 외교부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고, 산림청에서도 해외 한국정원 현황에 대한 조사·관리에 점차 주목하는 등 국외사적지와 연계된 부·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별 국외사적지 조사 내용의 차이는 뚜렷한 조사 목적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지만, 보존·관리·활용의 측면에서는 국외사적지 관련 업무 및 지원이 중복되거나, 부·처별 사업 추진사항 및 조사 내용을 공유·협력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9년과 2023년 부·처별 업무 중복을 고려하여 유관 부처 간 협의체가 마련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협의체 작동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45]

---

44) 독립운동가 등 인물 중심으로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한 국가보훈부와 달리, 문화재청은 유산으로서 대상 중심으로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하여, 동일한 사적지임에도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LA의 'USC한국학연구소'는 '구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로 표기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45) 2023년 국가보훈부(독립기념관),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국외사적지 유관부처·기관 간 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2. 공유유산 개념의 국제적 논의와 적용

1) 유네스코(UNESCO)의 공유유산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공유유산[46)]

유네스코 관련 문서에서는 공유유산(shared heritage), 공동유산(common heritage), 상호유산(mutual heritage), 다문화유산(multicultural heritage)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네스코에서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에 대해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공유유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유산협약과 같이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국가적 노력 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는 목적과 책임을 강조한다.

둘째, 세계유산 중 문화적·지역적 연관성을 갖고 여러 국가에 속해 있는 연속유산을 공유유산으로 지칭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계유산구역에 여러 국가가 포함되는 경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 또는 자연적으로 같은 특성이 있는 경우, 역사적 교류가 일어났던 경로로 연결된 경우 등 초국경 연속유산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캐나다와 미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워터턴 글레이셔 국제평화공원', 아르헨티나, 벨기에, 프랑스 등 7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이르는 '실크로드: 창안-톈산 회랑 도로망' 등의 연속유산을 공유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초국경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여러 영토에 걸쳐 비슷한 지식,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로, 우리나라 외 17개국이 공동으로 등재한 '매사냥, 살아있는 인류 유산(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빙벽이 있는 산과 절벽을 등반하는 기술로 등재한 '알피니즘(Alpinism)'의 경우에도 공유유산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다. 초국경 연속유산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된 관리(shared management)'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46) Debarbieux, Bernard et al. (2023). Sharing heritage? Politics and territoriality in UNESCO's heritage lists,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11(3): 608-624; UNESCO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검색일: 2023.08.05.)

셋째, 탈식민(post-colonialism)의 맥락에서 유산의 가치를 함께 보존·관리하는 의미로 공유유산을 사용하기도 한다. 모로코의 '라바트, 근대 수도와 역사 도시: 공동유산[47](Rabat, Modern Capital and Historic City: A Shared Heritage)'은 식민지 시기를 포함하는 다양한 시대의 문화적 영향이 누적되어 형성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근대 도시계획에 과거의 문화적 가치가 잘 융합되었다는 의미로 세계유산 명칭에도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유네스코의 공유유산 관련 국제회의

유네스코에서는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해 공유유산을 주제로 학술적·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02년 유네스코 국제회의 – 세계유산 2002: 공유유산, 공동의 책임 (Shared Legacy, Common Responsibility)[48]

2002년 세계유산협약 30주년 기념 학술행사로 '세계유산 2002: 공유유산, 공동의 책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전, 지속가능성, 발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공유유산의 개념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2018년 유네스코 국제회의 – 문화유산의 순환과 공유유산: 새로운 관점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shared heritage: What New Perspectives?)[49]

2018년에는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의 순환과 공유유산: 새로운 관점'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파르테논 신전 조각품(그리스-영국), 네페르티티 흉상(이집트-독일), 다호메이 왕국 조각품(베냉-프랑스), 베이징 여름궁전 12지신상(중국-프랑스) 등 원산국에서 이탈한 문화유산 반환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소재국과 원산국 사이에서 계속 문제가 있었던 문화유산을 공유유산의 접근법으로 다자간 협력, 박물관 간의 협의, 대화, 협력 등을 촉진하여 갈등을 해소한 사례를 강조했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용어를 사용하였다.

---

47) '유네스코와 유산'에서는 해당 세계유산의 명칭에서 shared heritage를 공동유산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유산 웹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검색일: 2023.08.05)

48)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3). World Heritage 2002: Shared Legacy, Common Responsibility.

49) UNESCO 홈페이지. 'Circul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shared heritage: What new perspectives?'. https://en.unesco.org/shared-heritage(검색일: 2023.06.01.)

□ 기타 유네스코 관련 회의

- 2022년 IHS 국제회의-세계유산 50주년: 세계유산협약의 미래-평화, 갈등, 전쟁의 시기(50 Years World Heritage: The Futur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Times of Peace, Conflict and War)[50]

IHS(Institute Heritage Studies)에서는 2022년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50 Years World Heritage Convention: Shared Responsibility -Conflict and Reconciliation」라는 도서로 발간하였다. 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은 인류 모두의 '공유된 책임'과 관련한 것으로, 세계유산협약을 통해 국제 거버넌스, 도시의 변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 기술변화 등의 위협에 협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유유산에 초점을 맞춘 논문으로 탄자니아의 식민지 유산을 공유유산 개념으로 분석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공유유산 관점으로 탈식민지 도시경관을 분석하였고, 공유유산의 개념이 민감한 과거 문제에 대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유네스코의 공유유산 관련 프로젝트

- PUSH Project (2006-2008): 공유유산 이해의 증진(Promoting Understanding of Shared Heritage)[51]

2006~2008년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Chair Program)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전문가와 지역 구성원이 참여하여 협력한 사업이다. 지역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문화적 이해의 폭과 다중 내러티브를 수용할 수 있게 하여 과거와 미래의 새로운 서사를 제공하고자 했다.

PUSH 사업에서는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유적지에 대한 정보 취합, 안내자 교육, 관리 매뉴얼과 프로젝트 성과물(Our Shared Heritage) 발간 등을 진행했다. 『Our Shared Heritage』는 3개 언어로 발간되었는데, 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민족이 함께 형성한 공동체의 문화유산으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용어를 사용했다.

50) Albert, Marie-Theres et al. (2022). 50 Years World Heritage Convention: Shared Responsibility-Conflict and Reconciliation. Springer.

51) Ya'ari, Elizabeth. (2010). Promoting Understanding of Shared Heritage (PUSH). *Museum International* 62: 9-13.

2) 이코모스(ICOMOS)의 공유유산

이코모스에는 2023년 기준 총 29개의 국제학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에 '공유건축유산(Shared Built Heritage)'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코모스 내에서 공유유산 관련 논의는 공유건축유산 학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Shared Built Heritage: ISCSBH)[52]

1995년 네덜란드와 스리랑카 등이 참여하여 "유럽 밖 유럽의 건축과 도시계획(네덜란드 시대)"(European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outside Europe)(Dutch Period)을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식민지 유산(colonial settlements), 이중 문화권의 절충적 건축(buildings of dual parentage), 공동유산(mutual heritage)의 개념이 다양하게 언급되며 이들 유산을 보호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결과로서 "네덜란드와 아시아에서 비롯된 물리적 유산 보호에 관한 콜롬보 선언(Declaration of Colombo on safeguarding of physical heritage deriving from Dutch contact with Asia)"을 발표하였고,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학술위원회 결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998년 네덜란드와 스리랑카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유식민지건축 및 도시계획(Shared Colonial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에 대한 학술위원회가 개설되었다. 이 학술위원회는 서로 다른 사회적·종교적 배경을 가진 문화와 문명에서 만들어진 공유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유산을 보호, 보존,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공유유산은 다양한 문화적 영향(multi-cultural influence)으로 형성되어 국제적 또는 사회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술위원회를 통해 공유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다.

2002년 공유식민지건축(Shared Colonial Architecture) 학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3년에는 다시 공유건축유산(Shared Built Heritage) 학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식민지건축에서 건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이 감춰지는 것을 우려하여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의 회원국이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52) ICOMOS ISCSBH 홈페이지. 'Hisotry of ISCSBH'. https://sbh.icomos.org/index.php/what-we-do/history-of-iscsbh. (검색일: 2023.06.01.)

이코모스의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는 1999년부터 정기 연례회의와 사례지 답사를 통해 공유유산 개념과 대상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본 학술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공유유산'은 식민지 유산의 사례가 많아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영향이 혼재하는 유산을 새롭게 발굴하여 공유유산의 범주를 확장해가는 추세이다. 공유유산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국가들이 함께 교육과 홍보할 수 있는 경우에 좋은 공유유산 사례를 찾아가고 있다.

[표 2-3]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의 연례회의 및 답사

연도	회의 및 답사 장소	회의 주요 내용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웨스턴케이프 지역의 모라비아 유산에 대한 제나덴달(Genadendal) 복원사업 관련하여 논의 - 제나덴달 복원사업은 2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투자하여 수행 - 2011년 공유건축유산 학술위원회에서 다시 방문하여 유산 보존을 고려한 도시건설방식에 대해 자문 - 격년으로 "공동유산(mutual heritage)"에 대한 출판물을 발행하기로 계획
2000년	스리랑카 갈(Galle)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Galle의 요새(fort)와 항만(harbour)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 17세기 네덜란드가 만든 요새 보호관리에 대해 기술 지원
2004년	말레이시아 믈라카(Melaka)	- 믈라카는 문화, 건축, 요리의 용광로와 같은 곳으로 평가되며,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건축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믈라카 해협의 역사 도시, 믈라카와 조지타운'은 200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였고, '살아있는 아시아의 다문화유산과 전통'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
2005년	중국 칭다오	- 칭다오는 항구, 해군기지, 산업 중심지로 독일과 일본에서 계획 및 건설 - 그중에서도 독일 건축물과 도시구조를 많은 부분 보존하고 있음
2009년	폴란드 비스툴라 델타 (Vistula-delta)	- Vistula-delta 지역(문화경관), Gdansk 재건(역사도시), Marianka 고딕성당(기념물) 대상으로 논의 - 공유유산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유산에 대한 복원기술을 교환할 수 있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2010년	수리남 공화국	- '역사적 문화경관에서의 공유유산'에 대한 국제회의 개최 - 유네스코 세계유산 "파라마리보의 역사 내부 도시"의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 역사적 문화경관과 지역계획 사이의 통합에 대해 논의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 아프리카 공유건축유산과 무형유산에 대해 함께 논의 - 아프리카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역사적 유적지와 건물을 '공동유산'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미래유산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전제 - '공유'는 장소적 가치까지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유산이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되는 경우에만 서로 간에 유효한 유산 개념이라고 논의

연도	회의 및 답사 장소	회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 서울	- mAAN (modern Asian Architecture Network)의 초청으로 서울 학술회의에서 키노트 발표 수행 - 키노트 발표에서 근대기 공유유산의 사례로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 철도망에 대해 언급
2012년	중국 샤먼 구랑위, 우한, 베이징, 텐진	- 구랑위는 중국 공동조계 중 하나로 서양문화와 전통중국문화가 혼합된 공유유산 다수 분포. 외국인 공동체가 지은 영사관, 교회, 병원, 학교, 경찰서 등 빅토리아 시대 양식의 건축물 보유 - 우한은 공유건축유산의 보존과 대도시 도시계획과정의 통합을 논의하였고, 실제 사업으로 미국 선교사 건축가 John van Wie Bergamini가 설계한 James Jackson Gymnasium 복원 및 보존 사업을 추진 - 베이징에서는 칭화대학교 캠퍼스 유산을 중심으로 논의. 1909년 오스트리아 건축가가 설계한 학교 건물, 1920년대 장제스가 고용한 미국 건축가 Henry Killam Murphy가 설계한 여러 건물의 보존관리에 중점 - 텐진은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의 조계지였던 곳으로, 2000년경 구 이탈리아 조계지에 대한 개발계획 시작해 주민들을 이주하고 2004년부터 이탈리아 건축가 및 복원가들과 협력하여 이탈리안 스타일타운 조성
2013년	쿠바	- 아메리카 지역의 성곽, 요새, 요새화된 도시를 대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의 조성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논의
2014년	말레이시아 믈라카	- 개발압력에 직면한 공유건축유산의 처리 및 보존에 대한 논의
	이탈리아 플로렌스	- “Shared Built Heritage” reconsidered 워크숍 개최 - “공유건축유산에는 다문화 및/또는 식민지 영향의 결과인 역사적 도시 및 농촌 구조 또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정의하며, ‘공유’, ‘건축’, ‘유산’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관련한 이슈 논의 - ‘공유’의 의미를 포괄적, 다원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식민지의, 패권적인, 하향식으로 한정하는지를 논의 - ‘건축’에 있어서는 유형과 무형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 - ‘유산’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정권과 이데올로기의 변화 전/중/후의 과정에서 누가 배제되는지를 논의
2015년	일본 도쿄, 요코하마, 이누야마, 교토, 오사카, 아시아, 고베, 나가사키	-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외국 영향을 수용한 건축물, 나가사키 주변 교회, 에도 후기부터 쇼와 시대 산업 및 역사적 주거지 등 답사
2016년	독일-프랑스-룩셈부르크 국경지역	- “2000 year Shared Built Heritage in Central Europe – Border Region Germany-France- Luxemburg”의 주제로 워크숍 개최 - 로마 시대부터 전쟁과 분쟁으로 국가/영역 경계가 변경되어 온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유산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
	캐나다 노바스코샤	- 캐나다 노바스코샤는 유럽, 아메리카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그중 케이프 브레튼은 아카디아인, 초기 영국인/귀족/개신교 독일인의 이민이 시작된 곳임
2017년	포르투갈 리스본, 에보라	- “Preserving Transcultural Heritage: Your way or my way in Lisbon” 주제로 회의
	인도 웨스트 벵갈	- 방글라데시와 인도 문화가 결합한 지역

연도	회의 및 답사 장소	회의 주요 내용
2018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러시아	- “Shared Heritage – Interpretation of Heritage over time”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지역의 비보르크(Vyborg) 도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마련. 비보르크 지역은 보존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 Alvar Aalto가 설계한 도서관은 핀란드와 러시아가 힘을 합쳐 복원한 좋은 사례이고, Mon Repos 정원 리노베이션도 잘 진행된 사업으로 평가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오멘린나 요새도 스웨덴, 러시아, 독일, 핀란드와 관련해 만들어진 공유건축유산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
2019년	모로코 마라케시	- Gueliz District라는 프랑스 도시개발사업 사례지, 포르투갈, 프랑스, 유태인의 영향을 받은 에사우이라(Essaouira),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El Jadida 답사와 토론
2022년	태국 방콕, 아유타야, 우돈타니	- “Awareness Raising in Safeguarding the SBH in Thailand” 주제로 회의 - 태국의 ‘EU 도시유산’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기도 함. 태국의 EU 대표단, 방콕 시청,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대사관의 협조 - 포르투갈과 태국의 500년 역사의 기억, 현대 태국에서의 독일 건축가, 계획가, 엔지니어, 19-20세기 방콕의 이탈리아 건축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 진행

출처 : ICOMOS ISCSBH 홈페이지 내 각 연례회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https://sbh.icomos.org/ (검색일: 2023.08.17.)

□ 이코모스의 공유유산 관련 국제회의

이코모스는 2020년 국제 기념물 및 유적지의 날(4/18, International Day for Monuments and Sites)의 주제로 “공유문화, 공유유산, 공유책임(Shared Cultures, Shared Heritage, Shared Responsibility)”을 선정하였다.[53] 이는 다양한 집단의 유산 가치가 인정되는 세계적 맥락에서, 유산의 보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주제이다. 인류의 유산으로서 전 세계가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용어를 사용하였다.

53) ICOMOS 홈페이지. ‘Shared Cultures, Shared Heritage, Shared Responsibility’. https://www.icomos.org/en/77-articles-en-francais/72051-18-april-2019-theme-shared-cultures(검색일: 2023.06.01.)

3) 유럽연합(EU)의 공유유산

□ 유럽연합의 관련 회의

- 유럽협의회 파로 협약(2005)[54]

2005년 유럽협의회에서는 유산과 커뮤니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촉진하고자 "사회를 고려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협약(파로 협약)"(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Faro Convention, 2005)을 체결하였다.

>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
> **Article 3 – The common heritage of Europe**
>
> The Parties agree to promote an understanding of the common heritage of Europe, which consists of:
>
> a. all forms of cultural heritage in Europe which together constitute a shared source of remembrance, understanding, identity, cohesion and creativity, and
>
> b. the ideals, principles and values, derived from the experience gained through progress and past conflicts, which foster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and stable society, founded on respect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
> **Article 17 – Co-operation in follow-up activities**
>
> The Parties undertak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through the Council of Europe in pursuing the aims and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and especially in promoting recogni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Europe, by:
>
> a. putting in place collaborative strategies to address priorities identified through the monitoring process;
>
> b. fostering multilateral and transfrontier activities, and developing network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se strategies;
>
> c. exchanging, developing, codifying and assuring the dissemination of good practices;
>
> d.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aims and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
> Any Parties may, by mutual agreement, make financial arrangement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 협약 제3조에는 'The common heritage of Europe'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당사국은 유럽의 공동유산(공유유산)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공유유산은 기억, 이해, 정체성, 결합력, 창의성 등 공유된 자원을 함께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을 포괄한다. 과거의 갈등과 발전에서 얻은 경험에서 비롯한 이상,

54) 유럽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e.int/en/web/culture-and-heritage/faro-convention. (검색일: 2023.08.18.); Council of Europe. (2005).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2005.10.27.

원칙,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 민주주의, 법치에 기반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협약 제17조에서는 'Co-operation in follow-up activities'에서 협약 목적과 원칙에 맞추어 당사국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에 대해 협력적 전략을 수립하고, 다자간 및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좋은 실천사례를 교환, 발전, 체계화,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협약의 목적과 이행사항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파로 협약의 공유유산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당사국의 협력과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EU 유럽 문화유산의 해(2018): 공유된 자원으로서 유럽 유산(Europe's cultural heritage as a shared resource)[55]**

2018년은 유럽 문화유산의 해로,[56] '우리의 유산: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Our heritage: where the past meets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국가 간 문화유산을 통한 협력을 장려하였다. 2018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이자 유럽 30년 전쟁(1618-1648)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들이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해로,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2018년 유럽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유럽의 문화유산에 내재된 이상과 원칙 및 가치가 곧 유럽의 기억과 이해, 정체성, 결속력 및 창의성이 공유된 자원(shared resource)을 구성하는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선(common good)으로 이해하였다.[57]

55) EUR-Lex 홈페이지.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https://eur-lex. 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pean-year-of-cultural-heritage-2018.html (검색일: 2023.06.01.)

56) 유럽의 해(European Year)란, 특정 주제에 대한 EU 전체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제를 지정하여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와 예산을 지원하기 만들어졌다. EUR-Lex 홈페이지. 'European Years'.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glossary/european-years.html (검색일:2023.06.01.)

57)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7.) DECISION (EU) 2017/8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7.5.17.

3. 공유유산 개념의 국외사적지 적용 방향

1)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 공유유산의 국제적 개념과 대상

- 공유유산의 개념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은 2.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코모스에서 1995년 공동유산(mutual heritage)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 1998년 공유식민지건축 및 도시계획(shared colonial architecture and town planning) 위원회(현재의 공유건축유산(shared built heritage)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공유(shared), 상호(mutual), 공동(common), 다문화(multicultural) 등의 용어가 각 사례마다 여러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용어로 정착되는 추세이다.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의 국제기구와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에서 공유유산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이나 국가의 여건에 따라 유산을 보호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공유유산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간의 국제적 논의와 용례를 통해 공유유산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정의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 공유유산 개념의 적용 대상

공유유산 개념이 국제적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을 살펴보면, 보편적 인류 유산, 초국경의 지역 유산, 역사적 다문화 유산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58]

(보편적 인류 유산)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등 국제기구에서는 유산에 대해 인류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개념을 사용하고 있

58) 공유유산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유산의 적용 대상은 2.2절에서 확인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용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통해 잠정적으로 분류하였다.

다. 특히 최근의 주요 국제회의에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실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유유산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보편적 인류 유산으로서의 공유유산은 개념어로서 인류 유산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거나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널리 인정되는 잘 알려진 유산을 언급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초국경의 지역 유산) 자연적, 문화적 유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하여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공유유산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 사이의 국경지역에 존재하는 유산이나 국경이 모호한 분쟁지역의 유산, 실크로드와 같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교통 유산 등이 해당된다. 유산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관련 국가 또는 집단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으로서, 협력하여 활용될 경우에 효과가 매우 크지만 각 지역의 여건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이 쉽지 않은 공유유산의 유형이다.

(역사적 다문화 유산) 문명이 확장되거나 사람과 물자의 이동으로 유산의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축적된 유산이다. 고대 문명이 여러 지역의 문화와 결합된 유산, 기독교와 이슬람 등 서로 다른 종교문화가 복합된 유산, 식민지 유산, 이민사 관련 유산 등이 해당된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다양한 문화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 문화재청 K-공유유산의 개념과 대상

-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59]

(사업목적) 국외소재문화재가 외국 정부 입장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공유유산(shared heritage)'으로 상호 인정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보호와 활용을 증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공유유산 개념을 도입하여 소재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와 소재국의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활동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 K-공유유산의 개념 정의

문화재청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의 국외소재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59)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안)에서 공유유산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통해 문화재청의 공유유산 개념과 대상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청(2023g).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 문화재청 제공자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재국과의 상호 협력을 지향하는 공유유산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국외소재문화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국외로 반출된 고유의 문화재를 환수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국외소재문화재는 소재국과의 갈등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였는데, 공유유산 개념을 통해 소재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재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존이 가능한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유산의 활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국외사적지는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나 건물 등의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외사적지가 소재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국에서도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국외사적지가 소재국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인정받고 있으면서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해당 국외사적지는 양국에서 공유유산으로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유유산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써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산이라면, K-공유유산은 우리나라의 국외사적지로 한정하여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60]

- K-공유유산의 대상

'K-공유유산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외소재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인 국외사적지로 한정하여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K-공유유산의 대상은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동산 유산으로 제한된다.[61]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소재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부합하여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유산이라는 의미이다.

60) 문화재청에서는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인 '국외사적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외사적지로 한정하였고, 문화재청의 사업에서는 동산문화재를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6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에서 "외국에 소재한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국외소재문화재로 규정하였고, 「문화재보호법」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제67조-제6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4] 공유유산과 K-공유유산의 개념 및 대상

구분	개념	대상
국제적 논의 (shared heritage)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두 개 이상의 국가 또는 단체가 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유산	- 보편적 인류 유산 - 초국경의 지역 유산 - 역사적 다문화 유산
본 연구 (K-공유유산)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	국외사적지(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 중에서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산

출처: 연구진 작성.

2) K-공유유산의 속성과 국외사적지의 요건

□ 국외사적지에 적용하는 K-공유유산의 속성

- 공유(share)의 의미: 가치의 공유 및 사용의 공유
  - 공유(共有):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62]
  - share: 어떤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거나 사용[63]

한국어의 '공유'는 소유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영어의 'share'는 소유와 사용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은 유산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위해 도입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공유(share)'는 공동 소유의 의미보다는 공동 사용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share'의 번역어는 '공유(共有)'보다는 '공용(共用)', '공동(共同)', '공공(公共)' 등의 의미에 더 가깝다. 최근 유행하는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도 소유의 공유가 아니고 사용을 공유하는 의미이다. 한국어의 '공유'의 의미가 소유뿐 아니라 사용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공유유산의 정의에서는 '공유'의 대상을 '유산의 가치'로 기술하여, 국외사적지의 가치를 소재국과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한다는 기술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공유'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K-공유유산의 '공유'는 '가치의 공유'와 '사용의 공유'를 포괄하는 중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

6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검색일: 2023.08.10.)

63) to have or use something with other people. (출처: Longman 온라인 사전. https://www.ldoceonline.com/dictionary/share, 검색일: 2023.08.10.)

- 유산(heritage)의 대상: 대한민국과 소재국에서 유산의 가치가 인정된 것

유네스코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과 같이 세계유산위원회나 국가로부터 공인된 유산은 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여 유산의 지위를 부여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기준에 따라 등재되며,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기준에 따라 유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국외사적지에 적용하는 K-공유유산은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두 국가에서 유산의 가치가 인정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에서 국외사적지(국외소재문화재)로 가치를 인정한 유산이 K-공유유산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이 중 소재국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인된 유산이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국에서 상대국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호 가치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에 K-공유유산의 대상은 검토 우선순위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을 먼저 선정하고, 추후 문화재청의 사업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장해나갈 수 있다.

□ K-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요건

-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K-공유유산으로서 국외사적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보훈부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외교부의 '이민사적지', 교육부와 산림청의 국제교류협력 대상지 등과는 달리, 국외에 소재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외사적지(국외소재문화재)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와 기술이 필요하며, 소재국의 입장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재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유산의 가치에 대한 상호 공감대

K-공유유산에서 가치의 공유는 가장 핵심적인 대상 선정의 요건이다. 국외사적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소재국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상호 공유될 수 있어야 하며, 양국의 관계 또는 양국 국내에서 갈등의 우려가 있는 유산은 K-공유유산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국외사적지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양국의 정부(중앙 또는 지방) 뿐만 아니라 양국

의 시민사회에서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양국의 일부 국민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유산을 매개로 상호 협력하여 부정적인 과거를 극복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K-공유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신중하게 대상 선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상호간의 가치를 수용함으로써 국외사적지의 가치가 더욱 풍부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K-공유유산의 거버넌스 구축

국외사적지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외에도 소유자, 지역사회의 사용자, 관리·행정을 수행하는 외국 지방정부, 보존관리 또는 위탁운영 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유자가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매입이나 임대를 통해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청이 국외사적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재국 정부 또는 관리기관과의 협약이 필요하고, 소재국의 법적 규제와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지방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사적지를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지역주민, 해당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과 활용의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양국 전문가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들을 통해 K-공유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현지 소재국에서 가치의 공유 및 확산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K-공유유산의 발굴, 기획, 보존 및 활용 실무, 운영 등의 단계별 주체와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적절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3.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4. 국외사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유산 개념 적용 방향

1.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3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유형과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으며 활용·관리가 잘 되고 있는 주요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현황 및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한다.

먼저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통합하고, K-공유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범사업 우선 대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 목록의 항목을 기준으로 국외사적지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을 도출하고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활용하였다.

이어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에서는 비교적 활용·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는 국외사적지의 현황과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K-공유유산의 대상은 양국 간 유산으로서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현지 소재국에서의 보호·활용이 중요하다. 이에 현지에서 해당 국외사적지의 보호·활용·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국외사적지의 소재국 내 공유유산적 가치 및 활용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분석 대상 및 방법

- (유형 분석) 주요 부·처·기관별 조사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 2,216건

본 연구는 기초 목록자료로 확보한 문화재청 및 국가보훈부, 산림청의 기존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자료를 통합하고 조사 항목 틀을 일원화, 중복 데이터 등을 정리하여 전체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 2,216건을 엑셀 데이터로 정리하였다.[64] 총 12건의 기초목록 자료 중 2023년 1월 작성된 문화재청의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통계표(2)의 엑셀 파일 자료[65]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타 자료에 수록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통합목록의 국외사적지의 유형을 분석하여 K-공유유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도출하였다. 주요 항목으로 조사 기관, 주제, 유형, 시기, 국가, 지역, 주소, 소유주, 관리자, 조성기관, 면적, 관련 역사적 내용, 지정현황 등 현황정보, 역사가치, 보존현황 등을 검토하였고, 이 중 보존 상태, 역사적 가치 평가 여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 여부, 활용 현황 등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선정 지표로 도출하였다.

- (사례 분석)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주요 활용·관리 사례 24개소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중 현지에서 비교적 잘 활용·관리되고 있거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지 소재국에서 비교적 잘 활용·관리되거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외사적지는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요 국외사적지의 관리·활용 현황과 해당 유산의 공유유산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24개소의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사례는 국가·대륙별로 미국 8개소, 유럽 9개소, 일본 7개소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 간 관계와 조사·연구 진행 상황, 현지 소재국 내 활용·관리 가능성 및 차후 K-공유유산 정책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공유유산 시범 사업 추진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외사적지의 소재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64) 문화재청 집계 국외사적지가 984개소(2023년 기준), 국가보훈부 집계 국외사적지가 1,386개소(2022년 기준)인 것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수이나, 조사 기관 차이에 따라 동일한 대상임에도 명칭이 다른 경우, 명칭과 국가 등의 기초적 정보만 입력되고 자세한 조사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되었으나 향후 국외사적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정리한 개수임.

65) 문화재청에서 제공한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 (1), 통계표 (2) (2023.1.) 자료는 독립기념관에서 조사한 국가보훈부의 국외 현충시설 목록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재추출한 자료이므로 국가보훈부의 국외 현충시설 목록을 별도로 추가하지는 않았으며, 2023년 현재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독립기념관 운영)에서 제공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DB를 참고하여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음.

[표 3-1]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및 관리·활용 사례 분석의 틀

구분	유형 분석 (3장 2절)	활용·관리 사례 분석 (3장 3절)
목적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K-공유유산 시범사업 운영 계획 마련을 위한 활용·관리 현황 및 공유유산적 가치 분석
대상	주요 부·처·기관별 조사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 2,216건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주요 활용·관리 사례 24개소
방법	- 문화재청·국가보훈부·산림청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통합 및 정리, 2,216건의 통합 목록 도출 (전수조사분석) - 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 K-공유유산 시범사업 제외대상 기준 도출 - K-공유유산 우선 선정대상 기준 도출 -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지표 도출 및 정리	- 국외사적지 중 현지에서 활용·관리되고 있거나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국·유럽·일본 내 국외사적지 24개소 분석(주요 사례 심층분석) - 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이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및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사례별 K-공유유산으로서 현지 소재국 내 가치 및 활용가능성 분석

출처: 연구진 작성.

2. 국외사적지 유형 분석

1)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현황

[표 3-2] 주요 부·처·기관별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자료 현황표

부처	연도	자료명	내용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유산 목록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 대부분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산이며, 이외에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황실, 이민사 등과 관련된 유산을 찾아볼 수 있음 - 역사 가치와 보존 현황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등급을 부여함
	2020	재외공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조선~대한제국과 대한민국으로 시기를 나누어 재외공관 목록을 정리함 - 조선~대한제국기의 공사관의 경우 운영시기와 주소, 현황이 기재되어 있음
	2021 2022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한국어판)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영문판)	- 미국 소재 대한민국의 국외사적지 안내서 - LA,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를 대상으로 사적지명, 개요, 주요 사진, 해당 연도, 주소, 상세 설명 순으로 소개함
	2023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	-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문화유산 중 미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8건 유산에 대한 지정등급, 건립년도, 한국과 관련된 시기와 내용을 정리 함
	2023.1	국외부동산문화재 집계 현황 (2023.1월 기준)	-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과 (2) 엑셀 자료의 수치를 통합하여 정리함 - 국가 및 성격별로 집계한 건수가 기재됨
	2023.1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고구려·발해 유적 *국가보훈부 조사 목록 기반 재추출	- 2023년 1월 기준으로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 중 고구려·발해 유적을 정리한 자료 - 유적명, 소재지, 시기, 유형, 지정 현황이 정리됨
	2023.1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2) 재외동포, 독립운동, 외교, 대한황실, 기타 *국가보훈부 조사 목록 기반 재추출	- 2023년 1월 기준으로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 중 고구려·발해 유적을 제외한 국외사적지 목록 - 유적명, 소재지, 시기, 유형, 지정현황이 정리됨
	2023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	- 아주·미주·구주에 속하는 총 9개국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외사적지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 - 해당 사적지의 국가, 소재지, 명칭, 소유자, 관리자, 활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023	대한제국기 상주공관 설치 현황	- 대한제국기에 설치된 상주공관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 - 운영기간, 취득방식, 내·외부 보존현황, 활용현황, 정부 추진상황, 매입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처	연도	자료명	내용
국가보훈부	2023.6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 일제강점기에 해외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조사 및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와 지역, 주소, 맵핑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사적지명, 상세 설명과 사진도 확인 가능함
산림청	2020.4	해외 한국정원 현황	-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 - 국가, 위치, 명칭, 조성기관, 면적, 준공일, 주요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음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 - 국가, 위치, 명칭, 조성기관, 면적, 준공일, 관리 시급성(보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주: 음영으로 표시된 2023년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통계표(2) 엑셀 자료를 기초로, 타 자료 내 국외사적지 목록을 추가하여 통합 목록을 구성하였음.
출처: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산림청 각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문화재청

-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2008)[66]

문화재청(2008)의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에는 중국 동북부 138건, 중국 서북부 63건, 중국 남부 115건, 일본 115건, 동남아 54건, 연해주 84건, 유럽 28건, 미주 112건으로 총 709건의 사적지가 조사되어 있다.

해당 목록에는 소유 국가, 고유번호, 유산명, 상세 지역 및 주소, 연도, 형태, 관련 사항, 역사 가치, 보존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유산의 형태는 크게 장소와, 동산, 마을,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고, 역사적 가치와 보존 현황은 기준을 마련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표 3-3]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총목(2008년 기준, 일부)

고유번호	지역	근대문화유산명	주소(구/현)	연도	형태	관련사항	등급
01001	길림성 연변	大韓國民會軍本部 구지	구)汪清縣志仁鄕依蘭溝春興 현) 延吉市依蘭溝春興村	1920	장소 (항일근거지)	1920년 봄에 결성된 대한국민회군은 대한국민회의 직할독립군부대로 사령관에 안무, 부관에 최익룡, 중대장에 조권식이 임명되어 병사를 모집하여 연길현 의란구 일대에서 활동	A+ B
01002	길림성 연변	朝鮮統監府間島派出所 구지	구) 龍井市政府 招待所 東 현) 龍井市賓館 東	1907	장소 (공공)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는 1907년 일제가 연변에다 세운 첫 침략기	E B
01003	길림성 연변	間島日本總領事館 (前)	현) 龍井市吉安街東	1909	장소 (공공)	총영사관은 1909년 11월 용정에 설치되었는데 원청사는 1911년 1922년의 두 차례 화재로 타버려 없어짐	E B
			...				

출처: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p.231.

66)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 재외공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2020)[67]

국외소재문화재재단(2020)의 재외공관 목록에서는 해당 공관이 건설된 연대에 따라 조선~대한제국(1887~1905)과 대한민국(1948~2020) 시기를 나누어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 중 조선~대한제국 시기의 공관은 모두 공사관으로 소재국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일본 5건, 중국 1건, 미국 2건, 영국 1건, 러시아 2건, 프랑스 3건 등 총 14건의 공사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공사관은 변경된 위치에 따라 주소와 운영시기, 철거 및 활용 여부가 조사되어 있어 보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4] 조선~대한제국 시기 재외공관 건축물 목록(2020년 기준, 일부)

구분	국가	대상명	운영시기	주소	현 상황
아주 (2)	일본	조선공사관(1)	1887.08~1888.09	東京都 赤坂區 靈南坂町 27番地	철 거
		조선공사관(2)	1888.09~1893.12	東京都 麴町區 中六番町33 49番地	철 거
		조선/대한제국공사관(3)	1893.12~1900년경	東京都 麴町區 永田町 1丁目 18番地	철 거
		대한제국공사관(4)	1900년경~1902년경	東京都 神田區 西小川町 日製家	철 거
		대한제국공사관(5)	1902년경~1905.11	東京都 麴町區 中六番町33 49番地	철 거
	중국	대한제국공사관	1903.04~1905.11	北京市 东交民巷 34号	철 거
미주 (1)	미국	조선공사관(1)	1888.01~1889.02	1513 O St NW, Washington D.C.	철 거
		조선/대한제국공사관(2)	1889.02~1905.11	1500 13th St NW, Washington D.C.	'18.5월 복원 개관 전시관으로 활용
...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 (2020). 재외공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p.23

대한민국 현재 시기의 공관은 유형에 따라 166건의 공관을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로 분류되어 있고, 유형별로 국가가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대한제국 시기의 공관 목록과 달리 공관의 운영시기, 위치, 주소, 보존 현황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일부 공관의 경우에만 건설 시기 정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2021, 2022)[68]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2021)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제작·발간한 단행본으로, 미국에 소재한 한국의 사적지를 소개하는 자료이다. 한국어판(2021)과 영문판(2022)으로 제작되었으며,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 위치한 국외 사적지 89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6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 (2020). 재외공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6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1).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어판을 주로 참고.



[그림 3-1]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2022), 영문판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b). 『Finding Korea in the U.S.(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2023)[69]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 자료에서는 미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외사적지 8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 문화재 2건, 지방정부 문화재 6건이 지정되어 있다. 본 목록에는 미국 문화유산 제도에 따른 해당 국외사적지의 문화유산 등급과 건립연도, 한국 관련 시기 및 문화유산 지정 근거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표 3-5] 미국 현지지정 한국문화유산 목록(2023년 기준)

구분	대상	현황
연방정부 (2)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in Washington D.C.) ㅇ (등급) 연방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 * 로건 서클 전체 ㅇ (건립) 1877년 ㅇ (한국 관련) 1889~1910년 / 조선의 자주 외교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 ㅇ (등급) 연방사적등록자산(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1995년 * 워싱턴DC, 미국 국립공원청(NPS) ㅇ (건립) 1995년 ㅇ (한국 관련) 6·25전쟁
지방정부 (6)		흥사단소(Hung Sa Dahn(Young Korean Academy) ㅇ (등급) LA 역사기념물(LA Historic-Cultural Monument) / 2023.2.28. (한국시간 3.1.) ㅇ (건립) 1910년 ㅇ (한국 관련) 1935~1978년 / 안창호 독립 운동 및 흥사단 활동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기념관(Korean Independence Memorial Building, LA) ㅇ (등급) LA 역사기념물(LA Historic-Cultural Monument) / 1978년 ㅇ (건립) 1938년 ㅇ (한국 관련) 1938~1978년 / 독립 운동 및 대한인국민회 활동
		서재필기념관(The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PA) ㅇ (등급) 필라델피아 역사기념물(PH Historical Marker) / 1994 ㅇ (건립) 미상 ㅇ (한국 관련) 1925~1951년 / 서재필 독립 운동 및 한미 친선 활동

69) 문화재청. (2023e).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2023.3.2). 문화재청 제공자료.

구분	대상	현황
		도산 안창호 가족의 집(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 (등급) LA 역사기념물(LA Historic-Cultural Monument) / 2013년 ○ (건립) 1920년 추정 ○ (한국 관련) 1937~1946 / 역사인물(안창호) 관련
		한미 우정의 종(Korean Bell and Belfry of Friendship, LA) ○ (등급) San Pedro 역사기념물(LA Historic-Cultural Monument) / 1976년 ○ (건립) 1976년 ○ (한국 관련) 1978년 / 미주 한인 이민사 관련
		리버사이드 한인타운과 한인노동소개소 터(Riverside Koreatown and the Korean Bureau) ○ (등급) Riverside 문화적 중요지점(Point of Cultural Interest) ○ (건립) 장소 소멸 * 현장 안내판만 설치 ○ (한국 관련) 1903~1937년 / 미주 한인 이민사 관련

출처: 문화재청. (2023e).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2023.3.2). 문화재청 제공자료.

- 국외부동산문화재 집계 현황(2023)[70]

국외부동산문화재 집계 현황(2023)에서는 유관 기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건축물과 역사적 사건의 장소 등 984건의 국외사적지 집계 현황을 제시하였다.

본 현황 목록은 19개 국가 및 사적지의 성격(재외동포, 독립운동, 외교, 대한황실, 기타)별로 자료를 분류하였고, 국가마다 사적지의 성격별로 몇 건의 사적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은 국외사적지가 위치한 국가가 어디인지, 국가별 국외사적지의 특성은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 고구려·발해 유적(2023)[71]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는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작성한 러시아 및 중국 소재의 국외사적지 목록이다. 러시아 61건, 중국 795건의 국외사적지가 목록화 되어 있으며, 조사 항목은 유적명, 소재지, 시기, 유형, 지도 번호, 지정현황, 연번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조사 항목 중 유형의 경우, 성곽, 주거유적, 주거건물군, 사지, 건물지, 제사유적, 군영, 생산유적, 평지성, 교량, 역원, 기타로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해당 국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지의 경우, 지정 여부를 표기해두어 소재국 내에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2) 재외동포·독립운동·외교·대한황실·기타(2023)[72]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2)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로, 재외동포, 독립운동, 외교, 대한황실, 기타 등의 주제와 관련된 국외사적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재외동

70) 문화재청. (2023b). 국외부동산문화재 집계 현황 (2023.1월 기준). 문화재청 제공자료.
71) 문화재청. (2023c).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고구려·발해 유적. 문화재청 제공자료.
72) 문화재청. (2023d).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2) 재외동포, 독립운동, 외교, 대한황실, 기타. 문화재청 제공자료.

포 관련 22건, 독립운동 80건, 외교 14건, 대한황실 3건, 기타 9건의 국외사적지가 목록화 되어있다. 해당 목록에는 명칭, 국가, 지역, 상세 주소 및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와는 다른 항목으로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73]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 자료에는 일본 3건, 중국 11건, 미국 3건, 멕시코 1건, 네덜란드 1건, 독일 1건, 스페인 1건, 러시아 1건, 프랑스 2건 등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총 9개국 24건의 국외사적지가 목록화 되어있다. 특히 국가, 소재지, 명칭 외에도 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관리자, 활용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대한제국기 상주공관 설치 현황(2023)[74]

대한제국기 상주공관 설치 현황은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6개국에 설치되었던 공관 중 현지 활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조사 목적에 따라 본 목록에는 설치운영 시기, 소재지(지소, 주소), 대한제국의 취득방식, 현 상황, 대한민국 정부의 추진상황, 매입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국가보훈부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2023)[75]

독립기념관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oversea.i815.or.kr)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중국 373건, 일본 32건, 러시아 46건, 말레이시아 2건, 싱가포르 2건, 인도 4건, 인도네시아 6건, 타이완 8건, 필리핀 1건, 우즈베키스탄 6건, 카자흐스탄 9건, 몽골 1건, 미국 128건, 네덜란드 4건, 독일 3건, 벨기에 2건, 스위스 3건, 영국 2건, 이탈리아 1건, 프랑스 9건으로 총 642건의 사적지 DB가 구축되어 있다.

소재 국가를 선택하면 지도와 함께 해당 사적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맵핑되어 있고, 각 사적지의 명칭과 역사적 의의를 간략하게 볼 수 있다. 건별 사적지를 선택할 경우, 유형(장소, 건물 등), 대륙, 국가, 지역, 명칭, 주소, 역사적 의의와 설명, 사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다른 목록에 비하여 위치 정보와 가치 설명, 보존 현황이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7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b).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기준). 문화재청 제공자료.
74)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c). 대한제국기 상주공관 설치 현황. (2023.4.27. 기준). 문화재청 제공자료.
75)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 (검색일: 2023.06.02.)



[그림 3-2]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2023년 기준) 중국 독립운동사적지 예시
출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내 중국 국외사적지 정보 참고. http://oversea.i815.or.kr (검색일: 2023.06.02.)

□ 산림청

- 해외 한국정원 현황(2020)[76]

해외 한국정원 현황 목록은 2016년 산림청에서 수행한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조사' 연구용역에서 도시 및 국가 간 국제교류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해외 한국정원의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20년 업데이트한 목록이다. 해당 자료에서 목록화된 해외 한국정원은 총 40건으로, 유럽 8건(네덜란드 1건, 노르웨이 1건, 독일 2건, 프랑스 4건), 미주 10건(멕시코 1건, 미국 6건, 파나마 1건, 파라과이 1건, 아르헨티나 1건), 아시아 22건(몽골 3건, 사우디 1건, 우즈베키스탄 1건, 우크라이나 1건, 이란 1건, 이집트 1건, 인도 1건, 일본 5건, 중국 5건, 태국 1건, 터키 2건)의 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본 목록에서는 한국정원이 설치된 국가 및 상세 위치, 명칭, 조성 기관, 면적, 준공일, 주요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구성 항목에서는 한국정원을 구성하는 주요 설치물인 연못, 정자, 석탑, 석등, 식재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2023)[77]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목록은 2023년에 재조사된 목록으로, 2020년의 해외 한국정원 현황 목록에서 2건이 추가되었다.

본 목록에서는 조성 기관, 정원이 설치된 국가 및 위치, 명칭, 면적, 준공일, 관리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성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관리 시급성을 표기하여 각 한국정원의 보존 및 활용 현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76) 산림청. (2020). 해외 한국정원 현황. 산림청 제공자료.
77) 산림청.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산림청 제공자료.

2)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제외 및 검토필요 유형 분석

□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중 제외 및 검토필요 대상 분석

- (한국-중국) 동북공정 갈등 유발 지역에 위치한 국외사적지: 제외대상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중국의 동북 3성(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으로, 한국의 고구려·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과 관련된 동북공정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고구려·발해 고대 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K-공유유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 우선순위로 상정하였다.

제외대상은 랴오닝성 185건, 지린성 516건, 헤이룽장성 95건으로, 동북 3성에 위치한 고구려·발해 관련 사적지 796건을 K-공유유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3-6] (제외대상)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 갈등 유발 지역에 위치한 국외사적지 예시

지역	해당 시기	명칭	주소
랴오닝성 (遼寧省)	고구려	건설산성	遼寧省 開原市 八棵樹鎭 建材廠村
	발해	계관유적	遼寧省 東港市 湯池鎭 萌芽村 高家堡子屯
	고구려	고려묘구고분군	遼寧省 桓仁縣 桓仁鎭 桓仁水庫淹沒區
	발해	군민교서남유적(군민교사묘지)	遼寧省 本溪市 明山區 臥龍街道 興隆山村 鄭家堡子
	발해	남계유적(남계1대유적)	遼寧省 瓦房店市 李店鎭 嵐崮村
		...	
지린성 (吉林省)	발해	말라자-2 주거유적	吉林省 臨江市 賈家營鄕 賈家營村
	발해	가로산고성(봉황산고성)	吉林省 安圖縣 亮兵鎭 碱場村
	발해	감장건축유적	吉林省 撫松縣
	고구려	건재북고분군	吉林省 敦化市 大蒲柴河鎭
	고구려	고마령강구고분군	吉林省 集安市 大路鎭 古馬嶺村
		...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발해	강북성지(하북성지)	黑龍江省 牧丹江市 陽明區 江西村
	발해	경구유적	黑龍江省 寧安市 鏡泊鄕 江山嬌林場 大青溝山
	발해	경박호변장	黑龍江省 寧安市 鏡泊鄕 珍珠門
	발해	관지이십사괴석	黑龍江省 東寧縣 道河鎭 橋河西村
	고구려	국동대혈유적	黑龍江省 海林市 柴河鎭 群力村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 일본 식민통치와 관련된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제외 및 검토 대상

일본의 식민통치와 관련된 국외사적지로는 독립운동, 친일, 식민통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 대한제국 황실 관련 사적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 내에 위치한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의미가 매우 높은 국외사적지이나, 일본 내에 위치한 경우 소재국 내 부정적 여론 및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제외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해외에 위치한 친일 관련 국외사적지를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해외 국가에 위치한 친일 관련 사적지는 소재국에서의 가치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일본 식민통치로 발생한 피해 관련, 대한제국 황실 관련 국외사적지는 검토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 마을인 우토로 마을이나, 강제징용자 거주 지역, 도쿄의 영친왕 저택 등의 사례는 국내 및 소재국 내 가치 평가가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두 가지 유형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제외대상으로 상정한 국외사적지는 일본에 위치한 친일 관련 3건, 독립운동 관련 17건 및 타국에 위치한 친일 관련 13건 등 총 33건이다. 검토대상은 일본에 위치한 식민통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 관련 10건, 대한제국 황실 관련 5건, 타국에 위치한 식민통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 관련 13건 등 총 28건으로 상정하였다.

[표 3-7] (제외대상) 친일 관련 국외사적지 및 일본 내 독립운동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소재국	주제	명칭	관련 내용
일본	친일	홍난파와 주악당	홍난파가 일본 유학 시 사용하던 건물로서 일본 내에서도 최초의 연주회 전용 건물로 의미가 있음
		일한합방기념탑	일본 주도로 세워졌으나 일부 친일파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됨. 현재는 해체되었고, 보관 중인 탑신에는 일제강점 공로자 423명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음
		박경원 조난위비	친일 인물로 평가되는 조선인 최초의 민간 여성비행사 박경원의 추락지점에 세워진 추모비
	독립운동	김지섭 의사 투탄 의거지	1924년 1월 5일 김지섭이 일본 궁성에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킨 곳
		도쿄 양근환 의거지 (도쿄스테이션 호텔)	양근환 의사가 1921년 2월 도쿄역 호텔 2층 14호실에 머무르고 있던 친일파 민원식을 처단했던 곳
		지바 박열 수감지(지바형무소)	박열이 1923년 9월 일본 왕태자 결혼식에 투탄 의거를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옥고를 치른 곳
		가나자와 윤봉길 암장지적비	윤봉길의 암매장 장소에 재일동포와 일본인들의 성금을 모아 1992년 12월에 세운 비
		오사카 재일한인 활동지 (중앙공회당)	재일한인들의 조선인 학살 규탄대회, 노동운동 관련 행사 등이 열렸던 곳

			…
미국	친일	샌프란시스코 스티븐스 숙박지(페어몬트 호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의 직함을 가지고 일제 침략의 앞잡이로 활동하던 친일미국인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오클랜드의 정거장으로 가기 위해 묵었던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관	연해주 한인의 독립운동을 총괄해 탄압하던 일제의 전위기구
싱가포르		싱가포르 창이수용소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이 BC급 전범으로 옥고를 치렀던 곳. 종전 후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허영 묘 (쁘땀부란 묘지)	일제에 충성을 다하던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 영화감독 허영의 묘지
중국		지린 일본영사관	만주지역 한인독립운동 탄압의 전진 기지인 일본영사관이 있었던 곳
		옌지 일본영사관 분관 터 (두도구)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한 일본영사관 분관 터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3-8] (검토대상) 일본 식민통치 피해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소재국	주제	명칭	관련 내용
일본	식민통치 (피해)	우토로(ウトロ) 마을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 마을
		가와사키 재일동포 거주지	강제징용자 200세대가 살던 곳
		후쿠오카 이즈카레이엔 무궁화당	후쿠오카지역의 미이케탄광, 지쿠호탄광, 후루나가광업소 등으로 강제 연행되어 열악한 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간 한국인 노동자 39기의 유골을 안장하고, 추도하기 위해 2000년 12월 설립된 납골당
		마쓰시로 대본영	조선인 노동자 7,000명중 1,000여명이 강제노동으로 죽은 장소
		마쓰시로 대본영 인근 조선인 위안부의 집	마쓰시로 대본영 건축 시 조성된 한국인 위안부의 집
			…
	대한제국 왕실	가나가와 영친왕 저택	1921년 이왕가에 양도되어 1946년 나라하시 와타루에게 매각됨
		도쿄 영친왕 저택 (아카사카프린스클래식하우스)	영친왕 내외가 1930.3~1954.9까지 머물던 저택
		나가사키 덕혜옹주 결혼기념비	쓰시마 번주 아들 종무지와 덕혜옹주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결혼기념비와 방명비
		시즈오카 영친왕 별장 (낙수관)	1912.7월부터 영친왕의 별장으로 사용, 순종 방문

소재국	주제	명칭	관련 내용
중국	식민 통치 (피해)	조선인천인갱 (朝鮮人千人坑)	일제말기에 '조선보국대원' 또는 '남방파견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해남도에 강제 연행되어 일제의 패망 시까지 살아남은 조선보국대원 천여 명이 이곳에 집결되어 각종 도로 공사, 터널공사 등에 노역을 당한 후, 대량 학살된 현장임. 조선인천인갱에는 현재 신우농업종합개발유한공사의 서재홍 사장이 세운 4개의 기념비가 있음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건물 (화원가)	1926년 건축되어 1935년까지 일본영사관으로 사용되었으며, 金東三·南慈賢 등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와 고초를 겪은 곳
		홍콩 한인포로수용소	일본 점령 당시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전쟁 후 군인과 위안부 및 일반인 들이 귀환 전까지 수용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페르바야레츠카 역	1918년 블라디보스토크를 침범한 일본군의 군영이 있던 자리로 이들이 1920년 4월참변을 일으켰고,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당시 한인들이 집결하였던 장소
		올가항 전투 희생자 추모탑	1921년 10월 올가항 전투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한인 빨치산 22명이 매장되어 있던 곳
		우수리스크 4월참변 희생자 추모탑	1920년 연해주 4월참변 당시 우수리스크 일대에서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러시아인과 한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탑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 (한국-일본) 일본에 위치한 기타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검토대상

일본에는 식민통치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등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국외사적지가 위치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측면에서는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부정적 사건임이 분명하나,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에는 공양탑·추도비·위령비 등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적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추모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사적지의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판단 여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이 아닌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해당 국외사적지는 일본 내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사적지 5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관련 사적지 7건이다.

이러한 사적지들은 네거티브 유산이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가치를 부여할 여지가 있으나, 소재국인 일본의 내부적 여론과 여건에 따라 공유유산 대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외사적지 목록에는 위령비, 추도비와 같은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적지가 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가치판단에 따라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3-9] (검토대상) 일본에 위치한 기타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예시

소재국	주제	명칭	관련 내용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시즈오카 무연공양탑(하라노야)	태평양전쟁 말기 비행기 엔진제작을 위한 하라노야 지하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조선인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탑
	제2차 세계대전	나가사키원폭 조선인희생자 추도비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1979년 8월 9일 건립된 비
	제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해군공창 노동자 가운데 1945년 8월 7일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약 2,500여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탑
	...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간토진재조선인희생자위령비(1)	1923년 간토대지진시 혼죠시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조선인 86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간토대진재한국인위령비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시 학살당한 한국인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간토대진재희생동포위령비 법계무연탑	1923년 9월 간토대지진시 후나바시시에서 학살당한 한국인을 추도하기 위하여 세운 비와 탑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 이민사 관련 국외사적지: 검토대상

국외사적지 목록에서는 한국인의 해외 이민사와 관련된 사적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민사 관련 사적지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민국에서 정착·협력하며 영향력을 넓혀나갔다는 점에서 이민사적 가치가 있는 국외사적지, 두 번째는 이민 생활 중 겪은 차별과 탄압 등 피해와 관련된 국외사적지이다.

첫 번째 유형의 국외사적지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며 소재국의 가치판단에 따라 공유유산이 될 수도 있는 사적지로, 해당하는 69건의 국외사적지를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예시로 미국의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을 들 수 있다.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은 미국에 형성된 최초의 한인타운으로 미국에서도 이민자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문화적 관심지로 지정한 사례로,[78] 이러한 국외사적지는 향후 소재국에서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확인되면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민 생활 중 겪은 피해 관련 국외사적지의 경우, 한국 이민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억하며 공유한다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소재국에서는 오히려 네거티브 유산으로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7건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7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1).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p.13.

[표 3-10] (검토대상) 이민사 관련 국외사적지 예시

주제	소재국	명칭	관련 내용
이민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기독교회	1936년 김중수 목사를 비롯한 동지회 인사들이 세운 한인교회이자 동지회 북미총회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시카고 지방회)	시카고에 재류하던 한인들이 세운 감리교회며, 시카고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지
		리버사이드 한인타운과 한인노동소개소 터	미국 본토 최초의 한인 집단 거주지
		뉴욕 이민국(엘리스 섬)	해방 이전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태평양 항로를 통하여 미국으로 들어 왔는데, 때로는 유럽을 경유하여 뉴욕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음
		...	
	독일	베를린 유덕고려학우회 사무실	재독 한인 유학생 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 사무실이 있었던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제8호 모범한인중학교	계봉우 등 한인 지식인들이 1930년대 교사로 활동하며 한인자제들을 교육하던 곳
		서울거리 2A번지 신한촌 구옥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에 있는 한인가옥으로 현재 '서울스카야 2A' 표지판이 붙어있음
	멕시코	메리다 한국이민사박물관	메리다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미국에서 출범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의 산하조직이었던 메리다지방회가 사용하던 회관으로, 1934년 한인 1세대 명의로 한인이 소유한 최초의 건물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고려사범대학	1937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해 온 한인들이 크즐오르다 스카이예프에 있는 작은 건물을 얻어 증축하여 개설한 학교 건물
	쿠바	마탄사스 한인 이민 기념비	1943~1951년까지 사용하였던 마탄사스 지방회관으로, 마탄사스 엘볼로 농장 입구에는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시애틀 한인연합장로교회의 도움을 받아 기념비가 건립함
	프랑스	파리 한국친우회 창립지 (사회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한 한국친우회가 창립되었던 곳
		...	
이민 피해	중국	광저우 중조인민혈의정	1927년 12월 광주코뮨에 참여해서 희생한 조선인 150여명을 추도하기 위해 건립된 정자
	카자흐스탄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자들을 위한 기념비	1999년 한국정부의 지원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치한 기념물
		우슈토베 한인강제이주자 땅굴 (한인강제이주 후 첫 겨울을 보낸 땅굴)	강제 이주 직후, 1937년 겨울 우슈토베산 밑으로 끌려 온 고려인들이 다음해 봄까지 6개월가량 생활하였던 땅굴로, 현재는 한인공동묘지와 땅굴 흔적이 남아있음
	러시아	하바롭스크 한인 희생자 묘지	조명희 등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 처형된 한인들의 공동묘지
		하바롭스크 조명희 수감지	스탈린 대탄압 당시 조명희가 피체되어 심문을 받고 총살된 곳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 각 소재국 별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제외대상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연구(2008)에서는 역사 가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D와 E등급은 소재국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적지로 분류되었으므로 제외 대상으로 상정하였다.[79]

[표 3-11] 문화재청(2008)의 역사 가치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 기준표(제외대상 기준)

구분	분류기준
A+	• 한국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독립운동현장 및 관련 장소 - 역사적 인물관련 장소 : 주거지·사형지·체포지·순국지·묘역·추모시설 등 - 정부관련 건물 : 외교공관 및 황실관련 시설 - 해외로 무단 이축된 건축물 중 의미가 큰 경우 - 한국근대사와 세계사에 큰 이슈가 되는 경우
A-	• 한국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인 독립운동현장 및 그 관련 장소 - 역사적 인물관련 일상적인 흔적 : 기념장소, 방문지, 관련 유물 등 - A+를 제외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관련 장소 - 2차대전에 관련된 현장·묘역·추모장소 중 의미가 큰 곳 -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관련 유산
B	• 한국근대사에 관련된 유산(A항목 외) - 독립운동 관련 장소이나 역사적 의미가 떨어지는 곳 - 일반적인 징용·징병과 관련된 현장·묘역·추모장소 - 독립운동 외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경우 - A항목 외 전쟁관련 시설 - A항목 외 한국근대사의 인물에 관련된 장소
C	•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국외 시설 및 장소
D	• 역사사실이 부정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E	• 마이너스 유산 - 친일매국인사 관련유적 - 일제강점 및 한국인 수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 인사 - 일제의 선전도구로 사용한 유산

주: 음영( ) : 제외대상으로 상정한 등급.
출처: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p.9.

- 이미 반환된 사적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옮겨졌던 '자선당'은 현재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으므로, K-공유유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9) 단, D와 E등급의 국외사적지 중 물리적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일본의 식민통치와 관련된 경우 등 앞서 살펴본 제외 기준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 물리적 형태에 따른 제외·검토 대상 분석

- 물리적 형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적지: 검토대상

기존 조사된 국외사적지의 물리적 형태와 관련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락된 국외사적지의 현재 주소지 및 지도 검색, 홈페이지 검색 등을 통해 물리적 형태 및 멸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였으며, 재조사 결과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국외사적지가 40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국외사적지는 차후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정보 보완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현재 단계에서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다.

- 멸실되어 다른 건조물이 조성되었거나, 장소성 입증 및 위치 추정이 어려운 사적지: 제외대상

문화재청의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연구(2008)에서는 사적지의 물리적 형태 정보를 토대로 보존 현황 정보를 함께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에서는 다음의 표 [3-12]와 같이 국외사적지마다 보존현황 등급을 부여한 바 있다.

[표 3-12] 문화재청(2008)의 보존현황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 기준표(제외대상 기준)

구분	분류기준	비고
A+	• 원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 - 일부 철거, 건조되었지만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건축물, 산업시설 중심
A-	•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경우, 원형부위를 포함하여 복원한 경우 - 증개축으로 인한 원형을 상당부분 잃었지만 원형이 일부라도 남아있어 역사적 고증이 가능한 경우 - 원형부위를 포함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하여 복원한 경우	건축물, 산업시설 중심
B	• 장소 또는 터만 남은 경우 - 중국 한인촌, 재일 한국인 거주지 등 - 기념비, 묘지, 추모비 등 - 공지로서 위치만 확인 가능한 경우 - 추정하여 복원한 경우	장소성 보존의 경우
C	• 위치를 추정하는 경우 -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경우 - 이미 다른 건물 및 도로 등이 들어서 있어 위치확인이 불가한 경우	
D	• 동산문화재 - 각종 기록물 - 위패 - 각종 공예물, 생활용품 등	데라우치 약탈문화재 야스쿠니 신사의 한국인 징병 위패
E	• 해당국의 문화재, 공무시설(관공서, 교도소 등), 공공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주: 음영( ) : 제외대상으로 상정한 등급.
출처: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p.10.

본 연구에서는 해당 표를 참고하여, 문화재청(2008) 자료에서 조사된 국외사적지 중 정확한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한정된 C등급 19건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현황 재조사 결과, 이미 멸실되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와 다른 건조물이 조성되는 등 장소성이 소멸된 경우, 정확한 위치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305건의 국외사적지를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3-13] (제외대상) 멸실되었거나 장소성 입증 및 위치 추정이 어려운 국외사적지 예시

소재국	유형	명칭	주소	보존 현황
문화재청(2008) 자료 내 보존 현황 C등급(위치 추정 불가) 사적지				
중국	-	상즈 한국독립당 창당지 터	黑龍江省海林市葦河縣	C
	-	조선보국대원 숙소 터	海南島 陵水黎族自治縣 金峰村	C
	터	유저우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전시관(낙군사)	广西壮族自治区 柳州市 鱼峰区 柳石路 2号	C
일본	-	대일본권업박람회 조선관	岡山縣 岡山市	C
	-	산업과 관광의대박람회 조선관	石川縣 金澤市	C
러시아	-	하바롭스크 보문사 터	칼리니나 거리 27번지	C
			...	
재조사 결과 멸실, 장소성 소멸, 위치 추정 불가 사적지				
중국	터	상하이 한인집회장소 (삼일당 터)	上海市 黃浦区 宁海东路 262号	-
	터	왕칭 하하촌 전투지	汪清縣 羅子溝鎭 下河村	B
미국	터	와이알루아 사탕수수 공장	Waialua Kealohanui St.	B
	터	뉴욕《삼일신보》 발행지 터	41 East, 22nd St. New York, NY 10010	-
	터	호놀룰루 한인협회 터	1511 Nuuanu Ave, Honolulu, HI 96817	-
쿠바	터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 지방회 회관	카르데나스 카리요 사루드 No 307	-
프랑스	터	파리 김법린 거주지 (구 보탱병원, 에두아르 리스트 병원)	La Clinique Medicale et Pedagogique Edouard RIST, 14, rue Boileau 75016 Paris	-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 부동산 형태가 아닌 사적지: 제외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동산 형태로 환수보다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국외사적지로, 기존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동산문화재와 자연유산 국외사적지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표 3-12]의 문화재청(2008) 보존 현황 등급을 참고하여 동산문화재로 분류된 D등급 국외사적지를 14건을 제외하였고, 본 연구의 재조사 결과 파악한 동산문화재 8건 및 자연물 등 부동산 형태가 아닌 국외사적지 12건을 제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표 3-14] (제외대상) 부동산 형태가 아닌 국외사적지 예시

유형	소재국	명칭	관련 내용	보존 현황
문화재청(2008) 자료 내 보존 현황 D등급 사적지				
동산	일본	네즈(근진) 미술관의 한국 문화재	네즈 가이치로우(根津嘉一郎, 1860-1940)가 한국에서 약출한 문화재, 국보급이 다수 존재	D
		야나기 무네요시 일본민예 관의 한국 문화재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에서 헐값에 수집한 각종 민예품	D
		야스쿠니신사 내 한국인 징병 위패	야스쿠니신사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인 징병의 위패 21,181개가 봉안 중	D
		홋카이도 개척기념관 내 한국인 노동자 명부	홋카이도 지역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명부 보관 중	D
	러시아	김알렉산드라 베뜨로브나의 얼굴 동판	건물 벽에 김알렉산드라 얼굴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짐	D
		...		
재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동산 형태가 아닌 사적지				
동산	일본	데라우치 약탈문화재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가 무단으로 반출한 문화재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사박물관	한인들이 입었던 남녀 한복 한 벌, 이주 초창기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한인 사진 3매, 1904년에 촬영한 블라디보스토크 전경 사진 전시 중	-
	미국	프리어&새클러미술관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미술실	-
		...		
자연물	중국	개산둔 간도 명칭유래 구지	기재에 의하면 두만강 물의 모래가 쌓여 일찍이 모래터가 형성되었는데 길이가 약 2~3㎞ 이고 넓이는 4~5㎞ 가량으로 대략 2천무(약 6만평)나 되었다고 하며, '간도'의 명칭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	B
	미국	한국 벚나무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 내 1943년 4월 8일 한미협회, 한국기독교친우회의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5주년을 경축하는 행사가 끝난 후 심은 한국 벚나무	B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3)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유형 분석

□ 보존 현황에 따른 유형 분류

-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국외사적지: 우선순위 대상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 자료 중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보존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문화재청(2008)의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연구가 유일하며, 추가 현지 조사 없이는 정확한 보존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아래 표와 같이 문화재청(2008) 연구의 보존현황 등급을 K-공유유산 우선순위 도출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표 3-15] 문화재청(2008)의 보존현황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표(우선순위 기준)

구분	분류기준	비고
A+	• 원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경우 - 원형을 유지하는 경우 - 일부 철거, 건조되었지만 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건축물, 산업시설 중심
A-	•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경우, 원형부위를 포함하여 복원한 경우 - 증개축으로 인한 원형을 상당부분 잃었지만 원형이 일부라도 남아있어 역사적 고증이 가능한 경우 - 원형부위를 포함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하여 복원한 경우	건축물, 산업시설 중심
B	• 장소 또는 터만 남은 경우 - 중국 한인촌, 재일 한국인 거주지 등 - 기념비, 묘지, 추모비 등 - 공지로서 위치만 확인 가능한 경우 - 추정하여 복원한 경우	장소성 보존의 경우
C	• 위치를 추정하는 경우 - 역사적 사실이 부정확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경우 - 이미 다른 건물 및 도로 등이 들어서 있어 위치확인이 불가한 경우	
D	• 동산문화재 - 각종 기록물 - 위패 - 각종 공예물, 생활용품 등	데라우치 악탈문화재 야스쿠니신사한국인징병위패
E	• 해당국의 문화재, 공무시설(관공서, 교도소 등), 공공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건물	

주: 음영( ) : 우선순위 대상으로 상정한 등급.
출처: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p.10.

본 연구는 해당 자료의 보존 현황별 등급 기준 분류에 따라, 건축물 및 시설이 원형을 보존한 경우인 A+ 및 A- 등급과, 장소성이 보존된 B 등급, 또한 별도 등급으로서 해당국에서 문화재, 공무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E 등급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건축물은 아니지만 양국 간 교류의 산물로 조성된 해외 한국정원은 관리 시급성에 따라 보존 현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해외 한국정원은 관리 시급성에 따라 시급, 보통(노후), 양호로 나눠지는데, 이중에 양호에 해당되는 정원은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우선선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차후 보존 현황에 따라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 해당 목록을 중심으로 물리적 형태가 완전하고 원형에 가까운 진정성이 있는 대상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현지조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6] 보존 현황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사례 예시

보존 현황	유형	명칭	주소	소재국
A+	건물	주영대한제국공사관	얼스코트(Earl` s Court) 트레버로드(Trebovir Road) 4번지	영국
	건물	서재필기념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이스트 링컨 스트리트 100(PA 19063)	미국
	건물	이준열사기념관	바겐스트라트(Wagenstraat) 거리 124번지	네덜란드
			…	
A-	건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1374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미국
	건물	메리다 이종오 거주지	Calle 52 #451, Merida, Yucatan	멕시코
	건물	로스앤젤레스 흥사단소 (사우스 카탈리나 스트리트)	3421 South Catarina St.	미국
			…	
B	건물	자싱 김구 피난처1	절강성 가흥시 매만가 76호	중국
	건물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관	멕시코시티 쿠아우테모크 게레로 목테수마 58	멕시코
	건물	리들리 김형제상회와 저택	718 I Street, Reedley, California	미국
			…	
E	건물	암바라와 고려독립청년당 의 거지(제2분견대)	Jl. Mgr. A. Sugiyapranta SJ No. 56, Ambarawa	인도네시아
	건물	깐짜나부리 연합군 포로수용소 터(연합군 묘역)	깐짜나부리 시내	태국
	건물	콜카타 한국광복군 활동지 (콜카타 방송국)	Northeast of Eden Garden in Kolkata downtown	인도
			…	
양호	정원	한국정원(외교부, 1968)	멕시코시티	멕시코
	정원	Salt Lake City The International Peace Garden(민간, 1952)	1160 Dalton Ave S, Salt Lake City, UT 84104	미국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산림청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3]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
출처 :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www.yijunpeacemuseum.org (검색일: 2023.06.02.)



[그림 3-4] 미국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출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 (검색일: 2023.06.02.)

□ 역사적 가치에 따른 분류

- 기존 자료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국외사적지: 우선순위 대상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 자료 중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역사적 가치를 조사한 자료는 문화재청(2008)의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 연구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청(2008) 연구에서 역사적 가치 등급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대상을 K-공유유산 우선순위 도출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역사적 가치에 따른 K-공유유산 우선순위 대상 유형은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외사적지로, 한국 근대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A+ 및 A- 등급과 한국 근대사와 관련성이 있는 문화유산인 B 등급,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국외 시설 및 장소인 C 등급이 해당된다.

[표 3-17] 문화재청(2008)의 역사적 가치에 따른 국외사적지 등급표(우선순위 기준)

구분	분류기준
A+	• 한국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 -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독립운동현장 및 관련 장소 - 역사적 인물관련 장소 : 주거지·사형지·체포지·순국지·묘역·추모시설 등 - 정부관련 건물 : 외교공관 및 황실관련 시설 - 해외로 무단 이축된 건축물 중 의미가 큰 경우 - 한국근대사와 세계사에 큰 이슈가 되는 경우
A-	• 한국근대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비교적 소규모이거나 산발적인 독립운동현장 및 그 관련 장소 - 역사적 인물관련 일상적인 흔적 : 기념장소, 방문지, 관련 유물 등 - A+를 제외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관련 장소 - 2차대전에 관련된 현장·묘역·추모장소 중 의미가 큰 곳 -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관련 유산

구분	분류기준
B	• 한국근대사에 관련된 유산(A항목 외) - 독립운동 관련 장소이나 역사적 의미가 떨어지는 곳 - 일반적인 징용·징병과 관련된 현장·묘역·추모장소 - 독립운동 외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경우 - A항목 외 전쟁관련 시설 - A항목 외 한국근대사의 인물에 관련된 장소
C	• 한국근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국외 시설 및 장소
D	• 역사사실이 부정확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E	• 마이너스 유산 - 친일매국인사 관련유적 - 일제강점 및 한국인 수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국 인사 - 일제의 선전도구로 사용한 유산

주: 음영( ) : 우선순위 대상으로 상정한 등급.
출처: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p.9.

[표 3-18] 역사적 가치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사례 예시

역사가치	유형	명칭	주소	소재국
A+	건물	이범진 공사 당시 주불 한국공사관(1)	155 Rue de la Pompe, Paris	프랑스
	건물	서재필기념관	100 East Lincoln Street, Media, PA 19063	미국
	건물	우수리스크 최재형 거주지 (최재형선생 기념관)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보르다르스코로 거리 38번지	러시아
		...		
A-	건물	타이항산 조선의용대 주둔지 (운두저촌)	산서성 좌권현 마전진 운두저촌	중국
	건물	타이항산 조선혁명군정학교 터(남장촌)	하북성 섭현 하남점진 남장촌	중국
	건물	필라델피아 서재필 병원 (플리머스 홀)	20-22 Venterans Square Plymouth Hall, Media, PA 19063	미국
		...		
B	건물	전장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전시관(목원소학교 터)	강소성 진강시 양가문 23호 목원소학교	중국
	건물	뉴욕 인터내셔널 하우스	500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027	미국
	건물	이종오 거주지	메리다시 깔레(Calle) 52 #451	멕시코
		...		
C	건물	바기오 벵게트 안창호 활동지 (대통령궁)	Mines View Road, Baguio City, Benguet	필리핀
	건물	옌안 정율성 활동지 (루신예술문학원)	섬서성 연안시 교아구진	중국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5]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 거주지
출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 (검색일: 2023.06.02.)



[그림 3-6] 멕시코 메리다 이종오 거주지
출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 (검색일: 2023.06.02.)

□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현황에 따른 분류

-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국외사적지: 우선순위 대상

소재국 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적지는 소재국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멸실·훼손의 위험이 상당히 낮고, 소재국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국외사적지이므로 K-공유유산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양국에서의 가치가 조사 및 확인된 만큼 K-공유유산으로서 관리·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타 여건을 고려한 이후 공유유산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다.

[표 3-19]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사례 예시

소재국	유형	명칭	지정 현황
중국	건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과 장제스 면담지(행영·예당)	충칭시문물보호단위
	건물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모택동 회담지(계원)	중국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 (LA Historic-Cultural Monument)
	기념물	왕칭 나자구전투 기념비	왕칭현 중점 문화재
		...	
대만	건물 (일부)	타이페이 조명하 순국지 (타이페이형무소 터)	시지정 고적
미국	건물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LA 역사기념물 (LA Historic-Cultural Monument)
	건물	로스앤젤레스 안창호 가족 거주지(도산 하우스)	LA 역사기념물 (LA Historic-Cultural Monument)
	기념물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연방사적등록자산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프랑스	건물	이성자아틀리에(은하수)	현지 지방문화재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3-7] 미국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출처 :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www.okpedia.kr (검색일: 2023.06.02.)



[그림 3-8] 프랑스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출처 : 이성자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seundjarhee.com (검색일: 2023.06.02.)

□ 활용 현황에 따른 분류

- 소재국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적지: 우선순위 대상, 검토대상

일부 국외사적지는 역사전시관, 기념관 등 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며 활용되고 있거나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소재국 또는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를 잘 보존하며 활용되고 있는 국외사적지의 경우, 적어도 소재국 또는 소유자와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K-공유유산으로 적합한 사례이며,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사적 가치와 관계없이 이외 용도로 활용 중인 국외사적지의 경우, 대체로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중인 사례이므로, 소재국에서 국외사적지에 문화유산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K-공유유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소재국에서 가치가 있는 사적지라면 시범사업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외 사례는 검토대상으로 분류한다.

[표 3-20] 소재국 내 활용 사례 예시

소재국	유형	명칭	활용 현황
일본	건물	고려미술관	한국미술품전시관
	건물	심수관요	전시관, 도자공방
중국	건물	여순감옥	역사전시관
미국	건물	두 번째 주미대한민국대사관(한국문화원)	워싱턴 한국문화원
	건물	찰스 H. 김 초등학교	초등학교
스페인	건물	안익태 선생 유택	역사전시관
독일	건물	윤이상하우스	작가 레지던스
카자흐스탄	건물	알마티 고려일보사	2층 고려인협회사무실
		...	

출처: [표 3-2]의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 중 문화재청,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인용하여 연구진 작성

4) 국외사적지 유형에 따른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도출 기준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국외사적지, 물리적 형태가 남아 있지 않거나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국외사적지, 동산문화재 등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사적지 등을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으며,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 분류하였다.

이에 총 2,216건의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에서 1,698여건을 제외 및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총 518건의 국외사적지를 1차 추출하였다.

이어서 추출된 1차 K-공유유산 목록 중 사적지의 보존 상태, 역사적 가치, 문화유산 지정 현황,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상[80]으로 볼 수 있는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목록(2차)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 대상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목록 추출을 위한 제외대상 선정 기준

-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K-공유유산은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모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소재국에서 보존·활용하면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국외사적지에 대한 소재국 내 갈등이나 양국 간 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K-공유유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물리적 형태가 멸실되었거나 장소성이 소멸된 국외사적지

국외사적지 중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었던 터나 역사적 사건 발생지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현재 건축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축물이 조성되었거나 장소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유유산으로서 활용할 실체가 없는 상황이므로 K-공유유산의 대상으로서 가능성이 낮다.

② 1차 목록 추출을 위한 검토대상 선정 기준

- 네거티브 유산이나 향후 인식 변화 가능성이 있는 국외사적지

네거티브 유산의 성격을 가진 국외사적지는 양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나, 추후 관련 인식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갈등이 봉합·해결되는 경우 긍정적 유산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

80) 단, 우선순위 대상을 반드시 공유유산 시범사업 적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의 목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국외사적지는 해당 국가의 사업 추진 및 확장 시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교류·협력의 기반으로서 오히려 K-공유유산으로서 가능성을 지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를 K-공유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은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조사가 필요한 국외사적지

기존 조사 목록에서 명칭과 소재국 등 간략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추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적 가치 또는 물리적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현재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므로, 향후 관련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대상 목록으로 관리한다.

③ 2차 목록 추출을 위한 우선순위 대상 선정 기준

- 보존 상태가 우수한 국외사적지

K-공유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원형 또는 일부가 남아있고, 장소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물리적 형태가 완전하고 원형에 가까우며 역사적 진정성을 지닌 국외사적지는 K-공유유산 시범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외사적지

현재까지 조사된 목록에서는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소재국에서의 가치는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선순위 대상부터 순차적으로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로서 역사적 가치의 기준은 최소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것' 또는 전문가의 조사 및 연구 수행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에 해당한다.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내 문화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상을 우선순위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

제34조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출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3. 5.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34조제1항.

-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국외사적지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국외사적지는 공유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소재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므로 대부분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이러한 경우 K-공유유산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소재국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외사적지

소재국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외사적지는 공유유산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관련 가치를 잘 보존하며 활용 중인 사적지와, 대한민국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사적지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표 3-21] 가치 유무 및 갈등 유발 여부에 따른 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분류	한국에서의 가치	소재국에서의 가치
제외대상	–	–
	–	+
	–	▲
	–	△
	+	–
	▲	–
	△	△
검토대상	+	△
	▲	+
	▲	▲
	▲	△
	△	+
우선순위 대상	+	+
	+	▲

– : 부정적 인식 / + : 긍정적 인식/ ▲ : 가치평가 유보 / △ : 가치조사 미수행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22] 보존 및 활용 현황에 따른 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분류	보존 현황			활용 현황
	원형	장소성	위치 추정	
제외대상	X	X	X	–
	X	X	△	–
검토대상	X	○	–	●, △, X
	△	△	△	△
우선순위 대상	●	●	–	●, △, X
	●	–	–	●, △, X
	○	●	–	●, △, X
	○	○	–	●, △, X
	○	–	–	●, △, X

● : 원형 보존, 활용 중 / ○ : 변형 및 일부 보존 / △ : 조사 필요 / X : 없음 / – : 해당 없음

출처: 연구진 작성.

④ 기타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 국가 간 관계

국가 간 관계는 외교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소재국을 시범사업 대상 도출 기준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단, 국가 간 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공유유산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외교적 여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을 용이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소재국 별로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기 및 주제에 따른 협력 기관

갈등을 유발하는 유산이 아닌 경우, 협력 기관의 성격에 따라 주제별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내·외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은 국외사적지의 시기·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설립·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정 주제와 관련된 국외사적지는 국내·외 협력 기관 및 단체를 통해 협력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시기 및 주제별로 국외사적지를 모니터링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소유자 유형

국외사적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용이하다. 단, 국가 간 외교 관계 등에 따라 여건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소재국별 국외사적지 모니터링 시 소유주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한편 국외사적지의 소유자가 민간인 경우, 해당 국외사적지가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표 3-23] 기타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분류	국가 간의 관계	시기 및 주제에 따른 협력 기관의 성격	소유자 유형	
			국가, 공공	민간
검토 대상	한국과 소재국에서 각각 가치가 있지만, 소재국과의 외교적 여건을 고려하여야하는 국가에 위치한 국외사적지	각 시기 및 주제에 따라 유관 기관·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외사적지	한국과 소재국에서 각각 가치가 있지만, 소재국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한 국외사적지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소유자와의 협력이 어려운 국외사적지
우선 순위 대상	상호 관계가 우호적인 소재국의 국외사적지	각 시기 및 주제에 따른 유관 기관·단체의 사적지 중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외사적지	상호 관계가 우호적인 소재국의 국외사적지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소유자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외사적지

출처: 연구진 작성.

3.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국외사적지 중 현지에서 활용·관리되고 있는 사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국외사적지 2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별 주요 연혁 및 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한민국 및 소재국에서의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K-공유유산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분석 항목

분석의 항목은 크게 5가지로, 사례의 개요(주소, 건축 연도, 구조 또는 구성), 연혁, 관리·활용 현황,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현재까지 국외사적지를 조사한 기존 자료는 대부분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 등은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현지에서 비교적 잘 활용·관리되고 있는 국외사적지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소재국에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K-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24]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항목

구분	세부 내용
개요	• 주소 • 건축연도(건축물) 또는 건립연도(시설물/장소) • 구조 또는 구성
연혁	•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상태 조사를 위한 주요 연혁
관리·활용 현황	• 소유·운영·관리 주체 • 현재 용도 •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 여부 등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	• 대한민국 유산으로서 가치 • 소재국 내 유산으로서 가치
K-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평가

출처: 연구진 작성.

□ 분석 대상: 총 24개소

분석의 대상은 미국 8개소(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흥사단소, 서재필기념관, USC 한국학연구소, 대한인국민회총회관, 한미우정의 종각,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유럽 9개소(독일 윤이상하우스, 독일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프랑스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프랑스 한국 친우회 창립지,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 영국 주영대한제국공사관, 영국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건물, 프랑스 이응노 아뜰리에, 프랑스 이성자 아뜰리에), 일본 7개소(도쿄 영친왕저, 고려미술관, 심수관요, 보화종루, 영친왕 별장,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적, 조선식 산성) 등 총 24개소이다. 사례별 개요는 다음의 [표 3-25]와 같다.

[표 3-25] 주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분석 사례 개요

국가	명칭	위치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관리·활용 현황
미국 (8개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워싱턴DC	(한국) 대한제국기 외교 공관으로, 국외사적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보존·복원한 최초의 사례이자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 중 (미국) 유력 정치인의 주택·외교 공관 등으로 사용된 건물이며, 역사지구 내 위치하여 역사적 의미가 깊은 건물	(소유) 대한민국(매입) (활용)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워싱턴DC	(한국) 내셔널 몰 내 위치한 한국 관련 기념비 (미국) 참전용사 대상 보훈정책 관련 주요 기념비 (국가사적으로 지정) *1995년 건립되어 현재 국내 기준에서 문화유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소유) 미국 내셔널몰 (활용) 기념비·기념공원
	흥사단소	LA	(한국)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운동의 거점지이자 흥사단·안창호와 관련된 건물이며, 국가에서 매입(2023.2.) 후 활용 예정 (미국) 이민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안창호)과 연관된 건물이며, 1900년대 초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 (LA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소유) 대한민국(매입) (활용) 역사전시관, 커뮤니티센터 등 활용 계획 수립 중
	서재필기념관	필라델피아 미디어 시	(한국)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거주하였던 주택이며,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 중 (미국) 이민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서재필)의 주택이며, 현재 전시관으로 활용 중	(소유) 서재필기념재단, 미디어 시(자연녹지) (활용)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
	USC 한국학연구소 (구 도산안창호 패밀리 하우스)	LA	(한국) 안창호 가족이 거주했던 곳이자 현재 한국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는 USC 한국학 연구소로 활용 중 (미국) 미국 내 첫 한인 이민자 부부 및 가족의 거주지이자 1900년대 초 주거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 양식 특징. USC 대학에서 매입 후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대로 이전·보존 (LA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소유) USC대학 (활용) 연구·교육기관

국가	명칭	위치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관리·활용 현황
	대한인국민회총회관	LA	(한국) 대한인국민회의 총회관 및 신한민보 발행처 등으로 사용된 역사적 장소이며, 현재 전시관·기념관으로 활용 중 (미국) 이민사적 가치를 지님(LA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소유)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활용) 역사전시관
	한미 우정의 종각	LA	(한국)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며,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의 종각 및 종으로 구성 (미국)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일한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지님(LA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1976년 건립되어 현재 국내 기준에서 문화유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소유) LA 시 (활용) 공원 내 공공장소(관광명소), 한인 관련 행사 장소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윌로우스	(한국) 미주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자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가 되는 장소 (미국) 독특한 역사적 배경 및 중요성을 지닌 아시아 이민 유산, 이주노동 관련 유산으로 평가 (2018 NPS 국가 랜드마크 잠정목록 선정)	(소유) 민간 및 윌로우스 시 (활용) 기념관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진행 중
유럽 (9개소)	윤이상하우스	독일 베를린	(한국) 한국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이 거주하였던 장소 (독일) 세계적 작곡가 중 하나인 윤이상이 거주한 장소로, 현재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베를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역할 수행	(소유) 윤이상평화재단 (활용) 기념관, 작가 레지던스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독일 베를린 *베를린 '세계의 정원' 내 위치	(한국) 베를린-서울 자매결연의 상징이며, 한국 전통 정원 형식으로 조성 (독일) 베를린-서울 자매결연의 상징 및 관광명소로서 가치가 있으며, 2005년 9월 청계천에 조성된 베를린 광장에 대한 답례 공간 *2006년 건립되어 현재 국내 기준에서 문화유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소유) 베를린 시 (활용) 한국정원(공공공간)
	아끌리마따시옹공원 내 서울정원	프랑스 파리 *파리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위치	(한국) 파리-서울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한 우호의 상징이며, 한국 전통 정원 형식으로 조성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볼로뉴 숲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위치하며, 파리-서울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한 우호의 상징 및 관광명소로서 가치가 있음 *2002년 건립되어 현재 국내 기준에서 문화유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장기적 모니터링 필요	(소유) 파리시 (활용) 한국정원(공공공간)
	한국친우회 창립지	프랑스 파리	(한국)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외국인 단체인 프랑스 한국친우회가 창립된 역사적 건물로, '한국 친우회 창립대회(1921)' 당시 모습이 잘 보존됨 (프랑스) 1894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박물관으로 사용되어 활용 가능성 및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큼	(소유) 파리시 (활용) 사회박물관

국가	명칭	위치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관리·활용 현황
	이준열사기념관	네덜란드 헤이그	(한국) 유럽 유일의 항일 유적지로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숙소이자 이준열사 순국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님 (네덜란드) 현재도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으며, 공유유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네덜란드 정부와 국가 간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소유) 사단법인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활용) 기념관, 역사전시관
	주영대한제국공사관	영국 런던	(한국) 영국과 수교 이후 조선이 구주지역에 최초로 설치한 외교 공관으로 주영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이자 이한응 공사대리가 1905년 순국한 장소 (영국) 네번광장 보존 구역(역사지구) 안에 위치함. 건물 내부는 변형이 많이 되었으나 외관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	(소유) 공공임대주택조합 피보디 트러스트(Peabody Trust) (활용) 공공임대주택
	구한국명예총영사관 건물	영국 런던	(한국) 1905년 런던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관으로 추정되며, 이한응 열사 순국지와 관련된 국외사적지 (영국) 퀸 빅토리아 스트리트에 위치하여 역사적 가치가 높음 (영국 등재건축물로 지정)	(소유) 런던시 공사 (활용) 공공기관 등 복합용도 건물
	이응노 아뜰리에	프랑스 파리	(한국)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응노가 타계할 때까지 사용한 아뜰리에이며,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과 연계한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활용 중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명성이 높은 현대미술 작가 이응노의 아뜰리에	(소유) 프랑스 이응노재단 (이응노 일가) (활용) 작가 레지던스
	이성자 아뜰리에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한국) 첫 한국인 프랑스 유학 화가로서 현지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과 관련된 장소 (프랑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나타내는 주요한 건축물이며 프랑스 문화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주목할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의 등재 추진 중 (시 지방문화재로 지정)	(소유) 이성자 일가 (활용) 기념관
일본 (7개소)	영친왕저	일본 도쿄	(한국) 일제강점기에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거주한 건물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 쇼와 초기의 황족 건축의 명작. 궁내성 내장료의 설계자와 시공자가 확인되고 각종 도면과 공사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음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소유) 세이부 리알티 솔루션즈(西武リアルティソリューションズ) (활용) 식당 및 연회장
	고려미술관	일본 교토	(한국) 일본 내 한국 관련 유적을 탐방한 정조문이 설립한 미술관으로, 한국 문화유산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국외 소재 미술관 (일본)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문화유산만을 전시하고, 부설연구소를 운영하여 고대 일본사에 대한 한국의 영향 등을 연구	(소유) 고려미술관 (활용) 한국미술품전시관

국가	명칭	위치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관리·활용 현황
	심수관요	일본 가고시마	(한국) 일본의 도예 문화에 역사적으로 한국이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으며, 14대·15대 심수관은 대한민국의 명예총영사로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교역할을 수행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사쓰마 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린 장인 심수관의 공방이자 전시관. 14대·15대 심수관은 대한민국의 명예총영사로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교역할을 수행	(소유) 심수관(15대) (활용) 전시관, 도자공방
	보화종루	일본 지바	(한국) 일본 현지에 한국 국민이 세운 유일한 위령 시설이며, 일본에서의 한국인 학살 관련 역사를 기억하는 유산으로서 의미가 깊음 (일본) 관동대학살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갖는 유산이며, 매년 열리는 추도제와 연계하여 활용되는 유산	(소유) 관음사 (활용) 종루, 위령시설
	영친왕 별장	일본 오이소 및 미시마 지역	(한국) 영친왕이 유년 시절에 머무르고 피서지로 사용한 공간이며, 건물 증축 등과 관련하여 대한제국 황실 기록이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입증 가능한 유산 (일본)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이자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어 기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 주요 건물인 라쿠쥬칸에 장식된 회화 등이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음	(소유) 미시마시 (활용) 시립공원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적	일본 시즈오카	(한국)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조선의 외교활동 증거이며, 조선통신사 활동의 가치를 입증 가능한 유산 (세이켄지에 보관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 등재됨) (일본) 에도시대 조선통신사가 남긴 기록물과 유적, 통신사 길 등이 일본 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조선통신사 관련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 (세이켄지 내 유적과 삿타토우게 통신사 길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세이켄지에 보관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 등재됨)	(소유) 세이켄지, 시미즈시(삿타토우게) (활용) 종교시설, 하이킹코스(삿타토우게)
	조선식 산성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한국) 백제 도성의 조영 특성, 포곡식 산성의 조영 방식 등 한국 성곽 문화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산 (일본) 일본 고대산성의 건축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산	(소유) 불명확 (활용) 녹지공간(전망대, 산책로)

출처: 사례별 분석 개요표(표 3-26-33; 35-49; 51-52)를 요약하여 연구진 작성.

1) 미국

□ 주미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 Building)

[표 3-26]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1500 13th St NW, Washington, DC 20005 • 건축연도: 1877년 • 구조: 지상 3층, 지하 1층(대지면적 226.10㎡, 건축면적 152.42㎡, 연면적 584.54㎡), 벽돌조(외벽) 및 목조(바닥, 지붕)	
주요 연혁	1877	• 주택으로 건립(미국 해군 출신 정치인 및 외교관 Seth L. Phelps)
	1889	• 피셔옥에서 대한제국공사관이 현재 건물로 이전(당시 주미조선공사관)
	1910	• 업무 정지(1905) 후 미국인에 매각
	1940-60년대	• 용도 변경하여 사용(1940-50년대: 아프리카계 군인 레크리에이션 센터 / 60년대: 화물운송노조 사무소)
	1972	• 미국 NPS에서 로건서클 일대를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함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로 관리
	1977	• 용도 변경하여 사용(주택)
	2003	•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관 건물 매입 논의
	2012.10.	• 문화재청-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공사관 건물 매입 (*황실재산 긴급매입비, 3,500,000달러)
	2018.5.	• 정밀실측 및 조사, 복원 등을 거쳐 역사전시관으로 개관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주체: 대한민국 정부 • 운영·관리 주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용도	•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에 위치하여 역사적 건축물로 관리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설계자, 시공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력 정치인의 주택·외교 공관 등으로 활용된 건물 • 미국식 빅토리안 양식을 잘 유지한 역사지구 내 위치한 역사적 건축물
	국외 소재 유산	• 대한제국기 외교 공관으로 대한제국 공사 관련 기록을 통한 역사적 가치 입증 가능 • 국외사적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보존·복원한 최초의 사례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양국 간 교류의 역사를 엿볼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입하여 역사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동일 역사지구 내에 위치한 주변 역사적 건축물과 연계 가능	

출처: 문화재청. (201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보고서. p.8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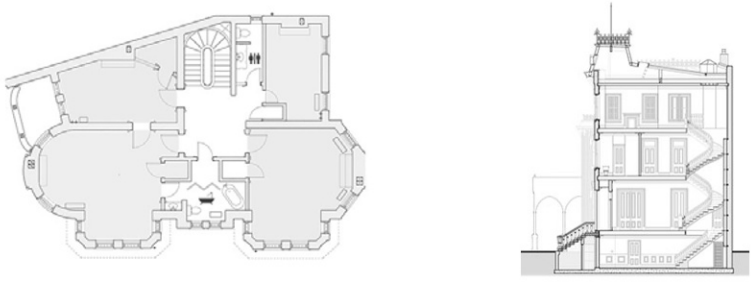
- 건축개요 및 연혁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1877년 지어진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벽돌 및 목조 구조로 된 건물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1877년 미 해군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 세스 L. 펠프스(Seth L. Phelps)의 저택으로 건립되었으며, 1889년부터 〈주미대한제국공사관(당시 주미조선공사관, 1897년부터 명칭 변경)〉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업무 정지 및 1910년 미국인에 매각된 이후 1940년대부터 군인 레크리에이션 센터, 화물운송노조 사무소, 주택 등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건물을 되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10월 공사관 건물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입[81]하였다. 이후 정밀실측 및 조사, 복원 등을 거쳐 2018년 5월 역사전시관으로 개관하여 일반에 공개되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유산이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에 위탁하여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매입 이후 정밀실측과 조사, 복원[82]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5월부터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물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1, 2층은 원형을 복원하여 재현 전시품을 설치하고, 원형이 훼손된 3층은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변천사 및 한미외교사 관련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지하층은 아카이브 및 관리·운영 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1972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위치한 로건 서클 일대가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로 지정되어, 공사관 건물 또한 역사적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도면(현재) (좌: 2층 평면(공사 침실, 집무실, 사무공간, 서재), 우: 입면) (출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



81) 국외사적지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매입에 나서 성공한 첫 번째 사례이다.

82) 공사관 보수 및 복원의 근거자료로는 사진자료, 현지 신문·잡지 기사내용, 공문서 등이 있다. 예로, 1893년 시카고 박람회 전 30여 개국 공사관을 소개한 기사('Demorest's Family Magazine, 1893.7),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 소장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 등이 주요하게 활용되었다.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주미대한제국공사관. p.10.)

외관 (좌: 1893년, 우: 현재) (출처: (좌)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 (우)연구진 촬영.)





1층 객당 (좌: 1893년, 우: 현재) (출처: (좌)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 (우)연구진 촬영.)





1층 홀 (좌: 1893년, 우: 현재) (출처: (좌)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 (우)연구진 촬영.)





[그림 3-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련 사진

출처: 각 사진 출처 참고;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https://oldkoreanlegation.org/preview/introduce/, 검색일: 2023.07.26.); 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사진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에서 자료 제공; 이외 사진은 연구진 촬영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소재국(미국)과 한국 간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관 건물이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재국(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소재국(미국)에서는 19세기 미국의 유력한 군인·정치인·외교관이었던 세스 L. 펠프스(Seth L. Phelps)가 건립하고 머물던 주택이자, 미국식 빅토리안 양식 외관을 잘 유지한 역사적 건축물로 현재 역사 지구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등 소재국(미국)에서 그 유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9세기 대한제국의 외교 공관으로 사용되어 한-미 양국 간 교류를 엿볼 수 있고 설계자와 시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점도 해당 건물의 유산적 가치를 증명한다. 이에 더해 미국 헌팅턴 보고서 내 1893년 사진 기록, 박정양 등 공사관에 머물렀던 대한제국 공사 관련 기록(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 미사일록 등)이 남아 있어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하다.

이렇듯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소재국(미국), 한국 양국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유산이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매입하여 조사 및 복원을 마치고 역사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역사지구 내 주변 역사적 건축물과 연계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공유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건 서클 역사 지구 일대에는 역사적 건축물의 소유주 자치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어 지구 내 건축물의 공동 관리, 정례 행사 등의 공동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다.[83]

8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 조사 내용 참고. 2023.07.08.

□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표 3-27]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900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내셔널 몰 내) • 건축연도: 1995년 (추모의 벽: 2022년) • 구성: 19명 미군 조각상, Wall of Remembrance(추모의 벽), Pool of Remembrance(기억의 연못)로 구성된 기념공원	
연혁	1986	• 한국전 참전용사회(KWVA)를 중심으로 기념비 기금 마련 운동 진행 • 10월 28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안」 법제화로 기념비 조성 근거 마련
	1995	• 기념비 완공 및 국가 사적지로 등재
	2016	• 「추모의 벽(Wall of Remembrance)' 건립 법안」 통과 • 국가보훈처 지원 및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KWVMF)이 건립 추진
	2022	• 7월 27일 추모의 벽 건립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미국 내셔널 몰(National Mall), NPS 국가사적(National Park Service
	용도	• 기념공원(기념비 및 추모의 벽 포함)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국가 사적지로 등재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미국의 참전용사 대상 보훈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기념비
	국외 소재 유산	•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미군이 함께 참여하였음을 기념하는 유산 • 미국의 상징적 공간(내셔널 몰) 내 위치한 한국 관련 기념비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내셔널 몰에서도 주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타 국가 및 인종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축물·공간 등과 장기적으로 상징적 공유유산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지님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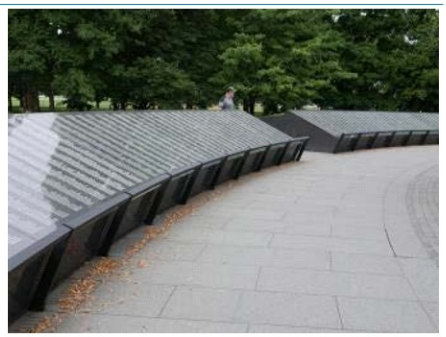
- 건축개요 및 연혁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의 기념공원으로, 19명의 미군 조각상, 추모의 벽, Reflecting Pool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한국전참전용사회(KWVA)를 중심으로 기념비 기금 마련 운동이 진행되고 당해 10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법(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이 통과되면서 기념비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5년 미군 조각상, Reflecting Pool이 완공되며, 완공 당일 국가사적지로 등재되었다.

2016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에 관한 법안(H.R. 1475,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Act)」이 통과되면서 한·미 양국 정부 및 각계의 지원[84]으로 토대로 2022년 추모의 벽이 추가로 건립되어, 기존의 기념비와 추모의 벽을 포함한 현재 기념공원의 모습을 갖추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미국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위치하며, 미국의 문화유산 지정·관리 기관인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NPS)에서 소유·운영하고 있다. 1995년 7월 27일 완공식 당일 국가 사적으로 등재되었다.

도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미국 조각상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추모의 벽**
	

[그림 3-10]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관련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84) 건립 예산 274억 원(약 2,420만 달러) 중 266억 원을 당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건립사업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 재향군인회, 한국 기업, 국민 성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출처: 경향신문. (2022). 미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성…한·미 전사자 4만 명 이름 각인. 2022.07.27.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71105001#c2b (검색일: 2023.11.20.))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한국전쟁 당시 한·미 양국이 함께 참전하였음을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재국(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이 유산은 〈베트남 참전용사 메모리얼(Vietnam War Veterans Memorial)〉과 함께 20세기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를 기념하는 미국의 참전용사 대상 보훈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기념비로 손꼽힌다.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내셔널 몰 링컨 메모리얼(National Mall Lincoln Memorial) 전면부에 위치한다. 또한,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한국군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국외소재 유산으로서의 기념비적 가치가 높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완공식 당일 국가 사적지로 등재되어 소재국(미국)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1995년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한 National Mall(내셔널 몰)이라는 상징적 공간 중에서도 Lincoln Memorial(링컨 메모리얼)의 전면부라는 주요한 자리에 입지한 점, 워싱턴 내셔널 몰 내 타 국가 및 인종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축물 및 공간(국립 흑인아프리카박물관, German-American Friendship Garden)과도 연계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상징적인 공유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 LA 흥사단소 (LA Young Korean Academy Headquarters)

[표 3-28] LA 흥사단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3421-23 S. Catalina Street, Los Angeles, CA 90007, USA • 건축연도: 1910년 (증축 1925년) • 구조: 목조 및 콘크리트	
주요 연혁	1910	• 준공
	1913	•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8도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흥사단 발족
	1915	• 흥사단 LA 이전
	1932-45	• 매입 및 현 위치로 흥사단 본부 이전
	1979	• 매각 및 용도 변경(개인 주택, 임대주택)
	1994	• 흥사단 단소 관련 유물, 집기, 자료 등 독립기념관에 기증
	2020	• 현 소유주 매입
	2021	• LA시 문화유산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ssion, CHC)가 흥사단 단소를 역사-문화기념물로 고려중인 잠정 자산으로 선정
	2023	• 국가보훈처 매입 • LA시 역사·문화기념물(제1274호)로 지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주체: 국가보훈처 • 운영·관리 주체: 한미유산재단(KALF)
	용도	• 미정 (전시관,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유산 지정 여부	• LA시 역사·문화기념물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이민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안창호)과 관련된 장소 • 1900년대 초 주거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관리
	국외 소재 유산	•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운동의 거점지이자 흥사단·도산 안창호와 관련되어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 • 국가보훈부에서 매입 후 공유유산으로 활용을 꾀하고 있어 국외사적지의 매입 후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흥사단·도산 안창호와 관련된 양국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 제시 가능 • 도산 안창호 관련 연구기관, 재단 등과 협력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제시 가능 • 국외사적지 매입 후 공유유산으로 활용하는 전략 제시 가능	

출처: Los Angeles Conservancy. 'Hung Sa Dahn'. https://www.laconservancy.org/learn/historic-places/hung-sa-dahn/ (검색일: 2023.11.11.); 폴리스 TV. (2023). 국가보훈처, 철거위기에 놓인 미국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단소) 매입. 2023.02.05.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3 (검색일: 2023.11.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개요 및 연혁

〈흥사단소〉는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활용되었다. 이후 미주위원회로 개칭하고 1979년까지 미주 한인들의 교육 및 사회활동,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재정난으로 1979년 매각, 개인주택, 임대주택 등의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이후 2020년 민간 법인(Tripalink, 중국계부동산법인)이 재개발 용도로 매입하여 철거 위기에 놓인 것을 계기로 LA 현지 독립운동 관련 단체(흥사단,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흥사단 단소 구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관리단,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역사보존협회(APIAHP)와 같은 미국 현지의 역사보존 시민단체가 LA시 역사·문화기념물(LA Historic Cultural Monuments)로 신청해 부동산회사의 건물 철거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사적지 등록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흥사단소를 매입하였고, 2023년 2월 28일 LA 시 의회(Los Angeles City Council's Planning and Land Use Management (PLUM) Committee)에서 흥사단 옛 본부 건물(3421 S. Catalina St.)에 대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LA시 역사문화기념물(제1274호)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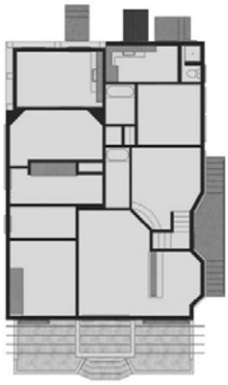
- 관리 및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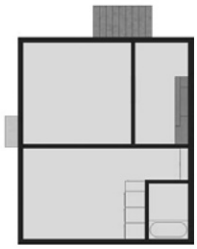
〈흥사단소〉는 2023년 국가보훈처에서 매입 후 한미유산재단(KLAF)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현재는 〈흥사단소〉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내외부 안정화 작업, 건축물 기록화 및 실측 작업, 용역 등을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 15일 개관 예정이다.

본관, 별관 등으로 구성된 건물의 구성을 고려해 본관은 전시관, 자료실, 열람실 등의 기념 공간으로 활용되고, 별관은 다용도 행사, 모임 공간 등 지역사회 교류의 장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85]

85)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국가보훈부. (2023). LA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연구 과업제안서.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도면(현황) (좌: 본관 1층 평면, 우: 별관 1층 평면)
(출처: 국가보훈부. (2023). LA 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연구 과업제안서. p.8.)





배치 및 본관 전경 (출처: 국가보훈부. (2023). LA 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연구 과업제안서. p.7.)



흥사단 회의 기념사진(1937)
(출처: Los Angeles Conservancy. 'Hung Sa Dahn'. https://www.laconservancy.org/learn/historic-places/hung-sa-dahn/ (검색일: 2023.11.11.))



외부 전경(현재)
(출처: Heritage Smart Consulting Group(외부연구진) 제공자료.)



[그림 3-11] 흥사단소 관련 사진
출처: 각 사진 출처 참고.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흥사단소〉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재미 한인 단체이자 한인 애국 조직인 흥사단의 본부 건물로 사용되었다. 또한 LA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사회·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이민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소재국(미국)에서는 이민사적 가치,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관리[86]되고 있고, 건물 매각(1979년) 당시와 현재 건물을 비교했을 때 약간의 외관 변경 외에는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건축적 가치도 지닌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되어 그 가치가 깊은 장소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2월 국가보훈부에서 〈흥사단소〉를 매입하고 안정화(보수), 실측 등을 거쳐 활용 방안을 수립 중이다[87].

따라서, 〈흥사단소〉는 아시아계 미국 이민사적 가치, 도산 안창호, 흥사단 등 역사적으로 주요한 인물·사건과 연관된 장소로 양국에서 가치가 높은 장소임을 고려할 때 공유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양국의 도산 안창호 관련 유·무형 문화유산 및 관련 단체와 연계하는 공유유산 전략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외사적지 매입 후 공유유산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 새롭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 가능한 관련 유산으로는 '도산 안창호 우체국 명칭', '도산안창호 기념 도로(인터체인지)', 'USC 한국학연구소',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사적 및 도산 안창호 기념동상', '대한인국민회총회관' 등이 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도산 안창호 기념재단'과 같은 국내 관련 단체와도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연구·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흥사단소〉는 인종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소재국(미국)의 정책 기조와 미국 내 도산 안창호·흥사단 관련 문화유산과 연계 가능성이 높고 이민사적 상징성을 고려할 때 향후 주 또는 연방 사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사적으로 상향 등재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역사 건물 법규(California State Historical Building Code) 대상이 되어 행정적 지원[88] 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용이하게 건물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수행할 수 있다.

86)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Recommendation Report: Cultural Heritage Commission(Case number: CHC-2021-5125-HCM).

87) 국가보훈부에서 'LA흥사단 단소(옛 본부 건물)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이다.

88) 국가역사장소(NRHP)로 지정되었거나 국가 역사지구의 경관에 기여하는 역사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LA시에 위치한 자산의 경우, 역사 보존 적용 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역사 자산의 보존, 복원 등과 관련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 서재필기념관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

[표 3-29] 서재필기념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100 E Lincoln St, Media, PA 19063 • 건립연도: 1925년(추정, 서재필 거주 시작) • 구조: 지상 3층 본관 1동, 별관 1동	
연혁	1925-84	• 주택으로 활용(독립운동가 서재필과 가족 거주)
	1990	• 서재필기념관으로 단장 및 개관(11.24.)
	2004	• 한국 독립기념관 연계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전시 콘텐츠 구성
	2020	• 재미한인 2세 및 3세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관련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제공 • 2018년 정부 지원으로 재단장 후 2020년 재개관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건축물: 서재필기념재단 • 외부 자연녹지: 미디어 시(City of Media)
	용도	• 역사전시관, 교육·워크숍 장소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한국계 미국인 관련 이민사 측면 및 소재국(미국)에서도 개화사상가 및 독립운동가로 인식되는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의 주택 • 현재 역사전시관으로 활용 중인 건물
	국외 소재 유산	• 대한민국의 주요 독립운동가이자 근대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서재필)의 주택이자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운영 주체(서재필기념재단)의 활용·관리 기관으로서의 높은 협력 가능성 • 미국의 3.1운동(제1차 한인의회) 관련 유적(필라델피아 리틀 극장, 독립 국가 역사 공원)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가능 • 미국 독립 성지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점, 1994년 펜실베이니아 역사박물관 위원회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안내판이 헌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지 역사자산 등재 추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개요 및 연혁

〈서재필기념관〉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하며 1925년 건립(추정)된 주택으로, 지상 3층 규모이며 본관 및 별관 각 1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5년부터 1984년까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의사인 서재필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며, 서재필과 그 가족이 이주하기 전 초기 건립 연도나 거주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1951년 서재필 사후에는 그의 자손들이 거주하다가 미디어 시(City of Media)에 녹지를 기증하면서 주택 주변에 녹지와 정원이 조성되고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0년 11월 24일 〈서재필기념관〉으로 단장 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개관 이후에는 서재필 및 미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적 콘텐츠를 제공하며, 재미 한인 2세 및 3세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재필 등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던 2019년 미국 필라델피아 제1차 한인회의 개최 100주년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등, 미국 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전시관 및 콘텐츠 노후화로 이용객의 불편이 있었으나,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재단장을 거쳐 2020년 재개관하였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서재필기념관〉의 건축물과 외부 자연녹지 소유·운영주체는 각각 서재필 기념재단(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89]과 미디어 시(City of Media)이다.

〈서재필기념관〉은 House Museum 형식의 역사전시관으로 주로 활용되며,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장소로도 이용된다. 전시관의 주요 콘텐츠는 2004년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의 연계 및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언론인이자 최초의 미국 내 한인 의사 및 미국 내 한인 1호 시민권자로서의 서재필과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서재필기념관〉의 주변 녹지와 경관의 경우 미디어 시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건물에 대해서는 소재국(미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바는 없다.

89) 기념관(건축물) 관리·운영 주체인 서재필 기념재단(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은 미국 내 첫 한국인 의사였던 서재필을 기념하는 재미 한인 대상 의료봉사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 한인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의료봉사 및 자선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서재필기념관 전경 (출처: 연구진 촬영.)



서재필기념관 내부 전시 (출처: 연구진 촬영.)



2019년 제1차 한인회의 100주년 기념식 당시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위) 및 성삼위교회(아래) 모습
(출처: 서재필기념재단 제공 자료. 2019년 4월 14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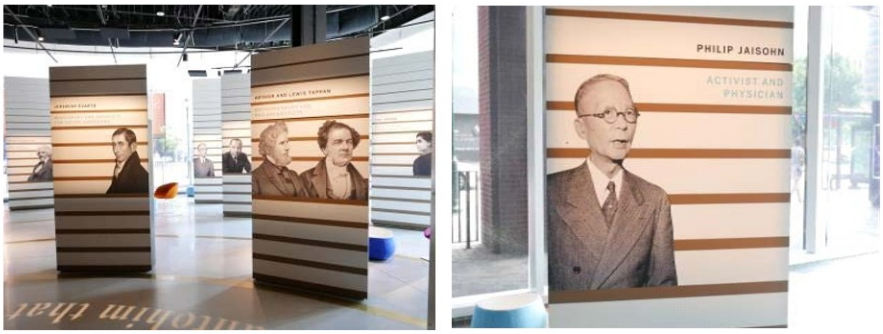


[그림 3-12] 서재필기념관 관련 사진
출처: 각 사진 출처 참고.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서재필기념관〉은 한·미 양국에서 독특한 이력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인물(서재필)과 관련된 유산으로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먼저, 소재국(미국)에서 서재필은 첫 한국인 시민권자이자 의사로, 한국계 미국인 관련 이민사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인물이다. 최근 설립된 필라델피아의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90]에서 미국의 기독교적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로 에이브러햄 링컨, 마틴 루터 킹,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서재필을 다루는 등 개화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인식되고 있어 소재국(미국)에서 〈서재필기념관〉이 갖는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재필은 주요한 독립운동가이며 갑신정변, 독립협회 설립, 독립신문 발간 등 근대사의 주요 사건의 중심인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물이 거주했던 주택이자 관련한 역사적 내용을 전시하는 건물로 활용되고 있는 〈서재필기념관〉은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림 3-13] 필라델피아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 내 서재필 소개 패널
출처: 연구진 촬영.

〈서재필기념관〉은 한·미 양국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서재필의 이력 및 주변 역사적 건물과의 연계 가능성, 운영 주체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 가능성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현재 역사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재필의 한·미 양국에서의 독특한 이력 등 공유유산적 가치를 부각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필라델피아 내 독립운동과 연관된 장소와 연계하거나, 필라델피아가 소재국(미국)에서 갖는 미국 독립의 성지로서 지니는 장소적 의미를 고려하여 역사적·정치적·문화적으로

90) 신앙과 자유 디스커버리 센터(Faith & Liberty Discovery Center)는 미국 성서회(American Bible Society)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2021년 2월 개관한 역사박물관으로, 미국의 건국자, 노예 폐지론자, 참정권론자, 시민권 운동가를 기념하고 이들에게 성경(신앙)이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룬다. (출처: 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 홈페이지. https://www.faithandliberty.org/about/(검색일: 2023.10.17.))

연관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에는 1919년 제1차 한인회의가 개최된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The Little Theater/현 플레이 앤드 플레이어스 극장(Plays and Players Theater))', 행사 후 거행된 기념 행진의 종착지였던 '독립기념관 국립역사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 Park)' 등이 있다. 특히 독립기념관 국립역사공원은 미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국립사적지(NRHP), 랜드마크(Landmark)로 지정되어 있어 스토리텔링 연계 시 〈서재필 기념관〉의 유산적 가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재필기념관〉 건물에 1994년 펜실베이니아 역사박물관 위원회(Pennsylvania Historical and Museum Commission)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안내판(Historic Marker)이 헌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추후 현지 역사 자산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도 평가된다. 현지 역사 자산으로 등재될 경우, 관련 보호제도를 적용받아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소재국(미국)에서 〈서재필기념관〉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기념관의 관리·활용에 있어 현재 운영 주체(서재필 기념재단)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향후 〈서재필기념관〉이 공유유산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 공간을 조성하거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근 지역(필라델피아)의 서재필 관련 사적지와 연계한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확장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재국(미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추가적인 공간(기념관, 기념공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서재필기념관〉은 필라델피아시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미디어시 외곽에 위치하며, 차량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접근성 측면의 개선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 USC 한국학연구소 (Dosan Ahn Chang Ho Family House)

[표 3-30] USC 한국학연구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809 W 34th St, Los Angeles, CA 90089 • 건립연도: 1910년대 추정 (안창호 가족 1935~1947 거주) • 구조: 지상 2층	
연혁	1910년대	• 건립 (McKlitock Ave. 위치)
	1935-47	• 도산 안창호의 가족 거주 • 흥사단 관계자 및 대한인국민회, 지역 내 한인 모임장소 등으로 활용
	1965	• USC 대학에서 주택 매입 후 공과대학 연구실로 활용
	2004	• 현재 위치로 건물 이전
	2006	• 한국학 연구소로 활용 중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운영: USC 한국학연구소
	용도	• 연구소, 교육기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LA시 역사·문화기념물(Los Angeles Historic-Cultural Monument)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미국 내 첫 한인 이민자 부부가 거주한 주택'이라는 역사적 의미 • 1900년대 초 주거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로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2004)
	국외 소재 유산	• 도산 안창호의 가족이 살았던 주택 • 한국 관련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는 USC 한국학연구소로 활용 중이며, 매입 후 건물의 가치를 인정하여 그대로 이전·보존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를 수행하는 현재의 기능에 주목하여 공유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교육 기능 강화, 관련 기관과 연계)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USC 한국학연구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으로, 1910년대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의 가족[91]이 1935년부터 1947년까

91) 당시 도산 안창호는 상하이 및 국내에서 임시정부 활동 및 독립운동으로 가족과 헤어져 있었고 국내에서 1938년 작고했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는 안창호를 제외한 가족(부인 이혜련 여사, 자녀 안필립·안필선·안수산·안수라·안필영)이 거주하였다. USC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 조사 내용 참고. 2023.07.13.

지 거주한 주택이다. 안창호의 가족이 거주했던 기간에는 한인타운 지역(McKlintock Ave.)에 위치했고 흥사단 관계자 및 대한인국민회, 지역 내 한인들의 모임 장소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65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부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주택 매입 후 공과대학 연구실로 사용해 오다가 2004년 건물의 역사적 가치(1900년대 초 LA 건축 양식 보존, 첫 한인 이민자 부부의 주택 등)를 인정받아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후 USC 대학은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현 위치로 건물을 이전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USC 한국학연구소로 사용 중이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USC 한국학연구소〉는 현재 미국 남가주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대학에 소속된 USC 한국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교육기관이다. 연구소 내부 공간은 주로 USC 내 한국 관련 워크숍 및 특강 공간으로 활용되고, 한국 및 아시아계 미국인(Asian-American)과 관련된 주제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된다.[92] 또한 소재국(미국)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LA시 역사·문화기념물(Los Angeles Historic-Cultural Monument(HCM))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USC 한국학연구소〉는 한·미 양국에서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다. 소재국(미국)에서는 2004년 건물 이전 및 연구소로 기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건축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도산 안창호라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공간이자, 흥사단 및 대한인국민회 등 역사적 사건(단체)과 관련된 장소였다는 점에서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도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USC 한국학연구소〉는 이러한 양국에서의 가치를 살려, 현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한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유유산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현재 〈USC 한국학연구소〉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UCLA 동아시아 연구소, 미시간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등과

92) 학부 월 1회, 대학원 주 1회 한국 관련 강의와 워크숍이 실시되며, 특히 대학원의 경우 논문 세미나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K-POP과 영화 등을 비롯해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관심이 커져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USC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 조사 내용 참고. 2023.07.13.

공동으로 봄학기마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미국 내 타 대학의 Korea Heritage Library와 소장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점[93]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국 관련 교육·워크숍 프로그램 기능을 보다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SC 한국학연구소 전경









USC 한국학연구소 내부





[그림 3-14] USC 한국학연구소 관련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93) USC 동아시아 도서관에는 Korea Heritage Library가 있는데, 같은 이름의 소장처가 미국 내 여러 대학에 위치하며 대학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USC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및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자료가 주로 소장되어 있어 한국학연구소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USC 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및 현지 조사 내용 참고. 2023.07.13.

□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Korean National Association Building)

[표 3-31]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1368 W Jefferson Blvd, Los Angeles • 건립연도: 1938년 • 구조: 지상 1층, 단층 구조
연혁	1938	• 4월 17일 기념관 건물(당시 대한인국민회 LA 총회관) 신축
	1978	• 대한인국민회가 해체되면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
	1991	• LA시 정부에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건물(Korean Independence Memorial Building)로 명명, 사적 제548호 지정
	2013	•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전시실 개관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 운영: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용도	• 역사전시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LA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 (1991)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이민사적 가치를 지님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
	국외 소재 유산	•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이자 「신한민보」 발행 기관 등으로 사용된 역사적 장소 • 미주 한인 이민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LA시 내 위치한 도산 안창호 관련 국외사적지(USC 한국학연구소, 흥사단소 등)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 수립 가능 • 활용 시 인접 필지(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도산 안창호 광장 등)와 연계한 공간 구성 및 활용 전략 계획 수립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은 1938년 4월 17일 재미 한인 동포들의 성금으로 대한인국민회[94]의 총회관으로 건립되어 「신한민보」 발행처, 국어학교, 대한여자애국단 본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본부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1978년 대한인국민회가 해체되면

94)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주 지역의 여러 한인 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 본래 총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다. 1921년 하와이 지방 총회가 중앙 총회에서 이탈한 후 샌프란시스코 중앙 총회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1937년 김호, 김형순, 최진하 등을 주축으로 대한인국민회가 활성화되었다. 독립운동사적지 관련 전문가 자문 내용 참고. 2023.11.29.

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에 매각되었다. 이후 1991년 LA시 정부에서 '대한민국 독립기념건물(Korean Independence Memorial Building)'로 명명하고 LA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 제548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2002년 11월 12일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서 '대한인국민회 복원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3년 12월 9일 현재의 전시실을 갖춘 기념관으로 개관하였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1978년 대한인국민회 해체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역사전시관으로 활용되었는데, 국내 독립기념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2개 전시실(미주 한인의 이주와 정착, 국권회복운동, 대한인국민회 성립과 활동, 독립운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 신한민보실(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한 「신한민보」 인쇄기기 등을 전시), 영상실(대한인국민회 활동 내용 상영) 등으로 구성된다. 1991년부터 LA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외부 및 내부 전경



[그림 3-15]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관련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은 미주 최대의 한인 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총회관으로 이용되었던 건물로 한·미 양국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유산이다.

먼저, 소재국(미국)에서는 미주 최대의 한인 단체 총회관으로 이용되었다는 이민사적 가치를 지니며,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어 공식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국에서는 미주 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신한민보」 등의 발행 기관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현재는 도산 안창호의 유품과 기록물을 포함한 미주 한인 이민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유물들의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외소재 유산으로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이렇듯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은 여러 역사적, 이민사적 가치를 갖는 국외소재 유산으로, 향후 인접한 국외 사적지(도산 안창호 관련 유적 등)와 연계한 활용 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및 도산 안창호 광장 등의 국외사적지와는 필지가 바로 붙어 있어, 해당 유산들과 함께 활용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LA 시에는 도산 안창호라는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국외사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USC한국학연구소, 흥사단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로명(10&110 Freeway Interchange Los Angeles), 건물명(Dosan Post Office, Los Angeles), 차량으로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인접한 리버사이드 시에도 도산 안창호 관련 유산으로 파차파 캠프, 도산 안창호 동상 등이 위치해 있어, 관련 사적지와 연계한 공유유산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도산 안창호 광장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그림 3-16]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인근 국외사적지
출처: 연구진 촬영.

□ 한미 우정의 종각 (Korean Friendship Bell)

[표 3-32] 한미 우정의 종각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 건립연도: 1976년 • 구조: 단층 종각 구조 (높이 3.63m. 둘레 7.25m, 무게 17톤)	
연혁	1976	•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LA시에 선물
	1978	•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LA시
	용도	• 종각 구조물, 관광지 및 한인 관련 행사 개최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LA시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 (1978)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 •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일한 한국 전통 양식의 종과 전각
	국외 소재 유산	• 한국 전통 건축 양식 및 종의 특징이 잘 드러남 • 한미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유산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며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일한 한국 전통 양식을 사용한 종과 전각으로 국가 사적 등재 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 • 단,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리 등 유지·보수 방안 마련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한미 우정의 종각〉은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LA시에 선물한 종[95]과 단층의 종각으로, LA시 남부 San Pedro 바닷가 언덕에 위치한다. 건립 직후 1978년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Cultural Monument)로 지정되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LA시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국외사적지로 종각이 위치한 곳은 관광지 및 한인 관련 행사 개최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미 우정의 종각〉에서는 미국 독립기념일과 한국 광

95)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을 복제하여 만든 것으로, 주석, 동, 금, 은, 인을 섞어 주조되었으며 높이 3.63m. 둘레 7.25m, 무게 17톤이다. 현지 조사 시 안내판 내용 참고. 2023.07.15.

외부 및 내부 전경



[그림 3-17] 한미 우정의 종각 관련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복절, 새해 전야 등에 타종 행사가 개최되며, 이외 여러 한국 관련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는 등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소재국(미국)에서는 1978년 LA시 역사·문화기념물 제187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한미 우정의 종각〉은 한-미 간 정치·군사적 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미 양국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이다. 소재국(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건립된 유일한 한국 전통 양식의 종과 전각으로 사적으로 지정·관리되며, 향후 국가 역사 장소로 상향 등재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종과 종각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건조 방식이 잘 드러나고, 현판을 국내 유명 서예가가 작성하는 등 건축적·예술적 가치도 높아 대한민국의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도 가치가 높다.[96]

이 유산은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 소재국(미국)의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향후 국가사적으로 상향 등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97] 등을 고려할 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립 50주년이 되는 2026년부터 국가 사적 등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재국(미국) 내 국가 역사 장소 등록을 위한 연구 등 지속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단,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 언덕에 위치하여 부재 파손의 위험이 있지만 전통 건축 관련 장인의 동원이 쉽지 않은 현지 여건[98]을 고려하여,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96) 현지 조사 결과 참고. 2023.07.15.

97)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례로,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상향 등재 추진 시 '국가적 중요성' 진술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8) 과거 LA한국문화원에서 관련 예산을 교부받아 수리 작업을 진행한 바 있으나 대체로 일회성 수리에 그쳤다. 현지 조사 및 관계자 면담 결과 참고. 2023.07.15.

□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표 3-33]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7233 State Highway 162, Willows, CA • 건립연도: 1920년 • 구성: 건물 3동 및 활주로 터
연혁	1920	• 상해 임시정부 노백린 장군, 재미실업가 김종림이 건립한 최초의 비행학교이자 독립군 비행사 양성소, 군사시설 등으로 건립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기능
	2018	• 미국 국립공원청(NPS)이 실시한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에서 한인 이민 유산 중 유일하게 잠정 목록에 선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County of Glenn (창고: 개인(미국인) 소유) • 운영: 윌로우스 항공 기념 재단(Willows Air Memorial Foundation)
	용도	• 유적(창고 및 터만 남아 있음) • 기념관 사업 진행 중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미국 내 아시아 이민 유산 중 가장 독특한 역사 배경 및 중요성을 가진 유산으로 평가(2018년 NPS 국가 랜드마크 잠정목록 선정)
	국외 소재 유산	• 대한민국 공군의 모태이며 한국광복군 비행사를 양성한 독립운동 주요 거점 지역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님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현재 기념관 사업(운영·관리 주체(윌로우스 항공 기념재단) 진행) 및 연구용역(국립항공박물관 수행) 등이 진행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가치 평가 등을 거쳐 활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음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상해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과 쌀농사로 거부가 된 재미실업가 김종림이 1920년 캘리포니아주 글렌 카운티(County of Glenn)에 건립한 학교[99]로,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모태[100]가 되는 최초의 비행학교이자 독립

99) 글렌 카운티(County of Glenn)는 비옥한 쌀농사가 가능했던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수많은 한인이 이주한 지역이며,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기업형 쌀농사로 성공한 이주 노동자 김종림은 항공 학교 부지의 임대, 항공기 구매, 항공학교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임종현. (2022). 미국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pp.228, 232.

100) 교육생 중 박희성, 이용근은 임시정부의 육군 비행병참위(비행장교 1호)로 임관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로 평가된다. 임종현. (2023). 한국 최초의 비행학교,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 월간 독립기념관 2023년 2월호.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i815/sm-75/pt-post/nd-811(검색일: 2023. 10.10.)

군 비행사 양성소로 기능하였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비행사들은 한국광복군의 공군 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현재는 창고(건물 3개 동) 및 활주로 터만 남아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글렌 카운티(County of Glenn)에서 창고를 제외한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창고 건물은 개인 소유의 가족 물품창고로 쓰이고 있다. 현재 창고 및 터만 남아 있으나, 기념관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윌로우스 항공 기념재단(Willows Air Memorial Found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재국(미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는 없으나, 미국 국립공원청(NPS)이 2017년 실시한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에서 한인 이민 관련 유산 중 유일하게 잠정 목록에 선정되는 등 그 가치를 비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101]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재미 독립운동의 거점지이자 향후 잠재적 중요성을 인정받는 유산으로 한·미 양국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표 3-34] 미국 NPS 국가사적 잠정목록 중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관련 내용

NHL 등재 시 가치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역(Potential Areas of Significance)
Criterion 1: Events	항공 사회사(Aviation Social History)

출처: National Park Service. 'National Historic Landmarks: Eligibility'.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historiclandmarks/eligibility.html (검색일: 2023.10.31.); Odo, Franklin (ed.). (2016). *Finding a Path Forward*: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National Historic Landmarks Theme Study. pp.388를 참고하여 연구진 번역·작성.

2017년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s(NPS))에서 작성한 주제 연구 보고서(Theme Study)에서 한인 이민 관련 유산 중 유일하게 잠정 목록에 선정되는 등 소재국(미국)에서는 미국 내 아시아 이민 유산 중 가장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을 간직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 유산의 가치가 국가 역사 유적의 가치 중 항목 1(Events)에 해당하고, 향후 항공 사회사(Aviation Social History) 분야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라고 평가한다[표 3-34].[102]

101) Odo, Franklin (ed.). (2016). Finding a Path Forward: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National Historic Landmarks Theme Study. pp.383-389.

102) 기준 1(Criteria 1): 미국 역사의 폭넓은 국가적 흐름(경향)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기여를 한 속성들로, 미국 역사의 주요 사건 또는 주요 흐름과 관련된 속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속성은 미국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양식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 중 하나를 가져야 한다. 기준 1을 사용한 제안은 또한 해당 주요 역사적 사건 또는 흐름과 관련된 다른 속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

비행학교 교사(校舍)의 경우, 글렌 카운티 초창기 공립학교 중 이태리 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로 해당 지역의 교육사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모태가 된 곳이자 한국광복군의 비행사를 양성한 재미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활주로 터와 관련 건물 등 원형이 일부 남아 있어 국외소재 유산으로서 가치를 더한다.[103]

건물 및 활주로 터 전경



[그림 3-18]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관련 사진

출처: 미주독립운동유적지.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https://ytvamericadocu.wixsite.com/mysite/berkeley (검색일: 2023.08.22.)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소재국(미국)에서도 국가 랜드마크 잠정목록 대상으로 인식되고 현지의 기념사업 및 연구용역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단,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관리 주체가 진행 중인 기념관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한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현재 윌로우스 항공 기념재단이 시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기념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관련 연방 사업 검토(Section 106) 시행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현지 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연구를 위해 국가보훈부가 확보한 대상 유산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후 남아 있는 건물과 주변 비행장 부지를 대상으로 1920년 건립 당시의 형태 및 관련 역사 자원의 완전성(integrity)에 관한 심화 연구와 향후 국가 랜드마크 등재를 위한 가치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해야 하며, 이는 제안된 속성이 다른 속성에 비해 특정 역사적 사건 또는 흐름과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갖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National Park Service. 'National Historic Landmarks: Eligibility'.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historiclandmarks/eligibility.html(검색일: 2023.10.31.) 참고.

103) 임종현. (2022). 미국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227-266 참고.

2) 유럽

□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Isang Yun Haus)

[표 3-35]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Sakrower Kirchweg 47, 14089 Berlin • 건립연도: 1971 인수, 2009-2011 재건축 • 구성: 지상 2층 주택 및 마당	
연혁	1971	• 윤이상이 해당 주택 인수, 주택 및 작곡 공간으로 이용 • 1975년 초부터 1995년 사망 전까지 거주
	2008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윤이상 평화재단'이 건물 인수
	2009-2012	• 재건축(2009-2011) • 재건축 이후 윤이상 관련 행사 개최 공간 등으로 활용(2011-2012)
	2015	• 폐쇄
	2017	• 문재인 대통령 내외 통영시의 동백나무 기증(마당 위치)
	2018	• 재개관 • 현재 윤이상 관련 전시, 작가 레지던스, 전시·공연 공간으로 활용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윤이상평화재단 • 운영·관리: 국제윤이상협회
	용도	• 기념관, 작가 레지던스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현대음악의 큰 획을 그은 작곡가 윤이상이 거주하고 생을 마감한 공간 • 현재 베를린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역할
	국외 소재 유산	• 한국 출신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거주지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현재 기능(작가 레지던스, 기념관)을 활용한 교류 프로그램 가능 • 윤이상을 매개로 통영 베를린 하우스(2017)와 연계하여 베를린-통영 간 교류 가능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으로, 1971년 윤이상이 인수하여 1995년 타계할 때까지 거주한 장소이다. 2008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윤이상 평화재단'이 인수하여 2009년부터 2년간 재건축을 거쳐 기념관으로 개관하였고, 2011년, 2012년에 윤이상 관련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장소로 활용하였다.[104]

그러나 2012년 이후 윤이상 평화재단에서 유지가 어려워 부분적으로 비워지다 2015년 완전히 폐쇄하였다. 2017년 7월 5일 대통령 내외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영시의 동백나무를 기증하기도 하면서 국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20일 윤이상 평화재단과 정진헌 박사[105]의 주도로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윤이상 관련 전시·공연 공간 및 작가 레지던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윤이상 평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국제윤이상협회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2018년 재개관 이후에는 기념관 및 작가 레지던스로 활용되고 있다. 소재국(독일)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는 없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의 거주 장소라는 점에서 한국과 소재국(독일) 양국에서 가치를 지닌다. 소재국(독일)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음악의 주요 작곡가 윤이상이 거주하였고 생을 마감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현재는 예술인들의 레지던스로 사용되어 규모는 작지만 베를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가 거주했던 장소이며, 윤이상의 출신지 경남 통영에 세워진 베를린 하우스(윤이상 음악 도서관)와 연계가 가능한 문화·외교적 장소로서도 의미가 있다.

---

104) 2011년 9월 17일 "한국을 읽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국제 윤이상 협회 행사 시리즈) - Read Korea. On Korean History and Culture" (a series of events of the Int. Isang Yun Society)"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2년까지 윤이상의 작품 공연이 동반된 6회의 행사가 열렸다. 국제 윤이상 협회(Internationale Isang Yun GESELLSCHAFT E.V.) 홈페이지. https://yun-gesellschaft.de/yun-haus-berlin/ (검색일: 2023.10.20.) 참고.

105) 현재 (재)윤이상평화재단의 베를린 지부장 겸 윤이상 하우스 운영관장 및 베를린자유대학교 연구교수를 맡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 인터뷰 365. (2019). "베를린 윤이상하우스의 '통영 동백나무'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2019.03.01.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13 (검색일: 2023.10.20.)

이렇듯 〈독일 베를린 윤이상 하우스〉는 윤이상과 관련된 공간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현재 기능을 살려 국내 관련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이상을 매개로 2017년 그의 출생지 경남 통영에 조성된 〈베를린 하우스〉와 연계한 작가 레지던스(교류 프로그램), 기념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가 가능하다[106]. 이처럼 인물을 매개로 국내 기관-국외사적지 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로는 대전 이응노 미술관과 파리 이응노 아뜰리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외관 전경



[그림 3-19]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관련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106) 국제 윤이상 협회(Internationale Isang Yun GESELLSCHAFT E.V.) 홈페이지. https://yun-gesellschaft.de/yun-haus-berlin/ (검색일: 2023.10.20.)

□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Der Koreanische Garten in den Gärten der Welt)

[표 3-36]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Eisenacher Str. 99, 12685 Berlin • 건립연도: 2006년 • 구성: 세계의 정원(Gärten der Welt) 내 위치하며, 솟을대문, 베를린계정, 담장, 마루의 형태를 본 딴 벤치, 장독대, 우물, 맷돌, 장승 등이 설치되어 있고 계류가 흐름	
연혁	2005.9.	• 청계천 베를린 광장 조성에 대한 답례로 2006년 조성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베를린 시
	용도	• 공원, 정원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베를린-서울 간 우정의 상징 및 관광 명소로서 가치가 있는 장소 • 베를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장소이자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 대한 서울시의 답례 공간
	국외 소재 유산	• 2006년에 조성되어 역사적 가치는 부족하지만, 베를린-서울 간 우정의 상징 및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장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관광 명소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한국 정원의 구성 요소(정자, 담장, 솟을대문 등) 및 형태 등 한국적 요소를 독일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원의 경우 원형 유지·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은 2005년 9월에 청계천에 조성된 베를린광장(조성비용은 베를린시에서 부담)에 대한 답례로 2006년 베를린시에 조성[107]된 공원이다. 베를린 동쪽 마르찬(Marzahn) 지구에 위치한 '세계의 정원(Gärten der Welt)' 내부에 위치하는데, '세계의 정원'이 베를린에서 다수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이므로,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방문객이 많은 편이다.

107) 국방안보. (2022). [국방저널 스페셜] 평화통일 염원 담아… 베를린의 곰, 서울에 오다. 2022.09.0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907/6/BBSMSTR_000000010026/view.do(검색일: 2023.10.31.)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내부 (출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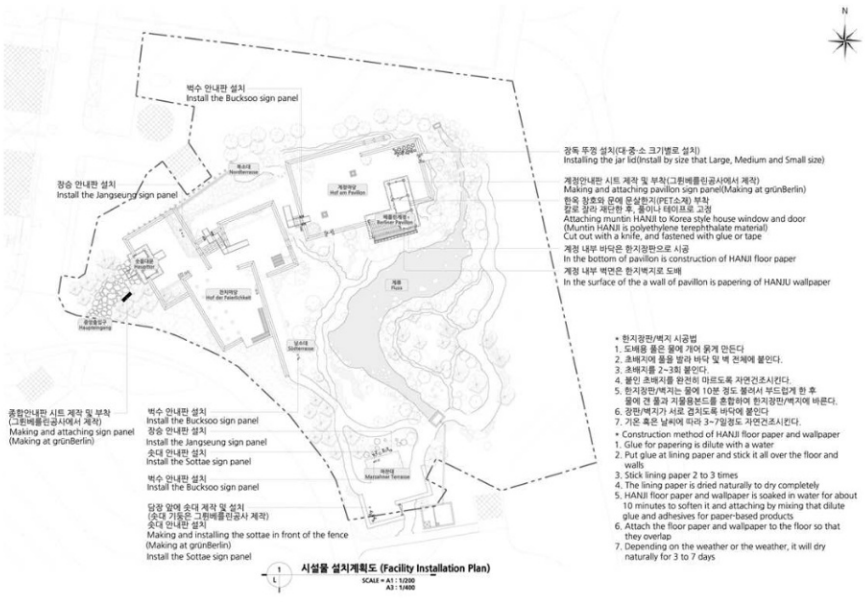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p.21.)



위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p.4.)



[그림 3-20] 독일 베를린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 관련 사진

출처: 현장 사진 연구진 촬영; 도면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보고서 1. pp.4. 21 발췌.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LAZ000001047572# (검색일: 2023.10.23.)

- 관리 및 활용 현황

베를린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노후한 시설물의 교체 및 정원 보수·유지관리 등을 수행한 바 있다.[108] 소재국(독일)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는 없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독일 마르찬공원 내 서울정원〉은 2006년 조성되어 역사적 가치는 부족하지만, 베를린과 서울시 간 우정의 상징이자 관광명소[109]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에 한국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유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국 정원의 구성 요소(정자, 담장, 솟을대문 등) 및 형태 등 민속적 요소(장독대, 우물, 장승, 맷돌)를 독일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조성 연대가 비교적 최근이고 원형을 유지·보존하기 어려운 정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08)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109) '세계의 정원(Gärten der Welt)'은 2017년 베를린 국제정원박람회(IGA Berlin 2017)의 개최 장소이며, 2018년 약 600,000명, 2019년 약 680,000명, 2020년 약 700,000여 명 등 연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베를린의 관광 명소이다. Freunde der Garten der Welt 홈페이지. https://freunde-der-gaerten-der-welt.de/gluechwunsch-zur-million/ (검색일: 2023.10.31.) 참고.

□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Le Jardin de Séoul au Jardin d'Acclimatation)

[표 3-37]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Jardin Coréen, Bois de Boulogne, Rte de la Prte Dauphine à la Prte des Sablons, 75116 Paris • 건립연도: 2002년 • 구성: 피세문, 협문, 죽우정, 월하교, 월대, 불로문, 꽃담 등 건조물 및 연못 등 조경요소	
연혁	2002	•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준공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파리시 • 관리 주체: 파리시
	용도	• 정원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파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볼로뉴 숲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에 위치하며, 관리 상태가 양호함 • 놀이공원, 박물관 등이 공원 내 함께 있는 파리시의 관광 명소
	국외 소재 유산	• 서울시-파리시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우호의 상징으로 조성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관광 명소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한국 정원의 구성 요소 및 형태 등 한국적 요소를 프랑스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원의 경우 원형 유지·보존이 비교적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은 파리시 볼로뉴 숲(Bois de Boulogne)에 위치한 '아끌리마따시옹 공원(Jardin d'Acclimatation)' 내 위치[110]하며, 2002년 서울시-파리시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우호의 상징으로 조성되었다. 피세문, 협문, 죽우정, 월하교, 연못 등의 한국적인 건조물 및 조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파리 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피크닉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 공사를 실시, 노후한 시설물의 교체 및 정원 보수를 수행하였다.[111]

110) 파리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부지(볼로뉴 숲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부지 1,400여 평)에 조성되었다. 동아일보. (2022). 파리로 옮긴 '한국의 멋'... 서울공원 개장. 2022.03.25. https://www.donga.com/news/amp/all/20020325/7800920/9 (검색일: 2023.10.31.) 참고.

파리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내부 (출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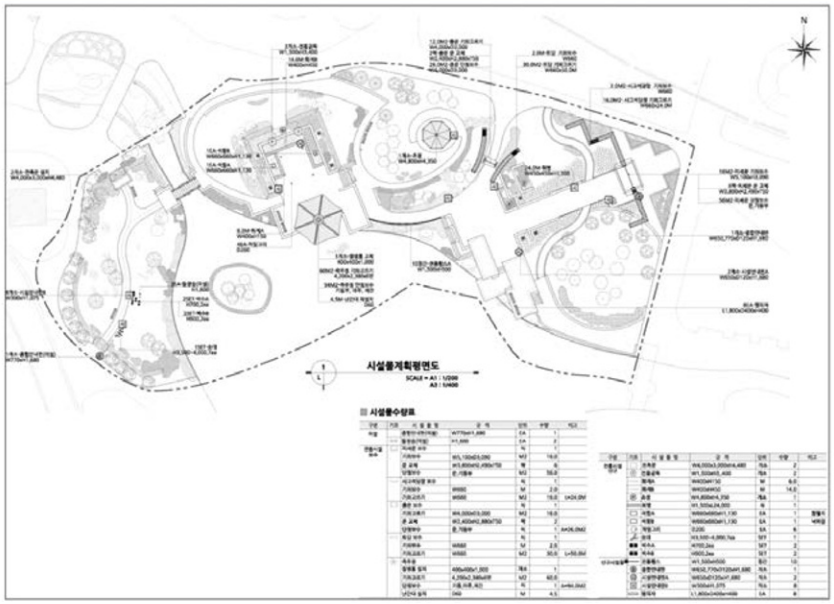
죽우정 (출처: 연구진 촬영.)



피세문 (출처: 연구진 촬영.)



배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p.13.)



111)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위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1. p.3.)



[그림 3-21] 아끌리마따시옹 공원 내 서울정원 관련 사진

출처: 현장 사진 연구진 촬영; 도면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보고서 1. pp.3.13 발췌. https://lib.seoul.go.kr/search/detail/CATLAZ000001047572# (검색일: 2023.10.23.)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본 사례는 소재지(프랑스 파리)의 유명 관광명소 안에 위치하고, 서울시-파리시 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장소적 가치를 갖는다. 아끌리마따시옹 공원은 1860년 10월 6일 나폴레옹 3세와 유제니 황후가 '파리 동물원(Jardin Zoologique d'Acclimatation)'으로 개장한 이후 '인류학 전시관(l'Acclimatation Anthropologique)' 등으로 활용되다가 1931년부터 어린이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가족 중심의 레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서 깊은 공원이다. 또, 2014년 LVMH 그룹의 박물관, 놀이공원 등이 개장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는 등 역사적, 장소적 가치를 가진 공원이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서울시-파리시 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시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여 조성되었고 정자, 꽃담 등 여러 한국적인 건축 요소가 가미된 정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소재국(프랑스)에서 역사적·장소적 의미를 갖는 관광명소 내 위치하며 한국 전통 정원의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조성 연한이 비교적 짧고 원형을 유지·보존하기 어려운 정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프랑스 한국 친우회 창립지(Les Amis de la Corée)

[표 3-38] 한국 친우회 창립지(프랑스)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파리 라즈-까즈 뤼 5 (5 Rue las Cases, 75007 Paris) • 건립연도: 1894년(사회박물관) •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빅토리안 타운하우스
연혁	1890	• Léon Lefebure에 의해 중앙복지사업소(Central Office of Charitable Works, OCOB) 설립
	1894	• 사회박물관(Musée social) 건립 (사회박물관과 중앙복지사업소 합침)
	1921	• 프랑스 한국친우회 창립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민간 재단(CEDIAS-Social Museum) • 관리 주체: 민간 재단(CEDIAS-Social Museum)
	용도	• 사회박물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1894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큼
	국외 소재 유산	• 한국친우회 창립대회(1921) 당시 모습이 간직되어 있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사회박물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향후 한국친우회 관련 전시, 연구, 기관 교류, 토론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공유유산 전략 수립 가능

출처: CEDIAS-Social Museum 웹사이트. http://www.cedias.org/index.php?lvl=cmspage&pageid=6&id_rubrique=37 (검색일: 2023.11.01.);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p.32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프랑스 파리 라즈-까즈 가에 위치한 〈한국친우회 창립지〉는 1894년부터 프랑스 사회박물관(Musée social)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한국친우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의 친구(Friends of Korea)라는 의미에서 결성한 조직으로, 1920년 영국에서 '대영제국 한국친우회'가 창립된 후 1921년 2월 파리대학교 펠리씨앙 샬레(Felicien Robert Challaye) 교수와 중국인 사회운동가 사동발(謝東發)을 중심으로 4월 25일 친우회 내 '행동위원회' 조직 회합, 6월 프랑스 '한국친우회'를 창립하였다.[112]

사회박물관 건물은 4층 건물로 1층에 약 1백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있으며 이곳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창립총회는 루이 마랭(Louis Marin)

1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프랑스 '한국친우회' 조직".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hdsr_006_0050_0020_0040 (검색일: 2023.11.01.)

외관	한국친우회 창립총회 기념사진
	

[그림 3-22] 한국 친우회 창립지 관련 사진

출처: (좌) Google Maps Street View. (검색일: 2022.06.); (우) 항일닷컴 홈페이지. '파리 한국친우회 창립지'. http://www.hang-il.com/bbs/board.php?bo_table=map_move&wr_id=186 (검색일: 2023.11.01.)

과 뫼르트와 모젤(Meurthe et Moselle) 지역 하원의원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행정사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두고 연간 5프랑의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정규회원만을 두는 등의 정관을 발표하였다. 특히 일제 식민지하 한국인의 상황, 제네바 국제연맹이사회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 이루어졌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현재까지도 창립 당시인 1921년과 같이 사회박물관(Musée Social)으로 사용 중이며, CEDIAS(Centre for Social Studies, Documentation, Information and Action)-Social Museum 재단(민간)에서 소유 및 관리·운영한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프랑스 한국친우회 창립지〉는 소재국(프랑스)에서 사회사적으로 역사가 깊은 장소이며 현재까지도 사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박물관은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인·기관 등의 교류를 후원하고 연구해 온 곳으로, 한국친우회의 창립을 발표하고 한국의 인권, 독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장소라는 점에서 프랑스, 한국 양국 모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한국친우회 창립지〉는 '한국친우회' 조직의 성격 및 해당 건축물(사회박물관)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한국친우회'라는 조직의 성격이 한국의 독립에 대한 가치를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친우회가 처음 결성된 곳은 영국이나, 결성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궁전으로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고 상징적인 의미만 존재하는 반면, 〈프랑스 한국친우회 창립지〉는 현재까지도 사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전시, 연구, 토론 등 다양한 방향의 공유유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Yi Jun Peace Museum, 이준 열사 방문 및 순국지)

[표 3-39]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이준 열사 방문 및 순국지)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Wagenstraat 124, 2512 BA Den Haag • 건립연도: 1625 건립 (1907 헤이그 특사 방문 및 이준열사 순국) • 구성: 총 8개 전시실(이준, 이상설, 이위종의 방, 만국평화회의 한국자료실 등)	
연혁	1625	• 건립
	1907	• 호텔(Hotel De Jong(드 용 호텔))로 사용 • 6월 헤이그 특사 3인 투숙 및 7월 이준 열사 순국
	1995	• 8월 5일 이준열사 기념관 개관
	2017	• 11월 18일 확대 재개관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사단법인 일성 이준열사 기념사업회(이준아카데미/이준평화아카데미)
	용도	• 기념관, 역사전시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1625년경 건축된 고 건축물로 그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정부 간 공유유산 사업 추진이 용이함
	국외 소재 유산	• 유럽 유일의 항일 유적지로 헤이그 특사 방문지, 이준열사 순국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님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소재국(네덜란드)은 공유유산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정부 간 공유유산 사업 추진에 용이 •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공유유산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인물 중심 접근에서 문화유산 중심의 접근으로 관점을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	

출처: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yijunpeacemuseum.org/01_yijun/intro.php (검색일: 2023.11.0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은 네덜란드 헤이그(Den Haag)에 위치한 건물로, 1625년경 건립되었다. 드 용(De Jong)이라는 이름의 호텔로 사용되었고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3명의 숙소였으며, 7월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이다. 이후 1992년 재개발로 매각 위기에 놓인 호텔 건물을 이기항 이준 아카데미 원장이 매입하고, 1995년 8월 5일 대한민국의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드 용 호텔 2개 동 중 앞 동의 2, 3층을 사용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2017년 11월 18일 앞 동 1층 및 뒷동까지 확대하는 공사를 거쳐 재개관하였다.

이준 열사 기념관 전경



[그림 3-23]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관련 사진
출처: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yijunpeacemuseum.org/01_yijun/intro.php (검색일: 2023.08.22.)

- 관리 및 활용 현황

현재 사단법인 일성 이준 열사 기념사업회(이준아카데미/이준평화아카데미)에서 소유·관리하는 기념관 및 역사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 내부는 이준, 이상설, 이위종의 방, 만국평화회의 한국 자료실 등 총 8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헤이그 특사 관련 전시 및 기념행사[113]를 주관하고 이준 열사 관련 서적을 꾸준히 출판[114]하고 있다. 소재국(네덜란드)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는 없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소재국(네덜란드)에서는 17세기(1625년경) 건축되었음에도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115]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외소재 유산으로서는 유럽 유일의 항일 유적지로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숙소이자 이준 열사 순국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113) "잊지 말자 을사 늑약 Never Forget, Never Again!" 캠페인, 이준 열사 순국 추모식 등 전시(유물 및 기록물)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yijunpeacemuseum.org/01_yijun/intro.php (검색일: 2023.11.01.) 참고.

114) 『아! 이준열사』(2007), 『강소국 네덜란드와 이준 열사 이야기』(2011), 『'한국혼의 부활' 이준열사 기념관』(2010), 『이준열사, 헤이그에서 평화를 외치다』(2014), 『이준열사기념관 20년』(2017), 『네덜란드 1972-2018 회상』(2019) 등.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yijunpeacemuseum.org/01_yijun/intro.php (검색일: 2023.11.01.) 참고.

115)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p.72.

향후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은 소재국(네덜란드)과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 기념관의 접근(활용)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재국(네덜란드)은 외교부 및 문화청 주관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유럽 내 국가 중 하나로 정부 간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기념관의 활용 방안 측면에서는 건축적 관점의 활용 방안과 함께 헤이그 특사 관련 유산과 연계하는 공유유산 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다. 기존에는 헤이그 특사 3인(인물) 중심으로 해당 유산을 활용해 왔다면,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 시에는 이 건물이 17세기 건축물임에도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여지가 있다. 또, 네덜란드 내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다른 유산으로 제2차 만국평화회의장(Binnenhof), 이위종 열사 연설 장소(국제협회 건물), 이준 열사 묘역 등과도 연계하는 공유유산 전략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 영국 런던 주영대한제국공사관 (Old Korean Legation in London, 이한응 열사 순국지)

[표 3-40] 영국 런던 주영대한제국공사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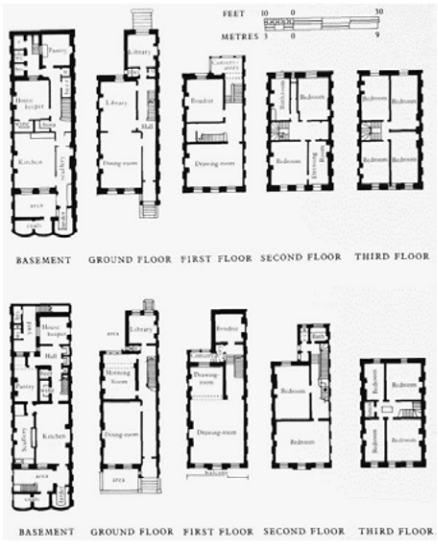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런던 얼스코트 트레버 로드 4, 서니힐코트 • 건립연도: 1897년 •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빅토리안 타운하우스	
연혁	1897	• 건립(대규모 타운하우스)
	1901	• 4월 14일 영국 공사 파견 결정(민영돈 영국공사 임명) • 대한제국 주영공사관이 현재 위치(얼스코트 지역 트레보비르거리 4번지)로 이전하며 공식적인 외교 업무 시작
	1905	• 5월 12일 일본의 주권간섭에 불복하여 이한응 공사대리 자살 • 영국공사관 업무 종결(을사늑약, 11.17.)
	1995	• 소유자 변경(피보디 트러스트(Peabody Trust))
	1997	• 네번 광장(Nevern Square) 일대 보전구역으로 지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공공임대주택조합 피보디 트러스트(Peabody Trust) • 관리 주체: 런던시 및 켄싱턴·첼시구에서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보존구역(Conservation Area) 관리
	용도	• 영구임대주택
	문화유산 지정 여부	• 네번 광장 보존구역(Nevern Square Conservation Area) 내 위치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네번 광장 보존구역에 위치하여 19-20세기 건립된 대규모 빅토리안 타운하우스의 외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건물
	국외 소재 유산	• 대한제국이 설치한 외교 공관으로서, 고종의 '자주외교' 의지를 상징하는 건물 • 이한응 공사대리가 1905년 순국한 장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영구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어 매입 추진 가능성은 낮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영국 내 건축사적 의의를 갖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사 및 장기적 모니터링 대상 • 공사관 건물이었음을 알리는 문화재청 표지판이 설치됨('23.10.)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대한제국 주영공사관 조사 보고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d). 주영대한제국공사관 및 대한제국 상주공관 설치 현황(2023.4.2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주영대한제국공사관〉은 1897년 영국 런던 얼스코트(Earl's Court) 지역의 트레버 로드(Trebovir Road)에 건립된 대규모 타운하우스 중 하나로 지어졌다. 1901년 4월 14일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에 공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민영

돈 영국공사를 임명하였다. 초기 영국 공사는 주영한국 명예 총공사(윌리엄 프리차드 모건(Wiliam Prichard Morgan) 소유의 퀸 빅토리아 거리 건물에 임시로 거주하다가, 1901년 8월 9일 현재 건물로 이주하여 공식적인 외교 업무를 시작하였다. 1903년 민영돈 공사 귀임 후 이한응이 공사업무를 대리하였으나, 1905년 5월 12일 일본의 대한제국 주권 침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공사관에서 자결하면서 실질적인 영국공사관의 업무가 종결되었고,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업무가 종결된다. 199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조합인 피보디 트러스트(Peabody Trust)에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건물이 위치한 네번 광장(Nevern Square) 일대가 보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외관(현재)	내부(현재)
	
입면(추정)	**평면(추정)**
	

[그림 3-24] 영국 런던 주영제국공사관 관련 사진

*주: 추정 입면 및 평면은 1879년 당시 트레보비르 거리 일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빅토리안 타운하우스의 전형이다. 〈주영대한제국공사관〉 건물 역시 지하는 주방, 창고로 활용되고 1층부터는 기본적으로 거주용 건물이었으나 필요에 따라 사무(업무)공간 및 접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문화재청. (2018). 대한제국 주영공사관 조사 보고서.p.9.

**사진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대한제국 주영공사관 조사 보고서. pp.6.8.16,20.

- 관리 및 활용 현황

현재 공공임대주택조합 피보디 트러스트(Peabody Trust)가 소유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런던시 및 켄싱턴·첼시구에서 지정한 역사보존구역에 위치하여 소재국(영국)에서 문화유산으로 관리된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주영대한제국공사관〉은 건물의 내·외부 상태가 양호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한·영 양국에서 공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먼저, 소재국(영국)에서는 외관이 과거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116] 역사보존구역인 네번광장 보존구역(Nevern Square Conservation Area) 내 위치한 건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외소재 유산으로는 고종의 자주외교 의지를 상징하는 건물[117]이자 이한응 공사대리가 1905년 순국한 장소로서 가치를 갖는다. 공사로 사용될 당시의 내부 공간은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나, 건물 외관은 보존지구 내 위치하여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 또한 이 건물의 주요한 가치이다.

〈주영대한제국공사관〉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입 추진 및 활용 가능성은 낮지만, 양국에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 건물로 상징적인 공유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외 소재 유산으로서 가치를 알리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로, 2023년 10월 30일 문화재청은 이 건물이 1901~1905년의 기간 동안 대한제국공사관이었음을 알리는 표식(동판)을 부착하고 기념하는 제막식을 개최하였다.[118]

116) 19-20세기 건립된 대규모 빅토리안 타운하우스가 집중된 네번 광장(Nevern Square) 일대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네번 광장 보존구역(Nevern Square Conservation Area)'으로 지정되어 서니힐코트가 내부 변경과는 달리 외부는 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대한제국 주영공사관 조사보고서. pp.23-24 참고.

117) 영국과 수교(1882.6.6.) 이후 대한제국이 구주지역에 최초로 설치한 외교 공관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 주영대한제국공사관 및 대한제국 상주공관 설치현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참고.

118) 건물이 1960년대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정되어 매입이 불가능하고 내부 구조도 변경되어 별도의 표식이나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소유주(피보디(Peabody) 재단)와 협의하여 건물 외벽에 공사관 표식을 부착하였다. 제막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윤여철 주영대사, 피보디(Peabody) 재단 최고 경영자 이안 맥더못(Ian McDermott) 등이 참석하였다. 출처: 문화재청. (2023).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문화재청, 122년 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기념해 공사관 표식(동판) 제작·지원. 보도자료. 2023.10.31.

□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건물

[표 3-41]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1 Queen Victoria St, London • 건립연도: 1873 • 구조: 석조 / 1,686㎡	
연혁	1905	• 5월 런던 주재 한국명예총영사관 주소지로 기록
	1977	•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 (Grade II) 등재
	현재	• 런던시 경범죄(예심)법정(City of London Magistrates' Court)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발소(The Ned) 등이 포함된 복합용도 건물로 활용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런던시 공사(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 • 관리 주체: 런던시 공사(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
	용도	• 공공기관 등 복합용도 건물
	문화유산 지정 여부	•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 (Grade II, 1977년 등재)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등재건축물로 등재되어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음 • Queen Victoria Street 내 위치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음
	국외 소재 유산	• 1905년 당시 런던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관 건물로 추정되며, 이한응 열사 순국지와 연관됨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향후 주영제국대한공사관(이한응 열사 순국지)과 연계한 영국 내 공유유산 전략 수립 가능	

출처: Historic England 홈페이지.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the-list/list-entry/1358905?section=official-list-entry (검색일: 2023.10.3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구 한국명예총영사관〉은 1873년 지어진 삼각형 형태의 석조 건물로, 옥탑 1층 및 3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05년 5월 런던 주재 한국명예총영사관의 주소지로 기록되어 있으며[119], 런던의 유서 깊은 랜드마크들이 모여 있는 Queen Victoria Street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11월 10일 영국의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s)로 등록되어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는 공공기관 및 이발소 등이 포함된 복합용도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119) 광복회보. (2010). 11면-해외독립항쟁 유적지를 찾아서. 2010.06.29. https://www.kla815.or.kr/sub_5/5_1_view.php?articleid=MZANH0000044&r_order=8 (검색일: 2023.10.31.)



[그림 3-25]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외관 사진
출처: Google Maps Street View.

- 관리 및 활용 현황

이 건물은 문화유산의 한 유형인 등재건축물이며 소유 및 관리 주체는 런던시 공사(the City of London Corporation)이다[120]. 현재는 공공기관(런던시 경범죄(예심) 법정) 및 상업시설(이발소)을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건물은 한·영 양국에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는 건물이다. 한국에서는 1905년 당시 런던 주재 한국명예총영사인 모건(W. P. Morgan)이 이한응 공사가 음독 자결한 직후 한국 정부에 그의 순국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현지에서 사후 수습과 유해를 처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소재국(영국)에서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77년 등재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점과 현재 런던시 주요 공공기관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 건물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현재 런던시 경범죄(예심) 법정 건물로 활용되고 있어 〈주영대한제국대사관〉과 마찬가지로 매입 추진 및 활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재국(영국) 내 역사적 의미가 큰 빅토리아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등재건축물로서 내·외관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니므로, 양국에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 상징적인 공유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향후 조사 및 모니터링 수행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국외사적지 상표 이미지' 사업을 활용하여 공사관 표식을 제작하거나 주변에 위치한 주영대한제국공사관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국외소재 유산으로서 가치를 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20) 런던시청(City of London) 홈페이지. https://www.cityoflondon.gov.uk/about-us/about-the-city-of-london-corporation/our-role-in-london (검색일: 2023.10.31.)

□ 이응노 아뜰리에 (Atelier Ung-no Lee)

[표 3-42] 이응노 아뜰리에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17, sente des Cornette, 93310 Le Pre St Gervais • 건립연도: 미상 • 구성: 연면적 약 500㎡, 3층 규모의 건물
연혁	1980년대	• 화가 이응노의 작업실로 사용
	현재	• 작가 레지던스로 활용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이응노 일가 • 관리 주체: 이응노 일가
	용도	• 작가 레지던스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소재국(프랑스)에서도 현대미술 작가로 명성이 높은 이응노의 아뜰리에
	국외 소재 유산	•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응노가 프랑스 이주 후 타계할 때까지 사용했던 작업실 • 현재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향후 파리의 고암 기념관으로 운영 예정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이응노 아뜰리에 관련 소재국-국내 작가 교류 프로그램 기 운영 중이며, 주변의 이응노 관련 유산(고암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공유유산 활용 전략 수립 가능

출처: 이응노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leeungnomuseum.or.kr/(검색일: 2023.10.3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프랑스 파리 르 프레 생 제르베(Le Pre St Gervais) 지역에 위치한 〈이응노 아뜰리에〉(고암 아뜰리에)는 1980년대 화가 이응노의 작업실로 사용되던 3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는 작업실, 레지던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현재 〈이응노 아뜰리에〉는 주변의 〈고암 아카데미〉,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 〈고암 서방〉, 〈박인경화백 작업실〉 등 '고암문화유적'으로 함께 프랑스 이응노재단(이응노 일가)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고암문화유적 내 건물들은 프랑스 이응노재단과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협력으로 '파리 이응노레지던스' 프로그램[121]의 장소로 활용중이다.

121)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작가 3명을 프랑스로 파견하며, 작가들은 고암문화유적지 내 레지던스에 입주하여 이응노 화백 가족(박인경 명예관장, 이융세 선생)과 교류하고 유럽의 미술 현장 탐방, 작품 소개 기회 등을 통한 예술적 교류의 기회를 얻는다. 이응노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leeungnomuseum.or.kr/ Menu.do?menuId=080101(검색일: 2023.10.30.) 참고

외관(현재)	이응노 아뜰리에 내부(1980)
	

[그림 3-26] 이응노 아뜰리에 관련 사진

출처: (좌) 홍주일보. (2014). 파리 외곽에서 작품 활동 매진... 짙게 배인 예술혼. 2014.07.10.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2(검색일: 2023.10.30.); (우) Google Arts & Culture. "The Life and Work of Lee Ungno".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the-life-and-work-of-lee-ungno-lee-ungno-museum/sQXRPDKVkzAnJg?hl=en(검색일: 2023.10.30.).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소재국(프랑스)에서 〈이응노 아뜰리에〉는 현지에서도 명성이 높은 현대미술 작가 이응노와 관련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내부 인테리어는 전면 개조[122]되었으나, 외부 담장의 경우 이응노가 손수 제작한 테라코타와 세라믹으로 만든 벽화가 남아 있는 등 과거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이 영감을 얻기 위해 종종 찾는 곳으로 각광받는 등 예술적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이응노 아뜰리에〉는 대전 이응노 미술관 및 고암미술문화재단 등 국내와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파리에서도 '고암문화유적'으로 불리는 주변 이응노 관련 유산과 연계한 공유유산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소유주(프랑스 이응노재단)와 국내 관련 기관(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은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소재지(파리)와 예술적 교류를 도모하고 있어, 예술 활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 또한, 파리 고암 역사문화유적 내 위치한 주변 관련 유산들과 연계하여 이응노라는 인물을 매개로 한 공유유산 전략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다.

122) 홍주일보. (2014). 파리 외곽에서 작품 활동 매진... 짙게 배인 예술혼. 2014.07.10.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2(검색일: 2023.10.30.)

□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표 3-43]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Tourrettes-sur-loup, Provence-Alpes-Côte d'Azur, France • 건립연도: 1997 • 구성: 직경 16m 반원 형태의 건물 2채가 마주보는 배치	
연혁	1968	• 부지 및 기존 건물(돌담집) 매입 후 여름 아뜰리에로 사용
	1984	• 아뜰리에 대문 모자이크 작품 마무리 후 '은하수'라 명명
	1992	• 아뜰리에 은하수(Rivière Argent) 준공
	1997	• 건립 후 사계절 아뜰리에로 사용
	2010	• 투레트쉬르루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영구보존) 후 민간 공개
	2023	• 프랑스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 등재 추진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이성자 일가 • 관리 주체: 이성자 일가
	용도	• 기념관
	문화유산 지정 여부	• 투레트쉬르루(Tourrettes-sur-loup)시 지방문화재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등 인정받는 예술가가 직접 설계하고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는 아뜰리에 •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프랑스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 등재를 추진하는 등 문화유산적 가치 인정
	국외 소재 유산	• 대한민국 최초의 추상미술 작가이자 현지에서도 인정받는 예술가인 이성자 화백이 직접 설계한 작업실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이성자 화백을 매개로 진주시립이성자박물관(2015)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 등 가능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e)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2023.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프랑스 투레트쉬르루(Tourrettes-sur-loup)시에 위치한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는 1992년 이성자 화백이 직접 설계한 건물이다. 1968년 기존 건물(돌담집) 및 부지를 매입하여 이 화백의 여름 아뜰리에로 사용되다가 1992년 현재의 아뜰리에 건물 준공 후 사계절 아뜰리에로 사용되어 왔다. 2010년 투레트쉬르루시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

외관	아뜰리에 내부
	

[그림 3-27]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관련 사진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e).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2023.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여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소유자인 이성자 화백의 두 아들의 동의로 민간에 공개 중이다. 2023년에는 프로방스 알프코트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문화사무국(DRAC)을 통해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123]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현재 〈이성자 아뜰리에〉는 이성자 화백의 가족 소유이며, 2010년 투레트쉬르루시 지방문화재 지정 이후 시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2010년 이후부터는 민간에 공개되는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이성자 아뜰리에〉는 프랑스 현지에서도 명성이 높은 추상화가 이성자 화백이 직접 설계하고 머물던 작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프 양국에서 가치를 갖는다.

소재국(프랑스)에서는 이성자 화백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요소인 '음양'의 모티브를 형상화한 건축물의 구조와 직접 작업한 아뜰리에 대문 모자이크 등 건축사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 2010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지정·관리하는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첫 한국인

123) '주목할 만한 현대 건축물 라벨(Outstanding Contemporary Architecture Label)(구 'Heritage of the 20th Century')'은 「창조, 건축 및 유산의 자유에 관한 법률(CASL)」 제78조에 의거하여 프랑스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유산으로,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100년 미만의 건축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 건축단지, 구조물 등에 수여한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문화사무국 및 지역유산건축위원회(RCAP)를 통해 심사하며, 선정 후 건물에 명판을 부착하고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홍보 및 보존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e).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2023.11.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참고.

프랑스 유학 화가로서 현지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이성자 화백과 관련된 장소라는 점에서 국외사적지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자 아뜰리에〉는 한·프 양국에서 유산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유산이며, 국내·외 이성자 관련 기관 등과 연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자는 경남 진주시 출신 인물로, 2015년 진주시에서 진주시립이성자박물관을 개관하고 관련 전시를 진행해 왔고 국립현대미술관(MMCA)에서 관련 전시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이성자와 관련된 전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이응노와 연계한 전시 프로그램도 운영된 바 있어 이응노와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재의 기념관 기능을 강화하여 이응노 기념재단 및 미술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공유유산 활용방안 수립이 가능하다.

3) 일본

□ 일본 도쿄 영친왕 저

[표 3-44] 일본 도쿄 영친왕 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도쿄도 지요다구 기오이초 1-2 • 건축연도: 1930년 • 구조: 2층 철근콘크리트, 일부 목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연혁	1930	• 1928년 일본 궁내성 내장료에서 '동경 이왕가저(東京李王家邸)'를 계획 • 1929년까지 이왕직 예산 100만 엔의 예산으로 준공
	1945	• 영친왕과 덕혜옹주 등이 1945년경까지 거주 • 1945년 이후 몇 차례의 매각을 거쳐 세이부(西武) 그룹으로 소유권 이전
	1955	•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赤阪プリンスホテル)로 사용
	1960	• 호텔 건물 신축 이후, 2011년까지 식당 및 연회장으로 사용
	2011	•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개발계획 수립으로 철거 예정이었으나, 도쿄 시민 단체의 보존운동으로 복원정비공사 진행
	2016	• 아카사카 프린스 클래식하우스(赤阪プリンスクラシックハウス)로 개관하여 식당 및 연회장으로 사용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세이부 리알티 솔루션즈(西武リアルティソリューションズ)
	용도	• 식당 및 연회장
	문화유산 지정 여부	• 도쿄도 유형문화재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어 유산적 가치가 있음 • 쇼와 초기 황족 건축의 명작으로 평가되며, 설계자 및 시공자, 도면 및 공사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음
	국외 소재 유산	• 일제강점기 왕족이 거주한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국내에서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공유유산 사업 추진 전략 및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소유자(세이부 리알티 솔루션즈)는 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 공유유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

출처: 이규철. (2015). 이왕직 건축조직의 재정과 건축활동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11). pp.153-164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일본 도쿄 영친왕 저〉는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규모 건물로, 1930년에 건립되었다. 1928년 일본 궁내성 내장료에서 '동경이왕가저(東京李王家邸)'를 계획하여 1929년 이왕직 예산 100만 엔의 예산으로 준공되었고, 이후 영친왕(이은)이 일왕의 하사품으로 받아 덕혜옹주 등과 1945년경까지 거주하였다. 1945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몇 차례 매각을 거쳐 세이부(西武) 그룹 소유가 되었고, 1955년부터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赤阪プリンスホテル)로 사용되었다. 1960년 호텔 건물(신관)이 신축된 이후에는 2011년까지 식당 및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 2011년 세이부 그룹에서 호텔과 오피스 빌딩을 포함한 대규모 주상복합시설(東京ガーデンテラス紀尾井町)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철거 예정이었으나, 도쿄 시민단체의 보존운동으로 복원정비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부터는 '아카사카 프린스 클래식하우스(赤阪プリンスクラシックハウス)'로 개관하여 식당 및 연회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1945년 일본 패전 이후부터 세이부 그룹 내 '세이부 리알티 솔루션즈(西武リアルティソリューションズ)'에서 소유하고 식당 및 연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재국(일본)에서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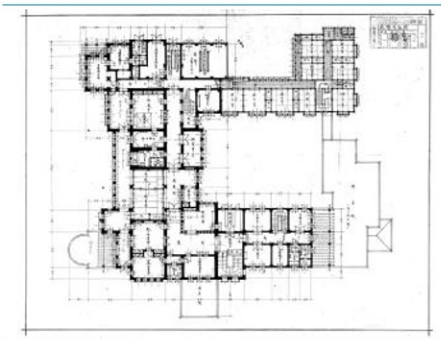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일본 도쿄 영친왕 저〉는 소재국(일본)에서는 건축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외소재 유산으로서는 굴욕적인 식민지 역사를 보여주는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인 가치를 지닌다.

소재국(일본)에서는 쇼와 초기 황족 건축의 명작으로 평가되며, 궁내성 내장료의 설계자 및 시공자를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도면과 공사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거주한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친왕이 일본의 왕족 지위를 받고 일왕의 하사품으로 받은 저택이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도쿄 영친왕 저〉를 공유유산의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네거티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과 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는 민간 기업의 자회사로 수익 목적으로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 공유유산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왕직 신축공사 도면(1928)
(일본 궁내청 서릉부 소장 도면.)



이왕직동경저(李王職東京邸, 1930)
(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사진첩.)



보존을 위한 이동공사(2011) (출처: 연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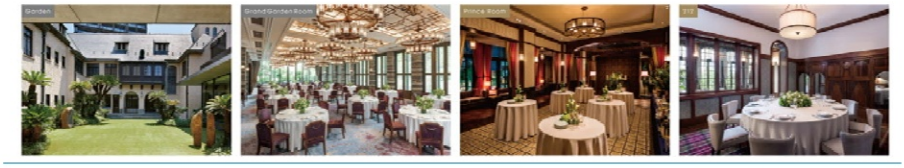


복원정비 완료 후 모습(2016)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The Classic House at Akasaka Prince(홍보브로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p.5.)



아카사카 프린스 클래식하우스 홍보 브로셔 층별 안내도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The Classic House at Akasaka Prince(홍보브로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p.7.)





[그림 3-28] 일본 도쿄 영친왕 저 관련 사진
출처: 각 사진 출처 참고. 일본 궁내청 및 궁내공문서관 소장 사진은 이규철(2015) 논문 작성 시 현지에서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임.

□ 고려미술관

[표 3-45] 고려미술관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교토부 교토시 기타구 시치쿠 가미노키시초 15 • 건축연도: 1988 • 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철근 콘크리트 건물	
연혁	1969	• 조선문화사(朝鮮文化社) 설립, 계간지 『일본에 남은 조선문화』 발행
	1972	• 설립자 정조문, 일본 각지의 한국 관계 유적을 돌아보는 탐방단 조직
	1988	• 자택을 개조하여 고려미술관 설립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재단법인 고려미술관 • 운영·관리 주체: 재단법인 고려미술관
	용도	• 전시관(한국미술품 전시)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일본 내 유일하게 한국의 문화유산만을 전시하는 미술관 •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과 한국 문화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연구
	국외 소재 유산	• 소장 유물을 모두 일본에서 수집하고 한국인이 세운 미술관 • 한국의 문화유산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해외 미술관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 유입된 다른 유산들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 수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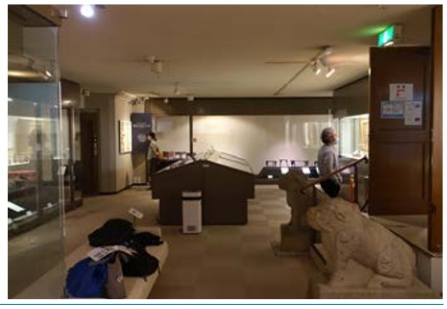
출처: 高麗美術館 홈페이지. https://www.koryomuseum.or.jp/ (검색일: 2023.11.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450 (검색일: 2023.11.03.)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은 재일동포 정조문(鄭詔文, 1918~1989)이 1963년부터 살던 교토시 기타구에 위치한 집을 1988년도에 미술관으로 개조해 활용하고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다.

〈고려미술관〉의 주요 연혁은 설립자 정조문의 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재일동포인 그는 교토에서 파친코 사업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일본에 유입된 한국의 문화유산을 되찾고자 하였다. 1969년 조선문화사(朝鮮文化社)를 설립하고 계간지 『일본에 남은 조선문화』를 발행하여 일본 고대사에 한국 문화가 끼친 영향에 대해 조명하였다.[124] 이후

124) "교토신문조차도 "여러 가지 이화감(異和感)을 지니고 태어난 이 잡지는 고대 조선에서 들어온 인간과 문화를 빼면 (일본에는)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될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편견에 차 있던 일본 고대사에 이처럼 충격을 준 잡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고려미

외관	내부
	

[그림 3-29] 고려미술관 관련 사진
출처: (좌) 연구진 촬영; (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1972년 재일 사학자들과 일본 각지의 한국 관계 유적을 돌아보는 탐방단을 조직하여 한국 문화의 일본 유입 사실을 일본인의 눈으로 확인시키려 하였으며, 5백여 명이 몰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그의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1988년 10월 25일 고려미술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고려미술관〉은 재단법인 고려미술관에서 소유·운영·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유산 1,700여 점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운영된다. 소장 유물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자기류가 주를 이루며, 이 밖에도 장서, 회화류, 불상 및 금속 공예품, 구리거울, 목공예품 및 민속품 등으로 다양하다.

또한, 〈고려미술관〉 설립 이듬해에는 '고려미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품의 조사, 전시 기획뿐만 아니라, 조선사 및 일본, 중국 등 당시 동북아시아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문화를 조명하는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술 강좌를 개최하거나 일본 및 한국의 고미술품 전시 시설 및 조사·연구기관과의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고려미술관〉은 한국의 문화유산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해외 미술관이며, 소장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관 기관과 연계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에서 모두 공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단, 〈고려미술관〉 소장품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별개로, 국외사적지의 측면에서 〈고려미술관〉 건물 자체는 1988년 건

술관(高麗美術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450 (검색일: 2023.11.03.) 참고.

립되어 조성 연대가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려미술관〉이 공유유산으로 활용된다면 부설 연구소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한·일 유관 기관과 연계한 학술·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공유유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고려미술관〉에서 부설 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며 한국의 고미술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유유산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로, 설립자 정조문의 다른 업적인 『일본에 남은 조선문화』, 1972년 조직한 탐방단의 자취 등과 연계하거나 주요 소장품인 도자기 관련 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연구소를 통해 한·일 유관 기관과 교류하거나 학술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린 공동 연구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는 학술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심수관요(沈壽官窯)

[표 3-46] 심수관요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가고시마현 히오키 히가시치키초 미야마 1715 • 건축연도: 1874 • 구성: 도예공방 및 가마, 박물관, 판매장	
연혁	1598	• 정유재란으로 1대 심수관 피랍(추정)
	1867	• 12대 심수관, 〈파리만국박람회〉 참가 및 〈오스트리아 빈 만국박람회〉 수상
	1874	• 12대 심수관, 옥광산도기제작소(현 심수관요) 설립
	1893	• 12대 심수관, 〈시카고 박람회〉 수상
	1963	• 13대 심수관, 현민 표창 수상
	1968	• 14대 심수관, 작가 시마 요타로의 소설『고향 잊어버리는 후』의 주인공으로 묘사
	1989	• 14대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 임명
	1988	• 14대 심수관, 대한민국 은광 문화훈장 수상
	2011	• 4월 17일 리모델링 후 재개관
	2021	• 15대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 임명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심수관 가 • 운영·관리 주체: 심수관 가
	용도	• 도예공방 및 전시관, 판매장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사쓰마(Satzuma) 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린 장인 심수관의 공방이자 전시관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심수관요의 주체인 심수관은 현재 대한민국 명예총영사이며 대대로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
	국외 소재 유산	• 일본 도자 문화에 역사적으로 한국이 미친 영향을 알 수 있음 • 심수관요의 주체인 심수관은 현재 대한민국 명예총영사이며 대대로 한·일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한국에서 건너가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를 개발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알린 심수관 家의 도예공방 및 박물관으로 한·일 양국에서 유산적 가치가 충분함 • 일본 내 임진왜란·정유재란 등으로 일본에 피랍된 도공 및 동포들과 관련된 유산, 한국의 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 등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 수립이 가능함	

출처: 심수관요(沈壽官窯) 홈페이지. http://www.chin-jukan.co.jp/(검색일: 2023.11.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심수관요(沈壽官窯)〉는 1598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의 사쓰마 지역으로 피랍된 도공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심당길(沈當吉)[125]을 시작으로 15대째 일본의 대표적인 도자기 '사쓰마 자기(薩摩燒, SATZUMA)'를 생산하는 '심수관' 가문의 도예공방 및 박물관이다. 심수관 가문은 12대 심수관이 여러 국제 박람회 등에서 수상하고 사쓰마 자기를 세계적인 도자기로 발돋움하게 한 것을 계기로 일본 도예계에서 대표적인 가문으로 발돋움했으며, 12대 심수관부터 '심수관'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세습하게 된다. 1874년 '옥광산도기제작소(현 심수관요)'를 설립하고 전통적인 도자 제작 방식으로 자기를 굽는 가마, 도예 공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심수관요는 도예공방, 박물관, 판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대 심수관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심수관요〉는 심수관 가문에서 대대로 소유하고 운영·관리하는 도예공방, 박물관, 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물관에는 약 6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대부분이 12대 심수관의 작품이다. 이 밖에도 심수관 가문의 역사, 국제 박람회 관련 자료, 고문서 등의 관련 자료들도 소장·전시하고 있다. 현재 〈심수관요〉에는 제작을 담당하는 기술인 20명, 판매 담당 8명이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126]

또한, 현재 〈심수관요〉를 운영하는 명인 15대 심수관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임명[127]되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소재국(일본) 외 국가에서의 심수관, 도예 관련 전시 작업[128]에도 참여하고 있다.

---

125) 현재 심수관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심수관 가문의 초대는 1598년 12월 시마즈요시히로에 의해 남원 등지에서 피랍된 청송 심씨 '심당길'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관련 기록의 불분명함 등을 토대로 이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유재란 당시 피랍되었다고 '추정'한다고 서술하였다. 출처: 방병선. (2017). 임진왜란 피랍도공 沈壽官家와 도자 연구. 한국학연구, 63, 129-157.; 정영구. (2021). 沈壽官家의 기억, 그 변화와 활용-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동양학, 82, 1-24.

126) 동아일보. (2021). '조선 도공 후예' 15대 심수관 "한일 가교 역할 하겠다". 2021.04.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406/106270529/1(검색일: 2023.11.02.)

127) 1988년 14대 심수관이 주가고시마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었으나, 2019년 6월 작고하며 명예총영사 부재 상태가 지속되다가 2021년 10월 재임명되었다.

128) 2010년 파리 개선문 인근의 미쓰코시 갤러리에서 심수관 가문의 작품 전시회(2010.10.5.~2010.12.11.)가 개최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8년 한일국교정상화 53주년 특별전시회 '사쓰마야키 420년 심수관요전', 청송 백자촌과 연계한 청송심수관 도예전시관 등의 전시가 열렸다. (출처: 동아일보. (2010). 佛 파리서 심수관家400년 도자기展. 2010.10.06.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01006/31645932/9(검색일: 2023.11.0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s://www.kocis.go.kr/kocc/view.do?seq=11164&page=5&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menu0023&searchText=&ctrcode=CTR0003(검색일: 2023.11.02.))

정문 (출처: ①)



박물관 건물 (출처: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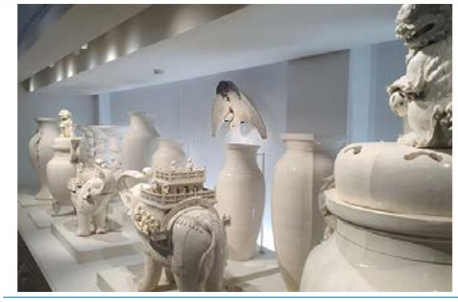
가마 (출처: ②)



한·일 양국 국기가 계양된 모습 (출처: ③)



박물관 내부 (출처: ②)



주가고시마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현판 (출처: ②)



[그림 3-30] 심수관요 관련 사진

출처: 관련 신문기사(①~③) 참고 (검색일: 2023.11.02.). (①가고시마현 관광 연맹(鹿児島県観光連盟) 홈페이지. https://www.kagoshima-kankou.com; ②Newsverse. (2023). 일본 도자기와 심수관 (상). 2023.03.04.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 ③오마이뉴스. (2015). 세계 최고 도자기 가문 심수관요 세습의 '비밀'. 2015.07.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8058)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심수관요〉는 일본의 도예 문화와 한국의 관련성, '심수관' 가문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으로 한·일 양국에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소재국(일본)에서는 사쓰마 자기를 세계적으로 알린 명인 심수관의 도예공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피랍된 조선 명인들이 일본에 도예 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례이며,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활동 중인 심수관을 매개로 한 다양한 한·일간 문화적 교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심수관요〉는 향후 일본의 문화 형성 과정에의 한국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의 매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수관요는 소재국(일본)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찾는 명소이며 한국에서도 관련 전시가 인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산적 가치가 높다. 또한, 동시기 일본으로 피랍된 한국의 도예 장인들과 관련된 다른 유적들과 연계하거나, 고대 일본의 문화 형성에 한국이 미친 영향에 대해 〈백제식 산성〉, 〈고려미술관〉 등의 유산과도 연계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14대·15대 심수관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활동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의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한국의 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 등 심수관 관련 유산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심수관요〉가 향후 공유유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보화종루(普化鐘樓)

[표 3-47] 보화종루 분석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지바현 야치요시 다카츠(千葉県八千代市高津1347) 관음사 • 건축연도: 1985 • 구조: 목구조(누각)	
연혁	1923-24	•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재일조선인 학살(관동대학살) 발생
	1959	• 관음사에서 관동대지진으로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위령제 시작
	1973	• 일본 지바현 시민단체 주관으로 조선인피해조사 시작
	1985	• 한·일 시민들이 재일한인추도모임의 모금운동을 통해 보화종루 조성
	1999	• 나기노히라 학살(1988) 유해 위령비를 종루 옆에 조성
	2022	• '간토조선인학살 100주년 위령 보화종루 보수추진위원회'에서 보화종루 보수를 위한 모금 추진 (총 약 7,000만 원 모금(한국 약 2,700만 원, 일본 약 280만 엔(2,760만 원))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관음사 • 운영·관리 주체: 관음사
	용도	• 종루, 위령시설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관동대학살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갖는 유산 • 매년 열리는 〈간토조선인학살 추도제〉와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음
	국외 소재 유산	• 관동대학살과 관련하여 일본 현지에 한국 국민이 세운 유일한 위령 시설 • 종루 바로 옆의 〈나기노히라 학살 유해 위령비〉와 같이 재일 동포 학살과 관련한 유산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소재국(일본)에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매년 추도제가 열리고 있어 향후 공유유산으로 연계 가능성 있음 • 종루 바로 옆의 〈나기노히라 학살 유해 위령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인 학살과 관련한 유산들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 수립 가능	

출처: 사단법인유라시아문화연대. (2023). 보화종 보수 모금 리플렛.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문화저널 맥. (2023). 무참히 살해된 조선인 넋 기리는 '보화종루' 탄생비화. 2023.03.13..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검색일: 2023.11.0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2023.08.1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보화종루(普化鐘樓)〉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발생 이후 1924년까지 일어난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과 관련된 유산으로, 1985년 문화예술인들의 주도로 한국의 국민들이 세운 일본 현지의 유일한 위령 시설이다. 1959년 관음사(觀音寺)에서 관동대지진으로 학살된 조선인에 대한 위령제를 시작하고, 1973년 일본 지바현 시민단체의 주관으로 조

선인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와 관련한 반성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후 1985년, 한국 극작가 김의경, 민속학자 심우성, 언론인 신우식 등 한국의 문화예술·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위령 시설을 건립하자는 모금 운동을 통해 보화종루를 조성하였고, 일본 관음사 주지였던 세키 고젠(関光禪)이 경내 건립 터를 제공하여 현재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1999년에는 '나기노히라 학살 유해 위령비'를 종루 옆에 조성하여 위령 시설로서의 의미가 더해지기도 하였다. 2022년에는 보수를 위한 모금을 추진하였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보화종루〉는 일본 지바현의 관음사 내 위치한 종루로, 관음사에서 소유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일본 현지에 유일하게 있는 한국인이 세운 간토대학살 관련 위령 시설로, 매년 열리는 '간토조선인 학살추도제'의 중요한 거점지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다만, 〈보화종루〉는 2003년 한 차례 보수됐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기둥과 기와에 흠집이 생기는 등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간토조선인학살 100주년 위령 보화종루 보수추진위원회'에서 보수를 위한 모금을 추진하여 총 약 7,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였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보화종루〉는 '관동대학살'과 관련해 한·일 양국에서 의미를 갖는 유산이며, 매년 열리는 간토조선인학살 추도제, 재일 동포 학살과 관련된 유산 등과의 연관이 있어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소재국(일본)에서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갖는 유산으로 매년 열리는 간토조선인 학살 추도제와 연관되는 등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에서도 관동대학살과 관련해 일본 현지에 한국 국민이 세운 유일한 위령 시설이며, 재일 동포 학살 관련 유산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따라서, 향후 〈보화종루〉는 관동대학살을 비롯한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인 학살과 관련한 유산들과 연계하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소재국(일본)에서 관동대학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매년 추도제가 열리고 있고 일본 현지의 유일한 한국인 학살 위령 시설로 양국에서 의미가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루 바로 옆 〈나가노히라 학살 유해 위령비〉가 있고, 이와 같은 일본 현지에서의 한국인 학살 관련 유산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보화종루 건립 기념사진
(한국민속극박물관 소장)



보화종루 건립 전 희생자 위령제
(출처: 사단법인유라시아문화연대(2023))



보화종루 건립 당시 종루 (한국민속극박물관 소장)



보화종루 건립 당시 범종 (한국민속극박물관 소장)



현재 보화종루 전경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보화종루와 위령비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그림 3-31] 보화종루 관련 사진

출처: 한국민속극박물관 소장 자료는 해당 자료를 재인용한 문화저널 맥. (2023). 무참히 살해된 조선인 넋 기리는 '보화종루' 탄생 비화. 2023.03.13.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검색일: 2023.11.03.)에서 발췌; 사단법인유라시아문화연대. (2023). 보화종 보수 모금 리플렛.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이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에서 현지답사 시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음.

□ 시즈오카(靜岡) 오키쓰(興津) 조선통신사 유산

[표 3-48] 일본 시즈오카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개요

구분		내용	
세이켄지 (淸見寺)	건축 개요	• 주소지: 시즈오카시(靜岡市) 시미즈구(淸水區) 오키쓰(興津) 세이켄지쵸(淸見寺町) 418-1 • 건축연도: 650~654년 창건 • 구성: 총문, 산문, 불전, 본당 등으로 구성된 사찰과 정원	
	연혁	650~654	• 창건
		1262	• 선종 사찰로서의 낙성 법요 거행
		1342	• 무로마치 막부 초대 쇼군 아시카가 다카우지 방문, 오산십찰(五山十刹) 중 하나로 편입
		1540	• 승려 다이겐셋사이(太原雪斎), 전란으로 황폐화된 사찰을 재건
		1600	• 도쿠가와 이에야쓰 머묾
		1607	• 조선통신사 첫 방문
		1889	• 도카이도 본선 경내 통과
		1936	• 세이켄지 정원, 문부성으로부터 명승으로 지정
		1962	• 오키쓰 부두 공사로 키요미갯벌(淸見潟) 멸실
		1994	• 세이켄지 경내 '조선통신사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2006	•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69점, 시즈오카현 유형문화재(역사 자료)로 지정
		2007	• 조선통신사 기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020	• 일본유산 구성문화재 「일본 최초 '여행 붐'을 일으킨 야지상(彌次さん), 기타상(喜多さん)의 슨슈(駿州) 여행」 (시리즈형) 선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세이켄지 • 관리 주체: 세이켄지
		용도	• 종교시설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국가 명승(1936, 부속 정원)
삿타토우게 (薩埵峠, 삿타고개)	건축 개요	• 주소지: 시즈오카현 시미즈구 오키쓰와 이하라군(庵原郡) 유이초(由比町) 사이의 약 3km의 고개 • 건축연도: 1655년, 1682년 • 구조: 산 중턱을 끊어 길을 내고 이후 도로를 조성	
	연혁	1655	• 삿타산 중턱을 끊어 처음 길을 냄
		1682	• 조선통신사를 위한 삿타고개 중도(中の道) 건설
		1962	• 시미즈시 명승 지정
		2020	• 일본유산 구성문화재 「일본 최초 '여행 붐'을 일으킨 야지상(彌次さん), 기타상(喜多さん)의 슨슈(駿州) 여행」 (시리즈형) 선정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 주체: 시미즈시 • 관리 주체: 시미즈시
		용도	• 하이킹 코스
		문화유산 지정 여부	• 시미즈시 명승(1962)

구분	내용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에도시대, 한일 간 우호관계 형성의 교두보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기록물 • 조선통신사를 위해 조성하여 이용한 고갯길
	국외 소재 유산	•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의 증거 • 조선통신사 활동의 가치 입증 가능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한일 양국 교류의 역사를 엿볼 수 있고, 현재 지역사회 중심의 교류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치 제고(提高)의 가능성이 큼 • 오키쓰 유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의 관련 유산까지 연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출처: 일본 현지 조사 내용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선통신사 관련 홍보 리플렛(일본어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23.09.12; 2023.10.06-09)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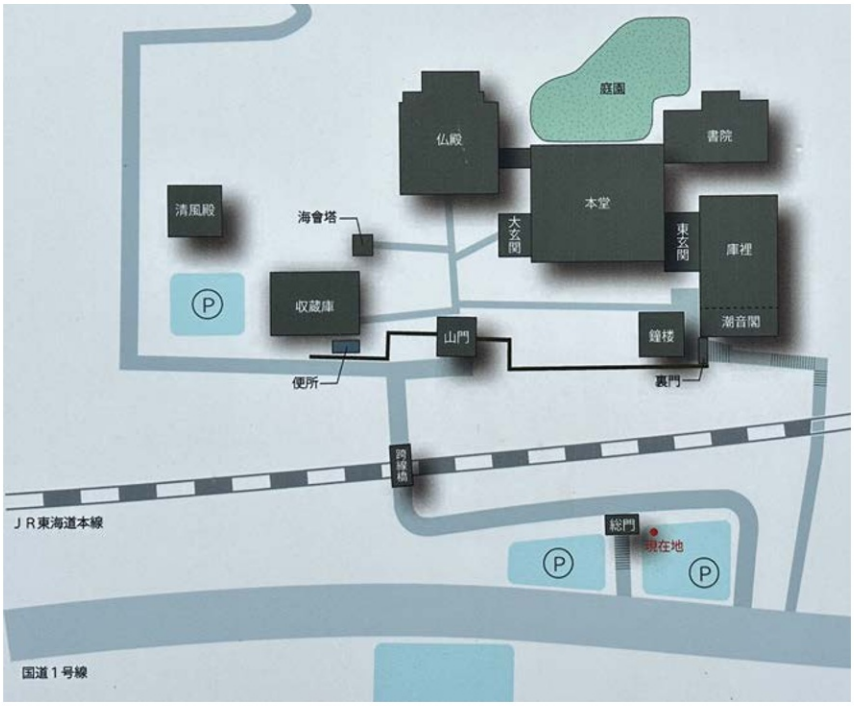
〈오키쓰(興津) 조선통신사 유산[129]〉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이 일본 도쿠가와(德川) 막부에 파견한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기록유산을 보관한 사찰 및 통신사 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국외사적지의 관점에서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관련 문화유산을 보관한 사찰 세이켄지(淸見寺)와 조선통신사의 이동 경로였던 삿타토우게(薩埵峠) 통신사 길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1) 교고산(巨鼇山) 세이켄지(淸見寺)

〈세이켄지〉는 시즈오카시 시미즈구(淸水區)에 위치한 임제종(선종) 사찰로, 650년에서 654년 사이 창건 이후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85-1333) 선종으로 개칭, 1262년 교토 도후쿠지(東福寺)를 창건한 쇼이치국사(聖一國師)를 초빙하여 선종 사찰로서의 낙성법요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사찰은 '산문-불전-본당-서원'이 평행하게 연결된 배치 방식을 띠고 있으며, 본당, 정원 등에 여러 역사적 의미를 갖는 유산을 포함한다[130]. 1825년 중건된 본당에는 석가모니 본존 등 불상을 비롯한 류큐 왕자가 쓴「永世孝亨」편액, 조선통신사 시문 등이 보관되어 있다.

129) 17세기~19세기에 생산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일 양국의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증거로 인정받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111건 333점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공동)으로 등재되었다. 일본 히로시마현(広島県)의 토모노우라(鞆の浦), 오카야마현(岡山県)의 우시마도(牛窓), 시가현(滋賀県)의 오미하치만(近江八幡)과 히코네(彦根), 시즈오카현(静岡県)의 오키쓰(興津) 등에 조선통신사 유적이 있다.

130) 1825년에 중건된 본당에는 석가모니 본존과 11면 관세음보살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류큐 왕자가 쓴「永世孝亨」편액이, 양쪽 면에는 조선통신사의 시문이 걸려 있음. 본당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3녀 쇼세이인(正淸院)의 기부로 조성된 대현관(大玄關)이 있고 본당 맞은편에는 140.2m 높이의 종루(鐘樓, 1314년 제작)가 배치되어 있다. 외부공간은 오백나한석상(五百羅漢石像, 1781~1788년 제작), 에도 초기에 조성된 정원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수 심었다는 와룡매(臥龍梅) 등이 있다.



[그림 3-32] 세이켄지 가람 배치도
출처: 연구진 촬영.

이후 〈세이켄지〉는 무로마치 막부의 관사(官寺), 전국시대 진지(陣地) 등으로 사용되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131]로 활용된다. 전국시대로 황폐화된 사찰을 1540년 승려 다이겐셋사이(太原雪斎)가 재건하였으며, 이후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머물고 에도시대 260년 동안 도쿠가와 일가의 귀의처가 되었다.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서 온 첫 번째 통신사를 환대하고 〈세이켄지〉를 숙박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후, 〈세이켄지〉는 통신사의 휴게 장소로 여러 차례 이용되었으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이 『해사일기(海槎日記)』 등의 사행록에 언급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31)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336-1573) 세이켄지는 막부의 관사로 정해지고 전국의 오산십찰(五山十刹) 중 하나가 되었다.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쇼군인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는 세이켄지를 깊이 숭배하였다고 알려지며 스루가(駿河, 시즈오카현) 지역을 지배했던 이마가와(今川) 역시 세이켄지를 외호(外護)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전국시대 세이켄지 일대는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자연 요새여서, 주요 쟁탈지가 된다. 이마가와, 도쿠가와, 다케다, 호조 등 전국시대의 다이묘들이 번갈아 가며 공격과 퇴각을 반복했고 이때마다 세이켄지를 진지(陣地)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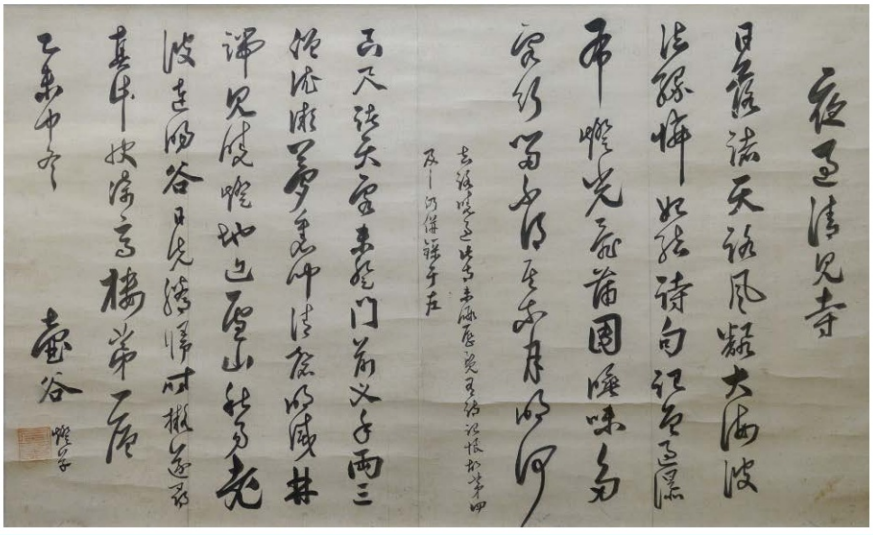
세이켄지 총문(總門)의 동해명구(東海名區) 현판
(제8차 통신사 역관 현덕윤의 글씨)



세이켄지 종루 경요세계(瓊瑤世界)* 현판
(제5차 통신사 독축관 박안기의 글씨)



종사관 남용익의 오언율시(夜過淸見寺)와 칠언율시(夜過淸見寺)
(1655년, 가로 55.6cm× 세로 99.2cm, 비단에 묵, 세이켄지 소장)



[그림 3-33] 교고산 세이켄지 내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 및 기록

*주: 경요세계(瓊瑤世界)는 '두 아름다운 나라가 만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뜻이며, '경'과 '요'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를 비유하는 것으로, '양국이 만난 장소'라는 의미를 담은 글귀로 풀이된다. 출처: 연합뉴스. (2014). "일본 시즈오카 사찰에 각인된 한일 문화교류의 흔적". 2014.12.05. https://www.yna.co.kr/view/AKR20141205003100073?input=1195m (검색일: 2023.11.02.)

출처: (위) 연구진 촬영; (아래) 시즈오카 역사박물관(歷史文化のまち靜岡 さきがけミュージアム) 홈페이지. http://www.shizuoka-bunkazai.jp.k.mm.hp.transer.com (검색일: 2023.11.03.)

(2) 삿타토우게(薩埵峠, 삿타고개) 통신사길

〈삿타토우게 통신사길〉은 시즈오카현 시미즈구 오키쓰(興津)와 이하라군(庵原郡) 유이초(由比町) 사이의 약 3km에 달하는 고개이다. 에도시대 도카이도(東海道)의 오키쓰슈쿠(興津宿)와 유비슈쿠(由比宿) 사이의 고개로, 가파르고 험난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이 왕래했다. 삿타토우게는 만요시대(万葉時代)부터 이와키산(磐城山)이라 불렸는데, 가마쿠라 분지원년(文治元年, 1185), 근처 바다에서 지장보살상 석상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이를 산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산의 이름도 보살(菩薩)과 같은 의미의 삿타(薩埵)로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메이레키원년(明暦元年, 1655)에 조선통신사를 위해 산 중턱을 끊어 처음으로 길을 냈으며 1682년에 본격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진다. 에도시대에 삿타토우게를 넘어가는 길은 3개가 있었는데, 이중 통신사를 위해 낸 이 길은 중도(中の道)에 해당한다.

전경 (좌: 삿타고갯길, 우: 도카이도표(東海道標), 시미즈시 지정 명승표)



삿타토우게 전망



[그림 3-34] 삿타토우게 통신사길

주: (위) 표식은 오키쓰에서 출발하여 후지산이 처음 보이는 지점에 세워져 있다. (아래) 조선통신사가 이용한 삿타고갯길은 도카이도의 한 구간으로, 험난한 지형이지만, 후지산(富士山)과 스루가만(駿河灣)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을 갖추고 있다.

출처: 연구진 촬영.

- 관리 및 활용 현황

〈세이켄지〉와 〈삿타토우게 통신사길〉은 각각 전통 사찰 및 하이킹 코스 등 관광 명소로 주로 활용되며, 각 유산은 세이켄지와 시미즈시의 소유 및 관리 하에 있다.

(1) 교고산 세이켄지

〈세이켄지〉는 중건 이후부터 1300년 동안 전통 사찰로 사용됐으며, 미호마쓰바라(三保松)와 후지산(富士山)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후 경내에 철도가 놓이고[132] 해안 매립공사,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사찰 경내와 주변이 크게 변형되었다.



[그림 3-35] 철도 부설 후 세이켄지 일대 전경
주: 쇼와 초기 촬영 추정.
출처: 更級日記紀行 홈페이지. https://sarasina.jp/index.php/user_data/seikenji (검색일: 2023.11.02.)



[그림 3-36] 현재 세이켄지 주변(해안) 경관
주: 해안 매립공사로 사찰 주변 풍경이 크게 변화함.
출처: 연구진 촬영.

(2) 삿타토우게 통신사길

〈삿타토우게 통신사길〉은 에도(도쿄)를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일본 동서교통의 요충지[133]이자 하이킹 코스로 활용된다. 특히, 하이킹 코스는 전망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지산이 내려다보이는 것으로 유명한 시즈오카시의 관광 코스이다.



[그림 3-37] 삿타토우게 하이킹코스맵
주: 삿타토우게 통신사길은 ③~⑦구간임.
출처: 시즈오카시(静岡市) 홈페이지. '薩埵峠ハイキングコースマップ'. https://www.city.shizuoka.lg.jp/000950962.pdf

132) 총문(總門)과 산문(山門, 1651년 낙성) 사이를 도카이도 본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133) 도메고속도로(東名高速道路), 국도1호, 도카이도본선이 집중된 일본 동서교통의 요충지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은 임진왜란으로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유적으로, 양국에서는 드물게 정치적·역사적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소재국(일본)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고려하여 조선통신사 관련 지역, 장소 등을 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유·무형 유산을 통합하는 방식을 이용해 유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표 3-49].

[표 3-49]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관련 소재국(일본) 내 문화유산 지정 현황

유산명	연도	내용
세이켄지	1994	• 세이켄지 경내 '조선통신사 유적'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134] (10.11.)
	2006	•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48점[135] 시즈오카현 유형문화재(역사 자료) 지정
삿타토우게 통신사길	1962	• 시미즈시 명승 지정(9.17.)
공통	2017	• 세계기록유산 등재
	2020	• 일본 유산 구성문화재 「일본 최초 '여행 붐'을 일으킨 야지상(彌次さん), 기타상(喜多さん)의 슨슈(駿州) 여행」(시리즈형)에도 선정[136]

출처: 현지 조사 결과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특히, 통신사가 남긴 기록물, 방문했던 사찰, 에도로 가는 길 등 관련 장소가 잘 보존되어 있어 에도 막부 시기 조선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의 증거이며 조선통신사 활동의 가치 및 당시 조선의 문화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국외소재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다. 이렇듯 양국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조선통신사라는 소재를 매개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선통신사 재현 행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34) 1994년 10월 1일, 일본 정부는 후쿠야마시(福山市) 도모쵸(鞆町) 후쿠젠지(福禪寺),세토우치시(瀨戶內市) 우시마도쵸(牛窓町) 혼렌지, 시즈오카시 시미즈구(清水區) 오키쓰 세이켄지(鞆福禅寺) 경내(境內), 우시마도 혼렌지(牛窓本蓮寺) 경내, 오키쓰 세이켄지 경내를 '조선통신사 사적'으로 분류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135) 세이켄지 경내에는 통신사가 남긴 각종 편액과 시판(詩板), 회화 등 48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현판 등의 목판 상당수는 시즈오카현 지정문화재로 관리 중이다. 제5차 통신사 독축관((讀祝官) 박안기(朴安期,1608~미상)의 '경요세계(瓊瑤世界)', 제6차 통신사 정사 조형(趙珩, 1606~1679)이 쓴 '흥국(興國)'과 종사관 남용익(南龍翼)의 '밤에 청견사를 지나다(夜過淸見寺)' 등의 시문, 제8차 통신사 역관 현덕윤(玄德潤, 1676~1737)의 '동해명구(東海名區)' 등이 유명하다.

136) 2020년, 일본 문화청에서는 시즈오카시와 후지에다시(遠江市) 사이의 도카이도(東海道)인 "두 고개 여덟 숙소(二峠八宿)"을 일본유산(Japan Heritage)으로 지정했다.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면 구성문화재로 인정되는데, 도카이도 "두 고개 여덟 숙소(二峠八宿)"에는 유형·무형 문화재 35건이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이켄지와 삿타고갯길도 포함된다.




[그림 3-38]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개최(2023)

주: 오키쓰역에서 세이켄지까지,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시즈오카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진행, 조선통신사 시즈오카 네트워크, 재일민단 시즈오카현 지방본부, 주요코하마한국총영사관 총영사,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

출처: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2023.10.8.) 당일 연구진 촬영.

정기적 교류 행사를 운영해 왔으나 양국 외교 관계의 부침, 지역 중심의 행사가 갖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은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회 중심의 교류 행사와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조선통신사 관련 다른 유적들과 연계한 공유유산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예로, 기존의 교류 행사를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를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의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영친왕 별장(일본 시즈오카 미시마(三島) 라쿠쥬엔(樂壽園, Rakujukan House))

[표 3-50] 영친왕 별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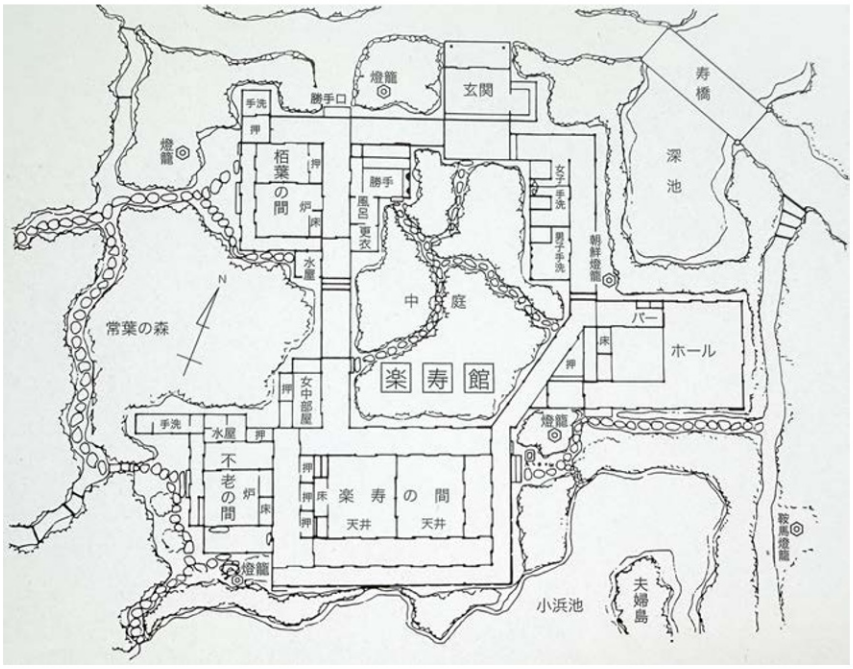
구분		내용
건축 개요		• 주소지: 시즈오카현 시미즈시(三島市) 이치방쵸(一番町)19-3 라쿠쥬엔(樂壽園) 내 • 건축연도: 1890년 (1907년 이후 홀 증축) • 구성: 스키야(數奇屋) 양식과 교토풍 건축술이 결합된 건물로, 중정을 중앙에 두고 복도를 두르고 3개의 주요 간(間)을 구성
연혁	1880년 경	• 오하마이케(小浜池) 일대에 사교 클럽하우스 조성 계획 수립
	1890년	• 오하마이케(小浜池)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彰仁) 황태자의 별저(別邸) 조성
	1894년	• 라쿠쥬엔 상량식 거행 (황태자 사후 직전인 1902년까지 사용)
	1907년	• 영친왕 거처 시작, 이후 매년 방문하는 피서지로 사용, 홀(hall) 증축
	1927년	• 도쿄 요코하마 전철 경영자였던 오아케 게이조(緒明圭造)가 전체 매입
	1952년	• 라쿠쥬엔의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시립공원)
	1954년	• 국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라쿠쥬엔) • 미시마시 지정문화재 등록(라쿠쥬칸)
	1971년	• 시즈오카현 지정문화재 등록(라쿠쥬칸)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주체: 미시마시 • 운영·관리 주체: 미시마시
	용도	• 정원을 포함한 라쿠쥬엔 전(全) 영역은 시립공원으로 이용 중이며, 라쿠쥬칸은 하루 6차례 개방, 문화재 관람 투어 진행
	문화유산 지정 여부	• 라쿠쥬칸(樂壽館): 1954년 국가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지정 • 라쿠쥬엔(樂壽園): 1954년 미시마시 지정문화재로 등록, 1971년 시즈오카시 지정문화재로 등록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라쿠쥬엔은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이자, 이 지역의 오랜 명소였던 까닭에 공간 변천사가 기록으로 잘 정리되어 있음 • 라쿠쥬칸에는 에도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모습이 담겨 있으며, 건물에 장식된 회화가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음
	국외 소재 유산	• 영친왕이 유년 시절에 머물렀고 이후 피서지로 사용한 공간 • 건물 증축 등, 대한제국 황실 기록을 통한 역사적 입증 가능성 있음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대한제국 황실의 일본 행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 가능성 있음 • 도쿄의 영친왕 거처 등 관련 유적과 연계 가능성 도모 가능

출처: 일본 현지 조사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23.08.17; 2023.09.12.; 2023.10.06-09)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

〈영친왕 별장(라쿠쥬엔,樂壽園)〉은 미시마역 남쪽에 위치한 현재 시민공원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영친왕의 별장 건물로 사용된 '라쿠쥬칸(樂壽館)' 및 주변 정원 등을 포함한 유산이다.

〈영친왕 별장(라쿠쥬엔)〉의 주요 건물인 라쿠쥬칸은 1890년(메이지 23년) 고마쓰노미야 아키히토(小松宮彰仁) 황태자의 별저(別邸)로 조성한 건물이다. 1907년(메이지 45년)부터 영친왕이 이곳에 머물렀고 매년 피서를 위해 방문한 장소이기도 하다. 영친왕이 머물며 증축한 곳은 건물의 홀(Hall)로, 당구를 치거나 댄스파티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1927년 민간인(도쿄 요코하마 전철 경영자, 오아케 게이조(緒明圭造)가 전체를 매입한 후 1952년 '라쿠쥬엔(樂壽園)'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그림 3-39] 라쿠쥬칸 배치도
출처: 三島市樂壽園.「樂壽館の裝飾繪畵」. p.2.

별장 건물은 에도시대에 완성된 스키야(數奇屋)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교토풍 건축의 기법을 볼 수 있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또, 건물은 방 2개가 이어진 '낙수간(樂壽の間)'과 차를 마시는 '불로간(不老の間)', 넓은 툇마루인 히로엔(廣緣)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일체화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별장 내에는 여러 유·무형문화재들이 있어 당시 건물의 위상을 알 수 있다.[137]



[그림 3-40] 라쿠쥬칸의 남쪽에 조성된 오하마이케(小浜池)와 정원
출처: 연구진 촬영.

- 관리 및 활용 현황

〈영친왕 별장(라쿠쥬엔)〉 일대는 현재 미시마시에서 소유 및 운영·관리하고 있다. 라쿠쥬엔의 전 영역은 시립공원으로 이용 중이며, 별장 건물(라쿠쥬칸)은 하루 6차례 개방, 문화재 관람 투어 등을 진행하는 관광 명소로 활용된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영친왕 별장(라쿠쥬엔)〉 일대는 지질학적·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영친왕이 머무르며 사용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한·일 양국에 의미를 갖는다.

먼저, 〈라쿠쥬엔〉 일대는 그 역사가 1 만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된 곳으로, 다양한 가치가 중첩된 장소다. 먼저 용암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라는 점에서 지질학적 가치가 있으며,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나타난 사교를 위한 클럽하우스 건설 계획, 에도와 교토의 특징이 절충된 건축과 정원 계획, 공원으로의 개방 과정 등의 역사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미시마시의 지정문화재이자(1954년 지정) 시즈오카현 지정문화재(1974년 11월 20일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영친왕 별장(라쿠쥬엔)〉은 영친왕이 거주한 공간이며, 영친왕이 증축한 라쿠쥬칸의 홀은 대한제국기 궁궐에서 보이는 기능과 일부 중첩되는 지점이 있어 대한제국기 황실 건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내 국외사적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의의를 지닌다.

137) 우리의 국가무형문화재에 해당하는 제실 기예원(帝室 技藝員)과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후스마(ふすま), 미닫이문, 삼나무 판문, 천장 등 210면에 달하는 장소에 그려져 있다. 주실(主室)에는 「천우천조도(千羽千鳥圖)」가 그려져 있는 후스마와 80면의 꽃 천장화가 그려져 있어 공간에 중후함을 더한다. 회랑에서부터 오하마이케(小浜池)와 자연숲을 활용한 정원이 조망된다.

따라서, 향후 라쿠쥬칸과 정원 구역 등 〈영친왕 별장(라쿠쥬엔)〉은 관련 연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영친왕 관련 장소와 연계하는 공유유산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먼저, 〈영친왕 별장(라쿠쥬엔)〉은 이미 이 구역의 가치를 소재국(일본) 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영친왕의 건물(라쿠쥬칸) 증축에 관한 내용은 상세하게 조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공유유산으로 활용된다면 관련 연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도쿄, 오이소(大磯) 등에 있는 영친왕과 관련된 장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이미 라쿠쥬엔 일대 구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공유유산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본 정부와 시즈오카현, 미시마시 등 관련 기관과의 면밀하고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조선식 산성

[표 3-51] 조선식 산성 개요

구분		내용	
건축 개요	오노성 유적 (大野城跡)	• 주소지: 후쿠오카현 다자이후시 우미쵸 외 (우미쵸 지역이 유적의 80%) • 건축연도: 665년 • 구조: 성벽 둘레 6.5km, 이중 축조한 성벽까지 포함하면 둘레 8.5km의 포곡식 산성으로, 대부분 토축이며 계곡 구간만 석축으로 축조됨	
	기이성 유적 (基肄城跡)	• 주소지: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 기야마쵸 • 건축연도: 665년 • 구조: 계곡 3개를 둘러싼 성벽 둘레 4km의 포곡식 산성으로, 대부분 토축이며 계곡 구간만 석축으로 축조	
	가네다성 유적 (金田城跡)	• 주소지: 나가사키 쓰시마시 미쓰시마쵸 • 건축연도: 667년 • 구조: 해안부터 산 정상부까지 성벽 둘레 약 2.2km의 포곡식 성곽으로, 대부분 석축으로 조성되었고 일부 구간만 토축	
연혁		665	• 오노성(大野城), 기이성(基肄城) 축조
		667	• 쓰시마 남부 해안가 산에 가네다성(金田城) 축조
		698	• 오노성, 기이성 수리
		8세기 중반	• 기이성 창고 곡식을 나라에 나누어 줌
		826	• 오노성 수리
		876	• 오노성 군량미를 성내 창고에 보관하게끔 함
		1932	• 오노성 유적 일본 국가사적으로 지정
		1937	• 기이성 유적 일본 국가사적으로 지정
		1953	• 오노성 유적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
		1954	• 기이성 유적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
		1962	• 가네다성 유적 나가사키현 사적으로 지정
		1982	• 가네다성 유적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
		2014	• 미즈키, 오노성, 기이성 축조 1350주년
관리 및 활용현황		소유·운영·관리 주체	• 소유주체: 불명확 • 운영·관리 주체: 일본 문화청
		용도	• 24시간 개방하는 녹지공간으로 산림 산책로가 잘 보임
		문화유산 지정 여부 – 오노성 유적	• 1932년 일본 국가사적 지정, 1953년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승격 • 일본유산 “고대일본의 서쪽 수도-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의 구성문화재, 일본 명성 100선
		문화유산 지정 여부 – 기이성 유적	• 1937년 일본 국가사적 지정, 1954년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승격 • 일본유산 “고대일본의 서쪽 수도-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의 구성문화재, 일본 명성 100선

구분	내용	
	가네다 성유적	• 1962년 일본 나가사키현 사적 지정, 1982년 일본 국가특별사적으로 승격 • 일본유산 "'국경 섬 이키, 쓰시마, 고토-옛부터 시작된 다리"의 구성문화재, 일본 명성 100선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소재국 유산	• 고대 산성으로 약 136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산 • 오노성, 기이성은 고대 일본의 수도 다자이후의 지역 특성을, 가네다성은 국경 지역의 지역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국외 소재 유산	• 백제 도성의 조영 특성, 포곡식 산성의 조영 방식 등 한국 성곽 문화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함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양국이 협력하여 공동 연구, 공동 보존관리 등을 진행 가능 • 고대 시기 소재국과 한국의 교류와 관련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전시, 교육,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진행 가능	

출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관계자 인터뷰(2023.08.17.; 2023.09.12.) 및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 자료; 서정석. (2013). 백제산성이 일본 '조선식산성'에 끼친 영향. 역사와 담론 67: 151-195.; 오다 후지오. (1999) 일본에 있는 조선식 산성의 조사와 성과. 고구려연구 8: 603-652.; 서정석. (2020). 서일본 '조선식산성'의 축성 기록과 백제산성. 백제학보 31: 81-104.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개요 및 연혁[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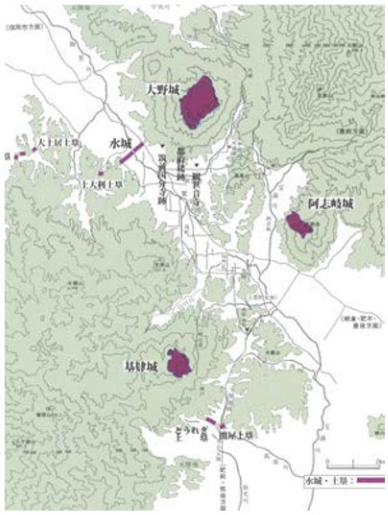
〈조선식 산성〉[139][140]은 663년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주류성 함락 후 백제 지배층이 일본으로 건너와 축조한 산성이다. 664년 미즈키(水城)를 축조해 큰 도랑을 파고 물을 담아 차단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665년 오노성(大野城)과 기이성(基肄城)을 축조했다. 오노성과 기이성, 미즈키는 다자이후를 둘러싸는 일종의 나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해지며, 이러한 체계는 백제 부소산성과 비교되어 왔다. 그리고 667년 국방의 최전선이자 군사적 긴장이 높았던 쓰시마 남부 해안 죠야마(城山) 산에 가네다성(金田城)을 조성했다. 이후 다수의 백제식 산성이 축조되어 규슈, 세토 내해((瀨戶內海)에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규슈에 많은 성이 밀집 분포하고 있고 다자이후(大宰府)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의 배치를 보인다.

138) 서정석. (2013). 백제산성이 일본 '조선식산성'에 끼친 영향. 역사와 담론 67: 151-195.; 오다 후지오. (1999) 일본에 있는 조선식 산성의 조사와 성과. 고구려연구 8: 603-652.; 서정석. (2020). 서일본 '조선식산성'의 축성 기록과 백제산성. 백제학보 31: 81-1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139) 일본에서는 일본 서부에 있는 고대 산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7세기 후반 백제 멸망 후 일본에 망명한 백제 유민들이 축조한 성곽으로 '조선식 산성'으로 일컬어진다. 조선식 산성으로 분류하는 수는 9-13개소로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 가장 초창기에 축조되고 성곽 위치와 시설 유구가 명확히 남아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국가특별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오노성 유적(大野城跡), 기이성 유적(基肄城跡), 가네다성 유적(金田城跡)**, 3개 유산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140) 관련 연구(서정석(2013, 2020))에서는 일본에 망명한 백제 유민들에 의해 축조되고 백제 양식이 사용된 성곽인 만큼 '백제식 산성'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소재국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하여 따르고자 '조선식 산성'으로 지칭한다.

오노성와 기이성 위치도(좌), 오노성 평면도(우) (출처: 오노성시립박물관(大野城心のふるさと館) 홈페이지. https://www.onojo-occm.jp/li/500/510/511/20220515182003.html (검색일: 2023.10.27.); 서정석. (2013).)





기이성 평면도(좌), 가네다성 평면도(우) (출처: 서부 수도(西都 太宰府) 홈페이지. https://www.kyuhaku.jp/dazaifu (검색일: 2023.10.27.); 오래된 성의 흥망성쇠(古城盛衰記)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a/onodenkan.net/lie-dao-cheng-zhi-ji-xing (검색일: 2023.10.27.))





오노성 성벽 석축구간(좌), 내부 동선(우) (출처: 고대 일본의 서부 수도(古代日本の「西の部」) 홈페이지. https://www.nishinomiyako.com/heritage/onojoato/(검색일: 2023.10.27.))





오노성 유구(좌), 기이성 정상 구간(우) (출처: 고대 일본의 서부 수도(古代日本の「西の部」) 홈페이지. https://www.nishinomiyako.com/heritage (검색일: 2023.10.27.))




기이성 토루(좌), 기이성 성문 유구(우)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kyouiku/bunkazaika/bunkazai/shinainobunkazai/1274.html (검색일: 2023.10.27.))




조산과 가네다성 전경(좌), 가네다성 석축 구간(우)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kyouiku/bunkazaika/bunkazai/shinainobunkazai/1274.html (검색일: 2023.10.27.))




자연석으로 축조된 가네다성 성벽(좌), 가네다성 성문 터(우) (출처: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kyouiku/bunkazaika/bunkazai/shinainobunkazai/1274.html (검색일: 2023.10.27.))




[그림 3-41] 일본 조선식 산성 관련 도면과 사진
출처: 각 사진 출처 참고.

〈조선식 산성〉은 자연지형과 입지여건에 따라 축성방식에 차이가 있다. 665년 함께 축조된 오노성·기이성 유적의 경우 성곽은 대부분 토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계곡 구간만 석축으로 조성되었다. 반면 2년 뒤 축조된 가네다성은 대부분 석축으로 조성되고 일부 구간만 토루로 되어 있다.

〈조선식 산성〉은 비축 창고군, 병사 숙영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도 기능했다. 오노성 유적과 기이성 유적은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던 고상(高床) 창고, 즉 전투, 재해, 기근 등에 대응하는 비축 창고군[141]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기이성 유적의 경우 다자이후 관리들이 성곽에 올라 노래 등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서도 기능하였으며, 4개 이상의 배수시설을 갖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네다성은 성 중앙부에서 발굴된 많은 건물터가 병사들의 숙영지 등 중추 기능을 하는 시설로 추정된다. 오노성은 665년 축조되어 9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간 산성으로 기능했으며, 가네다성은 667년 축조되어 8세기 초 이후에는 거의 폐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관리 및 활용 현황

〈조선식 산성〉은 모두 소재국(일본)의 국가특별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본 문화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4시간 개방하는 산책로, 경관 조망지점(성곽 정상부) 등으로 기능하고 있는 유산이다. 또한, 각각의 유산은 일본 명성 100선[142], 다른 유산과 연계하여 '일본 유산(Japan Heritage)'[143]로 인증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 명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세 성곽 간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예로 2014년에는 '미즈키, 오노성, 기이성 축조 1350주년'을 맞이하여 세 성곽을 연계하여 전시,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 가능성

〈조선식 산성〉 중 오노성, 기이성, 가네다성 유적은 소재국(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역사적·건축적 의미를 갖는 유산으로,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1) 오노성 유적의 경우 최근까지 9개 성문, 성곽 내부 약 70동의 건물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건물들은 대부분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던 고상 창고로 추정된다. 기이성 유적의 경우 4개 성문과 약 40개의 건물 초석이 남아 있으며, 나라 시대 많은 창고가 지어지며 기근과 재해에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는 기능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142) 일본성곽재단(Japan Castle Foundation) 창립 50주년을 맞아 '일본 명성 100선(続日本100名城)'을 선정하였는데, 세 성곽 모두 100선에 포함되었다.

143) 오노성·기이성 유적은 "고대일본의 서쪽 수도-동아시아와의 교류 거점"이라는 일본유산 스토리의 구성문화재이며, 해당 스토리는 다자이후 도시를 보호하는 요새로서 두 성곽의 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가네다성 유적은 2015년 일본 유산으로 인증된 "국경 섬 이키, 쓰시마, 고토-옛부터 시작된 다리"의 구성문화재이며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교류 거점 역할을 한 지역적 가치를 강조한다.

먼저, 소재국(일본)에서는 일본 고대 산성이면서 지역 내 다른 유·무형 문화재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3개의 산성은 백제 유민이 일본에 도착해 가장 처음으로 축조한 것으로, 일본 고대 산성의 특성을 잘 담고 있고 1360년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어 일본의 국가특별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일본에서 추진 중인 '일본 유산(Japan Heritage)'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활용되는 등 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에서도 백제 도성의 조영 특성, 포곡식 산성의 조영 방식 등과 연계하여 한국의 성곽 문화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역사적·건축적 의미가 깊다.

따라서, 향후 〈조선식 산성〉이 공유유산으로 활용된다면 관련 연구를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양국의 관련 유산과 연계하는 공유유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 3개 성 이후에 축조된 〈조선식 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조사 또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백제역사유적지구나 다른 포곡식 산성과 연계하여 조선식 산성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전문가, 관련 유산과의 연계 등을 통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용 사업의 진행도 도모할 수 있다.

4. 국외사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유산 개념 적용 방향

□ 역사적 중요성과 현지 소재국 내 보존·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

현재까지 각 부·처별로 조사된 국외사적지의 목록은 대한민국과의 역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작성된 목록이다. 따라서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평가 또는 소재국 내 보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목록이 아니며, 일괄적으로 조사한 자원(resource)의 목록에 가깝다. 이에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 선별 과정에서는 해당 국외사적지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K-공유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 국외사적지 중에서도 양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문화재청(2008)의 보고서 및 일부 자료에서는 국외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표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국외사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양국에서의 역사적 중요성과 현지 소재국 내 보존·활용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K-공유유산 사업의 목적은 현지에서 국외사적지가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하며, 양국이 역사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소재국 간의 역사와 문화를 교류하는 매개체로서 국외소재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지 소재국 내 보존·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외사적지의 물리적 형태와 보존 상태를 주요한 지표로 상정하였다.

먼저 물리적 형태의 경우, 원형이 남아있지 않거나 추정 불가능한 경우는 현지에서의 보존·활용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사적지(史蹟地)의 특성상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터 등이 국외사적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도쿄역이 독립투사의 폭탄 투거지로 조사된 국외사적지 사례와 같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장소를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형이 남아있지 않고 멸실된 경우에는 복원이 쉽지 않으며, 복원된다 하더라도 이를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주일대한제국공사관의 경우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 가능한 사례인데, 이러한 경우 해당 국외사적지를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보존 상태의 경우, 현재까지 많은 국외사적지가 해외에 위치한다는 입지 특성상 멸실·훼손 위험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보존현황 및 보존상태가 조사된 자료는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2008)과 산림청(2023) 등 일부 자료에서는 현재 보존 현황을 등급화하는 등 별도 지표로 표기하고 있어, 이러한 지표를 활용하여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중요성만큼이나 현지 소재국 내 보존·활용 현황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에 대한 제외 및 검토기준 마련 필요

일부 국외사적지는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제외하거나 검토대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외사적지는 대한민국의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서 목록화하고 가치 조사가 필요한 대상임에는 분명하나,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이다. 즉, 해당 국외사적지를 공유유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검토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해당 국외사적지의 역사적 가치나 보존 필요성과는 무관하며,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외대상의 국외사적지로 동북공정 관련 이슈가 있는 중국 동북 3성 내 국외사적지, 친일 관련 및 일본 내 독립운동 관련 국외사적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외사적지는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가치를 서로 공유할 수 없으며, 충실한 연구·조사와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문화유산 가치의 공유라는 전략으로는 다룰 수 없는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여부 및 보존현황과 관계없이, K-공유유산 사업 전략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제외 대상으로 사전에 분류하여야 한다.

검토대상은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양국에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지속적 검토 및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식민통치와 관련된 국외사적지, 일본 내 대한제국 황실 관련 국외사적지, 전쟁 및 이민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각국의 국외사적지 등을 검토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에 대한 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도쿄 영친왕 저, 보화종루, 영친왕 별장 등의 국외사적지를 대상으로 3.3절에서 활용·관리 현황 및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검토대상 사례는 대부분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단, 소유자가 해당

유산의 가치 또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국가 간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후 공유유산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도출 및 대상 사전분류 필요

사업대상 모니터링은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한 단계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검토대상을 포함하여 소재국, 시기 및 주제, 소유자 유형별 국외사적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외사적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조사 및 목록화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향후 K-공유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검토대상을 포함하여 활용·관리 중인 국외사적지의 여건 변화 등을 주요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검토대상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 차후 갈등이 봉합되거나 K-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이러한 사례를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적극적으로 활용중인 국외사적지의 경우에는 향후 소재국 내 문화유산 등재 또는 추가적인 교육·홍보 확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현지에서 활용 중인 사례 대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 및 기념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유유산의 개념을 접목하여 현지에서 해당 국외사적지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활용 중인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유산 개념 적용 및 사업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의 지표는 소재국, 시기 및 주제, 소유자 유형 등이 주요하다. 이러한 지표별로 기존 국외사적지를 분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재국의 경우, 국가 간 관계 변화에 따라 상호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를 중심으로 공유유산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시기 및 주제의 경우, 갈등 유발 국외사적지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며,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 시기·주제에 따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과의 협력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어 주요한 지표가 된다. 소유자 유형의 경우, 소유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소재국과 동일하게 국가 간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소유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대상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유유산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민간 소유자와의 협력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재국 내 가치 부여를 위한 현지 문화유산 지정·보호 제도 적용 대상 권장

현지 소재국에서 해당 국외사적지가 지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공유유산 개념 적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나, 기존 자료에서 가장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기도 하다. 조사 목적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는 주로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왔다. 이에 공유유산의 개념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재국 내 가치 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현지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를 가장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는 해당 국외사적지가 현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거나, 문화유산 관련 보호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었거나 역사지구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외사적지는 현지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대상이라 볼 수 있으며, 지정·등록 관련 공문서를 확인하여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기에도 용이하다.

현재 국보·보물·사적과 같이 국내 국가지정문화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외사적지 사례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적다. 예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들 수 있는데,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NPS)에서 국가 랜드마크로 선정한 바 있다.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의 경우 2018년 미국 국립공원청에서 국가 랜드마크 잠정목록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영국의 구 한국 명예총영사관 건물의 경우, 영국의 등재건축물(Listed Building)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일본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의 경우, 세이켄지는 경내의 조선통신사 유적을 포함한 관련 유산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삿타토우게 조선통신사 길은 명승으로 관리된다. 일본에 위치한 조선식 산성 중 오노성, 기이성, 가네다성 유적은 일본의 국가특별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편 시·도 차원에서 문화재로 관리되는 사례는 조금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LA 흥사단소가 최근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차후 미국 국립공원청(NPS)에서 지정하는 국가 랜드마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한미 우정의 종각, USC한국학연구소 및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등이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서재필기념관의 경우 필라델피아 미디어시에서 기념관 일대 녹지를 서재필기념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쿄 영친왕저가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외사적지가 문화유산구역 및 역사지구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경우 또한 소재

국 내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역사지구인 로건 서클(Rogan Circle) 내 위치하여 전체 구역관리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외관 등이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해당 역사지구와 관련된 문화유산적 의미를 지닌다. 영국 런던 주영대한제국공사관의 경우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용가능성은 낮지만, 네번 광장 보존구역(Nevern Square Conservation Area) 내 위치하므로 건축물의 원형과 특성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 현지 소재국 내 명소 입지 또는 주변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고려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소재국 내 유명한 명소 등에 입지하거나 주변의 유관 시설과 연계 가능한 대상을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현지 소재국 내 유명한 명소 내에 입지하거나 다수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인 경우, 멸실·훼손의 가능성이 낮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현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는 워싱턴 DC 내셔널 몰 내에 위치하여 한-미 관계를 보여주는 기념비로, 내셔널 몰 내에는 이외에도 미국과 다양한 해외국가 간의 교류·협력 및 역사 등을 보여주는 기념비 및 박물관이 다수 위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관리·활용 사례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지만 내셔널 몰 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아시아미술관에는 한국실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 관련 유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미국 LA의 한미 우정의 종각의 경우, 미국 남부 San Pedro 바닷가 언덕 위에 위치하며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미국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이다. 독일 베를린의 마르찬공원 내 서울공원과 프랑스 파리의 아끌리마따시옹공원 내 서울공원의 경우, 조성연도가 비교적 최근이므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낮지만, 한국 전통정원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각각 베를린 '세계의 정원', 파리 '볼로뉴 숲'과 같이 관광지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활용 가능성이 높다.

주변 시설과 연계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국외사적지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미국 LA 흥사단소는 대한인국민회 총회관 및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도산 안창호 광장 등과 매우 인접하여, 도산 안창호 관련 국외사적지 코스로 연계할 수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기념관의 경우, 한국 헤이그 특사와 관련하여 제2차 만국평화회의 개최 장소로 사용된 헤이그 빈넨호프(Binnengof) 왕궁 내 기사홀, 이위종 연설장소인 국제협회 건물, 과거 이준열사 묘역이 위치하였던 뉴 아이큰다우 공동묘지

등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대한제국공사관과 구 한국명예총영사관 건물은 이한응 열사 순국과 관련된 역사적 건축물로, 각각 1905년 이한응 공사대리가 순국한 장소 및 그의 순국 사실을 한국 정부에 보고하고 사후 수습과 유해를 처리했던 한국명예총영사 모건(W. P. Morgan)이 근무하였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연계 가능성이 높다. 일본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적 및 조선식 산성의 경우, 연속유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조선통신사 유적은 조선통신사가 왕복하였던 한국[144]-일본[145] 내 경로를 중심으로 관련 사적지를 추가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 가능성이 있다.

□ 문화적·예술적·지역적·사회적·교육적 방안 등 다양한 활용 전략 추진 필요

현재 국외에서 활용 중인 국외사적지는 대체로 역사기념관 및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문화적·예술적·지역적·사회적·교육적 방안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공유유산의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표 2-2]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외사적지 24개소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사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24개소 중 중국 사례와 및 매입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 재단 중심의 역사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전시관 또는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사실을 잘 보존하고 이를 유지 및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하지만, 모든 국외사적지가 역사전시관·기념관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다. 특히 공유유산을 통한 현지 소재국에서의 가치 공감 및 공유를 위해서는 현지 소재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국외사적지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3.3절의 현재 국외사적지 관리·활용 사례 분석을 참고하여, 몇 가지의 다양한 활용 추진 전략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적 활용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윤이상하우스는 한국 출신의 작곡가이자 현대음악의 주요 작곡가인 윤이상이 거주했던 장소로, 현재 기념관과 함께 예술가 레지던스 및 베를린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응노 아뜰리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

144) 2007년 한국 건축역사학회와 일본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한-일 조선통신사 관련 사적지 연구를 수행하고 '조선통신사의 길'이라는 기획전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단, 통신사 유적이 상당수 남아있고 관련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의 경우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부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관심이 높지 않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한겨레21. (2007). 세계문화유산 향해가는 조선통신사 여로. 2007.12.27.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1427.html (검색일: 2023.11.11.) 참고.

145) 다음의 저서에서 조선통신사 이동 경로와 관련된 일본 내 장소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14a).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14b).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2.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9).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파주: 한울아카데미.

장 이응노가 타계할 때까지 사용한 아뜰리에로 현재는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일본 가고시마에 위치한 심수관요는 일본의 도예문화에 영향을 미친 조선의 도자 장인 '심수관'의 대를 이어 운영 중인 도예공방 및 박물관이다. 1대 심수관이 1598년 정유재란 당시 피랍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15대까지 이어진 심수관 도자 장인이 일본 도예계에서 대표적 가문으로 발돋움하였으며 현재도 전통적 도자 제작 방식으로 자기를 굽는 도예공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예 공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생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현재 15대 심수관은 일본의 대한민국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어 있기도 하다.

두 번째로, 지역적·사회적 측면의 활용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미국 LA 흥사단소의 경우 2023년 2월 매입 이후 현재 활용 계획을 수립 중인데,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한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146] 프랑스 파리 한국친우회 창립지의 경우, 1921년 한국친우회 창립 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1894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년간 사회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주로 프랑스의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개인·기관 간 교류를 후원하고 연구해 온 곳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교육적 측면의 활용 전략을 추진하는 사례로는 미국 USC한국학연구소를 들 수 있다. 과거 도산 안창호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이 건물은 도산 안창호 가족의 거주지이자 1900년대 초 주거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LA시의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건물의 소유자인 USC 대학 또한 캠퍼스 확장 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USC한국학연구소는 USC 대학 내에서 Asian-American 및 Korean-American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 및 연구, 세미나 등을 수행하고 있다.[147]

□ 현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활용 필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외 국외사적지를 매입한 사례는 총 4건으로, 문화재청·국가보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식 목록 1천여 건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이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거나 역사적 중요성과 현지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수행되는 방법이다.

146) LA 흥사단소 복원 및 활용계획 수립 등을 수행 중인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 답사 내용 참고. 2023.7.14.
147) USC한국학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 2023.7.14.

이에 매입 방식은 가장 확실하게 국외사적지를 소재국 내에서 보존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매입 대상 선정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 지출과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다수의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국외사적지는 사실상 현지 소재국 내 기관 및 단체를 통해 보존 및 관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공유유산의 가치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유산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관계, 즉 K-공유유산 거버넌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소재국의 정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민간 기관, 한인 이민자 단체,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 관련 기념사업회·재단 등 범위와 유형이 다양하다. 이에 시범사업 대상에 따라 K-공유유산 사업을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파악한 후, 주체별 역량과 기관·단체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성 등의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조사 개요
2.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3.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4.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5.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4장에서는 해외 공유유산의 관리·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국외 소재 유산을 관리·활용하는 사례와 자국 내에서 타국과 연계된 유산을 관리·활용하는 사례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는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네덜란드는 국외에 소재한 네덜란드 관련 유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폴란드의 경우 과거 폴란드 영토였던 지역에 위치한 관련 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벨로루시 등 인접 국가와 협력하여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공유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재외공관 등 미 국무부에서 관리하는 해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 제도를 조사하였다.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사례와,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및 아프리카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공유유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네덜란드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탄자니아의 경우,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통한 해방운동 관련 기록물 보존과 옛 수도 다르에살람(Dar es Salaam)의 건축유산 보존 센터 설립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프리카 전체를 대상으로 도코모모(DOCOMOMO) 독일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Shared Heritage Africa' 디지털 기록화 사업을 조사하였다.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로는 중국, 스코틀랜드,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중국에서는 조계지역을 중심으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우호적 국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유산 트레일을 운영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이민유산을 자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하는 문화유산 정책 변화에 따라 아시아계 이민유산의 지정·등록이 확대되고 있는 제도적 여건의 변화 및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다.

[표 4-1]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조사 개요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네덜란드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공유유산 사업	▶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도출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		
	미국	해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 보존·활용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출처: 연구진 작성.

2. 국외 소재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네덜란드: 정부 주도의 국제교류 공유유산 사업

[표 4-2] 네덜란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2009년부터 4년 단위 국제문화정책 수립 • Dutch Mutual Cultural Heritage Policy 2009-2012 • Shared Cultural Heritage Policy 2013-2016 •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Framework 2017-2020 •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of the Netherlands 2021-2024	
주관 부처	• 외교부 • 교육·문화·과학부	
시행 기관	• 문화유산청(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the Netherlands) • 더치컬처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무형문화유산 네덜란드 센터(Dut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공유유산 주요 사업	매칭펀드 지원	• 파트너 국가(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미국) 중심 지원 • 매년 공유문화유산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펀드 지원
	국제해양유산	• 호주, 일본, 벨기에, 말레이시아, 쿠바,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인도네시아와 협력 • 국제해양유산 발굴, 보존관리 지원, 공동 연구
	아카이브 구축	• 인도네시아, 수리남,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가나, 인도 등 27개 국가와 연계 •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활동 장소 및 19세기 이후 주요 공사관, 여행 모듈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리랑카	• '갈 옛 시가지와 요새' 보존 및 활용 지원
	일본	• 일본에 소재한 네덜란드 유산 조사, 인벤토리 구축, 서적 간행
비고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 10개국, 2023년 기준 •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미국 **중점 국가(Focal countries)**: 13개국, 2023년 기준 • 벨기에, 중국, 독일, 이집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모로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한국	

출처: 더치컬처센터 홈페이지. https://dutchculture.nl/en(검색일: 2023.08.17.);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검색일: 2023.08.1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체계

네덜란드에서 공유유산 사업은 가장 중요한 국제문화정책 중 하나이다. 2009년부터 4년마다 공유문화유산 관련 국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공유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Dutch Mutual Cultural Heritage Policy 2009-2012'와 'Shared Cultural Heritage Policy 2013-2016'이 진행되었고, 이후 공유유산을 더 넓은 범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포함하는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Framework 2017-2020' 및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of the Netherlands 2021-2024'을 수립·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공유문화유산 사업은 외교부와 교육·문화·과학부에서 주관하며, 문화유산청(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the Netherlands), 더치컬처센터(Dutchculture, centr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무형문화유산 네덜란드 센터(Dut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 4개 기관이 시행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소재국과는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 중점 국가(Focal countries) 형식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10개 파트너 국가에 공유유산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소재국 내 네덜란드 대사관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현재 파트너 국가로는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미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 국가로는 벨기에, 중국, 독일, 이집트,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모로코, 폴란드, 스페인, 터키, 영국, 한국을 지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사업추진센터 설립: 더치컬처센터, 국제문화협력센터[148]

더치컬처센터는 네덜란드 국제문화정책 보조금과 유럽연합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국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국제 문화 협력과 교류를 통한 예술적·전문적 발전의 촉진과 국제 관계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으로, 호혜성과 포용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적 외교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파트너 국가, 중점 국가와의 파트너십 구축**

주요 활동 중 하나로 네덜란드와 연관된 국가를 우선하여 공유유산 발굴을 시작하였고, 국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148) 더치컬처센터 홈페이지. https://dutchculture.nl/en (검색일: 2023.08.17.);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검색일: 2023.08.17.) 참고하여 작성.

-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구 공유문화유산 매칭펀드) 운영

더치컬처센터는 네덜란드와 다른 국가 및 문화권을 연결해주는 매개로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가시화하기 위한 매칭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유문화유산 매칭펀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상호 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네덜란드 유산이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 다각적 통찰력, 역사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칭펀드에는 매년 €180,000(약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 중 75%는 파트너 국가와의 사업에, 25%는 중점 국가와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매년 국가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당 국가는 매칭펀드를 신청하기 전 더치컬처센터와의 자문회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주제, 지원사업과 네덜란드와의 관계, 지원사업과 소재국과의 관계, 그 밖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검토하여 선정한다. 2013년부터 시작해 2019년 기준 150건 이상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총 다섯 곳에 매칭펀드가 지원되었다.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네덜란드 건축가의 작품 관련 서적 발간, 지역주민에 대한 스토리맵 제작, 17-18세기 네덜란드 의복에 영향을 미친 인도 섬유 텍스타일 연구 및 재해석, 수리남 노예제도 관련 연극 제작, 케이프 식민지의 주요 지도자에 대한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펀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식민지 시기의 다크 헤리티지 또한 포괄하여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표 4-3]와 같다.

[표 4-3] 더치컬처센터 2020년 매칭펀드 지원사업

지원 사업	내용
인도네시아: Landmarks from a bygone era	• 19-20세기 중반 네덜란드 건축가 Eduard Cuypers(1859-1927)와 Arthur Fermont(1882-1967)가 인도네시아에 설계·건축한 100개 이상의 건축물 정보를 취합 • 네덜란드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버전의 서적 발간 지원
스리랑카: Towards a Virtual Slave Island. Contested Space and Everyday Life in Colombo	• 스리랑카 콜롬보의 노예섬과 관련하여 18-21세기 지역주민에 대한 온라인 스토리맵 작성 지원 • 중첩된 역사와 다양한 종교 커뮤니티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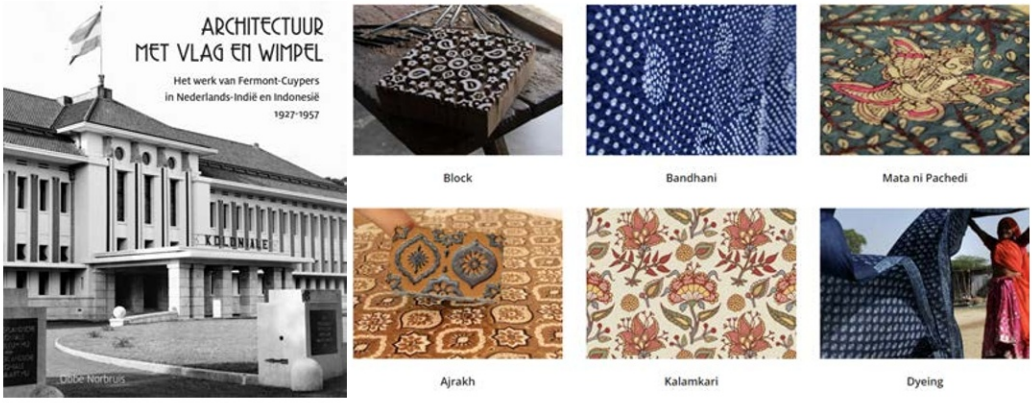
지원 사업	내용
인도: Indian perspectives on the textile trade between India and the Netherlands	• 인도와 네덜란드 사이 17-18세기 섬유무역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 프로젝트 지원 • 네덜란드 26명의 예술가 및 디자이너, 인도 17곳의 공방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참여 • 17-18세기 네덜란드 전통 의상에 영향을 미친 인도 섬유를 연구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
수리남 공화국: Zwarte Gat / Gouden Eeuw	• 수리남 예술 감독을 초청하여 네덜란드 노예제도의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된 연극 제작 지원 • 결과물은 암스테르담 극장과 수리남에서 공연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Barend Barends	• 남아프리카 원주민이자 1790-1839년까지 케이프 식민지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Barend Barends에 대한 조사 및 전시 지원

출처: 더치컬처센터 홈페이지. https://dutchculture.nl/en (검색일: 2023.08.1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NAME	FOCUS / THEME	FOCUS ON THE NETHERLANDS ?	FOCUS ON SCH COUNTRIES ?	FOCUS ON OTHER COUNTRIES?
AFKA - Amsterdams Fonds voor de Kunst	Arts	Yes (Amsterdam)	Yes, all	Yes
Algemeen-Nederlands Verbond	Dutch-Flemish	Yes	No	Yes, Belgium
Democratie en Media	Critical and independent journalism, democracy	Yes	Unclear	Yes, in exceptional cases
Diversiteitsbeleid Amsterdam	Human rights	Yes (Amsterdam)	Unclear	Unclear
DOEN	Green, creative, society	Yes	Yes, all	Yes
Fonds 1818	Society	Yes	No	No
Fonds 21	Arts and culture, youth and society	Yes	Unclear	Unclear
Fonds Anna Cornelis	Documentary photography	Yes	No	No
Fonds Bijzondere Journalistieke projecten	Journalism	Yes	No	Limited

[그림 4-1] 네덜란드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 선정 주요 기준

출처: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news/dutch-funds-culture-overview-funding-schemes-international-projects(검색일: 2023.08.17.)



[그림 4-2] 네덜란드 2020년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 결과물 예시
주: (왼쪽)인도네시아의 Fermont-Cuypers 서적, (오른쪽)네덜란드-인도의 섬유 텍스타일 연구(오른쪽)
출처: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news(검색일: 2023.08.17.)

□ 공유유산 주요 사업 1: 스리랑카 '갈 옛 시가지와 요새' 보존 및 활용 지원[149]

스리랑카 '갈 옛 시가지와 요새(Old Town of Galle and its Fortifications)'는 16-18세기 유럽의 건축 양식과 남아시아 전통의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로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스리랑카에 네덜란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많은 유형·무형유산이 있다는 판단하에, 네덜란드는 상호문화유산 정책 우선 국가 중 하나로 스리랑카를 선정하여 '상호문화유산(Mutual Cultural Heritage)' 문화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1988년 네덜란드 벨센(Velsen) 시와 스리랑카 갈 시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벨센 시의 자금 지원으로 갈 도서관 지붕을 수리한 것에서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992-1994년에는 네덜란드에서 갈 요새 고대 하수시스템 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네덜란드식 교회 보존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네덜란드와 스리랑카의 문화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건축, 박물관, 아카이브, 해양고고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유산 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건축유산의 실내·외 복원 및 보수, 해안 요새 성벽 보수, 박물관 재건 및 전시 콘텐츠 보강, Avondster 난파선 수중유산 연구 사업, 2004년 쓰나미 이후 문화유산 재건 등 다

149) ICOMOS India 홈페이지. 'Revitalization of Galle Dutch Fort'. https://icofort2014.files.wordpress.com/2015/07/galle-2015-new-delhi.pdf (검색일: 2023.10.18.); Janakiraman, Aarthi. (2019). The Local Identity Politics of World Heritage: Lessons from Galle Fort in Sri Lanka. Maste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네덜란드 스리랑카 재단. http://www.stichtingnederlandsrilanka.nl(검색일: 2023.10.18.)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4-3] 스리랑카 창고 건물 내부 복원 전(왼쪽)과 후(오른쪽)

출처: ICOMOS India 홈페이지. https://icofort2014.files.wordpress.com/2015/07/galle-2015-new-delhi.pdf(검색일: 2023.10.18.)

양한 사업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기술 지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유산 관광 부문의 협력 도모 등 보존, 교육, 학술교류, 관광 등 사업을 다각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통합적 도시재생과 스리랑카의 유산'이라는 관련 교육코스를 운영하였고, Galle Literary Festival을 지원하기도 했다.

스리랑카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유산센터(Mutual Heritage Centre)'가 운영되고 있는데, 스리랑카 중앙문화기금(Central Cultural Fund)에서 스리랑카 702.2M 루피(약 30억 원), 네덜란드 €5.62M(약 8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에는 1976년 네덜란드-스리랑카 재단(Foundation Netherlands Sri Lanka)이 설립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스리랑카 재단은 스리랑카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공유유산 주요 사업 2: 국제해양유산 발굴, 보존관리 지원 및 공동 연구[150]

네덜란드는 문화유산청을 중심으로 외국 해역의 난파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제해양유산의 발굴, 보존관리 및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네덜란드 문화유산청은 전 세계 1600척 이상의 네덜란드 난파선이 외국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해양유산을 위한 국제프로그램(2017-2021)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현재는 다른 공유문화유산과 같이 국제문화정책(2021-2024)에 포함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양유산 국제프로그램에서 지원한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지식을 공유하고 해양유산의 보존가치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3D 시각화 및 구술 역사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해양 역사와 난파선에 대한 콘텐츠도 발굴 중이다. 또한, 난파선에 대한 Maritime Stepping Stones(MaS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해양유산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관련 지침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제해양유산 사업은 네덜란드 내 교육문화과학부, 국방부, 외교부, 중앙부동산청(Central Government Real Estate Agency)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협력 국가로는 호주, 일본, 벨기에, 말레이시아, 쿠바,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은 네덜란드 국제협력 파트너 국가이기도 해 공유유산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유산을 관리한다.

대표적 사례로 서호주박물관과 함께 수행한 2차 세계대전 중 호주 항구도시 브룸(Broome)에서 난파된 네덜란드 수륙양용 항공기 조사 사업, 일본 해양유산 프로젝트인 'Search for the Van Bosse'에 공동 참여하여 일본 문화청 및 류큐대학과 함께 네덜란드 승무원과 타라마 지역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야기 수집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해양에 있는 네덜란드 잠수함 인양 및 잔해현장도 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문화유산청, 국방부, 외교부, 교육문화과학부가 참여하며, 말레이시아에서는 관광예술문화부, 외교부, 국방부가 참여한다. 영국과는 히스토릭 잉글랜드(Historic England)와 함께 Rooswijk, Klein Hollandia, Galloper wreck의 난파선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해양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50) 네덜란드 문화유산청 홈페이지. https://english.cultureelerfgoed.nl/topics/maritime-heritage; 네덜란드 국제해양유산 데이터베이스. https://mass.cultureelerfgoed.nl/(검색일: 2023.10.18.) 참고하여 작성.



[그림 4-4] 영국 Klein Hollandia 난파현장의 물병
출처: 네덜란드 문화유산청. https://english.cultureelerfgoed.nl/topics/maritime-heritage/international-projects/united-kingdom(검색일: 2023.10.18.)



[그림 4-5] 호주 Batavia 3D 스캔 모델링
출처: 네덜란드 문화유산청. https://english.cultureelerfgoed.nl/topics/maritime-heritage/international-projects/australia(검색일: 2023.10.18.)

□ 공유유산 주요 사업 3: 일본 소재 네덜란드 유산 연구[151]

네덜란드 문화유산청은 일본과 해양유산 프로그램 및 공유유산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여 일본에 소재한 네덜란드 유산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건조유산, 해양유산, 박물관 소장품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인벤토리 사업을 진행했다. 총 €103,592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문화유산 보전, 문화시설 운영, 미술/문화 홍보 등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관련 연구 성과는 책으로 간행하였는데, 2015년 초판을 발행하고 피드백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Shared cultural heritage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서적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서는 네덜란드-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네덜란드와 일본이 처음 관계를 맺은 리프데(Liefde) 호 시기(1600-1609), 히라도 무역 시기(1609-1641), 나가사키 데지마 무역 시기(1641-1853), 바쿠마추 시기(1853-1867), 일본제국 시기(1868-1941), 2차 세계대전 시기(1941-1945), 전후 시기(1945-현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네덜란드와 일본 간의 공유문화유산의 범주와 시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유산 부문별 전문가, 일본 내 관련 기관, 문화재 법제를 함께 조사하여 추후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데이터베이스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51) Klos, Marike and Derksen, Leon. (2016). Shared cultural heritage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나가사키 데지마 홈페이지. https://nagasakidejima.jp/english/restoration-work(검색일: 2023.08.06.) 참고하여 작성.



[그림 4-6] 일본과 네덜란드 공유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보고서

출처: Klos, Marike and Derksen, Leon. (2016). Shared cultural heritage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Atlas of Mutual Heritage[152)]

Atlas of Mutual Heritage(AMH)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활동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 지도, 도면, 인쇄물, 그림들을 기록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다. 암스테르담 미술사 연구자인 Martine Gosselink의 연구 성과에서 시작하여 1996-200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카이브로 공개하였다. 2004년부터는 서인도 회사 관련 정보를 추가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며, 이후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사관 이동 및 여행 모듈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여 아카이브를 보완하였다.

아카이브에는 이동경로와 기착지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연구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2,182개, 수리남 792개, 남아프리카 788개, 스리랑카 749개, 가나 632개, 인도 492개 등 27개 국가와의 컬렉션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의 AMH 아카이브는 네덜란드 국가기록원, 문화유산청,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에서 기금을 마련해 공동 구축해 온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해외 타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도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연계 제공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152) Atlas of Mutual Heritage 홈페이지. https://www.atlasofmutualheritage.nl (검색일: 2023.08.06.);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atlas-mutual-heritage. (검색일: 2023.08.06.) 참고하여 작성.

2) 폴란드: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유산 보존·관리[153]

[표 4-4] 폴란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1992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협정 체결 • 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 Poland-Belarus-Ukraine 2004-2006 • 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 Poland-Belarus-Ukraine 2007-2013 • 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 Poland-Belarus-Ukraine 2014-2020 • 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 Poland-Ukraine 2021-2027	
주관 부처	• 문화 및 국가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of Poland)	
협력 부처	•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시행 기관	• 폴란드 국가유산 이사회 (National Heritage Board of Poland) • 폴란드 바르샤바 예술학교(Warsaw Academy of Arts), 폴란드 빌라누프 궁전 박물관(Wilanow Museum-palace), 폴란드 자모이스키 박물관(Zamoyski Museum), 폴란드 국가유산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Heritage) 등	
공유유산 주요 사업	우크라이나 리비우	• 리비우 지역 내 폴란드 유산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중요 건축물의 복구 및 복원 지원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 주요 유산 조사와 보수 사업 •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 설립
	목조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국제센터와 폴란드 바르샤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공동 등재 준비 •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가 유산 관리 담당
	초국경 협력프로그램 지원	• 폴란드,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의 초국경 협력프로그램 지원 • 지역 문화와 역사,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 관련 프로그램 선정

출처: Cielatkowska, Romana. (2008). Instead of an Introduction.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Herych, Volodymyr.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81-9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배경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변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폴란드의 역사 유산이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기도 하

153) 폴란드 관련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Cielatkowska, Romana. (2008). Instead of an Introduction.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Herych, Volodymyr.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81-90.

며, 독일 유산이 폴란드 국경 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관련 국가들은 국경 변화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이 쇠락하고 정체성과 장소 정신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유유산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 추진 체계

1992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 간 문화유산 보호 관련 협정이 체결되며 공유유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보물, 문화재, 기록, 도서관 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재구성, 접근 관련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폴란드 국경 밖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사진·측량 등 복구를 위한 기초 연구, 유산의 복원·복구 지원, 출판, 국제회의, 전시, 대중 홍보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전파 등의 사업 목표를 마련하였다.

폴란드 공유유산 사업은 문화 및 국가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of Poland)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협력 관계로 참여한다. 사업 시행은 폴란드 국가유산 이사회 (National Heritage Board of Poland), 바르샤바 예술학교(Warsaw Academy of Arts) 등 전문가와 소재국 내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다.

□ 공유유산 주요 사업 1: 리비우 역사지구(L'viv–the Ensemble of the Historic Centre) 주요 건축유산 보존·복구

리비우 역사지구는 우크라이나의 세계유산으로, 1998년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리비우는 도시 구조 및 건축양식에 이탈리아와 독일, 동유럽의 전통이 융합되어 있으며, 도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을 가진 소수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리비우는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층위가 결합한 도시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같은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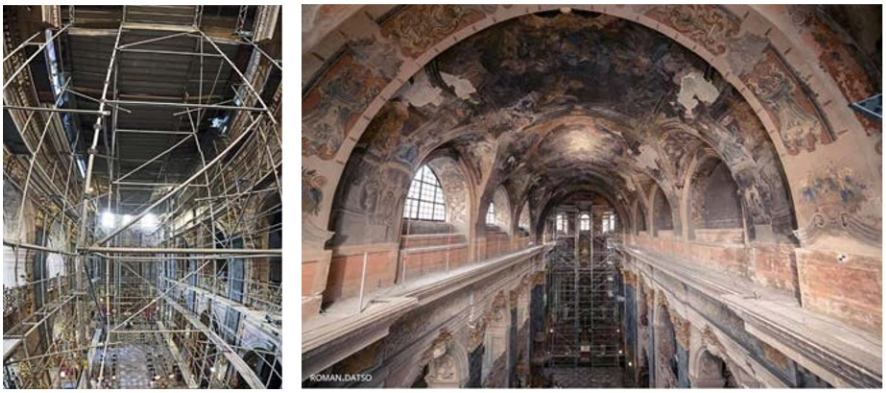
관련된 여러 국가 중에서도, 리비우 역사지구의 형성은 폴란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리비우는 과거 폴란드에 400년 동안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41년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이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에 포함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리비우 지역에는 다수의 폴란드 유산이 남아 있어 공유유산으로의 유산 관리 방안에 대해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에는 리비우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가 공동으로 '다문화 유산의 보존과 수리(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ulticultural heritage)'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공유유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심포지엄과 연구를 통해 리비우 지역에 폴란드 역사를 담고 있는 폴란드 교회, 묘지, 기념물, 그 외 랜드마크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던 폴란드 기록물은 일부 폴란드 아카이브로 이관하였다.

2014년에는 폴란드에서 4M PLN(약 12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중요 건축물 복구 및 복원을 지원하고 중요한 유산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대표적으로 Garrison 교회의 경우 2015-2021년에 걸쳐 7년간 20명의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 및 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복구를 위하여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와 리비우 시 역사환경부에서 기금을 지원하였고, 일부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최근 폴란드는 2022년 전쟁으로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 및 국가유산부에서 우크라이나 문화지원센터(Support Center for Culture in Ukrain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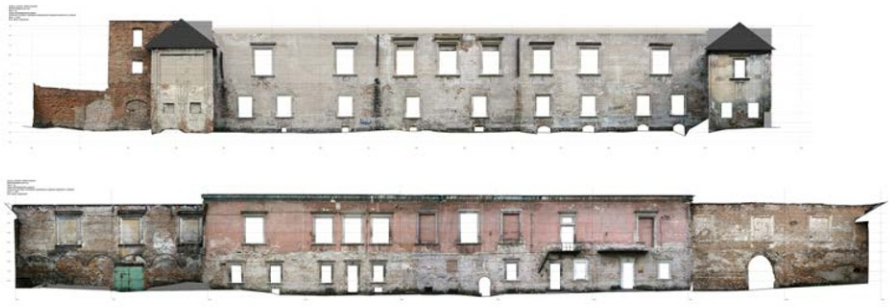
[그림 4-7] 리비우 Garrison 교회 공사 현장(왼쪽) 및 리노베이션 이전(오른쪽) 모습
출처: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17/international-project-renovates-priceless-frescoes-in-historic-garrison-church-in-lviv (검색일: 2023.10.20.)

□ 공유유산 주요 사업 2: 조브크바(Zhovkva) 문화유산 보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조브크바(Zhovkva)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조브크바는 '이상 도시'라는 이탈리아 건축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폴란드 세계유산인 자모시치(Zamość)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도시로, 폴란드의 자모시치 보존 및 복원이 조브크바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여겨지며,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에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0년 조브크바 시는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와 공동으로 문화유산 조사 및 보수 사업을 진행했다. 초기 사업은 조브크바 성, 조브크바 대학, 옛 도미니카 수도원, 예수교회와 바실리안 수도원 등을 대상으로 건물의 사진 측량, 보존상태 측량, 역사 연구, 실내·외 보수 및 복원, 역사기록 사본 구입 등이 수행되었다. 폴란드 국가유산위원회 전문가, 폴란드 바르샤바 예술학교, 폴란드 빌라누프 궁전 박물관(Wilanow Museum-palace), 폴란드 자모이스키 박물관(Zamoyski Museum), 폴란드 국가유산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Heritage) 등의 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하였다.

더 나아가 2008년에는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Zhovkva)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문화유산 보호·보존이용과 관련하여 유산관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폴란드 공동 세미나 및 국제회의, 공동 여름학기 학생 실습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센터는 우크라이나 기념물 국립센터(National Centre for Monuments Studies(Kyiv)), 폴란드 바르샤바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in Warsaw), 조브크바 역사 및 건축 보호구역(State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Reserve in Zhovkva) 등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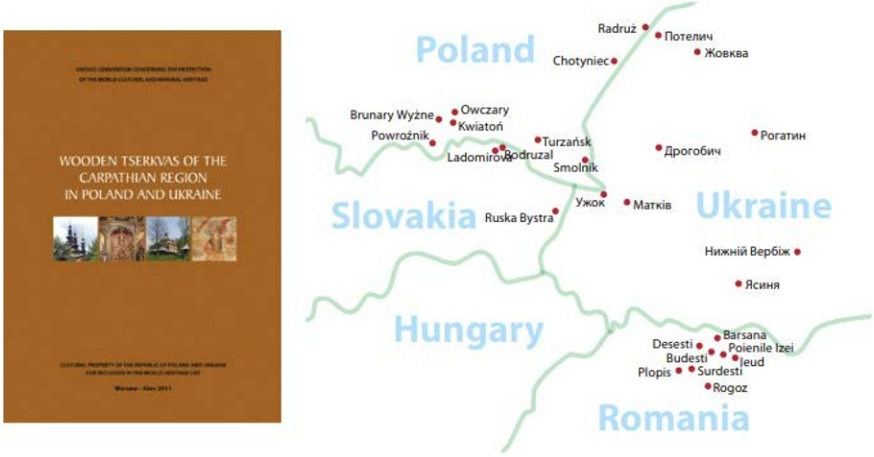
[그림 4-8] 조브크바 궁 건물 파사드의 사진 측량 작업

출처: Herych, Volodymyr.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p.85.

□ 공유유산 주요 사업 3: 폴란드와-우크라이나 세계유산 공동 등재,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령 카르파티아 산맥에 걸쳐 있는 16개의 교회는 2013년 세계유산인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로 등재되었다. 체르크바(정교회 교회)는 통나무 가로쌓기 공법으로 건축한 교회를 뜻하며, 과거 슬라브 지역에서 널리 유행한 건축양식이다.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시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국제센터와 폴란드 바르샤바 국가유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초국경 연속유산으로서 관리 및 운영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림 4-9]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위치

출처: Herych, Volodymyr.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p.88.

□ 공유유산 주요 사업 4: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154]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국경을 넘어 국가 간,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Community Initiatives)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좋은 이웃(Good Neighbourhood)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3개국 협력 프로그램이 해당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다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벨라루스에 대한

154)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검색일: 2023.10.22.);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 (검색일: 2023.10.22.) 참고하여 작성.

유럽연합 제재로 인해, 2021-2027년의 기간 동안에는 폴란드-우크라이나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년 동안 국경을 넘어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동으로 지원을 받았던 폴란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보조금으로 두 국가 또는 세 국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최근에는 버그 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개발(Bug Unites Us–creation of two cross-border touristic kayak trails),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문화유산 복원, 문화유산 및 역사유산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림 4-10]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문화유산의 복원 사례
출처: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 (검색일: 2023.10.22.)



[그림 4-11] 버그 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사례
출처: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 (검색일: 2023.10.22.)

3) 미국: 재외공관 등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155]

[표 4-5] 미국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국외 소재 역사자산 대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 등록제(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수행	
주관 부처	• 미 국무부 내 해외건물운영부(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협력 부처	• 각국 소재 해외 공관	
시행 기관	• 미 국무부	
공유유산 주요 사업	해외 소재 공관 조사	• 2000년부터 미 국무부 내 해외건물운영부를 통한 해외 소재 부동산 공관 등 조사 • 전세계 265곳 내 3,500개 이상 부동산 중 약 150곳을 중요 자산으로 평가
	국외소재 역사자산 등록 및 관리	• 대사관, 해외공관, 사무소, 박물관 등 총 31개국 43개소 등록·관리

출처: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2022). The Secretary of State's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체계

미 국무부는 2000년 해외건물운영부(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를 통해 해외에 미국이 소유 또는 장기 임대중인 재외공관 등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 등록제(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를 신설하였다. 해외건물운영부는 상대국에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외공관을 제공하고, 국무부의 외교정책 시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미 국무부는 국외 소재 역사자산의 유지와 관리를 통해 미국적 가치(American Value), 미국의 건축(Architecture), 디자인(Design), 공학(Engineering), 기술(Technolog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예술(Art), 문화(Culture), 건설 수행 능력(Construction Execution)의 재현에 힘쓰고 있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 등록제도' 적용을 위한 평가 기준은 미국 국립공원청의 국가 역사 장소 등록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등재 기준을 반영하여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등록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5)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2022). The Secretary of State's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 **미국의 국외 소재 역사자산 등록 기준**

- 유산의 소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중요한 자산으로 지정 또는 승인한 자산
- 중요한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과 연관된 자산
- 중요한 건축 또는 중요한 건축가의 작품인 자산
- 독특한 주제 또는 집합 (Assembly)인 자산
- 독특한 유물 또는 시각적 특징이 있는 자산
- 고고 유적지

출처: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2022). The Secretary of State's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p.5.

□ 공유유산 주요 사업: 국외소재 공관 조사 및 등록·관리

본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총 31개국 내 43개소의 국외 소재 대사관, 해외공관, 사무소, 박물관 등이 등록 목록으로 공개되어 있다. 해외 소재 공관을 본 제도에 따라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현지 문화유산에 대한 소재국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양국 정부와 대중들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현재까지 미 국무부는 장기 임대 조건으로 전 세계 265곳에 3,500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대략 150곳을 역사적, 건축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은 현지에서 형평법 법원(Chancery), 관사(Residences), 사무용 건물(Office Buildings), 직원 숙소(Staff Apartments), 정원사 주택(Gardener's House),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이며, 미 국무부 소유의 순수미술 및 장식미술품들도 관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저(Seoul Old American Legation Site)가 이 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다. 서울 정동의 주한미국대사관저는 한옥건축 양식으로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 미 한국대사를 지냈으며 당시 한옥 양식을 적용하여 현재의 관저를 조성한 필립 C. 하비브 대사의 이름을 따 통칭 '하비브 하우스(Habib Hous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주한미국대사관저는 건축가이자 민속학자인 조자용이 설계하였고 전통건축의 대가인 신영훈이 자문, 인간문화재 이광규 대목장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미 국무부 측의 멜저 P. 부커와 스튜어트 누프 등이 설계 및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예술과 미국의 현대건축기술이 결합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156]

156) OPENHOUSE SEOUL 2019 홈페이지. 'Special OPENHOUSE,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 조자용+신영훈+스튜어트 L. 누프' https://www.ohseoul.org/2019/programs/%EB%AF%B8%EA%B5%AD-%EB%8C%80%EC%82%AC%EA%B4%80%EC%A0%80-%ED%95%98%EB%B9%84%EB%B8%8C-%ED%95%98%EC%9A%B0%EC%8A%A4/event/145(검색일: 2023.12.01.)

[표 4-6] 미국 국무부의 국외 소재 역사자산 등록 대상 목록

국가	도시	명칭
대한민국	서울	Seoul Old American Legation Site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Former U.S. Consulate General
알제리	알제	U.S. Embassy Algiers Ambassador's Residence (Villa Montfeld)
그리스	아테네	U.S. Embassy Athens Chancery
필리핀	바기오	U.S. Embassy Manila (Ambassador's Summer Residence)
	마닐라	U.S. Embassy Manila Chancery
스페인	바르셀로나	U.S. Consulate General Barcelona (Torre Godó Eguia)
	마드리드	U.S. Embassy Madrid Deputy Chief of Mission's Residence (Byne House)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U.S. Embassy Bratislava Chancery
벨기에	브뤼셀	U.S. Embassy Brussels NATO Ambassador's Residence (Truman Hall)
헝가리	부다페스트	U.S. Embassy Budapest Chancery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U.S. Embassy Buenos Aires Ambassador's Residence (Palacio Bosch)
모로코	카사블랑카	U.S. Consulate General Casablanca Consul's Residence (Villa Mirador)
네덜란드령 카리브	퀴라소	U.S. Consulate General Curaçao Consul's Residence (Roosevelt House)
아일랜드	더블린	U.S. Embassy Dublin Chancery
		U.S. Embassy Dublin Ambassador's Residence (Chief Secretary's Lodge)
이탈리아	피렌체	U.S. Consulate General Florence (Palazzo Canevaro)
	로마	U.S. Embassy Rome Chancery (Palazzo Margherita and Twin Villas)
		U.S. Embassy Rome Ambassador's Residence (Villa Taverna)
베트남	하노이	U.S. Embassy Hanoi Ambassador's Residence
	호치민	U.S. Consulate General Ho Chi Minh City (Former U.S. Embassy Saigon Site)
핀란드	헬싱키	U.S. Embassy Helsinki Ambassador's Residence
터키	이스탄불	Former U.S. Consulate General (Palazzo Corpi)
페루	리마	U.S. Embassy Lima Ambassador's Residence
포르투갈	리스본	U.S. Embassy Lisbon Ambassador's Residence (Casa Carlucci)
영국	런던	U.S. Embassy London Ambassador's Residence (Winfield House)
러시아	모스크바	U.S. Embassy Moscow Ambassador's Residence (Spaso House)
인도	뉴델리	U.S. Embassy New Delhi Chancery
		U.S. Embassy New Delhi Ambassador's Residence (Roosevelt House)
노르웨이	오슬로	U.S. Embassy Oslo Ambassador's Residence (Villa Otium)

국가	도시	명칭
프랑스	파리	George C. Marshall Center (Hôtel de Talleyrand)
		U.S. Embassy Paris Ambassador's Residence
	스트라스부르	U.S. Consulate General Strasbourg
		U.S. Consulate General Strasbourg Consul's Residence
체코	프라하	U.S. Embassy Prague Chancery (Schönborn Palace)
		U.S. Embassy Prague Ambassador's Residence (Villa Petschek)
스웨덴	스톡홀름	U.S. Embassy Stockholm Ambassador's Residence(Villa Akerlund)
모로코	탕헤르	Tangier Old Legation
알바니아	티라나	U.S. Embassy Tirana Chancery
일본	도쿄	U.S. Embassy Tokyo Ambassador's Residence
리비아	트리폴리	The American Cemetery
오스트리아	비엔나	U.S. Embassy Vienna Chancery (Consular Academy)
		U.S. Embassy Vienna Ambassador's Residence (Karl Broda House)
미국	워싱턴DC	President's Guest House (Blair House)

출처 :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2022). The Secretary of State's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자료에서 공개된 목록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2]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저 신축 전(위)과 신축 후 현재(아래) 모습

주: 왼쪽 위의 사진은 1890년경, 오른쪽 위의 사진은 1904년경 공사관저 내부를 촬영한 것이며, 아래쪽의 모습은 1974년 신축 후 최근 촬영된 사진임

출처: 주한미국대사관. (2017). The Residence of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3. 국제협력을 통한 자국 내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남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국내 공유유산 복원[157]

[표 4-7]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Restoration of Genadendal in South Africa 사업 승인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2001년 7월 20일)	
주관 부처	•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체육부 •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시행 기관	•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 • 남아프리카 서케이프 문화위원회(Western Cape Cultural Commission) •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	
공유유산 주요 사업	제나덴달 복원	• 제나덴달 역사적 건조물과 경관 복원 •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교육과 지역사회 지원

출처: Roos, Job. (2002). Project 'Restoration Genadendal, South Africa', 13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Western Cape 홈페이지. https://www.westerncape.gov.za/text/2006/2/moravian_heritage_sa.pdf(검색일: 2023.8.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제나덴달(Genadendal)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케이프(Western Cape) 주의 소도시로, 1738년 설립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선교기지이다. 1838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로 교육대학이 설립되는 등 서구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지역이다.

□ 추진 체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80년대 케이프타운 대학을 중심으로 제나덴달 마을 및 건축물 복원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모라비안 선교 신탁기금(Moravian Mission Trust Fund)을 마련해 연구 및 보수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1986년부터 건축물과 마을에 대한 기록화 사업, 일부 건축물의 보수사업, 선교박물관 건립 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157) Roos, Job. (2002). Project 'Restoration Genadendal, South Africa', 13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Western Cape 홈페이지. https://www.westerncape.gov.za/text/2006/2/moravian_heritage_sa.pdf(검색일: 2023.8.7.) 참고하여 작성.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남아프리카 서케이프 문화위원회와 협력하여 제나덴달 복원(restoration)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2001년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에서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와 남아프리카 서케이프 문화위원회의 제나덴달 복원 사업 지원을 승인하면서 마을 및 건축물 회복과 지역 재생 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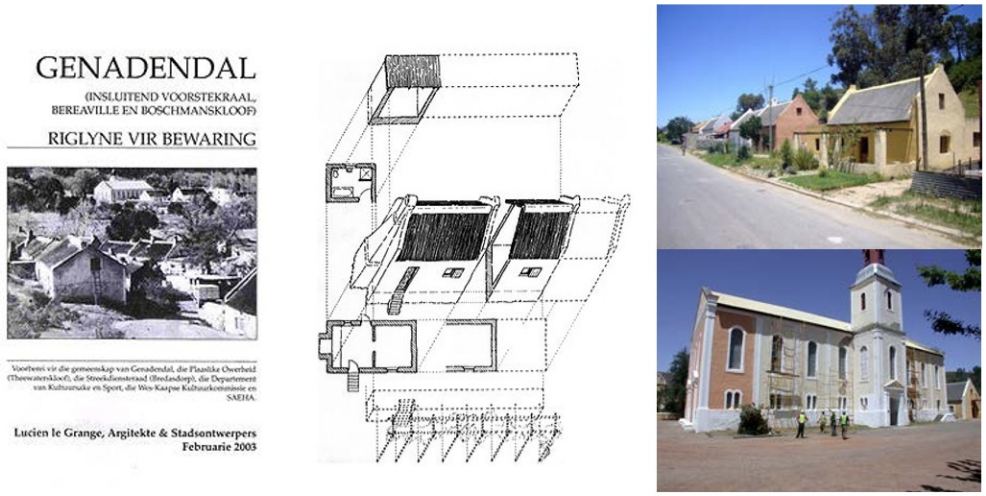
현재 제나덴달 복원 사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체육부,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대학, 남아프리카 서케이프 문화위원회(Western Cape Cultural Commission),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교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서케이프 문화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체육부의 예술문화 보존·진흥·발전 부문의 자문 법정기관이기도 하다.

□ 공유유산 주요 사업: 제나덴달 복원(restoration)

네덜란드 제이스트(Zeist)에는 모라비아 교회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19세기 모라비안 선교사 거주지가 형성된 제나덴달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공유유산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에 제나덴달에 위치한 19세기 모라비안 선교사 거주지의 역사적 건조물 및 경관 복원을 위해 네덜란드에서 €1,000,000(약 14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나덴달을 공유유산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역사가 중첩된 지역으로서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연적·문화적 경관 변화로 인해 낮은 농업 생산성, 외래 식물종 침입, 과거에 형성된 역사적 관개시스템의 악화 등 여러 지역적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셋째로 모라비안 신탁기금 설립 및 복원사업 추진 등 소재국의 보존 의지가 높으며, 넷째로 소재국 내 법적 준 자치지역으로 설정되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지역사회 및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점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보았다.

네덜란드는 제나덴달의 복원 사업을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체 경관과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재국으로의 기술 교육 및 지역사회의 보존 의지 및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이처럼 네덜란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제나덴달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유산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화적·경제적 기능 회복, 문화경관 향상,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술 및 고용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그림 4-13] 제나덴달 연구 및 복원사업 사례

출처: Lucien le Grange Architects 홈페이지. https://www.lucienlegrangearchitects.com/genadendal-heritage-and-conservation-(검색일: 2023.08.17.)

네덜란드 공동의 훈련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 공예 교육과 멘토링 수행 등 문화유산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 실제 복원 사업에 참여한 벽돌 제작자, 복원 기술 작업자, 유산관리자 등은 숙련된 장인이자 사업가로서 추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 탄자니아: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유산 보존

[표 4-8] 탄자니아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제10차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문화 부문 지원
주관 부처	• 탄자니아 문화예술스포츠부
시행 기관	• 유네스코 • 탄자니아 방송국, 탄자니아 국립박물관, 탄자니아 국가기록 아카이브, Mwalimu Nyerere 재단
공유유산 주요 사업	탄자니아 유산 아카이브 구축 • 해방운동 관련 기록 조사, 수집, 보존, 활용 기반 마련 • 탄자니아 방송국 내 기념공간 설치 • 지속가능한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책	•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지원
주관 기관	• Habitat Unit • 탄자니아 건축가 협회(AAT)
시행 기관	• 탄자니아 자연자원관광부 내 유적 부서(Tanzanian Antiquities Division) • 탄자니아 국립박물관 • 다르시 협의회(Dar City Council)
협력 기관	• 탄자니아 아르디(Ardhi) 대학교 •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Tecnische Universitat Berlin) •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itute)
공유유산 주요 사업	건축유산센터 설립 • 역사적 건조물인 Old Boma를 개조해 센터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출처: Alexander, Nancy. (2023). Monuments of the Exiles and Memorialisation of Shared Heritage Between Mozambique and Tanzania. African Historical Review 53(1): 1-26; Lucian, Charles. (2009).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Old Boma Building in Bagamoyo (Tanzani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Buildings 2009/2010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근현대기 해방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국가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역사유산이 빠르게 훼손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탄자니아의 공유유산을 지원하였다. 첫째, 근현대기 탄자니아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탄자니아 해방운동 기록유산 및 관련 장소를 아프리카 전체 지역의 공유유산으로 상정하고, 탄자니아 해방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살람(Dar es Salaam)은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역사적 건조물이 훼손되고 있는 지역으로, 유산 보존에 대한 대중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건축유산센터를 역사도심 내 상징적으로 구축하였다.

□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유네스코 및 유럽연합의 탄자니아 유산 아카이브 프로젝트(Safeguarding,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Heritage Archives of Tanzania: TAHAP) 지원[158]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에서 망명한 민족주의 조직과 깊은 역사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난 해방운동의 물리적·이론적·정치적 기반이 된 지역이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을 위해 지도자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특히 탄자니아와 모잠비크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살람은 1962년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 단체가 설립된 곳이며, 모잠비크의 주요 지도자가 암살된 곳이기도 하다.

탄자니아는 1963년 자체적으로 국가기록 아카이브(Tanzania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를 설립하였으나,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가 미비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은 탄자니아에 축적된 아프리카의 해방운동 관련 기록유산을 수집·기록하고 보존·기념하기 위해 제10차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 문화 부문 지원 사업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 기금을 지원했다. 2013-2017년의 기간 동안 €777,732(약 11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유네스코와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해방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탄자니아 문화예술스포츠부와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시행 기관으로 유네스코, 탄자니아 방송국, 탄자니아 국립박물관, 탄자니아 국가기록 아카이브, Mwalimu Nyerere 재단이 참여했다.

사업의 내용은 탄자니아의 아프리카 해방운동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보존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먼저 탄자니아의 공공·민간 아카이브를 전수 조사하고, 방송국과 아카이브에서 보관하던 기록 중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기록의 복원 및 디지털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해방운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구술 콘텐츠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콘텐츠는 전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홍보하였다. 스웨덴에서도 60-80년대 아프리카 정치 전단지, 포스터, 문헌 등을 탄자니아에 전달하기도 했다.

탄자니아 방송국에는 기념 공간인 Mwalimu Nyerere African Liberation Memorial Studio가 설치되었다. 이 기념공간은 기존의 방송국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남

158) UNESCO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g/en/articles/preservation-invaluable-documentary-heritage-tanzania-supported-unesco-and-european-union (검색일: 2023.08.07.); Alexander, Nancy. (2023). Monuments of the Exiles and Memorialisation of Shared Heritage Between Mozambique and Tanzania. African Historical Review 53(1): 1-26.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의 전시를 기획하였고,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실, 수장고 및 시청각실 등도 배치하였다. 방송국, 박물관 및 아카이브 담당자에게는 사진 및 오디오 기록 디지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아카이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럽개발기금 지원 이후에는 아프리카 연합 자체 기금인 African Liberation Heritage Program을 통해 아카이브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연합과 유네스코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으로, 탄자니아 해방유산 아카이브를 아프리카의 공유유산으로 인식한다는 기조 아래 지역별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연구기관 및 다양한 미디어 기관들도 연계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림 4-14] 아프리카 해방운동 관련 기록
출처: Youtube. TAHAP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TwrmzvYrTD8(검색일: 2023.10.18.)



[그림 4-15] 탄자니아 유산 아카이브 프로젝트 소개
출처: Youtube. TAHAP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TwrmzvYrTD8(검색일: 2023.10.18.)

□ 관련 센터 설립: 건축유산을 위한 다르에살람 센터(Dar es Salaam Centre for Architectural Heritage, DARCH)[159]

탄자니아 정부는 유럽개발기금 €927,000(약 13억 3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2014년 건축유산 다르에살람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 설립은 Habitat Unit과 탄자니아 건축가 협회(AAT)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2014-2017년의 기간 동안 기금을 지원받은 후에는 센터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행 기관으로는 탄자니아 자연자원관광부 내 유적 부서(Tanzanian Antiquities Division), 국립박물관, 다르시 협의회(Dar City Council)가 참여하였다. 사업 협력 기관으로는 탄자니아 아르디(Ardhi) 대학교,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Tecnische Universitat Berlin),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itute)에서 참여하고 있다.

159) Lucian, Charles. (2009).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Old Boma Building in Bagamoyo (Tanzani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Buildings 2009/2010; Urban Narratives 홈페이지. https://urbannarratives.org/en/events/research-events/opening-darch(검색일: 2023.10.18.)

건축유산센터는 다르에살람에서 가장 오래된 건조물인 Old Boma를 개조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재 도시 역사 전시, 특별 전시, 아카이브 센터, 워크숍 공간, 센터 사무국, 시의회 사무실, 탄자니아 건축가 협회 사무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르에살람 Old Boma의 건축유산센터 개조 사례는 도시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로, 공유유산의 지속가능한 재생 및 활용 방안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Old Boma는 1869년 조성된 호텔로, 독일 식민지시기 독일의 행정본부(1888-1919년)로 사용되었던 건물이기도 하다. Old Boma는 독일과의 역사적 연관성에 의해 2009년 독일 Hamburg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 인프라 개발부 및 자연자원관광부와 함께 보수 사업을 추진한 적도 있다.

건축유산센터는 유산에 관한 연구, 기록화, 대상지별 계획 및 설계전략을 제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이해관계자(국가, 지자체, 부동산 소유자, 투자자, 종교공동체, 일반 대중 등)와의 협의와 참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 행사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 참여 증진 등 건축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6] Old Boma 건축물을 개조하여 조성된 다르에살람 건축유산센터
출처: Design Indaba 홈페이지. https://www.designindaba.com/articles/creative-work/aida-mulokozi-her-mission-salvage-dar-es-salaam%E2%80%99s-built-heritage(검색일: 2023.10.18.)



[그림 4-17] 다르에살람 건축유산 센터 내 아프리카 유산 관련 전시 모습
출처: Urban Detective. https://www.theurbandetective.com/blogs/2017/7/24/darch-vs-goliath-saving-historical-architecture-in-one-of-the-worlds-fastest-growing-cities(검색일: 2023.10.18.)

3) 아프리카 지역: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160]

[표 4-9] 아프리카 지역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2021-2023 독일 연방 외무부 연방기금 지원	
주관 기관	• 도코모모 독일	
협력 기관	•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교(University of Lagos)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 센터(Centre for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영국 리버풀 대학교 (University of Liverpool) • 온라인 건축 카탈로그 Architectuul	
공유유산 주요 사업	디지털 기록화 연구 펠로우십 지원	Shared Heritage Africa: Rediscovering Masterpieces • 1950-1970년대 주요 근대 건축물 연구, 저술, 사진 기록화 • 다양한 형식의 결과물 작성, 전시회 개최, 책 출판

출처: DOCOMOMO 홈페이지. https://docomomo.com/shared-heritage-africa-rediscovering-masterpieces (검색일: 2023.08.07.); Architectuul 홈페이지. https://sha.architectuul.com/ (검색일: 2023.08.07.)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연구 펠로우십 지원

국제기구 도코모모(International Committee for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u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DOCOMOMO)는 2021-2023년 기간 동안 독일 연방 외무부(BfAA)의 연방기금 지원으로 'Shared Heritage Africa: Rediscovering Masterpieces'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도코모모 독일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협력기관으로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교(University of Lagos)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 센터(Centre for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영국 리버풀 대학교 (University of Liverpool), 온라인 건축 카탈로그 Architectuul가 참여하였다.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사업에서 독특한 점은 가나(1957년 독립), 나이지리아(1960년 독립), 우간다(1962년 독립)에서 선발한 9명의 연구 펠로우를 중심으로 아카이빙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독일 외무부의 연방기금 지원을 통해 각 연구 펠로우는 1950-1970년대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아프리카 지역의 전후 근대 건축물을 연구하고 이를 사진으로 기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때 교육적·사회정치적으로 중

160) DOCOMOMO 홈페이지. https://docomomo.com/shared-heritage-africa-rediscovering-masterpieces (검색일: 2023.08.07.); Architectuul 홈페이지. https://sha.architectuul.com/ (검색일: 2023.08. 07.)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8]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자료와 전시회

출처: Shared Heritage Africa 홈페이지. https://sha.architectuul.com (검색일: 2023.08.17.); 라고스 대학교 홈페이지. https://unilag.edu.ng/?p=15230. (검색일: 2023.08.17.)

요성이 높은 건물을 우선하도록 했다.

연구 내용을 토대로 지역 차원의 원고 기고와 사진 워크숍, 전시회, 학술논문, 블로그, 디지털 출판 등 다양한 결과물이 생산되었고, 프로젝트를 통해 1950-70년대 아프리카의 주요 근대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연구 성과물은 전시 형식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대학, 우간다 잠보고(Kyambogo) 국립대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소개되었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DOCOMOMO 저널 특별호와 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4. 자국 내 제도·정책을 통한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

1) 중국: 외국인 관련 건축물 및 지역의 보존·관리·활용

[표 4-10] 중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 기관	•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중국 민정부 문화유산보존 사회기구) • 우한 문화부	
지원 기관	•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 • CITIC 건축종합연구소 • 화중과기대학교	
공유유산 주요 사업	법정계획 수립	• 조계지 내 탁월한 역사적 건조물 20곳에 대한 법정계획 수립
	제임스 잭슨 체육관 보수	• 체육관 보존 및 보수, 역사적 건조물 파사드 보수, 보존, 수리,
	국제 네트워크 강화	• 국제학술회의, 연구, 전시, 출판 등 수행 •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관 기관	• Tianjin Haihe Developing Investment Co. Ltd.	
공유유산 주요 사업	조계 복원	• 구 이탈리아 조계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중국과 이탈리아 건축가가 복원사업에 참여

출처: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http://www.heritagewuhan.com(검색일: 2023.08.08.); Wuhan City 홈페이지. https://www.wuhancityofdesign.com/en/ENGINEERING/170.html(검색일: 2023.08.08.); Marinelli, Maurizio. (2010).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The emotional capital of Tianjin's Italian concession. Emotion, Space and Society 3(1): 62-70 내용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중국은 조계지와 외국인 건축가가 근대기 중국에 설계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한시에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Research Center of Shared Built Heritage)를 설립하였으며, 공유건축유산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시회, 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계지 복원 및 문화유산 등재 사업으로는 구랑위의 세계유산 등재와 톈진의 이탈리아 조계지역 보존 사업을 추진하였다.

□ 관련 센터 설립: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ICOMOS-Wuhan Research Center of Shared Built Heritage)[161]

2015년 우한시는 공유유산에 대한 우한 연구회(Wuhan Shared Heritage Research Association)를 공식 설립하고 연구센터를 건립했다. 연구센터는 중국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 문화유산보존 사회기구로 등록되었으며, 우한 문화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지원 기관으로는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 CITIC 건축종합연구소(General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and Research Co., Ltd.), 화중과기대학교(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가, 학자, 디자인 회사, 학술연구기관, 대학, 컨설팅 기관, 산업연구협회, 기업 등 우한의 유산 보전과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는 우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rossover Forum), 연구, 전시회, 강독, 출판 등을 수행하여 국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및 이코모스와도 지속적으로 교류 중이다.

또한, 우한시 공유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우한 내 서구문화가 유입된 역사지구, 역사적 건조물, 무형문화유산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다른 지역과 연결된 'Great Tea Route'와 같은 경로유산(cultural routes)에 대해서도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설립 당시 연구센터는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와 함께 한커우(Hankow) 조계지에 위치한 탁월한 역사적 건조물 20곳에 대한 법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역사적 건조물에는 빌라, 구 영국영사관 관사, 구 재일동포회 사무소, 가톨릭 루터회 건물, 외국인 저택, 맨션, 병원 등 다양한 근대 시기의 건축물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유건축유산 보수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임스 잭슨 체육관(James Jackson Gymnasium) 보존 및 보수, 중산(Zhongshan) 거리 내 역사적 건조물 파사드 보수, 종교지회 보존·수리·재사용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제임스 잭슨 체육관은 화중대학(구 문화서원) 초대 총장인 제임스 잭슨을 기념하기 위해 1921년 설립된 건축물이며, 미국 선교사 건축가 John van Wie Bergamini가 설계한 건물이기도 하다. 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에서 체육관 보존 및 보수 사업을 담당하여 진행했다.

161)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http://www.heritagewuhan.com (검색일: 2023.08.08.); Wuhan City 홈페이지. https://www.wuhancityofdesign.com/en/ENGINEERING/170.html (검색일: 2023.08.08.) 참고하여 작성.



[그림 4-19] 제임스 잭슨 체육관 보존 및 보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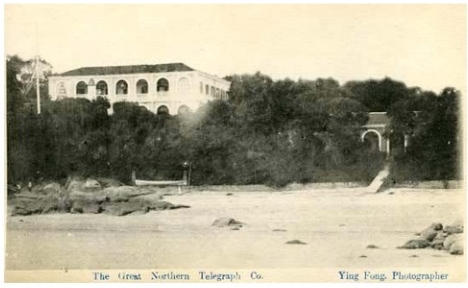
출처: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heritagewuhan.com/page?detail&type=urban&aid=f8cc1c705a7da160015a8298a66600e9 (검색일: 2023.08.17.)

□ 구랑위, 유서 깊은 공공조계(Kulangsu, a Historic International Settlement)[162]

구랑위 공공조계는 201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구랑위는 샤먼 시를 마주보고 위치한 주룽 강 하안의 작은 섬으로, 1843년 샤먼에 상업 항구가 개항되고 1903년 구랑위 섬이 국제 조계로 정해지면서 근대기 중국과 외국 간 중요한 교역 창구가 되었다. 구랑위는 국제적 교류가 낳은 문화적 융합을 보여주는 특별한 조계지 사례로,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의 건축학적 교류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모더니즘과 아르데코 양식이 융합된 '아모이 데코(Amoy Deco) 양식'이 가장 잘 표현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구랑위는 중국에서 '공유건축유산'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중국 국가문물국에서는 구랑위의 국제적 가치를 조명하는 '구랑위 공유유산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에서는 공유유산을 기념하는 것이 과거의 사건을 무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성을 포용하고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유유산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유발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보여준다.

구랑위 공유유산 전시관은 중국 최초 전신국 중 하나인 구랑위 Great Northern Telegraph Company 건물을 단장하여 사용하였다. 이 건물은 덴마크 영사관이 있던 곳으로 덴마크와의 공유유산이기도 하다.



[그림 4-20] 1930년대 구랑위 전신국 전경
출처: 전신 케이블 홈페이지. https://atlantic-cable.com/CableCos/GreatNorthern/index.html. (검색일: 2023.10.20.)



[그림 4-21] 구랑위 공유유산 전시관
출처: 세계유산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44whcfuzhou2021.cn/node/13606/20210719/60f541d871670.shtml. (검색일: 2023.10.20.)

162) Yiqing, Zou, and Xin Xin. (2017).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ractice of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Kulangsu – From methodology to implementation. China Cultural Heritage 4: 60-68; Wei, Ran and Fang Wang. (2022). Is colonial heritage negative or not so much? Debating heritage discourses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Kulangsu, China. Built Heritage 6(21): 1-13;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구랑위, 유서 깊은 공공조계'. https://heritage.unesco.or.kr/%EA%B5%AC%EB%9E%91%EC%9C%84-%EC%9C%A0%EC%84%9C-%EA%B9%8A%EC%9D%80-%EA%B3%B5%EA%B3%B5%EC%A1%B0%EA%B3%84/(검색일: 2023.08.17.) 참고하여 작성.

□ 톈진의 이탈리아 조계 복원 사업[163]

중국 톈진은 근대 시기 중국 북부 지역의 대표적 항구 중 하나이자 수도 베이징으로 연결되는 관문에 위치하였던 도시로, 1860-1945년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미국, 벨기에 등의 외국 조계지가 위치하였다. 그중 이탈리아 조계는 1901-1943년 동안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다.

중국은 2000년 구 이탈리아 조계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부터 이탈리아 건축가 및 복원가들과 함께 67개 건물 중 26개 건물을 복원해 이탈리아 스타일의 마을(New I-Style Town)인 이탈리아풍경구(天津意大利風景區)를 조성하였다. 이 복원 사업의 목표는 기본 도시구조를 보호하고, 기존 건물의 규모와 양식을 유지하며 오래된 주택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이탈리아 조계지 복원 사업 추진 시 공기업에서 복원 사업을 담당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용방안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에 복원사업은 중국 공기업인 Tianjin Haihe Developing Investment Co. Ltd.에서 담당하였으며, 현재 부동산 임대까지 맡고 있다.

초기에는 이탈리아 기업에만 부동산을 임대해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음식, 패션, 음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이후 현실 상황을 반영해 다른 외국인에게도 임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톈진 이탈리아 조계지 복원 사업은 성공한 도시재생 모델로 추천되어, 이후 독일 조계지 복원 추진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 건축유산을 시장성 높은 상품으로 보면서 역사적 건축물의 파사드 또는 외관을 유지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 이탈리아풍이 가미된 디즈니랜드 같은 상업지구가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복원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복원(restoration)'에 대한 개념에 중국과 이탈리아 건축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본 사업에 대해 회의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또한 복원 시 중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고품질의 인조석과 자연석 소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국에서 조달한 석회의 품질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163) Marinelli, Maurizio. (2010).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The emotional capital of Tianjin's Italian concession. Emotion, Space and Society 3(1): 62-70; China Heritage Quarterly 홈페이지. http://www.chinaheritagequarterly.org/features.php?searchterm=021_istyle.inc&issue=021(검색일: 2023.08.08.) 참고하여 작성.



[그림 4-22] 2006년 이탈리아 조계 복원 현장

출처: Marinelli, Maurizio. (2007). Self-portrait in a Convex Mirror: Colonial Italy Reflects on Tianjin, Global Cities 3. https://journals.openedition.org/transtexts/147 (검색일: 2023.08.08.)



[그림 4-23] 입구 표지판

출처: China Heritage Quarterly 홈페이지. http://www.chinaheritagequarterly.org/features.php?searchterm=021_istyle.inc&issue=021. (검색일: 2023.08.08.)

2) 스코틀랜드: 폴란드 관련 인물·사건·장소의 보존·활용[164]

[표 4-11] 스코틀랜드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관련 정책	• 2013-2020 영국 헤리티지 복권기금 지원	
주관 기관	• 히스토릭 스코틀랜드 • 폴란드 외교부 • 에든버러 폴란드 영사관	
후원 기관	• 폴란드 문화축제협회, 폴란드 에딘버러 그룹, 스코틀랜드 역사축제협회, 폴란드 대학교 등	
공유유산 주요 사업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	• 대 폴란드 지도 모형 복원 제작 • 폴란드 스코틀랜드 유산 축제 개최 • 폴란드 스코틀랜드 유산 젊은 탐험가 프로그램 운영 • 보이테크 곰과 폴란드 군인 콘텐츠 홍보 및 청소년 교육

출처: Scotland 홈페이지. https://www.scotland.org/inspiration/scotland-and-poland (검색일: 2023.10.22.); Polish-Scottish Festival Association(PCFA). (2017.4.27.) 'Final Report: Polish Scottish Heritage Trail Project'. https://issuu.com/joannazawadzka/docs/polish_scottish_heritage_final_repo (검색일: 2023.10.22.)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배경

폴란드와 스코틀랜드는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15세기 이후 폴란드는 스코틀랜드 이주 정착민에게 관대한 보호 조치를 발효하기도 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수의 폴란드인이 스코틀랜드로 망명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는 폴란드 이민 50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역사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물, 사건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Polish Scottish Heritage Trail) 사업을 진행하였다.

□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Polish Scottish Heritage Trail) 프로젝트

스코틀랜드는 영국 헤리티지 복권기금(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2013-2020년 동안 폴란드와 스코틀랜드 간 역사적, 문화적으로 연결된 기록을 발굴하고 활용

164) Scotland 홈페이지. https://www.scotland.org/inspiration/scotland-and-poland. (검색일: 2023.10.22.); 애버딘 대학교 홈페이지. https://abdn.elsevierpure.com/en/activities/the-polish-scottish-heritage-trail-external-organisation. (검색일: 2023.10.22.); Krakow 신문 홈페이지. http://www.krakowpost.com/7881/2014/03/scots-in-poland-poles-in-scotland. (검색일: 2023.10.22.); Polish-Scottish Festival Association(PCFA). (2017.4.27.) 'Final Report: Polish Scottish Heritage Trail Project'. https://issuu.com/joannazawadzka/docs/polish_scottish_heritage_final_repo. (검색일: 2023.10.22.)

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공유유산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진과 이야기를 수집하였고, 축제, 전시회, 문화행사, 콘서트, 답사, 공개 세미나 등도 함께 개최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대 폴란드 지도(Great Polish Map of Scotland) 모형을 다시 복원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지도 모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게 된 폴란드인이 조국을 기리기 위해 1974년 50*40m 규모의 콘크리트로 제작한 거대한 대 폴란드 지도 모형으로, 2018년 복원 작업이 추진되었다. 설계와 건설은 폴란드계 민족 중 하나인 크라코프인(Cracovians) 지리학자가 담당하였으며, 폴란드 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6년에 걸쳐 제작했다.

2014년에는 에든버러에서 폴란드 스코틀랜드 유산 축제(Polish Scottish Heritage Festival)를 개최하였다. 영국 헤리티지 복권기금, 폴란드 외교부, 에든버러의 폴란드 총영사관이 지원하였고, 폴란드 문화축제협회, 폴란드 에든버러 그룹, 히스토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역사축제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6월 18일-29일 동안 국립도서관의 폴란드 컬렉션 답사, 쇼팽 피아노 콘서트, 토크 콘서트, 공유유산 전시회, 가족 워크숍, 영화 상영, 시 낭독회, 춤 공연회, 퓨전 퀴진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에게 폴란드와 스코틀랜드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폴란드 스코틀랜드 유산 젊은 탐험가 프로그램' 운영, 보이테크 곰과 폴란드 군인(Wojtek the bear – Polish soldier on his majesty payroll)[165] 콘텐츠 홍보 등 두 국가의 연결된 관계를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림 4-24] 스코틀랜드의 대 폴란드 지도 3D 모델 복원
출처: Historic Scotland 홈페이지. https://www.historicenvironment.scot/about-us/news/digital-map-brings-scottish-polish-links-to-life (검색일: 2023.10.22.)



[그림 4-25] 폴란드 군의 보이테크 곰
출처: Wikipedia 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wiki/File:Wojtek_the_bear.jpg(검색일: 2023.10.22.)

165) 보이테크 곰은 폴란드 군인들이 군대에서 기르던 곰으로 부대에서 곰과 군인의 여러 에피소드가 많이 전해진다. 해당 중대는 보이테크를 형상화한 그림이 부대의 문장이었다. 곰은 세계대전 이후에는 부대 근처 에든버러 동물원에 살며 폴란드-스코틀랜드 우호협회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3) 미국: 자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표 4-12] 미국 공유유산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관 기관	• 미국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 NPS) • 개별 주·시	
지원 기관	• 문화유산 조사연구 관련 기관 및 단체	
공유유산 주요 사업	아시아계 이민유산 관련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 미국 국립공원청(NPS) 내 신규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국가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시 아시아계 이민유산 관련 연구 및 발굴 수행 • 2018년 잠정목록 발굴 대상에 대한민국 관련 국외사적지로 윌로우스 비행학교 포함
	동아시아계 이민유산 등재 추진	• 2019년까지 동아시아계 이민유산 92건이 국가 역사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20건은 국가랜드마크로 지정 • 현재 국가 역사 장소로 등록·관리되는 유산의 대다수는 중국·일본계 이민유산이며, 한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계 이민유산은 랜드마크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LA 흥사단소 지정 및 보존 사례	• LA 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을 통한 흥사단소 철거 및 정부 매입 • 현재 리모델링 및 활용계획 수립 중

출처: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배경

2012년 국립공원 제도 자문위원회 보고서(National Park Service Advisory Board Report)[166]와 이를 토대로 2016년에 작성된 국립공원청 탄생 100주년(Centennial) 기념 향후 전망 보고서[167]에서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정책과 전략 추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12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4가지의 새로운 비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18개의 권고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의 전망 보고서는 자문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4대 비전과 15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두 보고서 모두 기존의 문화유산 등재 방식과 평가 기준이 소수 인종 이민유산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소수 인종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략을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66) National Park System Advisory Board. (2012). Planning for a Future National Park System: A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www.nps.gov/resources/upload/NPSAB_Planning_Report_-7-19-13.pdf (검색일: 2023.10.22.)

167) National Park Service. (2016). National Park Service Centennial Final Report: Realizing the Vision For the Second Century.

[표 4-13] 미국 국립공원청(NPS) 미래전략 보고자료 비교 분석

자료	국립공원 제도의 미래 계획안: 21세기를 위한 준비 (국립공원 제도 자문위원회, 2012)	국립공원 100주년 최종 보고서 :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 인식 (국립공원청, 2016)
주요 내용	- 미국 유산의 폭을 더욱 완벽하게 대변 할 수 있는 통합된 제도의 확립 - 과거 미국사에서 잘 대변되지 못했던 이주, 이민, 산업과 제조업, 노동, 예술, 과학, 기술 등의 주제 연구를 통해 추가로 등재 및 등록될 수 있는 유산 발굴 -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완전성 (Integrity)에 대한 개념, 50년이 지나지 않은 역사 자산 평가 및 등록, 무형 자산에 대한 지침 등에 관한 개념적, 제도적 재정립 - 관리 협력에 대한 유연한 방식의 채택	-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국가 랜드마크 주제 연구) - 다양한 미국인들의 삶을 반영하는 유적의 발굴과 공유를 통해 진솔하고 포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미국 역사(Shared National Heritage)의 해석과 보존 - 소셜미디어를 통한 '당신의 공원을 찾아라' 캠페인 - 라틴, 히스패닉, 흑인 등 미국 내 인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국립공원청과 국립공원재단(National Park Foundation)의 브랜드 강화 - 예술을 통한 국립공원 사업 - 공원 내 아메리칸 원주민과 부족의 참여 강화 - 미 의회 후원그룹과 유기적 공조 체제 유지

출처: National Park System Advisory Board. (2012). Planning for a Future National Park System: A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www.nps.gov/resources/upload/NPSAB_Planning_Report_-7-19-13.pdf(검색일: 2023. 10.22.); National Park Service. (2016). National Park Service Centennial Final Report: Realizing the Vision For the Second Century 내 관련 내용 발췌하여 연구진 작성

[표 4-14] 미국 국립공원청의 최근 역사 자원 정책 목표 변화 비교

정책 주제	국립공원 제도의 미래 계획안 : 21세기를 위한 준비 (국립공원 제도 자문위원회, 2012)	국립공원 100주년 최종 보고서 :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 인식 (국립공원청, 2016)
운영 방식	- 관광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경관, 건축적으로 가치가 현저한 건물들 위주로 운영	- 사람들이 지속해서 이용하는 경관 및 문화유산 보존 - 생태계 보호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
유산 관리	- 자연 지역과 문화 유적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뒤 각 유산을 분리해서 보존, 관리	- 관련 부서의 구분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이야기(stories), 전통적 용도(traditional uses), 중요한 사적지들(sites)이 행정 경계 내에서 항상 쉽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종종 호환되지 않는 용도에 취약한 문화 자원도 마찬가지임을 인식해야 함
주제 선정	- 주로 구시대적 역사관을 반영하는 역사 자원의 선정. 문화 유적지는 대부분 역사상 대규모 전투, 위대한 인물, 건축적 우아함, 미국적 승리주의 등의 주제로 등재 시 중요성을 평가	- 문화유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립공원청의 사업들이 단순히 정치와 전쟁 위주의 테마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흐름과 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미국 내 모든 인종(Race)과 민족성(Ethnicity), 계급(Class), 성별(Gender)의 관점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정책 주제	국립공원 제도의 미래 계획안 : 21세기를 위한 준비 (국립공원 제도 자문위원회, 2012)	국립공원 100주년 최종 보고서 :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 인식 (국립공원청, 2016)
등재 방식	- 유적지는 주로 미국 역사에 관해 '정확한(Correct)'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만 국립공원 제도에 추가	- 국립공원청 소속 역사가들과 학자들에 의해 진행 중인 최근 연구 사업들을 통해 역사적 모호성, 광범위한 맥락, 복합적 관점, 폭넓은 해석을 바탕으로 단순히 발생한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상 뿐 아니라, 사건의 원인과 현대적 맥락에 적용되는 의미도 함께 고려하여 해석과 지정을 추진
역사 재현 방식	- 특정 그룹에 중요성이 있는 한 두 개의 역사 장소만을 지정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관한 국가적 경험을 적절하게 제공한다고 인식	- 국립공원청은 문화 다양성을 지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시대(Time), 문화(Cultures), 지리적 (Geography) 특성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할 것
사업 수행	- 국립공원청의 주도로 50년 또는 100년을 염두에 두고 특정 정책이나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	- 연방 정부 주도의 하향식 리더십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 기관들이 주도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개략적인 지침(Guidance)과 체계(Framework)만 제공
평가 기준	- 국가적 유산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유적지가 훼손되지 않은 원형의 상태(pristine condition)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문화 자원(Cultural Resources)의 완전성은 해당 자원들의 특징을 반영한 맥락,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들, 관련 유적지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평가할 것

출처: National Park System Advisory Board. (2012). Planning for a Future National Park System: A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https://www.nps.gov/resources/upload/NPSAB_Planning_Report_-7-19-13.pdf(검색일: 2023. 10.22.); National Park Service. (2016). National Park Service Centennial Final Report: Realizing the Vision For the Second Century 내 관련 내용 발췌하여 연구진 작성

□ 추진 방향[168]

이상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미국의 이민 유산 보존과 관련한 국립공원청의 21세기 미래 전략 변화는 임종현(2021)의 글을 참고하여 크게 유산의 주제 선정, 등재 방식의 개선, 상향식 사업 운영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사의 재조명 및 문화적 다양성 재현을 포괄하는 역사 보존 체계 확립**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미국사는 건국, 내전(남북 전쟁), 백인 위주의 정치적 사건 위주로 서사가 구성되어 미국 사회의 인종 다양성(ethnic diversity)과 포괄적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미국 내 소수 인종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반영한 이민유산은 미국 내 역사보존 운동이 시

168) 임종현. (2021). 국외사적지 보호를 위한 미국 소재 한인 사적지 등재신청 안내서.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참고하여 작성.

작된 이후 현재까지 건국과 정치 발전을 주도했던 백인 관련 유산 위주의 보존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19세기 말부터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이민유산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내 이민 사회의 달라진 정치·사회적 위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공평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

- 이민 유산의 등재 심사 과정 및 중요성(Significance) 평가 방식 개선

독특한 생활방식, 열악한 경제적 여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리·증축·개축 등 이민유산의 주요 자산들은 다양한 변형을 겪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주거, 종교 및 상업 시설 등의 이민유산은 현재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자체에서 법으로 규정하는 문화유산 지정 근거 및 등재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에 최근 국립공원청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보존 철학에 근거, 자산의 원형(pristine condition)에 따른 진정성(authenticity) 및 완전성(integrity)의 가치를 평가했던 기존 유산 심사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및 무형적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중요성(Significance)'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문화유산의 창의적 보존 장려

또한 최근에는 개별 유산의 역사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지정·등재 중심 정책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 다양성이 있는 장소의 해석과 발굴에 주목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세기 초부터 연방 정부가 주도해 온 하향식 지정, 규제, 지원 방식을 통한 유산의 현상 유지 및 수동적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차원의 역사 발굴(identification), 가치 평가(evaluation), 창의적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공유유산 주요 사업 1: 아시아계 이민유산 관련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미국 국립공원청은 2011년부터 국가 랜드마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가 역사 장소(NRHP) 및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등재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이민 유산들에 관한 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주제 연구 사업으로는 라틴계 미국 유산 연구 사업 (American Latino Heritage Initiative),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연안 주민 유산 연구 사업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Initiative)[169], 여성사 유산 연구 사업 (Women's History Heritage Initiativ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역사의 다양성을 반영한 31개의 새로운

국가 역사 랜드마크가 지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2011부터 2013년 사이에 신규 지정된 국가 역사 랜드마크의 70%를 웃도는 수치로 유례없이 많은 수의 지정 건수였지만, 아시아계 이민 유산의 등재 비율은 전체의 2% 정도로 타 소수 민족 이민 유산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4-15].

[표 4-15] 2011-12년 미국 내 이민유산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지정 현황 분석

구분	미국 내 인구 비율인종	신규 지정된 국가 역사 랜드마크 비율
라틴계 미국인	16%	20%
아프리카계 미국인	13%	12%
미국 원주민	2%	5%
아시아계 미국인	5%	2%
여성*	52%	30%

주: 여성사와 관련된 유적들의 비율은 여성사와 관련한 특정한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유적지나 지구들을 대상으로 산정.
출처: National Historic Landmarks Heritage Initiatives. Progress Report. 2011-2013. p.3.

국가 유산 등재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2012년 내무부 장관의 지시로 아시아계 이민 유산 연구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3년 국가 역사 랜드마크 분과를 중심으로 학자 및 보존운동가들이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연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2018년 최종 연구 보고서가 출판되었다[표 4-16][170].

[표 4-16] 2018년 미국 내 국가 역사 랜드마크 연구 보고서 주제 분석

연구 주제	19세기-20세기 중반	2차 대전 이후
정치	• 제국주의와 이민 • 제국주의에 저항한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들	•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2차 세계대전 • 아시아계 미국인들: 냉전체제 •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피난민들: 2차 대전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인구 변화
	아시아계 미국인의 행동주의와 시민사회의 참여: 1917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	
경제	1848년부터 2015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사업 현황: 수용과 선택적 절충	
고고학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고고학	
사회	• 이민, 배제, 저항, 1800-1940년대 • 공동체의 정착, 1848-1941	•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문화적 지속/동화 •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 조직과 해체
문화예술	재구성, 인식 및 재편성: 아시아계 미국인과 국가 사적들	
	일본계 미국의 건축 유산	

출처: 미국 국가역사랜드마크 연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연구 리스트 중 미국계 아시아 관련 주제만을 모아 연구진 재작성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historiclandmarks/full-list-of-theme-studies.htm(검색일: 2023.10.22.))

169) 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섬 주민 프로그램(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Program)은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Program'. https://www.nps.gov/subjects/tellingallamericansstories/asianpacificislanderheritage.htm(검색일: 2023.10.22.) 참조.

이 보고서는 국가 역사 장소로 이미 지정된 37개소와,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랜드마크의 등재 조건에 부합하는 아시아계 이민 유산의 잠정목록 45개소를 연구한 결과를 포함하며, 이 중 한인 이민 유산으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가 언급되었다[표4-17].[171]

[표 4-17] 미국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등재조건에 부합하는 아시아계 이민유산 잠정 목록 현황

	중국	일본	한국	태평양 섬 국가	필리핀	인도/중동 지역	베트남	다국 공통	합계
국가 역사 장소 등록 자산	18	13	-	6	-	-	-	6	43
미등록 신규 발굴 자산	17	20	1	5	2	3	1	1	50
합계	35	33	1	11	2	3	1	7	93

출처: Odo, Franklin (ed.), (2016). Finding a Path Forward: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National Historic Landmarks Theme Study, pp.383-389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이처럼 새롭게 정립된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안을 통해 백인과 원주민을 제외한 미국 내 소수 이민 사회의 역사적 재평가가 시행되면서, 미국 역사보존 분야에서 이민유산의 역사적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향후 이민유산을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중요성' 진술 시 개별 유산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산이 건립될 당시의 거시적인 사회·경제적인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랜드마크의 경우 개별 유산 자체의 중요성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보다 다층적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실시된 아시아계 이민유산 관련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또한 미국의 초기 역사부터 근대 기간 아시아계 이민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경제적 연관성 및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재 국가 역사 장소(NRHP)로 등록된 자산과 미등록 신규 발굴 자산(잠정목록)의 후보추천 비율은 대략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170) 단,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민 유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기 때문에 태평양 섬 주민의 이민 유산의 연구성과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다. 보고서 및 해당 연구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ps.gov/subjects/tellingallamericansstories/asianpacificislanderthemestudy.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1)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 기록된 현황에 따르면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2016년부터 유적 일대를 미국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추가 정보는 확인된 바 없다. (출처: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www.okpedia.kr/Contents/ContentsView?localCode=naw&contentsId=GC95100231(검색일: 2023.10.22.))

□ 공유유산 주요 사업 2: 동아시아계 이민 유산 등재 추진[172)]

- 동아시아계 국가 유산 지정 현황

2019년까지 미 내무부 국립공원청에 의해 국가 역사 장소(NRHP)로 등록된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은 총 92건이며, 이 중 20건이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역사 장소로 등록, 관리되는 유산의 대다수(96.7 %)는 일본계 및 중국계 이민유산이다. 한국을 비롯한 기타 아시아계 이민 유산의 경우 국가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가 역사 장소 및 랜드마크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며, 다만 복수의 아시아계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이민사가 공통으로 관련된 국가 역사 장소는 3곳으로,[173)] 이 중 두 곳이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되어 있다.

[표 4-18] 미국 내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지정현황

	국가분류	지구	유적	건물	구조물	사물	합계
국가 역사 장소 (국가 역사 기념물)	일본계 이민 유산	11 (5)	14 (3)	26 (5)	7	1 (1)	59 (14)
	중국계 이민 유산	11 (2)	5	11 (2)	2	1	30 (4)
	아시아계 공통 이민 유산	3 (2)	-	-	-	-	3 (2)
합계		25 (9)	19 (3)	37 (7)	9	2 (1)	**92 (20)**

주: 2020년 1월 자 미국 국립공원청 통계자료(국가역사장소 전미 분포 현황)에 등록된 95,354개소 중 동아시아 이민자 관련 유산을 모아 재작성한 표임.
출처: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register/database-research.htm(검색일: 2023.10.22.)

- 등재 시기 및 소재지 분포 현황

국가 역사 장소로 등록되거나 국가 랜드마크로 지정된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의 등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은 1980년대 이후로, 80% 이상이 이 시기에 등재되었다. 또한

172) 동아시아계 이민자의 역사 자산 중 국가 역사 랜드마크로 지정된 사례는 2018년 발표된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AAPI Properties National Historic Landmarks in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National Historic Landmarks Theme Study (2018)를 참고했고, 국가 역사 장소로 등록된 자산에 관한 사례는 Asian Heritage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Cultural Resources Programs in Asian Reflections on the American Landscape (2005)와 국가 역사 장소 등재 데이터베이스(2020년 1월 기준), 국가 역사 장소 디지털 자료 검색(2020년 4월 기준)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했다. 자료가 디지털화된 시기를 고려하여 아직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누락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등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73) 역사 장소로 등록된 아시아계 미국인 관련 공통 이민 유산으로 엔젤 섬 이주민 센터 (Angel Island U.S. Immigration Center, CA), 카케 통조림 공장(Kake Cannery, AL), 스테드만-토마스 역사 지구 (Stedman-Thomas Historic District, AL)가 있다.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register/database-research.htm(검색일: 2023.10.22.) 참고.

2000년대 이후에 등재된 건수도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처럼 최근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의 등재 증가 추세는 1991년 제정된 공법(Public Law 101-628, Section 1209)과 내무부에 의해 시행된 아시아-태평양 섬 지역 유산에 대한 주제 연구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 유산의 지리적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지정된 유산의 절반 이상이 하와이와 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워싱턴, 오레곤 순으로 나타난다[표 4-19].

[표 4-19] 국가 유산으로 등재된 재미 일본계·중국계 사적의 지역별 분포 현황

소재지	일본계 이민유산	중국계 이민유산	아시아 공통유산	합계
캘리포니아 (CA)	11	6	–	17 (18%)
하와이 (HI)	8	4	–	12 (13%)
아이다호 (ID)	–	7	–	7 (8%)
워싱턴 (WA)	4	2	–	6 (7%)
오레곤 (OR)	1	4	–	5 (5%)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FSM)	4	–	–	4
괌 (GM)	4	–	–	4
알래스카 (AK)	1	–	2	3
유타 (UT)	2	1	–	3
애리조나 (AZ)	1	–	1	2
워싱턴 디시 (DC)	2	–	–	2
메인 (Maine)	–	2	–	2
마이애미 (MI)	1	1	–	2
미네소타 (MN)	2	–	–	2
펜실베이니아 (PA)	1	1	–	2
텍사스 (TX)	1	1	–	2
앨라배마 (AL)	1	–	–	1
콜로라도 (CO)	1	–	–	1
플로리다 (FL)	1	–	–	1
미주리 (MO)	1	–	–	1
뉴욕 (NY)	–	1	–	1
오클라호마 (OK)	1	–	–	1
사우스캐롤라이나 (SC)	1	–	–	1
사우스 다코다 (SD)	1	–	–	1
와이오밍 (WY)	1	–	–	1
북마리아 반도 (NMI)	8	–	–	–
합계	59	30	3	92

주: 2020년 1월 기준 미국 국립공원청 통계자료(국가 역사 장소 전미 분포 현황)에 등록된 95,354개 소 중 동아시아 이민자 관련 유산을 모아 재작성한 표임.

출처: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register/database-research.htm (검색일: 2023.10.22.)

- 등재 시 적용 기준, 자산 유형, 중요성 영역 키워드[174]

유산의 지정 기준은 주로 기준 A(역사적 사건)와 기준 C(건축/공학)이며 (93%), 기준 B (역사적 인물)와 기준 D(고고 유적 및 정보)가 적용된 경우는 총 3건(2%)에 불과하다. 등재된 자산의 유형을 살펴보면, 건물(Buildings, 41%), 지구 (Districts, 26%), 장소(Sites, 21%), 구조물 (Structures, 10%), 사물 (Objects, 2%) 순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 유산으로 등재된 이민 유산에 적용된 '중요성 영역(Areas of Significance)'을 표시하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건축, 민족유산, 사회사, 군 관련, 상업, 공학 등의 순서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이는 미국사와 연관성 및 각 이민 유산의 자체적 특징과 관련된다.[175]

[표 4-20] 동아시아계 국가 유산의 등재 시기별 분포 현황, 평가기준 및 중요성 핵심어 분석

시기별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합계
일본계	1	10	14 (3)	13 (3)	16 (5)	5 (3)	59 (14)
중국계	2 (1)	6	10 (1)	8 (1)	3 (1)	1	30 (4)
아시아 공통	–	–	–	2(2)	–	1	3 (2)
합계	3 (2)	16	24 (3)	23 (6)	19 (6)	7 (3)	92 (20)

선정기준	기준 A(사건)	기준 B(인물)	기준 C (건축/공학)	기준 D(고고 유적)
일본계 이민 유산	50	2	33	2
중국계 이민 유산	26	1	18	5
아시아계 공통	3	–	1	–
적용비율(%)	56%	2%	37%	5%

174) 등재 적용 기준, 자산 유형, 중요성 영역은 중복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 4-20]의 수치는 중복 항목을 포함

175) 예를 들어, 일본 이민 유산의 경우 군 관련, 정치·정부, 교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제2차 대전 중 루스벨트 행정부에 의해 발동된 행정명령 9066(Executive Order 9066)에 따라 미 서부 해안지역에 거주하던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임시 수용 시설에 강제 이주하였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유적이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경우에도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이는 하와이를 비롯한 미 전역에 이민자들이 조성한 많은 '일본식 정원(Japanese Garden)'이 국가 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반면 고고 유적, 탐험·정주, 상업 관련 유산의 비율은 중국계 이민유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초기 동아시아계 이민자의 상당수가 광둥성에서 건너온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아이다호 주는 초기 중국 이민자들이 광산업에 대거 동원되면서 초기 중국계 이민자들의 삶과 관련된 고고 유적과 다양한 관련 유산들이 국가 역사 장소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중요성의 영역 (Areas of Significance)	일본계	중국계	아시아 공통	합계
건축 (Architecture)	25	17	-	42
민족 유산 (Ethnic Heritage)	15	15	2	32
사회사 (Social History)	15	7	1	23
군 관련 (Military)	22	-	1	23
상업 (Commerce)	4	9	1	14
공학 (Engineering)	8	2	-	10
정치/정부 (Politics/Government)	6	2	1	9
산업 (Industry)	1	5	1	7
종교 (Religion)	3	4	-	7
탐험/정주 (Exploration/Settlement)	-	5	-	5
조경(Landscape Architecture)	5	-	-	5
고고학 (Archaeology)	2	2	-	4
교육 (Education)	4	-	-	4
선사 (역사-비원주민) Pre-historic (Historic-Non-Aboriginal)	-	3	-	3
교통 (Transportation)	1	2	-	3
법 (Law)	3	-	-	3
경제 (Economics)	1	1	-	2
행위 예술 (Performing Art)	2	-	-	2
건강/의료 (Health/Medicine)	-	1	-	1
해양사 (Maritime History)	-	-	1	1
농업 (Agriculture)	1	-	-	1
유흥/여가 (Entertainment/Recreation)	1	-	-	1
과학 (Science)	1	-	-	1

주: 2020년 1월 자 미국 국립공원청 통계자료(국가역사장소 전미 분포 현황)에 등록된 95,354개소 중 동아시아 이민자 관련 유산을 모아 재작성한 표임.

출처: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register/database-research.htm(검색일: 2023.10.22.)

□ 공유유산 주요 사업 3: 현지 문화유산 지정을 통한 LA 흥사단소 보존 사례

흥사단은 캘리포니아 내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재미 한인 단체로, LA 흥사단소 옛 본부 건물은 한인 애국 조직인 흥사단 본부가 LA로 이전한 후 1932년부터 본부로 사용하였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LA 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사회·문화적 구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흥사단이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교육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기도 하다.

2023년 국가보훈부에서 LA 흥사단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LA 시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멸실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이에 2023년 2월 28일 시 차원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LA시 역사문화기념물(제1274호)로 지정되었다. 차후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재미 한인사회의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에 조성되어 있는 유·무형의 역사 자산과 연계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또는 연방 사적으로도 상향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물 개요

소재지	3421-3423 South Catalina Street, Los Angeles, CA, USA.			
건립연도	1910년 (증축연도: 1925년)		중요시기	1932-1978
대지면적	6,223.1 Sf. (약 578㎡)			
건조물	본관	별동	증축 건물	외부 주차장
해당주소	3421 S.Catalina Street	3423 S.Catalina Street		
건물면적	2,458 Sf. (약 261㎡)	1,092 Sf. (약 101㎡)	-	-
건축양식	Craftmanship	Minimal Traditional	Concrete Block	
외부 공간	목조 2층	콘크리트조 2층	콘크리트조 단층	
	1910년	1958년	-	(1950년)
내부 공간[176]	방: 9/욕실: 4	방: 1/욕실: 1	방: 1/욕실: 1	차량 2대 규모
소유자	트리파링크(Tripalink, 2020년 4월 15일에 $1,895,000에 매입)			
매입 브로커	제이슨 리(Jason Lee, Coldwell Banker Realty)			
용도지구	중층 다가구 지구 (R3-1)			

출처: 미국 LA 흥사단소 옛 본부 부동산 등기 서류(2023.07.13. 현지 구득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현지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76) LA 도시계획과 기록(본관: 방 5개/욕실 2개, 별동: 방 2개/욕실 2개)과 실제 현황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인 내부 개조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 현지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 2023.07.13.

- LA 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과정

2021년 4월 도산 안창호의 3남 랄프 안(Ralph Ahn)이 LA 흥사단소 건물의 철거 관련 소식을 접한 후,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역사보존협회에 요청하면서 LA 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후 조사 및 심의를 거쳐, 2023년 2월 28일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자세한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 LA 흥사단소 건물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과정

○ **신청 전 상황**

- 2021년 4월: 필립 안(Philip Ahn) 주택의 LA 역사문화 기념물 지정 건[177]으로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역사보존협회(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Historic Preservation, 이하 APIAHP)와 교섭 중이던 랄프 안(Ralph Ahn, 도산 안창호의 3남)이 흥사단소 옛 본부 건물 철거에 관한 소식을 접한 후, 협회에 요청하여 LA시 역사문화기념물 (HCM) 지정 준비 착수
- 2021년 5월: 현지 동포사회 관계자 및 부동산개발회사 측과 협상
- 2021년 6월 2일: LA시 측에서 흥사단소 건물 철거 승인 사실 확인
- 2021년 6월 3일: 부동산개발회사 측에서 동포사회 관계자 등에 600만 달러 매각금액 의사 표시 및 동포단체 관계자 긴급 대책 회의
- 2021년 6월 4일: 흥사단,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현 도산기념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흥사단 단소 구입추진위원회' 조직 구성 완료[178]
- 2021년 6월 9일: '흥사단 단소 구입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발의**

- 2021년 6월 21일: 아시아-태평양 섬 주민을 위한 역사보존협회(APIAHP)의 대표인 미셸 마가롱(Michelle Magalong)과 LA 보존협회(LA Conservancy)가 협력하여 LA시 역사문화기념물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179]
- 2021년 6월 22일: LA시 도시계획과 국장이 흥사단 단소의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 후, 철거 허가서 발급 일시 정지(Temporary Stay) 요청

○ **2단계: 조사 및 심의**

- 2021년 7월 15일(1차 공청회): 문화유산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ssion, CHC)가 흥사단 단소를 역사문화기념물로 고려중인 잠정 자산으로 선정[180]
- 2021년 8월 12일: LA시 문화유산조례[Sec.22.171.10]에 따라, 현 소유주가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치 전까지 최대 60일의 기간 연장을 요청
- 2021년 8월 12일: 바론(Barron) 위원과 부엘나(Buelna) 위원으로 구성된 LA시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LA시 역사자원과(Office of Historic Resources) 직원과 함께 흥사단 단소 현장 조사 실시
- 2021년 8월 26일: 밀롭스키(Milofsky)위원과 케나드(Kennard) 위원으로 구성된 LA시 문화유산위원회의 두 번째 소위원회가 흥사단 단소 방문
- 2021년 9월 9일: 캐너(Kanner) 청장 흥사단 단소 방문

○ **3단계: 심의 결정**

- 2차 공청회에서 역사문화기념물 등록 권고 결정 후, 잠정 역사 자산으로 시 문화유산 시스템에 입력 완료[181]
- 2021년 11월 4일(2차 공청회): 문화유산위원회(CHC)의 투표 결과 (찬성 3, 반대 1)에 따라 흥사단 단소를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공표(Declare)[182] 후 시 의회에 통보
- 2023년 2월 28일: LA 시 의회에서 개최된 3차 공청회에서 문화유산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현재 시 의회 산하 토지사용관리위원회(Planning and Land Use Management, 이하 PLUM) 5인 중 불참 1인을 제외한 참석 인원 만장일치로 LA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안 통과

출처: LA 흥사단소 건물의 역사문화기념물 지정 과정에 참여한 외부연구진 직접 작성.

- LA시 역사·문화기념물 권고결정문 요약

작성자	문화유산위원회	
**공청회 일시	장소**	2021년 11월 4일	온라인 화상 회의	
안건 번호	CHC-2021-5125-HCM / ENV-2021-5126-CE	
장소	3421-3423 S. Catalina Street	
사업명	흥사단 (Hung Sa Dahn) 역사-기념물 신청 건	
요구사항	상기 자산을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해 줄 것	
소유주	**지정 신청자**	**서류 준비자**
동하오 리 (Donghao Li)	미셸 마가롱 (Michelle Magalong)	로사린드 사가라, 캐서린 김[183]
3423 S Catalina St. LLC 2905 South Vermont Avenu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07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Historic Preservation (APIAHP) 2279 Glendale Avenue, #3, Los Angeles, CA 90038	Los Angeles Conservancy 523 West 6th Street, Suite 826, Los Angeles, CA 90014 | 4343 San Rafael Avenue, Los Angeles, CA 90042
권고 결정	문화유산위원회는 LA시 행정 규정 9장 22 법안 1항[Sect.22.171.7]에 따라 해당 자산을 역사·문화기념물로 권고함	

출처: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 Recommendation Report. 2021.11.4. 내용을 발췌·번역하여 연구진 작성.

177) 필립 안(한국명 安必立)은 도산 안창호의 장남으로 할리우드 아시아계 배우 1세대이며, 초기 이민자 중 미국 영화계의 선구자적 입지를 인정받아 LA 보존협회가 그가 살던 주택의 LA 역사·문화기념물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os Angels Conservancy 홈페이지(https://www.laconservancy.org/issues/philip-ahnkurt-cobain-residence)를 참조.

178) 상임고문에 랄프 안(안창호 3남, 96세), 홍명기(미주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 총회장), 차만재(UC프레스노 명예교수, 흥사단 단우) 외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 기관으로 한국 도산 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김재실)와 한국 흥사단(이사장 박만규)가 있음.

179)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흥사단 단소매입위원회가 신청 과정을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LA Conservancy에서 단소와 관련된 단체를 확인하던 중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에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됨.

180) "Recommendation that the Cultural Heritage Commission: 1. Take the property under consideration as an Historic-Cultural Monument per Los Angeles Administrative Code Chapter 9, Division 22, Article 1, Section 22.171.10." (출처: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7.15.). Recommendation Report. p.2.)

181) 시의회에 등록된 해당 건의 의제 번호는 [CHC-2021-5125-HCM]이며, 시 의회 파일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할 경우, 고유 번호(21-1349)를 LACityClerk Connect 홈페이지 (https://cityclerk.lacity.org/m.clerkconnect/#/cfmsSearch)에 입력하여 확인 가능.

182) "Recommendation that the Cultural Heritage Commission: 1. Declare the subject property an Historic-Cultural Monument per Los Angeles Administrative Code Chapter 9, Division 22, Article 1, Section 22.171.7."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11.4.). Recommendation Report. p.2.)

183) Senior Communications Editor, Koreatown Youth+Community Center.

5.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의 시사점

□ 전담기구 마련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필요

해외 국가의 경우, 자국의 정부를 중심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중국, 스코틀랜드 등의 국가가 공유유산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주관 기관의 일부로 참여한다.

그러나 사업의 시행은 정부 부처가 주관하기보다는 전담기구를 마련하거나, 시행 가능한 유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된다. 네덜란드의 더치컬처(Dutchculture)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폴란드 또한 국가 간 협정은 정부에서 체결하였으나 국가유산이사회를 비롯하여 바르샤바 예술학교 및 박물관 등의 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행하였다.

또한 유네스코, 이코모스, 유럽연합, 도코모모 등 공유유산의 개념을 선제적으로 논의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가 이코모스외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사업은 도코모모 독일의 주도 하에 나이지리아 및 영국 등지의 대학 등과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탄자니아의 공유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경우, 유네스코(UNESCO)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통해 기금이 마련되어 진행되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또한 강조된다. 공유유산 사업은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부터 보존·활용 및 교육·홍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므로, 다양한 기관 간 협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대학과 박물관, 공공기관 및 연구소를 비롯하여 방송국과 국가기록물 아카이브 센터, 비영리재단, 영사관, 민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의 주체로 참여한다. 정부 부처에서 정책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개별 프로젝트 또는 개별 건축물의 보수·복원 사업은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에서 기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전담기구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공유유산이 최소 2개 이상 국가가 역사적으로 상호 관계된 유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유산에 대한 관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당사국 간 상호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유유산이 소재한 국가의 제도를 적용하여 현지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21] 해외 공유유산 활용·관리 사업별 주관·시행 및 협력·지원 기관

국가	사업 내용	주관기관	시행기관	협력·지원기관
네덜란드	공유유산 매칭펀드, 국제해양유산 발굴, 아카이브 구축 등	-교육·문화·과학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국가기록원 -더치컬처센터 -무형문화유산 네덜란드센터	-파트너국가 10개국 -중점국가 13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리비우 및 조브크바 복원 지원,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 및 국가유산부 -외교부	-국가유산이사회 -바르샤바 예술학교 -빌라누프 궁전 박물관 -자모이스키 박물관 -국가유산연구소 등	-우크라이나(협정국) -유럽연합(기금지원)
미국	국외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미 국무부 해외건물운영부	-미 국무부 해외건물운영부	-각국 소재 해외공관
	아시아계 이민유산 지정·등록 확대	-국립공원청(NPS) -개별 주·시	-국립공원청(NPS) -개별 주·시	-국립공원제도 자문위원회 -현지 비영리단체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나덴달 역사적 건조물·경관 등 마을 복원	-남아공 문화체육부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케이프타운 대학 -서케이프 문화위원회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
탄자니아	아프리카 해방운동 아카이브 구축	-문화예술스포츠부	-유네스코 -탄자니아 방송국 -국립박물관 -국가기록아카이브 -Mwalimu Nyerere 재단	-유럽개발기금(지원)
	역사적 건조물 개조 건축유산센터 설립	-Habitat Unit -탄자니아 건축가협회	-탄자니아 자연자원관광부 -국립박물관 -다르시(Dar City) 협의회	-유럽개발기금(지원) -탄자니아 아르디 대학교 -독일 베를린 공대 -독일 괴테 연구소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연구 펠로우십 지원	-도코모모 독일	-도코모모 독일	-독일 연방 외무부(기금지원)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교 -영국 리버풀대학교 -온라인건축 카탈로그 Architectuul
중국	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우한 문화부	-이코모스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 -CITIC 건축종합연구소 -화중과기대학교	-전문가·학술기관·기업 등
	톈진 이탈리아 조계 복원	-중국 정부	-중국 공기업(Tianjin Haihe Developing Investment Co. Ltd.)	-
스코틀랜드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	-히스토릭 스코틀랜드 -폴란드 외교부 -에든버러 폴란드 영사관	-히스토릭 스코틀랜드 -Polish-Scottish Festival Association(PCFA)	-영국 헤리티지 복권기금(지원) -폴란드 문화축제협회 -폴란드 에딘버러 그룹 -스코틀랜드 역사축제협회 -폴란드 대학교 등

출처: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소재국 내 문화유산 제도 활용 방안 모색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국립공원청(NPS)을 중심으로 201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계 이민유산과 소수인종에 대한 문화유산 지정·등록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규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국가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시 아시아계 이민 유산의 잠정목록을 발굴하였고, 이 과정에서 2018년 대한민국의 국외사적지인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가 잠정 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아시아계 이민유산 확대 정책에 따라, 2019년까지 일본계·중국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계 이민유산 92건이 국가 역사 장소로 지정되는 등의 여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최근 이민유산을 자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하기 위해 가치 평가 기준에 이민사의 역사적 가치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미국 내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문화유산 지정·등록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국외 소재 공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제도 사례는 미국의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 등록제(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를 참고할 수 있다. 미 국무부 해외건물운영부에서는 해외 소재 공관 등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주요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의 보존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소유 또는 장기 임대한 국외 소재 부동산을 조사하였고, 전체 3,500개 이상의 해외 공관 및 부동산 중 43개소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등록제도는 문화재에 대한 규제나 현지 소재국 내 재산권 행사 등 소유 행위를 통한 규제보다, 미국의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와 대중에게 홍보하고 교육적 용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의 특징을 지닌다.

□ 다양한 공유유산 정책 대상 유형 발굴 필요

해외 국가에서 정책 대상으로서 공유유산(shared heritage 또는 mutual heritage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공유유산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유유산의 대상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로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과 같이 국외 소재 유산 중 가치의 공유가 가능한 대상을 '공유유산'으로 상정하고 해당 유산의 관리·활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에 자국민이 조성하거나 설계 시 참여한 유산, 과거 자국 영토에 조성하였으나 국경이 변화하면서 다른 국가 영토에 속하게 된 유산, 자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해외 국가에 조성된 유산이 모두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외소재 유산 중 네덜

란드의 역사적 여건과 관련된 해양유산을 대표적인 공유유산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폴란드는 동유럽 지역의 잦은 국경 변화와 접경 지역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에 따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및 스코틀랜드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국가의 유산 중 폴란드와 관련된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 추진하거나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 지도를 제작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자국에 소재하는 외국과 관련한 유산 중 일부를 공유유산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조성하거나 설계한 역사지구 및 역사적 건축물, 명망 있는 외국인과 관련된 건축물 및 장소 등을 '공유건축유산'으로 보고 있으며, 옛 조계지역 보수·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유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아시아계 이민유산 및 소수인종 관련 유산을 자국의 문화재로 지정·등록하는 등 문화유산 범위 확대 정책을 통해 공유유산의 성격을 지닌 유산을 발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자국에 소재하는 유산을 대상으로 해외 국가에서 먼저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자국 내 문화재를 공유유산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나덴달(Genadendal) 복원 사업의 경우, 정부 주도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에서 19세기 모라비안 선교사 거주지가 있는 제나덴달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소재한 공유유산으로 보고 복원 기금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공유유산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하게 된 대표적 사례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국외 소재 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는 폴란드의 상대 국가로서 폴란드-스코틀랜드가 서로 연계된 기록을 발굴하고 유산 트레일 지도를 함께 제작하는 등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대 국가에서도 자국 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유유산 사업이 양국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국경유산 및 연속유산을 공유유산으로 상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양국의 접경 지역에 걸쳐 있는 초국경유산이나, 국가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화적 속성을 가진 연속유산을 공유유산으로 보고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이처럼 여러 국가에 있는 비슷한 문화 특성을 가진 유산을 공동 등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유산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공동 등재한 후 여러 국가가 함께 관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스리랑카의 '갈 옛 시가지와

요새'에 대한 네덜란드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례와, 폴란드의 1998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크라이나의 '리비우 역사지구' 등재 10주년 기념 공동 심포지엄 개최, 건축물 복구·복원 기금 지원, 중요 유산에 대한 인벤토리 및 아카이브 구축 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2013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에 있는 16개 교회를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등, 세계유산의 등재 지원 및 공동 등재가 공유유산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 다각적 공유유산 지원·관리·활용 전략 마련 필요

해외 국가의 공유유산 지원 및 관리·활용 사업 사례 조사 결과, 공유유산 사업 유형 및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가별 공유유산 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보존·복원 및 복구 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기초조사·연구 수행, 전시 및 출판, 아카이브 구축, 관리 센터 설립, 관광화 사업 추진,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기금 지원, 제도화 및 법정계획 수립, 소재국 내 문화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공동등재 등으로 다양하다[표 4-22]. 특히 동일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유유산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 및 관리·활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표 4-22]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업 유형

사업 유형	사업 내용(해당 국가)
보존, 복원 및 복구 지원	-우크라이나 리비우 및 조브크바 건축물 복구·복원 지원(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나덴달 복원(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임스 잭슨 체육관 보수 및 톈진 이탈리아 조계 복원(중국)
조사·연구 수행	-국제해양유산 발굴 연구 및 파트너 국가 대상 주제별 공유유산 발굴 연구 매칭펀드 지원(네덜란드) -일본 소재 네덜란드 유산 전수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유산 조사(폴란드) -1950-70년대 아프리카 주요 근대 건축물 연구 펠로우십 지원(도코모모 독일-아프리카) -아시아계 이민유산 및 소수인종 관련 유산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미국)
전시·출판	-국제유산협력 매칭펀드 지원 연구 결과 전시 및 서적 발간(네덜란드) -아프리카 공유유산 디지털 기록화 자료 전시(도코모모 독일-아프리카) -아프리카 해방운동 관련 기념공관 및 전시실 운영(탄자니아) -세계유산 '구랑위, 유서 깊은 공공조계' 공유유산 전시 개최(중국)
아카이브 구축	-동인도회사·서인도회사 등 관련 DB 및 아카이브 구축(네덜란드) -아프리카 해방운동 관련 아카이브 구축(유네스코-탄자니아)
관리 센터 설립	-네덜란드 공유유산 사업 추진센터인 더치컬처센터 및 국제문화협력센터 설립(네덜란드) -우크라이나(리비우 및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 설립(폴란드)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내 역사적 건조물 개조를 통한 건축유산센터 설립(유네스코-탄자니아)
관광화 사업	-톈진 조계 복원을 통한 이탈리아풍경구 상업지구 조성(중국) -폴란드-스코틀랜드 유산 트레일 사업 추진(폴란드-스코틀랜드)

사업 유형	사업 내용(해당 국가)
교육·홍보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문화유산 복원(폴란드)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지원(유럽연합) -남아공 제나덴달 복원 관련 기술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국)
기금 지원	-공유유산 매칭 펀드(네덜란드) -유럽개발기금 지원을 통한 아카이브 구축 및 건축유산센터 설립(탄자니아-유럽연합)
제도화	-국외 소재 부동산 자산 등록제도 운영을 통한 관리·홍보 수행(미국) -조계지 내 탁월한 역사적 건조물 20곳에 대한 법정계획 수립(중국)
소재국 내 문화유산 등재	-동아시아계 이민유산 국가 역사 장소 및 국가 역사 랜드마크 등재 확대(미국) -LA 흥사단소 건물 시 역사문화기념물 지정(미국)
세계유산 등재	-스리랑카 '갈 옛 시가지와 요새' 등재 지원(네덜란드) -우크라이나-폴란드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공동 등재(폴란드)

출처: 본문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절차 구축 필요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 추진 시 공유유산의 대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가장 첫 단계로 수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유유산의 관점에서 해당 유산의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을 기록화·도면화하며, 역사적 변천과정과 유산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연구 단계에서 구축된 자료는 향후 전시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기도 하며, DB화되어 아카이브로 구축된 후 전문가와 대중에게 디지털 정보로 제공되기도 한다.

조사·연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이 구성되면 사업의 시행 기관을 별도로 선별한다. 개별 건축물 단위의 사업 범위를 넘어 다양한 사업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와 같이 전담 사업 추진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전담 사업 추진센터는 당사국과 소재국 간 유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복원 및 보수 계획 수립, 활용사업 운영, 운영기금 구축·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유유산의 복원·보수 시 유산을 조성한 국가의 복원·보수 방식이 공유유산 보호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폴란드 또는 중국의 사례처럼 역사적 복원·보수 방식에 전문성을 가진 상대국의 학교·연구소 등 전문가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유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끝으로 공유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유유산 사례의 경우 문화유산으로 지정·등재되기도 하지만, 관련 사업추진센터나 공유유산 전시관 및 아카이브 시설, 청소년 시설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조사·연구 단계에서 수집된 콘텐츠와 결합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초기 단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5장 K-공유유산 활용·관리 정책 방안

1.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2.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1.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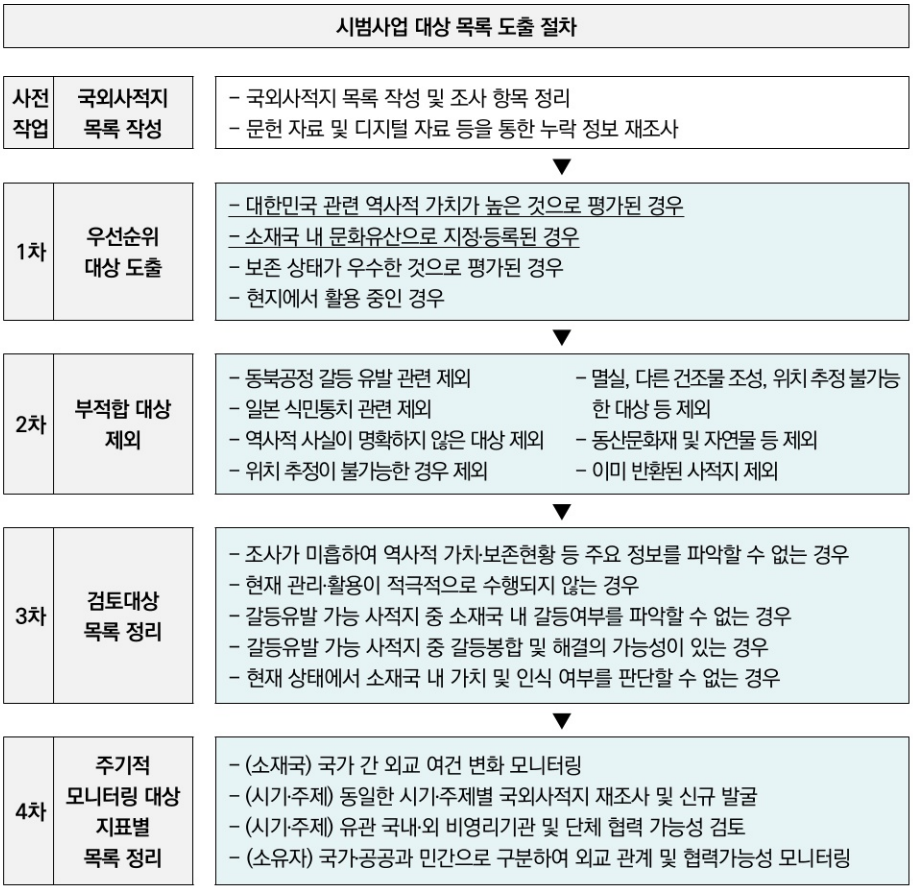
1)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방안

□ 목록 도출 절차

본 연구는 2장에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국외사적지 중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으로 정의하였다.[184] 이와 같은 K-공유유산의 개념을 기반으로 3장 2절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토대로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도출을 위한 제외 및 검토대상, 우선순위 대상 등을 선별하기 위한 유형분석을 수행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국외사적지 유형분석에 따른 시범사업 대상 도출 기준 방안을 정리하여,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절차를 (1차) 우선순위 대상 도출, (2차) 부적합 대상 제외, (3차) 검토대상 목록 정리, (4차)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지표별 대상 분류 및 목록 정리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84)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화재청에서는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 연구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국외소재문화재인 '국외사적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공유유산의 대상을 국외사적지로 한정하여 정의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사업에서는 동산문화재를 포함하여 정의할 수 있다.



[그림 5-1]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사전 작업: 국외사적지 목록 작성

K-공유유산의 시범사업 대상 목록 도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외사적지 기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다양한 부·처에서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을 통합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목록에는 새롭게 조사된 국외사적지 관련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조사 목적에 따라 구축된 기존 국외사적지의 목록은 부·처간 협조를 통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통합 목록을 작성하는 절차는 동산·부동산 등 모든 유형의 국외소재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다.

목록 취합 시에는 기존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유형 및 항목별로 시범사업 대상 도출을 위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특히 동일한 국외사적지가 중복되지 않는지, 해당 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이 없는지 재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1차: 우선순위 대상 도출

우선순위 대상은 (1)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 (2)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문화유산 지정·등록 현황 고려), (3)보존 현황, (4)현지 활용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도출한다. 먼저 K-공유유산의 개념에 부합하는 대상으로서 대한민국과 소재국에서의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대상을 도출하고, 이어서 보존 현황이 양호하거나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상 등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의 4가지 지표는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상호 공감하고, 해당 국외사적지가 문화유산으로서 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보존·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서 K-공유유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항목이다. 단, 이렇게 선별된 우선순위 대상은 기존 국외사적지 목록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도출한 결과이므로,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미흡한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기존의 조사를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 2차: 부적합 대상 제외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1)갈등 유발 국외사적지와 (2)물리적으로 멸실되었거나 장소성이 소멸된 국외사적지를 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대상으로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1차의 우선순위 대상 선정과 2차의 부적합 대상 제외 절차를 통해, 공유유산 시범사업의 우선순위 목록 대상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 절차상 용이성을 고려하여 제외대상을 먼저 선별한 후, 우선순위 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대상 목록을 추출하였다. 이에 약 53% 가량의 국외사적지를 제외 대상으로 상정한 후, 문화재청(2008)의 조사에서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국외사적지,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국외사적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국외사적지, 현지에서 활용 중인 국외사적지 등을 우선순위로 상정하고 중복 건을 제외하여, 총 229건의 국외사적지를 K-공유유산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이처럼 제외 기준을 고려하여 국외사적지 목록에서 K-공유유산 시범사업 부적합 대상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도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 대상 제외 작업은 차후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의 수를 줄임으로써 추가적인 가치조사 및 현황조사가 필요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 또한 축소할 수 있다.

- 3차: 검토대상 정리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 선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중간 단계의 국외사적지는 '검토대상'으로 분류한다.

검토대상에는 대체로 조사가 미흡하여 역사적 가치나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 또는 소재국·소유자 등의 여건에 의해 현재 관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대상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갈등유발 국외사적지 중, 추가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거나 향후 인식 변화 가능성이 있는 식민통치 피해 및 대한제국 황실 관련 국외사적지, 현재 상태에서 소재국 내 가치 인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이민사·전쟁 등의 피해와 관련된 국외사적지 등이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검토대상은 제외대상과 달리 추가 조사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이다. 기존 조사가 미흡하거나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 및 활용 여부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정리하고,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

- 4차: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별 목록 정리

제외대상, 검토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대상 유형 구분에 사용된 항목은 아니지만, K-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표로 소재국, 시기 및 주제, 소유자 유형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단계에서 적정 또는 부적정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별로 대상을 분류하고 유연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소재국 항목의 경우, 국가 간 외교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K-공유유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국가별로 목록을 분류한 후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해당 국가 소재의 공유유산 목록을 대상으로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수행한다.

시기 및 주제의 경우, 유사한 시기 및 주제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국외사적지를 묶을 수 있다. 시기·주제에 따른 유형 분류는 K-공유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내에서 먼저 심의할 때, 관련 전문가의 풀을 구성하거나 참고가 필요한 역사적 사료를 구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활용·관리 측면에서, 시기 및 주제에 따라 조직된 다양한 국내·외 기관 및 비영리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국내·외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은 국외사적지의 시기·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조직된 경우가 많다. 이에 특정 시기·주제와 관련된 국외사적지의 경우, 국내·외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K-공유유산 사업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표 5-1] 본 연구에서 분석한 K-공유유산 대상 선정 기준 및 건수

사전작업: 국외사적지 통합 목록 작성	**총 건수**
- 국외사적지 통합목록 작성 및 항목 정리 - 문헌조사 및 웹 검색을 통한 누락 정보 재조사	**2,216건**
▼	
1차: 우선순위 대상 도출	
우선순위 기준	**우선순위 건수 (중복 포함)**
-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문화재청(2008) 연구 참고)	670건
-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208건
- 보존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문화재청(2008) 연구 참고)	659건
- 현지에서 활용 중인 경우	240건
▼	
2차: 부적합 대상 제외	
제외 기준	**제외 건수 (중복 미포함, 누적)**
- 동북공정 갈등 유발 관련(중국 동북3성 위치)	796건
- 일본 식민통치 관련(향후 갈등 봉합 등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대상 제외)	33건
-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문화재청(2008) 연구 참고)	0건
-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문화재청(2008) 연구 참고)	19건
- 멸실되었거나 다른 건조물이 조성된 경우, 위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재조사 결과)	305건
- 동산문화재	22건
- 자연물 등	4건
- 이미 반환된 사적지	1건
합계	**1,180건**
(1차) - (2차), 공유유산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 도출(중복 건수 제외)	**518건**
▼	
3차: 검토대상 정리	
검토대상 기준	
- 조사가 미흡하여 역사적 가치·보존현황 등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관리·활용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 갈등유발 가능 사적지 중 소재국 내 갈등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갈등유발 가능 사적지 중 갈등봉합 및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현재 상태에서 소재국 내 가치 및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검토대상 건수 (1차 추출목록 중 검토 필요 항목)	**518건**
▼	
4차: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별 목록 정리	
모니터링이 필요한 주요 지표	
- (소재국) 국가 간 외교 여건 변화 모니터링	
- (시기·주제) 동일한 시기·주제별 국외사적지 재조사 및 신규 발굴	
- (시기·주제) 유관 국내·외 비영리기관 및 단체 협력 가능성 검토	
- (소유자) 국가·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외교 관계 및 협력가능성 모니터링	

출처: 연구진 작성.

소유자의 경우, 국가·공공 및 민간으로 나누어 모니터링한다. 국가·공공 소유 국외사적지는 국가 간 외교 여건 및 협력 가능성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시기에 해당 사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 소유 국외사적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활용 의지가 중요하다. 특히 우선순위 선정 대상이 민간 소유인 경우, 소유자의 활용·관리 의지 등을 확인하고 협상을 통해, 우선 협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소재국 내 가치 조사

기존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어, K-공유유산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요 정보인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여부 등의 정보가 거의 없다. 이에 우선순위 대상을 중심으로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 조사를 수행하여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공유유산적 가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소재국 내 문화유산인 경우 지정·등록 시 가치 내용 조사**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례의 경우,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관리되는 대상이므로 K-공유유산의 우선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목록에는 문화유산 지정 여부 및 지정 연도, 지정 유형 등 간략한 정보만 조사되어 있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조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사례의 경우 지정·등록 당시 공문서 등을 조사하여 해당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K-공유유산으로서 양국이 상호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정립하고 활용·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사건·인물 관련 가치의 공유 가능성 조사**

기존 국외사적지 목록을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인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관련 가치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또는 해당 인물이 소재국에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서재필기념관의 경우 관련 역사적 인물인 서재필은 첫 번째 한인 미국 시민권자이며 독립운동가, 개화사상가 및 의사 등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로, 현재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건물 앞에는 첫 한인 미국 시민권자인 서재필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기도 하다. 도산 안창호는 한인 이민 초기 미국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노동

자와 관련성이 높고, 독립운동가로서 미국 내 동상 및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도산 안창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청 앞 광장에는 간디, 마틴 루터 킹 등의 동상이 함께 세워져 있기도 하다.

일본 조선통신사 관련 사적의 경우, 세이켄지 사찰에는 조선통신사가 쓴 편액 등이 남아 있어 국가사적으로서 사찰과 함께 관리되고 있으며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한-일 공동등재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일본에서도 가치를 지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 심수관요의 경우, 1대 심수관이 조선 중기 피랍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역사와 관련성이 있으나, 심수관의 도예 기술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일본 도예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현재 소재국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윤이상하우스 또는 이응노 아뜰리에, 이성자 아뜰리에와 같이 해당 음악가 및 화가 등이 현지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인 경우, 해당 인물과 관련된 가치를 소재국과 공유할 수 있는 국외사적지에 해당한다. 이외에 프랑스 한국친우회 창립지나 영국 런던의 구 한국 명예총영사관 건물 등 현지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관계를 맺고 대한민국을 지원하였던 국외사적지의 경우에는, 소재국의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국외사적지라 할 수 있다. 현지 외국인과 관련된 국외사적지는 과거 대한민국과 해당 소재국이 상호 협력하였던 긍정적 역사를 지닌 국외사적지이므로, 이러한 가치를 살려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시 관련 역사를 토대로 한 활용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서 건축적·역사적·문화적 가치 등 조사**

한편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이 소재국에서는 주요한 역사나 인물이 아닐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서 해당 국외사적지가 지니는 건축적·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의 경우, 해당 국가의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거나 역사지구 등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영친왕 저의 경우, 쇼와 초기 황족 건축의 명작으로 당시의 설계자 및 시공자, 도면 및 공사 관련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도쿄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이다. 미국 LA에 위치한 USC한국학연구소 및 흥사단소 건물은 이민유산으로서 안창호 관련 유적지로 의미를 지니지만, 1900년대 초 당시 LA 지역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LA시 역사·문화기념물로 지정된 사례이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경우, 19세기 미국의 유력한 군인이자 정치인,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Seth L. Phelps)가 건립하고 머물던 주택이며, 역사지구인 로건 서클 내 위치하여 미국식 빅토리안 양식의 외관을 잘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건축적 가치의 경우, 오히려 소재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 및 인물 관련 가치보다 공감을 얻기 쉬운 가치라 할 수 있다.

또한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자국 내 이민사 및 이민유산과 관련한 유산을 제도적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조계지 및 외국인 관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유건축유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복원하는 등 공유유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자국 내 이민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민유산의 범위에 기존에 소외되었던 동아시아계 이민유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에는 미국 국립공원청(NPS)의 국가 역사 랜드마크 연구를 통해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가 국가 역사 랜드마크 잠정목록 대상으로 신규 발굴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주로 중국계·일본계 이민유산이 국가 역사 장소로 지정되어 왔으나, 향후 이민유산 정책 확대에 따라 대한민국 관련 국외사적지 또한 이민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소재국 내 가치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국외사적지가 현지에서 건축적·예술적·문화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아직 지정·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K-공유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문화유산 지정·등록을 추진할 수도 있다.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등재는 K-공유유산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자, 가장 가시적이고 분명한 성과가 될 수 있다.

2)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방안

시범사업 대상 도출 과정 또는 신규 발굴 과정을 통해 시범사업 우선순위 목록을 선정하고 가치 조사를 수행한 후에는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유산의 여건에 따른 사업 추진 전략 및 방향,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여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운영 계획 수립 시에는 시범사업 대상 도출 및 가치 조사 과정에서 정리된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되, 현지에서의 활용 및 가치 확산을 위한 다각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사업 범위

본 연구의 2장에서 조사한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관련 사업 내용, 3장에서 분석한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현황, 4장에서 조사한 해외 공유유산 사례의 활용·관리 유형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K-공유유산의 사업 범위(안)를 구성하였다. 해당 사업 내용은 향후 K-공유유산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 제정 등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사업 내용	대한민국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현황	해외 공유유산 활용·관리 사례
▼	▼	▼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 사업' 범위(안)		

-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지원
- 현지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 가능한 활용·관리사업 지원
- 보존·관리가 시급한 국외사적지 매입·보수·정비 지원(보조금, 전문 인력 등 지원)
- 현지 소재국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가치 증진 사업(홍보자료 제작, 안내판 제작, 교육 등)
- 문화유산 활용 국제 협력 증진 및 홍보 사업(공동 전시, 답사, 문화행사 등)
- 공유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사업
- 공유유산 대상 신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현황 조사를 위한 관리대상 정기조사 및 안전진단 지원
- 공유유산 국제 학술교류프로그램 지원 사업(대한민국 및 소재국 전문가, 관련 국제전문가 등)
- 이외에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등

[그림 5-2]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 사업 범위(안)
출처: 연구진 작성.

이와 같은 사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일한 국외사적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내용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장기적 목표로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한 가치 증진 사업, 보수·정비 사업, 조

사·연구 사업 등을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는 국외사적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을 추진하거나, 보수·정비 지원, 가치 증진 사업, 전시 지원, 조사·연구 사업, 콘텐츠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이 길수록,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사업 내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사업 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시 단계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외소재문화재 및 국외 현충시설, 국외 박물관 한국실 등을 지원하는 국내 운영지침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85] 이러한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유산 개요

해당 유산의 일반 현황을 조사한 유산 개요가 작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사례 분석을 위해 유산의 개요(주소, 건립연도, 구조)와 연혁, 관리·활용 현황(소유·운영·관리 주체, 현재 용도, 문화유산 지정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사항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개요 항목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및 활용가능성

기존의 국외문화재 지원 정책과 차별화되는 공유유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공유유산으로서 현지 소재국 내 가치와 활용가능성, 가치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사업 계획 수립 시 제시되어야 한다.

- 단계별 추진 계획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지원, 현지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 가능한 활용·관리사업 지원, 보존·관리가 시급한 국외사적지 매입·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내용과, 단기적으로 수행 가능한 전시, 홍보자료 제작, 안내판 제작·부착 등을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 목적 및 범위에 따라 해당 사업의 규모 및 기간을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85) 국외소재문화재, 국외 현충시설 및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등 유관 운영지침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5장 2절의 (가칭)「K-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관련 항목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 기타 사항(협력기관, 지속가능성, 비용 분담 여부, 사업 추진 용이성 등)

이외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 계획 항목으로 협력기관,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비용 분담 여부, 사업 추진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외 비용 분담 여부는 해당 문화유산이 K-공유유산으로서 현지 소재국에서 유산의 가치에 공감하고 현지에서 보존·관리·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표 5-2] K-공유유산 사업수행 계획 수립 항목

구분	세부 항목	내용
1) 유산 개요	개요	• 주소 • 건축연도(건축물) 또는 건립연도(시설물/장소) • 구조
	연혁	•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상태 조사를 위한 주요 연혁
	관리·활용 현황	• 소유·운영·관리 주체 • 현재 용도 • 문화유산 지정 여부 등
2) 공유유산으로서 가치 및 활용가능성	K-공유유산으로서 가치	• 대한민국 유산으로서 가치 • 소재국 내 유산으로서 가치
	K-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 공유유산으로서 활용 가능성 평가
3) 사업 추진 계획	단기	• 모든 사업 작성 (사업 범위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중·장기	• 대규모 사업 및 중장기 사업의 경우 작성
4) 기타 사항	협력기관	•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기관
	지속가능성	• 현지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명확성 등
	비용 분담 여부	• 국고보조금 외 현지 소재국 내 기관·단체의 자체 비용 분담 여부
	사업 추진 용이성	• 기타 사업 추진의 용이성

출처: 연구진 작성.

□ 사례별 단계적 추진 전략 수립

K-공유유산 사업 계획 수립 시, 전체 사업모델의 중·장기적 수립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 사례의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소재국 및 사례별로 K-공유유산의 지원 범위와 단계가 다를 수 있어, 연차별로 동일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입이 이미 진행된 미국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또는 흥사단소의 경우, 매입 이후의 복원·보수 및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례의 경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이미 복원·보수가 완료되어 유지관리와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흥사단소는 현재 복원·보수가 진행 중이므로 복원 방향과 함께 향후 활용 용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K-공유유산 시범사업은 전체 사업모델의 연차별 추진 계획을 동일하게 수립하기보다는, 시범사업 대상별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예시로 제시한다.

-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현지 매입사례의 가치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2012년 문화재청의 매입 이후 복원과정을 거쳐 현재 하우스뮤지엄(House muse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가치를 비롯하여 공사관 건물이 입지한 역사지구 로건 서클(Rogan Circle)에 대한 가치 평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소재국 내 매입 사례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매입 사례의 가치를 증진하고 역사지구 내 타 역사적 건축물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의 미국 내 문화유산 현지 지정·등재 전략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시범사업 운영계획 예시 (1)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예시 1) 미국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현지 매입사례의 가치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대상 지역 특성	– 현재 미국 내 역사지구로 지정된 로건 서클(Rogan Circle) 내에 위치하며, 해당 구역은 19세기 미국의 당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여러 역사적 건축물로 구성 – 2012년 매입하여 하우스뮤지엄(House museum)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변과의 연계 및 활성화 전략 필요
사업 대상 공간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 – 해당 건축물이 입지한 로건 서클(Rogan Circle) 역사지구
사업 추진 방향	– 공사관 건물의 현지 문화유산 지정·등록 추진 – 전시 및 현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대 – 로건서클 역사지구 내 역사적 건축물 간 연계 프로그램 기획
사업 추진 주체	–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미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미국사무소, 미국 국립공원청(NPS), 로건서클 주민자치협의회 등 *현지 문화유산 지정·등록 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참여 필요

참고 사례	– (현지 문화유산 지정·등재) LA 흥사단소의 LA 시 사적 등재 과정 및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유산 등재 현황 참조	
사업 추진 방식		
단기 추진계획	– 3층 전시실 콘텐츠 보완 – 주미대한제국공사관(대한민국 관련 가치) 및 로건 서클(소재국 관련 가치) 소개 교육자료 제작 및 관련 콘텐츠 개발 – 로건서클 내 주민 자치협의회 참여 및 연계 방안 모색 – 공사관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정비	*수행 연도 계획, 사업 절차 구상, 실현가능성 검토 (실현 불가능 시 변경 필요)
중·장기 추진계획	– 역사지구 및 건축물의 소재국 내 문화유산적 가치 조사·연구 – 미국 내 문화유산 등재정책 및 등재 가능성 조사·연구 – 현지 문화유산 지정·등록 추진	

출처: 연구진 작성.

- 일본 조선통신사 유산: 세계기록유산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일본 조선통신사 관련 유산의 경우,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한-일 공동 등재되어 있으며 한-일 내 조선통신사 관련 사적지가 공동 조사되어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관련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활용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다. 현재 세이켄지 사찰(국가사적)과 삿타토우게 통신사 길(명승)이 위치한 시즈오카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 등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에 폴란드-스코틀랜드 간 공유유산 트레일 구축과 유관 행사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일본 내 조선통신사 유산 또한 세계기록유산 및 조선통신사 사적지와 연계한 트레일을 개발하고 한-일 양국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표 5-4] 시범사업 운영계획 예시 (2) 일본 시즈오카 오키쓰 조선통신사 유산

(예시 2) 일본 시즈오카(靜岡) 오키쓰(興津) 조선통신사 유산: 세계기록유산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대상 지역 특성	– 일본 내 조선통신사 관련 주요 장소 국가 사적 지정·관리 – 시즈오카 등 지자체 주도 조선통신사 관련 행사 개최(매년 10월) –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 – 조선통신사 관련 한-일 사적지 공동조사 및 심포지엄 개최, 서적 발간 – 일본 내 조선통신사 사적지 관련 교육자료 제작·배포(시즈오카 시 등)
사업 대상 공간	– 일본 내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세이켄지 및 삿타토우게 등(거점공간) – 조선시대 한양~에도까지 이어지는 조선통신사 루트(기존 조사자료 참고)
사업 추진 방향	– 조선통신사 관련 일본 내 루트 활성화 및 대한민국-일본 연계 루트 조사 – 세계기록유산-국외사적지 연계 활용 방안 모색

(예시 2) 일본 시즈오카(靜岡) 오키쓰(興津) 조선통신사 유산: 세계기록유산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사업 추진 주체	– (대한민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부산문화재단 등 – (일본) 시즈오카 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세이켄지 사찰 등 *매년 10월 행사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협력 필요	
참고 사례	– (양국 간 트레일 지도 제작 및 행사 개최) 폴란드–스코틀랜드 공유유산 트레일 사례 참고	
사업 추진 방식		
단기 추진계획	– 국내 및 일본 내 조선통신사 사적 현황 현지조사 – 초국경 문화유산 연계 루트 선행사례 연구·조사	*수행 연도 계획, 사업 절차 구상, 실현가능성 검토 (실현 불가능 시 변경 필요)
중·장기 추진계획	– 세계기록유산 가치·현황 조사 및 연계 활용프로그램 개발 – 국내 조선통신사 관련 사적지의 문화유산 현황 조사 및 지정 추진 – 한–일 조선통신사 루트를 소개하고 관광·탐방 등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폴란드–스코틀랜드 사례 참고)	

출처: 연구진 작성.

2.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 과제

1)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운영지침 제정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상호 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지침 제정을 제안한다. K-공유유산은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해당 운영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의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보호·환수·활용 등의 조치 및 지원[186] 조항을 근거로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국외소재문화재의 현지 보호 및 활용, 가치 증진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또는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에 관한 지침」[187]을 제정하여, K-공유유산 정책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의 대상 및 지원 범위, 사업 추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운영지침 제정안 마련을 위해, 현재 해외에 위치한 문화유산 및 현충시설, 국외 박물관 한국실 등 유사한 대상을 현지에서 보호·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운영지침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K-공유유산 사업 추진주체인 문화재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문화재청예규 제2458호)를 들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과 국가보훈부의 국외 현충시설 지원 관련 운영지침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내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 K-공유유산 사업의 운영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 사례로서 각 행정규칙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 「문화재보호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제9항, 제67조~제69조.

187) 현재 국내 현행법 체계에서 'K-' 수식어가 붙은 표현은 사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용어로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명칭으로는 'K-공유유산'을 사용하되 법제화 시에는 용어 선정에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키워드로 사용한 '공유유산'을 운영지침 명칭으로 명시하고자 함. 이외에도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제 전문가 자문(2인 이상) 내용 참고. 2023.11.16.; 2023.11.20.

① 국외 문화유산·현충시설 지원 유관 행정규칙 검토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문화재청예규 제248호)

본 예규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중요 국내·외 문화재 매입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2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88]

제2조에서는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한 긴급매입비 편성·운용, 긴급매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긴급매입 절차와 재산 소유권, 민간대행 및 예외사항 등을 차례로 규정하였다.

용어의 정의에 따른 긴급매입 필요 대상 문화재는 국외 유출·반출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 매입하지 않을 경우 유실·분실·훼손·철거 위험이 높은 문화재, 매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경매에 나온 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지자체 및 주민·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재, 경매 외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문화재 중 가치가 높은 문화재, 부동산 형태의 문화재 중 철거·훼손의 위험이 있거나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 등으로 규정된다. 이외에 국내에서 국가등록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지니고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문화재이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였다.[189]

제4조에 규정된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운영되며 긴급매입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다. 본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190]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매입 가치 여부를 '상', '중', '하'로 표시하여 출석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불법 거래된 문화재나 도난·도굴·밀반입 등과 관련된 경우,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는 긴급매입이 제한된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긴급매입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대행사업자는 문화유산국민신탁,

188)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조.

189)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2조.

190)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4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단체,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 대상문화재의 매입·정비 사업에 적합한 단체여야 한다.

매입된 문화재는 제15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로 관리되며, 또한 「국유재산법」에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기·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 규정 등 문화재 구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에 따른 긴급매입비를 활용하여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대상선정 심의 없이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받아 긴급매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표 5-5]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제8호의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국내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중요 문화재(이하 "긴급매입 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 국내에서 경매되는 문화재로 매입하지 않을 경우 국외로 유출·반출 가능성이 있는 문화재 나. 개인·법인 등 소유자가 국가에 매입을 청구한 것으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실·분실·훼손·철거 위험에 있는 문화재 다. 국가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라. 국내외 경매에 나온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마.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문화재청에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바.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을 결정한 문화재 사. 경매 외의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아. 부동산 형태의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중 철거 또는 훼손될 위험성이 있거나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 자. 기타 문화재청장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2.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구성	내용
	나. 지역이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삭제〉
	③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비"(이하 "문화재 긴급매입비"라 한다.)라 함은『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용도로 편성된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말한다.
	④ "민간대행사업비"라 함은『국가재정법』,「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를 말한다.
	⑤ "민간대행사업자"라 함은 문화재청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업을 문화재청을 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원칙)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
제2장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제4조(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1. 국내외 공개 경매 문화재 매입여부 2. 개인, 법인 등 문화재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문화재 매입여부 3. 매입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여론이 형성된 문화재 매입여부 4. 매입 필요성이 제기 된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매입여부 5. 지방자치단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매입을 건의한 문화재 매입여부 6.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제한 여부 7. 경매 응찰 상한가격 8. 국내 또는 국외소재문화재 매매계약 상한가격 9.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매입 문화재 관련 외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 전문가는 구성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 보존 ·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광 · 법률 · 종교 · 언론 · 부동산 · 경매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외문화재 긴급매입 관련 유관기관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위원 중에 호선,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함

구성	내용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심의의결)	긴급매입 문화재 가치 여부를 "상", "중", "하"로 표시. 단,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매입대상 제외
제10조(긴급매입제한)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도난,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높은 경우 3. 소장자의 소유권 확인이 불분명하여 적정한 소유권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간사 등)	-
제12조(수당과 여비)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 지급
제3장 보칙	
제13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긴급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매입 문화재의 매입여부, 경매 응찰 상한가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제14조에 따른 긴급매입사무 대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비는 『국가재정법』제80조,「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긴급매입사무 민간대행)	①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매입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2. 『문화재보호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문화재보존 · 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5. 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긴급매입 대상문화재의 매입 및 정비사업 추진에 적합한 단체
제15조(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재산소유권 등)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로 관리 -「국유재산법」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 조치 수행
제16조(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대상선정 심의 등 예외)	-문화재 구입 관련 타 규정에 따라 문화재구입 추진 시 긴급매입비를 활용하는 경우, 심의 없이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통해 가능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수행
부칙	

출처: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운영지침은 국외박물관 한국실 및 한국문화재의 조사·연구·보급·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추진 중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제정되었다.[191]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던 '한국실 운영 지원 사업'을 202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192] 규정에 대한 별도의 상위 법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본 예규에서는 지원 대상과 선정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시 고려사항,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및 해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외 박물관 중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거나 한국실을 설치할 예정인 박물관으로, 지원 사업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국외 박물관을 '지원대상관'으로 지칭한다. 지원대상관은 주로 정기공모를 통해 모집하나, 수시 협의를 통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기관의 개요와 한국실 관련 사업 계획,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 기관 부담 내역,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대상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며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 적격성, 한국실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및 신청 기관의 비용 부담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관을 선정한다. 지원은 협약 체결 방식을 통해 시행되며, 지원 대상 박물관이 협약의 주요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93]

[표 5-6]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과 한국 문화재의 조사 · 연구 · 보급 ·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 관련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1)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19.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2022. 8. 19., 제정), 제정·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943&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검색일: 2023.10.30.)

192) 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보도자료. 2023.10.12.

193)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19.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2022. 8. 19., 제정).

구성	내용
제2조(정의)	"지원대상관"이란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의 수혜기관으로 선정된 국외기관을 말함
제3조(지원대상)	한국 문화재를 소장하거나 한국실을 설치할 예정인 국외소재박물관
제4조(지원대상관 모집)	- 정기 공모 및 수시 협의로 지원대상관을 모집 - 신청서 포함 사항 1. 신청기관 개요(아시아실 및 한국실 개요, 운영 현황 등 포함) 2. 한국실 및 한국 관련 사업 계획(이하 '사업 계획') 3. 지원금 집행 계획 및 해당기관 부담 내역 4. 사업책임자 및 담당자 5. 기타 관련 증빙 자료(한국 관련 사업 실적 등)
제5조(지원대상관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관 선정
제2장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구성)	위원장(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당연직(유물관리부장, 전시과장), 연구직 부서장 3인 이상 등 총 6인 이상
제7조(운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제8조(지원대상관 선정 시 고려사항)	1. 사업 계획의 타당성(사업 목적 부합,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 2. 기관 적격성(기관 성격, 한국실 규모, 관람객 수, 대표성, 한국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3. 한국실 발전 가능성(한국실 신설 및 확장 가능성, 한국 문화재 수, 전담 인력 유무 등) 4. 예상되는 기대 효과(한국 이미지 제고 기여도, 지속 가능성) 5. 신청 기관의 비용 분담
제3장 협약 체결과 지원금 교부	
제9조(협약 체결)	-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원대상관 간 협약을 통해 지원 - 협약 체결 포함 사항 1. 사업 기간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 2.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간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5. 분쟁 해결과 준거법에 관한 사항 6. 비밀 유지 및 면책에 관한 사항 7. 사업 변경,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금 교부)	사업기간 및 예산사용 계획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
제11조(협약 해지)	- 박물관장은 지원대상관이 협약의 중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해지 시점까지 협약 사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지원금 잔여금을 반환하여야 함
부칙	

출처: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19.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2022. 8. 19., 제정).

국외 한국실 지원 사업은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한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과 최대 3년의 단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중장기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전시환경 개선, 특별전, 인력 채용, 유물 대여, 한국 관련 행사, 기타 제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을 지원한다. 단기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출판, 교육 프로그램, 소장품 조사, 한국문화재 정보 온라인 공개 서비스, 보존처리 등 5개 분야의 개별 사업을 지원한다.[194]

국립중앙박물관은 예규 제정 이후 2023년 정기 공모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덴마크국립박물관, 네덜란드국립박물관 등 5개국 6개관을 선정하였으며, 기존의 지원대상관에 신규 선정된 지원대상관을 포함하여 2024년에는 총 9개국 21개관을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으로 만나는 'K-컬처'의 전초기지"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지원 방향은 "주요 거점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실 개선, 특별전 개최, 전담인력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출판, 교육, 온라인 공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195]

최근의 사업 현황 및 성과로는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특별전시 및 한국실 지원, 미국 플로리다 대학 새뮤얼한박물관 조선시대 산수도 보존처리, 독일 훔볼트포럼 민족학박물관 한국문화재 특별전 개최 인력 지원 등이 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의 경우 202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문화기관 교류·협력 확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후속 조치로 故이건희 회장 기증품 특별전 개최와 기존 한국실의 개편, 공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플로리다대학 새뮤얼한박물관의 경우, 해당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산수도의 보존처리작업과 함께 230여건의 소장 한국문화재 정보를 보완하고 고화질 사진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독일 훔볼트포럼 민족학박물관에서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아리아리랑-한국, Ari-Ariran, Korea〉라는 한국 특별전을 개최하여, 독일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한국인의 아리랑 녹음 음반 등 훔볼트포럼 민족학박물관에서 소장한 한국 문화재 120여점을 공개한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해당 특별전의 한국실 전담인력 채용을 지원하며, 소장품 연구 및 전시품 대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196]

194) 국립중앙박물관. (2023). 2023년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2023.04.21.

195) 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보도자료. 2023.10.12.

196) 이상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고. 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보도자료. 2023.10.12.

□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국가보훈부예규 제1호)은 최근 국가보훈부의 미국 LA 흥사단소 매입을 계기로 2022년 7월 12일 제정되었다. 본 지침에서 '현충시설'의 정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국외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나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부동산 형태의 현충시설을 긴급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97]

긴급매입 심의는 「현충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198] 현충시설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하는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건립 및 개·보수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본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심의를 함께 수행한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99] 긴급매입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출석위원 중 1명이라도 매입가치에 대해 '하'로 평가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긴급매입 사업 추진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대행사업자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침 제7조에 따라 독립기념관, 국가보훈 또는 해당 현충시설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국외소재 현충시설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보존·관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단체,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대행 사업자로서 국가보훈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비의 집행 등 긴급매입 추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미국 LA 흥사단소 매입 사례의 경우, 흥사단 LA지부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현재 민간대행 사업자로서 한미유산재단(Korean American Legacy Foundation)이 설립 및 위촉되어 흥사단소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5-7]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7)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1조~제2조.

198)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제4조.

199) 「현충시설 관리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제2조~제4조.

구성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및「현충시설의 지정 ·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외에 소재한 현충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1. 부동산 형태의 국외 소재 현충시설 중 철거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는 언론보도 등 사회 여론이 형성된 현충시설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긴급하게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
제3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원칙)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것
제2장 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심의	
제4조(심의위원회)	「현충시설 관리지침」제2조에 따라 설치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입 여부 2. 국외 소재 긴급매입 대상 현충시설의 매매계약 상한가격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단, 매입가치에 대하여 출석위원 중 1명이라도 "하"가 있으면 부결된 것으로 의결함)
제3장 보칙	
제6조(국외 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절차)	- 긴급매입 심의 의결 및 매입 상한 가격 확정 후, 현충시설관리과장이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 체결 - 긴급매입비 집행은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제7조(긴급매입사업 민간대행)	긴급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 대행 가능 1. 「독립기념관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 2.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현충시설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기타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매입 추진에 적합하고 현충시설 보존 · 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
제8조(긴급 매입 국외 소재 현충시설 재산소유권 등 관리)	- 「국유재산법」 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 - 취득 시 「국유재산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제9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수행
부칙	

출처: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2023. 6. 5., 타법개정).

□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내 국외 현충시설 지원 사항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2호)에서는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및 건립·개보수 절차 및 관리·활용 관련사항과 함께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 2008년 훈령 제정 당시에는 국내와 국외의 현충시설의 건립·개보수 지원 관련 사항이 구분되지 않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개정을 통해 국외 현충시설 관련 조항이 분리되고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 절차 등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본 지침에서는 국외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하려는 국외 민간단체 및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건립·개보수 비용을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200] 개보수 지원이 시급하고 사업주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장은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관할 구역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사업비 집행 시 국외사업주체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원 사업을 위한 현지 유관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사업 선정은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단, 지원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의 국외 현충시설 관리는 크게 「현충시설 관리지침」을 통한 건립·개보수 지원과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을 통한 긴급매입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각 훈령과 예규에서 사업 대상의 선정 및 심의는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는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표 5-8] 「현충시설 관리지침」 구성 및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보수 지원 관련 내용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제3장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등	
제4장 현충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제5장 현충시설의 관리 및 활용	
제6장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등	
제23조(사업의 주체)	- 국외에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 · 보수하려는 국외 민간단체 및 외국기관 등(이하 "국외 사업주체")

200) 「현충시설 관리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제23조.

구성	내용
	- 단, 개보수 지원이 시급한 사업으로서 사업주체가 불확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외공관을 사업주체로 함
제24조(지원대상사업의 선정)	- (제1항) 국외 사업주체가 관할 구역의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장에게 국외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재외공관장은 검토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 - 검토사항 1. 사업주체의 명확성 여부 2. 해당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 3. 사업규모의 적정성 및 자금 확보방안 등 명확성 여부 - (제3항) 장관은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차년도 지원계획에 반영, 국고지원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재외 공관장에게 통지 (단, 선정되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 지원 가능) - (제4항) 재외공관장은 통지받은 사항을 국외 사업주체에게 통지
제25조(예산요구 및 확정통지)	- 장관은 선정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에 포함 -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가능 - 장관은 예산 확정 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사업주체에게 통지
제26조(사업비 집행)	- (제1항) 장관은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 (제2항) 국외사업주체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국고보조금 외 자금확보 내역서를 재외공관장에게 제출 - (제3항) 장관은 서류 검토 후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여부를 통지하며, 국고보조금 외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교부 불가 - (제5항) 재외공관장은 다음의 사항을 관리·확인 1. 국외 사업주체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2.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3. 기타 사업의 변경 사항
제27조(사업의 변경)	- 사업변경 시 재외공관장을 통하여 장관에게 계획서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변경 시 승인받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제28조(정산)	- 재외공관장은 국외 사업주체로부터 정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장관에게 제출
제29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수행
부칙	

출처: 「현충시설 관리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 유관 행정규칙 비교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작성을 위한 참고 사례로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등 유관 예규 및 훈령 총 4건의 행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표 5-9] 국외 문화유산·현충시설 지원 관련 유관 행정규칙 비교

구성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현충시설 관리지침」 내 국외 현충시설 관련 조항
목적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관련사항 규정	국외박물관 한국실 및 한국문화재 사업 활성화	국외소재 현충시설 긴급매입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임사항 규정
정의	긴급매입 문화재 및 관련 용어 정의 (상위법 내 개념 준용)	사업 수혜기관을 '지원대상관'으로 정의	현충시설(「국가유공자법」등) 중 긴급매입 대상 규정	- (상위법 내 개념 준용)
원칙	공정성·객관성	-	공정성·객관성	-
지원대상	-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	국외소재박물관(한국문화재 소장 및 한국실 설치)	-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	국외 현충시설 건립·개보수 사업주체
신청 시 제출사항	-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규정하지 않음)	(신청서)개요, 사업계획, 예산 사용계획, 기관 부담내역 등	- (공모사업이 아니므로 규정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주체·장소·기간·규모, 사업비, 추진경위, 투자계획, 활용계획 등
대상 선정 방법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의결 (과반 출석·찬성, 단, '하'로 평가한 위원이 없을 것)	자체 심의위원회 의결 (과반 찬성)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의결 (과반 출석·찬성, 단, '하'로 평가한 위원이 없을 것)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의결 (과반 출석·찬성)
위원회 구성	문화재청 관계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10인 이내, 수시 구성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직 6인 이상	국가보훈부 내부직 및 외부전문가 17인 이상 *「현충시설 관리지침」에서 규정	국가보훈부 내부직 및 외부전문가 17인 이상
심의사항	국내외 주요문화재 매입 여부 및 제한여부, 매입 상한가격 (단, 타 규정에 따른 문화재 구입 시 긴급매입비 활용하는 경우 의결 없이 지원 가능)	사업계획 타당성, 기관 적격성, 한국실 발전 가능성, 기대효과, 해당 기관의 예산 분담여부 등	국외 현충시설 매입여부, 매입 상한 가격 등	사업주체의 명확성, 사업부지 확보 여부, 사업규모 적정성, 자금 확보방안 여부 등 (단, 총사업비 3천만 원 미만은 의결 없이 지원 가능)
지원 방법	문화재청-민간대행사업자 간 계약 체결	국립중앙박물관-지원기관 간 협약 체결	국가보훈부-민간대행사업자 간 계약 체결	국고보조금 교부 (재외공관장 경유)
사업대행자	민간대행사업자를 둘 수 있음(자격은 제14조에 규정)	-	민간대행사업자를 둘 수 있음(자격은 제7조에 규정)	-
재산 관리	국유문화재 및 국유재산으로 관리	-	국유재산으로 관리	-
지원 취소·회수	-	협약 조건 미준수 시 해지, 지원금 전부·일부 반환	-	국고보조금 외 자금 미확보 시 또는 사업변경 미승인 시 취소
기타사항	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 검토	-	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 검토	3년마다 해당 예규의 타당성 검토

출처: 각 행정규칙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방안

본 연구에서는 K-공유유산의 개념과 지원 사업의 범위, 유관 행정규칙을 비교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안한다.

□ 목적

본 사업은 국외소재문화재 중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상호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을 대상으로(이를 '공유유산' 또는 'K-공유유산'으로 규정한다) 소재국 내 보호 및 활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협력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유산의 보호 및 활용 지원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가 현지에서 멸실·훼손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유산을 거점으로 국가 간 문화외교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함께 기술할 수 있다.

현재 상위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위임한 사항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제67조부터 제69조의2까지 규정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보호·환수·활용 지원 관련 사항을 근거 조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정의

- 국외소재문화재 및 국외사적지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의 정의를 준용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추가로 국외소재문화재의 유형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유산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외사적지'로 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문화재, 부동산 유산 등으로 지칭되며,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제1항제1호아목에서는 '부동산 형태의 국외소재문화재'로 명시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국외사적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에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의 국외소재문화재는 '반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실상 동산문화재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면, 법령 개정 이후 역사적·문화적

관련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현지에서 형성된 다문화 형성 기반 유산과 함께 환수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의 활용·관리가 필요한 국외사적지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국외소재문화재 정책이 동산문화재의 환수 중심 정책에서 동산·부동산을 포함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보호·관리·활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외사적지를 '외국에 소재한 건축물과 장소 가운데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외사적지의 유형은 크게 외교사 관련 국외사적지, 이민사 관련 국외사적지, 독립운동사 관련 국외사적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201] 이외에 새롭게 발굴되는 대한민국 관련 국외사적지의 유형이 추가될 수 있다.

단, 국외사적지를 운영지침에서 규정하여 국외'사적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사적'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국외 소재 건축물 및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운영지침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202]

- 문화유산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내 문화유산의 요건을 함께 규정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대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향후 문화재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문화유산의 개념을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공유유산(또는 K-공유유산)

공유유산(또는 K-공유유산)은 사업 대상이자 운영지침의 명칭을 구성하는 주요한 용어로, 정의에서 대상의 특성을 정의함으로서 해당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유유산(또는 K-공유유산)은 (1)국외소재문화재 중 대한민국과 현 소재국에서 상호 긍정적인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며, 양국이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자, (2) 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

201) 국외사적지의 정의 및 유형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한다. 강임산. (2022). 국외사적지의 현황과 활용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국외문화재이슈페이퍼 제6호. 2022년 11월호. 2-8쪽.

20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적' 또는 '사적지'는 흔적이 남아 있는 터의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국내 사적 지정 사례를 살펴보면 근대 시기 조성된 서울 독립문, 환구단, 대한의원, 명동성당, 구 서울역사, 구 서대문형무소 등 건조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건축물 및 장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 홍보, 국제협력 증진 및 문화외교 등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국가 간 갈등 유발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산의 경우에는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기타사항

사업 추진 시 「문화재보호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유유산(또는 K-공유유산) 지원 사업비"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자와 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민간대행사업비 및 민간대행사업자를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2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원칙

K-공유유산 지원 사업은 선정 및 공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우선 추진이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 사항을 타 지침과 동일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지원대상

사업 대상의 범위는 5장 1절에서 제시한 K-공유유산의 개념 및 지원 범위를 준용한다. 이에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지원, 현지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 가능한 활용·관리사업 지원, 보존·관리가 시급한 국외사적지의 매입·보수·정비 지원, 현지 소재국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는 가치 증진 사업, 문화유산 활용 국제 협력 증진 및 홍보 사업, 공유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사업, 공유유산 대상 신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현황 조사를 위한 관리대상 정기조사 및 안전진단 지원,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대상 선정 방법

- 위원회 의결

국외 문화유산의 현지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관 지침과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중 1명이라도 가치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203]

- 심의 예외 사항

기존에 추진한 국외사적지 대상 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국외사적지의 여건 상 대규모의 매입 및 보수 사업보다는 재외공관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현판 지원 사업이나, 워크숍 개최, 교육·홍보자료 제작·배포 등 소규모 지원 사업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지원 시마다 심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일정 사업비 미만의 금액의 경우, 의결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충시설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 3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심의 없이 지원 가능한데, 이 경우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최대 30% 이므로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 등을 심의 없이 지원하고 있다.[204]

이를 참고하여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존 국외소재문화재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 판단 기준을 정하여, 적정 비용 또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심의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심의 없이 지원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 적정성 여부를 사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본 규정 외 타 규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를 지원하는 경우, 의결 없이 문화재청장의 결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사항은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내용과 같다.[205]

□ 심의위원회 구성

K-공유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10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 심의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206] 해당 시행령의 개정 없이 K-공유유산 지원사업 의결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추가 위촉하기는 어렵다.

---

203)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및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포함된 해당 사항을 참조하였으며, K-공유유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위원회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204) 「현충시설 관리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제25조.

205)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6조.

206) 「문화재위원회 규정」(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317호, 2023. 3. 7., 일부개정), 제2조, 제5조.

이에 (1)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 방안과, (2)기존 문화재위원회 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안, (3) K-공유유산 사업 심의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 (1안)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 대체(안)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에서 구성된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운영되며, 국내·외문화재의 매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외문화재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10인 이내로 수시 구성되는데, 외교적 여건이 반영되어야 하는 국외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K-공유유산 지원 사업의 심의·의결을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해제 관련 사항을 심의하지만, 행정규칙에 따라 위임된 국내·외 현충시설의 개보수 및 건립 지원, 매입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문화재 긴급매입 심의위원회 또한 K-공유유산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2안) 기존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심의위원회 구성 대체(안)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며,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207]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5. 3. 27.〉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문화재보호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8조제1항.

207) 「문화재위원회 규정」(시행 2023. 5. 1. 대통령령 제33317호, 2023. 3. 7., 일부개정). 제2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기본계획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208] K-공유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에서 정의된 '국외소재문화재'에 포함된 개념으로 관련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유형별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9~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외사적지의 유형은 건조물, 시설물, 터, 기념물, 정원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며 대부분 근대 시기에 조성된 대상이므로, 국외사적지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사적분과 또는 근대문화재분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사례의 여건에 따라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과위원회와 함께 추가 검토를 거쳐 합동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산문화재의 경우,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표 5-10] 문화재위원회를 통한 K-공유유산 지원사업 대체 심의(안)

구분	심의내용	K-공유유산 심의 방안
건축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동산문화재분과	유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사적분과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근현대 시기 외, 건조물 외 국외사적지)*
천연기념물분과	기념물(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매장문화재분과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근대문화재분과	기념물 중 근대 시설물 및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	○ (근현대 시기 국외사적지)*
민속문화재분과	민속문화재에 관한 사항	
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사항	
궁능문화재분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는 제외)	

주: 사례의 여건에 따라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 심의.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위원회 소개'. https://www.cha.go.kr/html/HtmlPage.do?pg=/seek/commit2.jsp&mn=NS_03_03_02(검색일: 2023.11.0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8) 「문화재보호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8조.

- (3안)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사업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안)

마지막으로, 해당 운영지침을 근거로 K-공유유산 보호·활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문화재청 내부직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다. 국외한국실 지원대상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연구직을 포함한 국립중앙박물관 내부직 6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단, K-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경우 박물관과 달리 내부 학예직 인력이 없으므로, 내부직과 함께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경우를 참고하여, 관련 연구 및 업무 경력을 충분히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문화재위원회의 9개 분과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법률 및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209]

-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및 자문협의회 추가 구성(안)

국외사적지 매입 및 대규모 보수 등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수반되므로,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사업계획에 포함된 세부 항목에 대하여 추가 심의를 받지 않고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서는 재심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입 시 사업계획에 복원·보수 및 전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심의위원회 의결 시 이를 일괄 승인한 경우, 추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다면 이후 예산 교부 및 인력 지원 등 사업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추가 심의를 시행하지 않고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매입 이후 복원·보수 과정에서

20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조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18호, 2023. 3. 7., 일부개정) 제3조의2~제3조의9;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시행 2021. 7. 1. 문화재청예규 제232호, 2021. 7. 1., 제정).

13명으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210]

기술적 측면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국가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211] 특히 국외부동산문화재는 현지 소재국의 건축적 특성이 주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전문가의 자문 및 조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K-공유유산 사업 지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규모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의결한다.

심의 시에는 (1)사업 대상의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2)지원 사업을 통한 추후 가치 확산 가능성과 기대효과, (3)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민간대행사업자)의 적격성 및 명확성, (4)사업 대상의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현황, (5)소유자 현황 및 활용·관리 기여 여부, (5)국고보조금 외 자금 확보방안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 지원 방법

지원방법은 협약 또는 계약 체결의 형식을 고려할 수 있다. 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의 소유자가 현지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문화재청이 해당 부처 및 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이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사업 대상의 소유주가 민간인 경우,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하였으나 활용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 대행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주 또는 민간대행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민간대행사업자의 기준 요건은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4조를 준용하여 (1)문화유산국민신탁, (2)한국문화재보호재단, (3)국외소재문화재재단, (4)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단체, (5)기타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중 대상문화재의 매입·정비 사업에 적합한 단체로 규정한다.[212]

또한 소유 주체가 불분명하나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경우에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현지 소재국 관할구역의 재외공

210)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주민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보고서. pp.45-49.

21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3. 5. 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37조.

212)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시행 2022. 3. 22.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14조.

관(외교부) 또는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에서 현지에 파견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충시설 관리지침」에서 재외공관장이 사업계획서 검토,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항 관리 등 주요한 현지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와,[213] 과거 미국 LA 한미 우정의 종 전각 보수 작업이 LA한국문화원을 통해 추진되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현지에 파견된 국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K-공유유산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매입 시 재산관리

매입한 국외사적지는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한다. 해당 사항은 기존 문화재 긴급매입 관련 예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운영지침에서는 해당 사항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제15조에 따를 것으로 규정한다.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관련 사항

협약 또는 계약 상대 기관·단체가 주요한 협약 및 계약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상대 기관·단체가 소재국 내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업 집행 단계에 따라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도록 하며, 관련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 시 적시한다.

□ 기타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해당 운영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213) 「현충시설 관리지침」(시행 2023. 6. 5.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2023. 6. 5., 타법개정). 제24조~제28조.

2) K-공유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K-공유유산 지원 조항 신설

K-공유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9항에 명시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하위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보호·환수·활용 등의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214]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외소재문화재 주요 지원 사항은 크게 조사·연구(제68조), 보호·환수(제69조), 환수·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제69조의2)로, 현지 관리와 활용보다는 조사와 환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은 문화재 체계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하며 개정되는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문화유산 전반의 보존·활용을 규정하도록 분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된 조항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어, 「문화유산법」 시행 후에도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조항에 대한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215]

현지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공유유산 지원 사업은 국내로의 환수보다 현지 소재국에서의 관리 및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사·연구·보호·환수에 중점을 둔 「문화유산법」의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항에 현지 활용·관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수 있다.[216] 이 경우, 현지 활용·관리의 대상은 소재국에서도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문화유산법」 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께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앞서 제안한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는 대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포함하였으나, 현행 법률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사업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정 시 K-공유유산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문화유산법」 제69조의3제6항에 명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사업범위에 소재국 내 보호·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 신설을 제안한다.

---

214) 「문화재보호법」(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제9항, 제67조~제69조.

2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2조제9항, 제67조~제69조.

216) 현행 법령은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유산법」이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이며, 법령 개정은 운영지침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일부 성과를 거둔 후의 중장기적 단계의 제안 사항이므로 개정 대상 법령을 시행 예정인 「문화유산법」으로 상정하였다.

[표 5-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내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항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활용·관리 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부동산유산 등 국내 환수가 어렵거나 독립운동·이민·외교·산업 등과 관련하여 현 소재국 내에서 형성된 문화유산 중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깊게 관련된 유산의 경우 소재국 내 활용·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과 현 소재국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며, 양국이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유산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홍보, 국제협력의 증진 및 문화외교 등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 · 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 · 교육 · 출판 및 보급 〈신 설〉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4(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 · 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 · 교육 · 출판 및 보급 6.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보수·복원 및 가치 확산 사업 지원 7.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8.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9.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10.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보호·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연구진 작성.

②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재발의 시 반영

2021년 7월 5일 발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환수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환수 및 현지 활용,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협력망 구축 및 기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발의안은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정책 추진 시 협상·매입 등의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중요하며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수반되는 등, 보호와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계획 및 정책 수립·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상정하였다.[217]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 우리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안 제3조).

다.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제7조).

라.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며 이에 따른 기관 및 민간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제12조).

마.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사. 국내외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인지 제고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선양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예산 마련을 위해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자.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안 제19조~제20조).

출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320. 2021.7.5.

해당 발의안에서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의 개념을 "현 소장국가에서 보존·관리하고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 소재국[218]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등 환수를 비롯하여 현지 소재국 내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217)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320. 2021.7.5.

218) 발의안에서는 '현 소장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 소재국'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추후 2021년 발의안의 내용을 준용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 관련 신규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일부 조항을 K-공유유산 사업 지원의 근거 조항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발의안 내에도 현지 소재국에서의 적정한 보호·활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다음의 [표 5-12]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표 5-1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내 K-공유유산 관련 발췌 조항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2. "보호"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현 소장국가에서 현상대로 보존 · 관리됨을 말한다. (중략) 4. "활용"이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이 현 소장국가에서 그 가치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됨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기본원칙)	①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는 현상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적법 · 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현 소장국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 · 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제2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등을 위하여 5년마다 국외소재문화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4. 국외소재문화유산의 국제교류,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3장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을 위한 시책	
제11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외국 현지에서 현상대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 육성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개 ·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 육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책 수립 또는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관할 지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해당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성	내용
제14조(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 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 활용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 4.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5.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협력망을 구축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소장자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홍보·선양)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 · 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 · 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 활용 · 홍보 및 선양을 위하여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지원 · 육성할 수 있다.

출처: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320. 2021.7.5.에서 관련 내용 발췌.

추가로 앞서 「문화유산법」 개정(안)에서 기술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K-공유유산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사업 지원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현지 소재국이 해당 유산에 대하여 상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 가치에 대하여 상호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국제협력 증진 및 문화외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공유유산의 개념이 포함된 조항을 추가한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사업범위에 ‘보호·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기존 발의안에 명시된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외에도 매입·보수·정비 및 가치 증진 사업, 교류·협력 사업 등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 5-1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신규 발의 시 수정 사항

기존 발의안	수정안
제11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등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외국 현지에서 현상대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 육성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개 ·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 육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 외국 현지에서 현상대로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 ·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 육성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개 ·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 육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부동산유산 등 국내 환수가 어렵거나 독립운동·이민·외교·산업 등과 관련하여 현 소재국 내에서 형성된 문화유산 중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깊게 관련된 유산의 경우 소재국 내 활용·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관리·활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과 현 소재국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며, 양국이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유산 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 홍보, 국제협력의 증진 및 문화외교 등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유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출처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 · 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운영 지원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 · 교육 · 출판 및 보급 〈신 설〉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제69조의4(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 ⑤ (생 략)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출처, 가치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전 · 관리 4.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운영 지원 5.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현지 보호·활용 관련 홍보 · 교육 · 출판 및 보급 6.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한 보수·복원 및 가치 확산 사업 지원 7.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8.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기존 발의안	수정안
8.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의 공로자에 대한 예우 10.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의 운용 지원 11.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10.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등의 공로자에 대한 예우 11.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의 운용 지원 12.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 보호·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출처: 연구진 작성.

③ 법령-행정규칙 간 연계사항

본 연구에서 법령 제·개정은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국외사적지의 매입·보수·정비 등은 홍보·연구·교육·전시 등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이므로, 국외로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

예를 들어 현충시설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 현충시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현충시설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한 후 시행규칙을 통해 지정 관련 사항 및 서식을 규정한다. 행정규칙으로는 「현충시설 관리지침」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건립, 개·보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입의 경우에만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K-공유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현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의 선정과 재정 지원 등 선정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을 연계하고,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기존의 「국내외 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와 함께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하지 않고 사업 지원을 위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침 또는 해당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림 5-3] 법령-행정규칙 간 연계 제안사항
출처: 연구진 작성.

3) 향후 정책 과제

□ 기존 국외사적지 가치 재검토 및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가장 먼저 기존에 조사된 국외사적지의 가치를 공유유산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현지 소재국 내 가치 및 활용가능성 등을 조사하여야 공유유산으로서의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장 1절에서 시범사업 제외대상 또는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사적지 518건을 검토대상으로 상정하였는데, 검토대상은 조사가 미흡하여 현재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 유무, 또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형성 가능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검토대상의 경우 소재국, 시기·주제, 소유자 등 여건이 적합한 국외사적지부터 소재국 내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사 등 공유유산적 관점에서의 가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역사적 가치를 조사할 때는 공유유산의 가치와 평가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들을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의 지표는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공유유산적 관점에서 양국의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시대 표기 방법이나 사회적·문화적 가치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유산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기여도를 함께 조사하여 기록해 두면 향후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국외사적지의 가치 재조사를 통해 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하고, 해당 목록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신규 공유유산 발굴 필요

문화유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유유산의 발굴 또한 필요하다. 먼저 기존에 조사된 국외사적지의 목록이 부·처별로 조사 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있으므로 유관 사업 수행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외사적지 조사 목록을 공유하고 상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목록을 신규 발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2016년 처음 조사하였던 해외 한국정원의 경우, 국가보훈부 및 문화재청의 국외사적지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다. 대부분의 한국정원은 국가 및 도시 간 교류를 기념하며 조성되었고, 현지 소재국에서 한옥 및 한국의 전통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해외 한국정원의 경우 조성 시기가 오래된 것

에서부터 문화유산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립공원청(NPS)의 이민유산 및 소수인종 대상 연구를 통한 국가 역사 랜드마크 주제 연구 수행 사례와 같이, 꾸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신규 공유유산을 발굴해낼 수도 있다. 특히 연대가 지남에 따라 기존에는 문화유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978년 조성된 미국 LA 한미 우정의 종각은 2028년이 되면 건설된 지 50년이 지나 국내 국가등록문화재로의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1970-90년대에 조성된 국외사적지의 경우 연대 경과에 따라 문화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어업 또는 무역 분야에서 다양한 한국인이 해외로 진출하여 형성된 산업사적지 등은 현재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K-공유유산의 대상으로 발굴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대상 발굴을 위해서는 현지 또는 국내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련 자료 수집, 현지 조사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위치한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하여 향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는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공유유산적 가치 검토는 거의 전무하다. 아프리카의 경우 국외사적지의 수량 자체가 많지 않지만,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공유유산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멕시코에 위치한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회관, 메리다이민기념관, 이종오 거주지 등은 기존 연구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지 한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K-공유유산 정책 수행을 위한 대상지 발굴 가능성이 높다.

□ 국내·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 구축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은 2021년 7월 5일 발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제14조에 명시된 개념이다. 해당 발의안에서는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 국외소재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장에서 해외 공유유산 관리·활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책 주관 기관 외에도 당사국과

현지 소재국 내 시행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협력 기관 및 지원 기관의 연계를 통해 공유유산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연계 가능한 기관으로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문화유산 관련 국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국외사적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산림청 및 국립수목원, 교육부 및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민간의 경우, 국외사적지와 연계 가능한 국내 민간단체·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윤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독일 베를린 윤이상하우스와 연계 가능한 통영 베를린하우스, 프랑스 파리 이응노 아틀리에와 연계되어 있는 대전 고암미술문화재단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국외사적지 중 국내에 상호 보완 가능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해당 단체·기관을 협력망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에 유관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서재필기념재단은 미국 시민권자 1호이자 미국 내 첫 한인 의사였던 서재필의 미국 내 업적을 기념하여 주로 의사 출신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국내 서재필 단체는 독립신문 발행인으로서 서재필의 업적을 주요하게 평가하여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산 안창호와 관련되어 국내와 미국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흥사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민간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국내·외 단체의 경우 동일한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련 K-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의미하게 협력할 수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제시하였듯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협약(MOU)의 방식으로, 민간단체는 계약의 방식으로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소재국 관할구역의 재외공관(외교부) 또는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내에서 현지에 파견된 기관을 대상을 협력 기관·지원 기관 등으로 협력망에 포함한다면, 현지에서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칭)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의 수집·아카이빙 대상 구체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공유유산 정보의 제공은, 외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국외사적지 등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K-공유유산 대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국외사적지의 기초 데이터를 집적하고 아카이빙함으로써 K-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시 관련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점에서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에서도 (가칭)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집 및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내용과 대상,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유유산 아카이브인 Atlas of Mutual Heritage(AMH)의 경우, 해양유산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활동 장소에 대한 정보, 지도, 도면, 인쇄물, 그림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에 해양 이동경로와 기착지 등에 대한 정보가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가 주요하게 활동한 인도네시아, 수리남,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가나, 인도 등의 국가별 컬렉션을 구축하였다.

국내에서 K-공유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가칭)공유유산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할 경우, 현재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overseas.i815.or.kr)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 및 협력의 의미를 문화유산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주제로 구축 대상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구축 방안에 대한 사전 기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K-공유유산의 사업을 사례별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축하거나, 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순차적으로 집적하는 방식, 또는 해외 국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웹페이지에서 국외사적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3D 스캐닝을 통해 현황을 아카이빙하는 방식 등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할 수 있다.

공유유산 디지털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잘 구축되면, 해당 콘텐츠는 해외 공유유산의 거점 공간이 되는 각 국외사적지의 주요한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는 단순히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 및 아카이빙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구축 전략이 요구된다.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17년 법령 개정 이후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가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환수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확장하여, 현지 소재국 내 보호·활용 방안으로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건축물·장소 등의 부동산유산인 국외사적지는 해외 국가에 위치한다는 입지 특성상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국외사적지를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추진되는 'K-공유유산'의 개념 정립 및 시범사업 대상 선정 기준, 운영계획 수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향후 정책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먼저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현재까지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부처별 국외사적지의 정책 추진현황을 조사하여 K-공유유산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재청의 여건과 사업 계획에 부합하도록 K-공유유산의 개념을 '대한민국과 국외사적지의 소재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유산'으로 규정하였다. K-공유유산에서 '공유'는 소유의 공유가 아닌 가치의 공유 및

사용의 공유를 의미하며, 문화유산으로서 대한민국과 소재국에서 가치가 상호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어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각 부·처 및 기관에서 조사한 국외사적지의 목록을 통합한 목록을 구축하고, 기존에 조사된 지표를 기준으로 국외사적지 중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에 양국 간 공감을 얻기 어렵고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유산과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없거나 형태가 남아있지 않은 유산 등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및 소재국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현지에서 보존 상태 및 활용 가능성 등이 높은 유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하였다. 단,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사적지 관련 자료가 대한민국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조사되어 있어 현지 소재국에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과, 국가 간 관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외교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국외사적지는 검토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선정·제외 등을 구분하는 분명한 지표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나 여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소재국, 시기 및 주제, 소유자 등의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선정된 시범사업 우선대상 및 검토대상과 일부 신규 발굴대상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의 국외사적지 관리·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 시에는 해당 소재국에서의 공유유산적 가치 및 활용가능성을 주요하게 평가하였다. 현지 소재국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등록 가치를 공유유산적 가치로 상정하였으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사례의 경우에는 현지의 역사적 맥락과 보존 상태, 향후 활용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부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검토대상 또한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일본에 소재한 도쿄 영친왕 저, 영친왕 별장, 보화종루 등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산 및 기타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재 즉각적으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소유자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협력 가능성이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관련 여건이 변화할 경우 공유유산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므로 분석 시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조성 연한이 50년 미만으로 국내 문화유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국외사적지의 경우, 공유유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현황을 잘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조성 연한이 충족될 경우 장기적으로 K-공유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어서 4장에서는 해외 공유유산의 관리·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경우 정부 주도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이다. 네덜란드는 해양유산의 개념을 적용하여 인도네시아, 수리남,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과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각 국가와의 협약을 통해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공유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해외 공관을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자국 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공관의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소재국에 알려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와 폴란드 등에서 해외 국가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상대국에서 자국 내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의 경우, 네덜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에 따라 자국 내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유산을 자국 내 공유유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에 따라 자국 내 문화유산을 공유유산 사업 대상으로 추진하게 된 사례이다. 이외에도 공유유산 개념 논의가 선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유네스코, 이코모스, 유럽연합 등의 지원을 통해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해외 국가에서는 공유유산 사업의 국제협력·문화교류와 관련된 특성을 감안하여, 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고 국가 간 협약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주관은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담기구를 시행 기관으로 두고 박물관과 대학,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사업 추진 시 용이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처럼 전담 기구를 두고 다양한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을 고려하는 방식은 공유유산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K-공유유산의 활용·관리 정책 추진 방안을 크게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먼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서는 시범사업의 대상 목록을 도출하고,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대상 목록의 도출 절차는 먼저 기존 조사 국외사적지 목록을 정리하고 통합 목록을 작성·보완하는 사전 작업에서 시작하여, 1차로 대한민국

및 소재국에서의 가치와 보존 현황, 활용 상태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대상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2차로 갈등 유발 가능성이 높은 사적지와 위치 추정이 어려운 사적지, 형태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사적지 등 부적합대상을 제외하였다. 한편 우선순위 또는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고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대상은 검토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우선순위 대상 및 검토대상은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한 지표별로 목록을 분류하여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방안에서는 먼저 K-공유유산의 사업 범위를 제시하였다. 문화재청의 K-공유유산 사업 추진 계획의 내용과 대한민국 국외사적지의 활용·관리 사례, 해외 공유유산의 활용·관리 사례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현지 소재국 내 문화유산 지정·등록 지원, 현지 기관 및 커뮤니티와 협력 가능한 활용·관리사업 지원, 보존·관리가 시급한 국외사적지의 매입·보수·정비 지원, 현지 소재국에서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가치 증진 사업, 문화유산 활용 국제협력 증진 및 홍보 사업, 공유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 사업, 공유유산 대상 신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국제 공유유산 학술교류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유산의 일반현황 정보 등이 포함된 개요와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 단계적 사업 추진 방안, 협력기관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개별 사업 사례의 현재 현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제도화 방안은 (가칭)「공유유산의 보호·활용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과 함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장기적 추진 과제로 제안하였다. 운영지침 제정은 체계적인 K-공유유산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신규 운영지침 제정을 위해 현재 국외 문화유산·현충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유관 행정규칙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K-공유유산 사업 추진과 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 기존「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지원·관리 등을 규정하는「문화유산법」의 개정 또는 (가칭)「국외소재문화유산법」 재발의 시 관련 내용 반영 등 법률 제·개정 관련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수행을 통해, 본 연구는 공유유산의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추진 방안으로서 K-공유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시범사업 대상 도출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방안, 운영지침 제정 방안 등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향후 공유유산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개별 공유유산 시범사업 대상별로 구체적인 가치 평가 및 사업 추진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 국외사적지 24개소에 대한 현황과 공유유산적 가치 등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외사적지를 대상으로 향후 실제 K-공유유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문화재 지정·등록 심의 과정에서 이행되는 수준의 조사 및 가치평가를 추가로 시행하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국외사적지는 전 세계 35개국에 분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모든 국가에 소재한 국외사적지를 대상으로 공유유산의 가치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없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 소재 국외사적지를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5장의 향후 정책 과제에서 기술하였듯이, 향후 신규 목록을 발굴하고 K-공유유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러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미국, 유럽, 일본 이외의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연대가 지남에 따라 새롭게 문화유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970-80년대 국외사적지에 대한 주제 분류와 조사 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s

강순애. (2008). 해외소장 고문헌의 DB 구축과 공동활용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61-79.

강임산. (2021).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례로 본 국외 사적지 활용 방안. 대한민국 항공역사의 효시. 국립항공박물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강임산. (2022). 국외사적지의 현황과 활용 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국외문화재이슈페이퍼 제6호. 2022년 11월호.

국가보훈부. (2023a).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23 ~ 2027」.

국가보훈부. (2023b). LA흥사단 단소 활용방안 연구 제안서. 국가보훈부 제공자료.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0).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10』.

국립수목원.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2023.10. 기준). 국립수목원 제공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2023). 2023년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공고문, 4월 21일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 (2020). 재외공관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검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5).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8). 대한제국 주영공사관 조사 보고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The Classic House at Akasaka Prince(홍보브로셔).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1). 『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a).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활용 10년과 미래전략.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민공감 포럼 자료집.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2b). 『Finding Korea in the U.S.(미국 속 한국을 만나다)』. 서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a). 국외사적지 국내 소관부처 현황(2023.1.1.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b). 국외사적지 현지 활용 현황(2023.1.1.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c). 대한제국기 상주공관 설치 현황.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d). 주영대한제국공사관 및 대한제국 상주공관 설치 현황(2023.4.27.).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3e) 프랑스 투레트쉬르루: 이성자 아뜰리에(은하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자료.

김도형. (2015).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35-63.

문화재청. (2008). 국외소재 근대문화유산 기초조사연구.

문화재청. (201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보고서.

문화재청. (2023a). 2023 환수문화재 현황.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 (2023b). 국외부동산문화재 집계 현황 (2023.1월 기준).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 (2023c).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1) 고구려·발해 유적.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 (2023d). 국외부동산문화재 통계표(2) 재외동포, 독립운동, 외교, 대한황실, 기타.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 (2023e). 미국 현지 지정 한국문화유산 현황(2023.3.2. 기준).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 (2023f). K-공유유산 중장기 사업모형 구축 연구용역.

문화재청. (2023g).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사업. 문화재청 제공자료.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19). 주민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보고서.

방병선. (2017). 임진왜란 피랍도공 沈壽官家와 도자 연구. 한국학연구, 63, 129-157.

사단법인유라시아문화연대. (2023). 보화종 보수 모금 리플렛.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일본사무소 제공자료.

산림청. (2015).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산림청 제공자료.

산림청. (2020). 해외 한국정원 현황(2023.4. 기준). 산림청 제공자료.

산림청. (2021).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2021~2025. 산림청 제공자료.

산림청. (2023). 해외 한국정원 조성현황. 산림청 제공자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7). 국외 서울공원(파리, 베를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보고서 1.

서재권. (2020). 문화재의 국제거래 관점에서 본 국외소재문화재 정책 검토. 국제사법연구, 26(2), 405-432.

서정석. (2013). 백제산성이 일본 '조선식산성'에 끼친 영향. 역사와 담론 67: 151-195.

서정석. (2020). 서일본 '조선식산성'의 축성 기록과 백제산성. 백제학보 31: 81-104.

안정화, 양기웅. (2021). 유네스코 유산 공동 등재를 둘러싼 한일 간의 협력에 관한 사례 연구. 인문사회 21, 12(4), 1433-1448.

오다 후지오. (1999) 일본에 있는 조선식 산성의 조사와 성과. 고구려연구 8: 603-652.

오대록. (2020). 중국 내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적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 93, 165-193.

이규철. (2015). 이왕직 건축조직의 재정과 건축활동의 특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11), 153-164.

이우태. (2021).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통일연구원.

이정관. (2023).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외교 147.

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사진첩.

임종현 외. (2022). 미국 현지 등재를 통한 국외사적지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임종현, 한종수. (2022). 미국 현지 등재를 통한 국외사적지 보존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역사보존 정책-아시아계 역사자산의 등재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8), 373-389.

임종현. (2021). 국외사적지 보호를 위한 미국 소재 한인 사적지 등재신청 안내서. 문화재청-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임종현. (2022). 미국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8.

임종현. (2023). 한국 최초의 비행학교, 윌로우스 한인비행사양성소. 월간 독립기념관 2023년 2월호. http://sbook.allabout.co.kr/magazine/i815/sm-75/pt-post/nd-811

정영구. (2021). 沈壽官家의 기억, 그 변화와 활용 - 청송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갖는 의미와 관련하여. 동양학, 82, 1-24.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09).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14a).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1. 파주: 한울아카데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2014b).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2. 파주: 한울아카데미.

주한미국대사관. (2017). The Residence of the U.S.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플레이스랩. (2023). LA흥사단 단소(옛 본부 건물) 활용방안 연구. 국가보훈처.

Albert, Marie-Theres et al. (2022). 50 Years World Heritage Convention: Shared Responsibility-Conflict and Reconciliation. Springer.

Alexander, Nancy. (2023). Monuments of the Exiles and Memorialisation of Shared Heritage Between Mozambique and Tanzania. African Historical Review 53(1): 1-26.

Bureau of Overseas Buildings Operations. (2022). The Secretary of State's Register of Culturally Significant Property.

Cielatkowska, Romana. (2008). Instead of an Introduction.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Council of Europe. (2005).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for Society. 2005.10.27.

Debarbieux, Bernard et al. (2023). Sharing heritage? Politics and territoriality in UNESCO's heritage lists,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11(3): 608-624.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7.) DECISION (EU) 2017/8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7.5.17.

Herych, Volodymyr.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Janakiraman, Aarthi. (2019). The Local Identity Politics of World Heritage: Lessons from Galle Fort in Sri Lanka. Maste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Klos, Marike and Derksen, Leon. (2016). Shared cultural heritage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Recommendation Report: Cultural Heritage Commission(Case number: CHC-2021-5125-HCM). July 15.

Los Angeles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21). Recommendation Report. November 4.

Lucian, Charles. (2009).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the Old Boma Building in Bagamoyo (Tanzani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Buildings 2009/2010.

Marinelli, Maurizio. (2010).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The emotional capital of Tianjin's Italian concession. Emotion, Space and Society 3(1): 62-70.

National Historic Landmarks Heritage Initiatives. (2011-2013). Progress Report.

National Park Service. (2016). National Park Service Centennial Final Report: Realizing the Vision For the Second Century.

National Park System Advisory Board. (2012). Planning for a Future National Park System: A Foundation for the 21st Century.

Odo, Franklin (ed.). (2016). Finding a Path Forward: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National Historic Landmarks Theme Study.

Roos, Job. (2002). Project "Restoration Genadendal, South Africa", 13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Scientific Symposium.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3). World Heritage 2002: Shared Legacy, Common Responsibility.

Wei, Ran and Fang Wang. (2022). Is colonial heritage negative or not so much? Debating heritage discourses and selective interpretation of Kulangsu, China. Built

Heritage 6(21): 1-13.

Ya'ari, Elizabeth. (2010). Promoting Understanding of Shared Heritage (PUSH). Museum International 62: 9-13.

Yiqing, Zou, and Xin Xin. (2017).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practice of the cultural heritage value of Kulangsu – From methodology to implementation. China Cultural Heritage 4: 60-68.

三島市樂壽園. (1987).「樂壽館の裝飾繪畫」.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문화재청예규 제248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박물관예규 제259호.

「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 국가보훈부예규 제1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132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959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1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2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문화재청예규 제232호.

「문화재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3317호.

「현충시설 관리지침」, 국가보훈부훈령 제2호.

경향신문, (2022). 미 워싱턴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성…한·미 전사자 4만명 이름 각인. 2022.07.27.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271105001#c2b

경향신문. (2013). "박 대통령도 여고생 때 방문한 사모아, 한국관 철거 등 '위기의 격랑'". 2013.08.0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308022122545#c2b

광복회보. (2010). 11면-해외독립항쟁 유적지를 찾아서. 2010.6.29. https://www.kla815.or.kr/sub_5/5_1_view.php?articleid=MZANH0000044&r_order=8

국가보훈처. (2023). 미주 독립운동거점 엘에이(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다. 보도자료. 2023.02.02.

국립중앙박물관. (2023). 국립중앙박물관, 24년부터 국외박물관 한국실 9개국 21개관 지원. 보도자료. 2023.10.12.

국방안보. (2022). [국방저널 스페셜] 평화통일 염원 담아… 베를린의 곰, 서울에 오다. 2022.09.0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907/6/BBSMSTR_00000010026/view.do

동아일보. (2010). 佛파리서 심수관家400년 도자기展. 2010.10.06.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101006/31645932/9

동아일보. (2021). '조선 도공 후예' 15대 심수관 "한일 가교 역할 하겠다". 2021.04.0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406/106270529/1

동아일보. (2022). 파리로 옮긴 '한국의 멋'… 서울공원 개장. 2022.03.25. https://www.donga.com/news/amp/all/20020325/7800920/9

문화재청. (2023). 122년만에 옛 주영국 대한제국 공사관에 표식을 달다 -,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기념해 공사관 표식(동판) 제작·지원. 보도자료. 2023.10.31.

문화재청. (2023).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발표(붙임2). 보도자료.

문화저널 맥. (2023). 무참히 살해된 조선인 넋 기리는 '보화종루' 탄생비화. 2023.03.13. https://www.thema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

연합뉴스. (2014). 일본 시즈오카 사찰에 각인된 한일 문화교류의 흔적. 2014.12.05. https://www.yna.co.kr/view/AKR20141205003100073?input=1195m

연합뉴스. (2023). "항일독립운동 기리는 러 '신한촌 기념탑' 소유·관리 주체 논란". 2023.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92400096

오마이뉴스. (2015). 세계 최고 도자기 가문 심수관요 세습의 '비밀'. 2015.07.1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8058

인천일보. (2011). "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 대던 하와이 유적 방치". 2011.09.19.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678

인터뷰 365. (2019). "베를린 윤이상하우스의 '통영 동백나무'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2019.03.01.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13

전업농신문. (2023). 해외 조성된 '한국정원' 관리부실 '도마 위' 올라. 2023.10.16. https://www.p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96

폴리스 TV. (2023). 국가보훈처, 철거위기에 놓인 미국 LA 흥사단 옛 본부건물(단소) 매입. 폴리스 TV. 2023.02.05.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3

한겨레21. (2007). 세계문화유산 향해가는 조선통신사 여로. 2007.12.27.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21427.html

한국일보. (2010). "화장실로 방치된 위안소… "끔찍할수록 기억해야죠"". 2020.01.2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1200202027265?rPrev=20190821147 5092541

홍주일보. (2014). 파리 외곽에서 작품 활동 매진… 짙게 배인 예술혼. 2014.07.10. http://www.hj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02

EBS. (2018). "잊히고 방치되는 항일독립 문화유산". 2018.08.14. https://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980631/H?eduNewsYn=N&newsFldDetlCd=

CORNER_12

Newsverse. (2023). 일본 도자기와 심수관 (상). 2023.03.04.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086

SBS. (2021). "LA 흥사단 건물 철거 위기…"허물고 아파트 짓겠다"". 2021.10.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4797

가고시마현 관광 연맹(鹿児島県観光連盟) 홈페이지. https://www.kagoshima-kankou.com

更級日記紀行 홈페이지. https://sarasina.jp/index.php/user_data/seikenji

고대 일본의 서부 수도(古代日本の「西の部」) 홈페이지. https://www.nishinomiyako.com/heritage/onojoato/

고려미술관(高麗美術館) 홈페이지. https://www.koryomuseum.or.j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프랑스 '한국친우회' 조직. https://db.history.go.kr/

국외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 http://oversea.i815.or.kr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 https://www.overseaschf.or.kr/

국제 윤이상 협회(Internationale Isang Yun GESELLSCHAFT E.V.) 홈페이지. https://yun-gesellschaft.de/yun-haus-berlin/

국제유산교류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heritage.dutchculture.nl/en.

나가사키 데지마 홈페이지. https://nagasakidejima.jp/english/restoration-work.

네덜란드 국제해양유산 데이터베이스. https://mass.cultureelerfgoed.nl/.

네덜란드 문화유산청 홈페이지. https://english.cultureelerfgoed.nl/topics/maritime-heritage

네덜란드 스리랑카 재단 홈페이지. http://www.stichtingnederlandsrilanka.nl.

더치컬처센터 홈페이지. https://dutchculture.nl/en

라고스 대학교 홈페이지. https://unilag.edu.ng/?p=15230.

런던시청(City of London) 홈페이지. https://www.cityoflondon.gov.uk/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s://www.cha.go.kr/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s://www.kocis.go.kr/

미국 국가역사랜드마크 연구 홈페이지. https://www.nps.gov/subjects/nationalhistoriclandmarks/full-list-of-theme-studies.htm

미국 국립공원청 홈페이지.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Program'. https://www.nps.gov/

미주독립운동유적지. https://ytvamericadocu.wixsite.com/

서부 수도(西都 太宰府) 홈페이지. https://www.kyuhaku.jp/dazaifu

세계한민족문화대전 홈페이지. www.okpedia.kr

시즈오카 역사박물관(歷史文化のまち靜岡 さきがけミュージアム) 홈페이지. http://www.shizuoka-bunkazai.jp.k.mm.hp.transer.com

시즈오카시(静岡市) 홈페이지. '薩埵峠ハイキングコースマップ'. https://www.city.shizuoka.lg.jp/000950962.pdf

심수관요(沈壽官窯) 홈페이지. http://www.chin-jukan.co.jp/

쓰시마시청 홈페이지. https://www.city.tsushima.nagasaki.jp/gyousei/soshiki/kyouiku/bunkazaika/bunkazai/shinainobunkazai/1274.html

애버딘 대학교 홈페이지. https://abdn.elsevierpure.com/en/activities/the-polish-scottish-heritage-trail-external-organisation.

오노성시립박물관(大野城心のふるさと館) 홈페이지. https://www.onojo-occm.jp/li/500/510/511/20220515182003.html

오래된 성의 흥망성쇠(古城盛衰記)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a/onodenkan.net/lie-dao-cheng-zhi-ji-xing

유네스코와 유산 웹페이지. https://heritage.unesco.or.kr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

유럽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coe.int/en/web/culture-and-heritage/faro-convention.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

이성자기념사업회 홈페이지. http://seundjarhee.com

이응노 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leeungnomuseum.or.kr/

이준열사 기념관 홈페이지. http://www.yijunpeacemuseum.org/

이코모스-우한 공유건축유산 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heritagewuhan.com.

전신 케이블 홈페이지. https://atlantic-cable.com/

제44회 푸저우 세계유산위원회(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ouzhou China, 2021) 홈페이지. https://www.44whcfuzhou2021.cn/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홈페이지. https://oldkoreanlegation.org/

폴란드-벨로루시-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s://encykorea.aks.ac.kr

항일닷컴 홈페이지. http://www.hang-il.com/

Architectuul 홈페이지. https://sha.architectuul.com/

Atlas of Mutual Heritage 홈페이지. https://www.atlasofmutualheritage.nl

CEDIAS-Social Museum 홈페이지. http://www.cedias.org/index.php?lvl=cmspage&pageid=6&id_rubrique=37

China Heritage Quarterly 홈페이지. http://www.chinaheritagequarterly.org/features.php?searchterm=021_istyle.inc&issue=021.

Design Indaba 홈페이지. https://www.designindaba.com/articles/creative-work/aida-mulokozi-her-mission-salvage-dar-es-salaam%E2%80%99s-built-heritage.

DOCOMOMO 홈페이지. https://docomomo.com/shared-heritage-africa-rediscovering-masterpieces

EUR-Lex 홈페이지. 'European Year of Cultural Heritage (2018)'.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european-year-of-cultural-heritage-2018.html

Faith and Liberty Discovery Center 홈페이지. https://www.faithandliberty.org/

Freunde der Garten der Welt 홈페이지. https://freunde-der-gaerten-der-welt.de/gluechwunsch-zur-million/

Google Arts & Culture. The Life and Work of Lee Ungno. https://artsandculture.google.com/story/the-life-and-work-of-lee-ungno-lee-ungno-museum/sQXRPDKVkzAnJg?hl=en

Google Street View Map. https://www.google.com/maps/d/viewer?mid=1JEkfH9bJtMKrVCMHrKGPP_QmMys&hl=en_US&ll=37.731904282056874%2C-92.97047165000001&z=5

Harn Museum of Art 홈페이지. Provenance Research. https://harn.ufl.edu/provenance-research/

Historic England 홈페이지. https://historicengland.org.uk/listing/the-list/list-entry/1358905?section=official-list-entry

Historic Scotland 홈페이지. https://www.historicenvironment.scot/about-us/news/digital-map-brings-scottish-polish-links-to-life.

ICOMOS India 홈페이지. 'Revitalization of Galle Dutch Fort'. https://icofort2014.files.wordpress.com/2015/07/galle-2015-new-delhi.pdf

ICOMOS ISCSBH 홈페이지. https://sbh.icomos.org/

ICOMOS 홈페이지. https://www.icomos.org/en/

Krakow 신문 홈페이지. http://www.krakowpost.com/7881/2014/03/scots-in-poland-poles-in-scotland.

LACityClerk Connect 홈페이지. https://cityclerk.lacity.org/m.clerkconnect/#/cfmsSearch

Longman 온라인 사전. https://www.ldoceonline.com/dictionary/share

Los Angeles Conservancy 홈페이지. https://www.laconservancy.org/

Lucien le Grange Architects 홈페이지. https://www.lucienlegrangearchitects.com/

National Park Service 홈페이지. https://www.nps.gov/

OPENHOUSE SEOUL 2019 홈페이지. 'Special OPENHOUSE, 미국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 조자용+신영훈+스튜어트 L. 누프' https://www.ohseoul.org/2019/programs/

Polish-Scottish Festival Association(PCFA). (2017.4.27.) 'Final Report: Polish Scottish Heritage Trail Project'. https://issuu.com/joannazawadzka/docs/polish_scottish_heritage_final_repo.

Scotland 홈페이지. https://www.scotland.org/inspiration/scotland-and-poland.

Shared Heritage Africa 홈페이지. https://sha.architectuul.com

UNESCO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

Urban Detective 홈페이지. 'DARCH vs. Goliath: Saving historical architecture in on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cities'. https://www.theurbandetective.com/blogs/2017/7/24/darch-vs-goliath-saving-historical-architecture-in-one-of-the-worlds-fastest-growing-cities.

Urban Narratives 홈페이지. https://urbannarratives.org/en/events/research-events/opening-darch.

Western Cape 홈페이지. 'Moravian Heritage in the Western Cape'. https://www.westerncape.gov.za/text/2006/2/moravian_heritage_sa.pdf

Wikipedia 홈페이지. https://en.wikipedia.org/

Wuhan City 홈페이지. https://www.wuhancityofdesign.com/en/

Youtube. TAHAP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TwrmzvYrTD8.

A Study on Strategies for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Son, Eunshin
Lee, Geauchul
Song, Inheon
Park, Chaerin
Gil, Jihye
Lim, Jonghyun

Chapter 1 Introduction

Since 2017, when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expanded to include 'heritage located abroad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cope now covers cultural properties that were legitimately transferred overseas for reasons like diplomacy or trade and real estate heritage such as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s. This expansion has underscored the need to devise methods for their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their current locations. With this in mind, the study goes beyond the existing repatriation-focused policy, suggesting policy plans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Korean historic sites abroad by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as a strategy for protecting and utilizing these assets in their current locations.

As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such as buildings and places, which are considered real estate cultural properties, are located in foreign countries, their maintenance is challenging, often leading to risks of destruction or damage. Furthermore, since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were categorized as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rom 2017,

their study and research as cultural heritage have been relatively brief. Particularly because they are situated outside South Korea, it's challenging to survey their current state and manage them. Currently, most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re managed primarily through status surveys and inventory creation. There have been consistent reports of loss and damage due to neglect in the host countr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strategies to preserve, manage, and utilize these at-risk sites.

Since overseas historic sites often involve real estate cultural properties that are practically difficult to repatriate, the paradigm of local utilization in the host countries is emphasized. Overseas historic sit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iplomatic events, Korean diaspora, and industrial and trade developments that made the 1970s Miracle on the Han River, serve as evidence and historical venues of South Korea's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These sites can play a role in promoting Korean history and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ir respective host countr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plans to launch the 'K-Shared Heritage' project in 2023 to identify heritage assets that can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between host countries and South Korea among overseas Korean cultural properties and to implement related pilot projects. The 'K-Shared Heritage' initiative aims to adopt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which involves sharing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ith host countries, to identify potential targets for K-Shared Heritage, and to protect and utilize them locall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as a new paradigm for the practical prot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through cultural heritage. This involves developing criteria for selecting pilot project candidates and formulating an operational plan, along with proposing methods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future policy tasks to implement these initiatives.

Chapter 2: Direction for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to Overseas Historic Sites

In Chapter 2, the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building upon the existing concept of shared heritage as discussed internationally, and explores the application of the shared heritage concept to overseas historic sites.

Initially,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for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implemented by various domestic government departments. So far, departments such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have conducted research and implemented policies on overseas historic sites, tailored to each department's circumstance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ies for overseas historic sites implemented by each department,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shared heritage concept, and explored the direc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ircumstances of the CHA, the main promoter of the K-shared heritage project.

Subsequently,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as recently discussed by UNESCO, ICOMOS, EU, etc. Although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is not academically well-defined, it can be summarized, based on current discussions, as a heritage possessing universal human values, where two or more countries or organizations collaborate to protect and utilize its val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is defined as a heritage whe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tries hosting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and collaborate for thei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aligning wit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project plans and conditions. In this definition, 'shared' refers not to shared ownership, but to the sharing of values and usage. It implies that the cultural heritage's value must be mutually recognized in both South Korea and the host countries, and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relevant governance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Concepts and Targets of Shared Heritage and K-Shared Heritage

Category	Concept	Targets
International Discussions (Shared Heritage)	Heritage that embodies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where two or more countries or organizations collaborate to protect and utilize its values.	-Heritage of Universal Human Value -Transnational Regional Heritage -Heritage of Historical Multiculturalism
This study (K-Shared Heritage)	Heritage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ost countrie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and collaborate for thei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Heritage among overseas historic sites (real estate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that can shar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ith the host country.

Chapter 3: Status Analysi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Chapter 3 applies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presented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types and distribution of 2,216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identified so far. Among these, the chapter focuses on 24 key sites that are relatively well-preserved and actively managed, examining their utilization, management status, and value as shared heritage.

First, we compiled a consolidated lis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discovered so far through data research and collection, and analyzed their types based on the existing survey items to derive the prior targets of pilo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as utilized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potential targets for the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and establishing the selection criteria.

In the analysi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sites that are relatively well-used and managed, along with their value and potential as shared heritage. For K-shared heritage, the crucial

aspects include both the shared value of cultural heritag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s protection and utilization within the host country.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overseas historic sites in their local settings and assessed their value and potential for use as shared heritage.

Framework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Historic Sites

Category	Typological Analysis (Chapter 3, Section 2)	Utilization and Management Case Study (Chapter 3, Section 3)
Purpose	Typological analysi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to establish selection criteria for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targets	Analysi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status and the value as shared heritage for formulating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operational plan
Targets	Comprehensive list of 2,216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researched by major government department and agencies	24 key case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Methods	- Integration and compilation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 lists researched by the CHA,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resulting in a comprehensive list of 2,216 sites (total inspection) - Typological analysis of overseas historic sites based on research items - Derivation of exclusion criteria for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targets - Determination of priority selection criteria for K-shared heritage targets - Development and organization of key indicators for establishing selection criteria for pilot projects	- Analysis of 24 overseas historic sit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utilized and managed locally or designated as cultural heritage in the host countries - Selection and analysis of countries and principal cases considered to be somewhat easier to implement as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s - Analysis of the value and potential applicability of each case as K-shared heritage within the host country

For the typological analysis, we compiled the list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researched by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creating a comprehensive list, and conducted a process to select priority targets for the pilot project that align well with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This process led to the exclusion of historic sites that are challenging to garner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countries and those likely to cause conflict, as well as sites with indeterminate locations or no remaining structures. Instead, the focus was on identifying as priority targets for the pilot project those sites that hold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for both South Korea and the host country and that are well-preserved and effectively utilized in their local context. However, since most

data on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have been surveyed primarily with a focus on Korea-related historical values, there is a lack of value assessment from the host countries' perspective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dynamic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hanging conditions, certain overseas historic sites have been designated for review. Factors like the host country, time period, theme, and ownership are suggested to be monitored rather than used as primary criteria for selecting pilot project targets.

Subsequently, the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case studie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During the case study,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evaluating the value as shared heritage and its applicability within the host countries. When Korean cultural heritage is designated or registered in a host country, its designated or registered value is considered as the value of shared heritage. For those not designated or registered, the focus of evaluation is on their state of preservation and potential for utilization in the local context. Cases for review, that could potentially cause conflicts, were also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reviewed cases mostly consis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located in Japan, including heritage related to the Korean Empire's royal family, such as the Tokyo residence and villa of Prince Yeongchin and other sites like the Bohwa Bell Tower, which may potentially cause conflicts. In these cases, the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based on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is not deemed suitable as an initial approach.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for reevaluation as targets of K-shared heritage if the potential conflicts can be resolved through discussions with owners, civic groups, etc., or if the conditions change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thus necessitating regular monitoring. Additionally, the study determined that overseas historic sites, which have not yet met the 50-year criterion to be considered Korean cultural heritage, could become potential targets for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s in the medium to long term, provided they are well-maintained and consistently monitored.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both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sites, along with their potential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within the host country. Second, there is a need to clearly identify and organize indicators and criteria for excluding or reviewing overseas historic sites with a high potential for conflict. Third, it is essential to proactively extract and categorize overseas historic sites

and relevant indicators for monitoring, followed by regular monitoring activities. Fourth, it is advisable to prioritize for the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those sites already designated and registered as cultural heritage in the host country, to enhance their recognition and potential for preservation and use. Additionall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eking registration of these sites as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host country if needed. Fifth, overseas historic sites situated in well-known locations within the host country or those with strong potential for integration with nearby facilities should be considered as key criteria for project selection, given their high potential for utilization in the local context. Lastl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use of most overseas historic sites is limited to historical memorial halls and monum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diverse utilization strategies incorporating cultural, artistic, regional, social, and educational elements beyond traditional historical and commemorative approaches.

Chapter 4: Cas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hared Heritage in Overseas Countries

In Chapter 4, an examination of shared herit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cases in overseas countries was conducted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K-shared heritage utilization and management pilot projects. The study categorized cases into two types: one where other countries manage and utilize their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host countries and there other where a host country manages and utilize foreign heritage within its territory in cooperation with the other countries claiming them.

Initially, the study explored instances of shared herit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abroad, including the Netherlands' support for their overseas heritage and Poland's examples of suppor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study reviewed cases of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currently manag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as heritage, although not explicitly labeled as 'shared heritage'.

As examples of managing and utilizing shared heritage within their own countries (host countries), this study examined the practices of South Africa, Tanzania, and other

Overview of Cas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hared Heritage in Overseas Countries

Cas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hared Heritage Located Abroad	The Netherlands	Government-led shared heritage projects involving international exchange	Drawing implications from shared herit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case studies in overseas countries
	Pol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in the regions sharing histories	
	The United States	Registration system for property assets (diplomatic missions) located overseas	
Case Studies on the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Shared Heritage Within Countries (Host Countr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South Africa	Restoration of shared heritage in a host country with support from the relevant countries	
	Tanzania	Building a shared heritage archive and preserving shared heritage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rican regions	Digital documentation of shared heritage and building an archive	
Cases of Managing and Utilizing Shared Heritage Through Domestic Systems and Policies	China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foreign-related buildings and areas	
	Scotland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people, events, and places related to Poland	
	The United States	Broadening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Asian immigrant heritage within the United States	

African regions that protect shared heritage through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nations, as well as China, Scotland,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ndependently identify, protect, manage, and utilize shared heritage using their national systems and policies.

Implications derived from overseas shared herit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cas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ly, when a project is led by the government, there is a need to plan for collabora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edicated agencies 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Countries actively driving government-led shared heritage projects include the Netherlands and Poland. The Netherlands focuses on maritime heritage, promoting shared heritage projects with countries such as Indonesia, Suriname, Japan, Australia, and India, etc. Poland, on the other hand, is implementing shared heritage proje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like Ukraine and Scotland. Thus, with the Netherlands and Poland promoting shared

heritage projects for their cultural heritage located abroad, corresponding countries are influenced to pursue shared heritage projects for their cultural heritage within their borders. In the case of South Africa and Tanzania, following the Netherlands' promotion of shared heritage policies, they have come to recognize relevant heritage within their own countries as shared heritage and have started to implement related policies. Ukraine and Scotland are also pursuing policies related to shared heritage projects for their cultural heritage, influenced by Poland's promotion of shared heritage policies. Additionally, many instances have been observed where shared heritage projects are being advanced with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ESCO, ICOMOS, and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amidst activ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in shared heritage projects, specialized agencies have been established to carry out these projects, often promoted through agreements between nations. In these cases, while the project is overseen by a national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the execution is often spearheaded by specialized agencies, often in cooperation with or in support of museums, universit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tc. Such an approach that involves establishing dedicated agencies and collaborating with various private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bodies can enhance the likelihood of successfully executing shared heritage projects.

Secondly, utilizing the systems within a host country to support research and studies can be one of the approaches for shared heritage projects. In the U.S., there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managing overseas diplomatic missions (offices) as 'culturally significant assets'. It is also promoting a policy to broaden th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heritage related to Asian-American immigrants and other minority groups within the country. This systemic shift has led to numerous studies focused on immigrant heritage for the discovery of new cultural heritage, with an evolving set of evaluation criteria that now includes aspects of immigrant history. Thus, the approach of utilizing host country systems to research and assess the value of overseas historic sites as shared heritage, and to support the discovery and valuation of new shared heritage, can be considered a key method in shared heritage projects. Additionally, this process can facilitate th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overseas historic sites as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host country.

Thirdly, there is a need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targets for shared heritage. The targets for K-shared heritage projects that the CHA has currently promoted ar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historically and culturally related to S. Korea. However, other countries have a diversity of the project targets for 'shared heritage'. The approach involves recognizing heritage located in foreign countries as shared heritage and participating in its management and utilization in various ways. Additionally, this approach includes perceiving foreign-related heritage within their own country as shared heritage, and considering heritage with similar cultural attributes as shared heritage, leading to collaborative efforts among relevant nations. Additionally,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on, certain shared heritage sites are jointly nomi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s.

Fourthly, a multifaceted support, management and utiliza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for shared heritage. A review of shared heritage projects in overseas countries, organized by type, reveals a variety of strategies for supporting, managing and utilizing shared heritage, including preservation, restoration, and rehabilitation support projects, conducting basic research, exhibitions and publishing books, building archives, establishing dedicated organization, promoting tourism, producing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and operating related programs, providing funding, establishing institutionalization and legal plans, designating and registering cultural heritage in the host country, and applying for and co-registering with World Heritage.

Finally, establishing systematic stages and procedures is necessary for executing shared heritage projects. Overseas case studies reveal that the initial projects undertaken in policy promotion are predominantly focused on exploration and investigative research. The findings and content from foundational research are utilized in future application plans and often transformed into databases or archives, serving as exhibition materials or as shared heritage information. Upon the finalization of pilot project targets and detailed project plans, a dedicated center for project execution is established. The project execution center is responsible for harmonizing opinions between nations, formulating cooperation strategies and operational plans, and managing funding and other related tasks. Particularly in th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shared heritage on-site (in a host country), it's crucial to incorporate the methodologies of both the heritage-creating country and the culturally influential country. Thus, establishing a pool of experts from both nations to advance related projects is essential.

Chapter 5: Strategies for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K-Shared Heritage Policies

In Chapter 5, the study proposed two major approaches to advancing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policy of K-Shared Heritage: a plan for pilot project implementation and a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Initially, for the pilot project implementation approach, strategies for deriving a list of pilot project targets and for establishing an operational plan were proposed. In the process of deriving a list of pilot project targets, the initial task involved collating and integrating existing surveys of overseas historic sites into a unified list. Then, in the first phase, priority targets were identified based on criteria like the value, preservation condition, and utilization status in both South Korea and the host countries. Subsequently, in the second stage, unsuitable candidates were excluded, such as those with a high likelihood of inciting conflict, those with indeterminate locations, or those whose form is not well-preserved, rendering them unsuitable for use as key facilities. Moreover, sites not categorized as either priority or exclusion, but requiring further assessment and research, are recommended for consideration as review subjects. Following these processes, a strategy was proposed to organize the identified pilot project priority and review candidates into categorized lists based on key indicators, facilitating ongoing management through regular monitoring.

In formulating the pilot project operation plan, the study refined the scope of the K-Shared Heritage project by referencing the support outlined in the CHA's K-Shared Heritage promotion plan, along with examining existing case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nd international shared heritage. While establishing the project plan, the study outlined strategies for project advancement at various stages, factoring in the value of the shared heritage, along with a general overview of the cultural heritage. It also proposed strategies for short-term and long-term project execution based on an examination, including planning for collaboration with partner organizations and support mechanisms.

Procedure for Deriving a Preliminary List of Targets for the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Draft)

The Procedure for Developing a Preliminary Target List for the K-Shared Heritage Pilot Project

Preli-mary Work	Integration of Existing Surveyed Lists of Overseas Historic Sites	- Compiling a Comprehensive List of Overseas Historic Sites and Organizing Survey Items - Re-examination of Missing Information Using Literature and Digital Resources
1st	Determining Priority Targets	- Sites assessed to possess significant historical value related to South Korea - Sites officially designated or registered as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host country - Sites assessed as being in excellent preservation condition - Sites actively utilized within the host country
2nd	Excluding Unsuitable Targets	- Excluding sites potentially causing conflict in relation to China's Northeast Project - Excluding sites related to Japanese colonial rule - Excluding sites with unclear historical facts - Excluding sites with unidentifiable locations - Excluding sites that are destroyed, have new constructions, or whose locations cannot be determined - Excluding movable cultural assets and natural features - Excluding historical sites that have been repatriated
3rd	Organizing the List of Sites for Review	- Sites with insufficient research, making it difficult to ascertain key information such as historical value and conservation status - Sites not currently being actively managed or utilized - Historic sites with potential conflict, where the likelihood of conflict within the host country is indeterminate - Historic sites with potential conflict, where conflict resolution and reconciliation are feasible - Sites where the current value and recognition within the host country are indeterminable
4th	Organizing a List of Sites for Regular Monitoring by Indicator	- (Host country) Monitoring changes in diplomatic conditions between countries - (Time and theme) Re-examining and monitoring overseas historic sites by similar periods and themes for rediscovery and new explorations - (Time and theme) Evaluating the potential for collaboration with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 (Owner) Categorizing owners as national, public, or private entities and monitoring diplomatic relations and potential for collaboration

The Scope of the Project for Supporting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K-Shared Heritage (Draft)

The Scope of the 'Project for Supporting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K-Shared Heritage' (Draft)
- Assisting with the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host country - Supporting utilization and management initiatives that facilitate collaboration with local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 Support the purchase, repair, and maintenance of overseas historic sites in need of urg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with subsidies, experts, etc.) - Projects to enhance the recognition of South Korean cultural heritage in the host country, including the creation of promotional materials, informative signboards, and training of guides - Projects foster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romotion through cultural heritage, such as joint exhibitions, study tours, and cultural events - Projects creating a digital archive of shared heritage content - Research projects focused on the discovery and investigation of new historic sites - Supporting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 programs related to shared heritage, involving experts from host countri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specialists - Additional projects determined as necessary and approved for support by a review committee

Regarding the institutionalization approach, it was proposed to develop 'The Guidelines for Support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Shared Heritage' (provisional title), and develop and amend relevant laws for the long-term implementation. Initially,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guidelines is necessary for the immediate launch of pilot projects, and for this purpose, examples of exist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pporting overseas cultural heritage and memorial facilities have been examined. Additionally, for a more proactive and stable progression and support of the K-shared heritage project, it is proposed that the exist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be replaced by a revised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ct' from 2024 onwards. This also includes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Repatriation, and Utilization of Overseas Cultural Heritage (provisional title)' when it is reconsidered, to govern the investigation, support, and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This research, serving as a foundational study for advancing the K-shared heritage polic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tasks for future implementation. Firstly, a reevaluation of the value of existing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is need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periodic monitoring for this purpose. Secondly, it is essential to discover new shared heritage sites.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on Network for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tentatively named)' is necessary,

li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advance shared heritage projects. Finally, preliminary planning for data collection and archiving i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The Digital Library of Shared Heritage (tentatively named)'.



Suggestions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Chapter 6 Conclusion

This study advanced beyond repatriation-focused policy, proposing a strategy for utilizing and managing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within host countries, by applying the concept of 'shared heritage'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sites. In this context, the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K-shared heritag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and examined international shared herit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cases. These investigations informed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for pilot projects and operational planning approaches.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institutional measures and future policy objectives to advance forthcoming policy initiatives.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al stage for the promotion of the K-shared heritage policy. It is anticipated to provide the essential groundwork for establishing the trajectory and developing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K-shared heritage projects. In future endeavors of the K-shared heritage project, there is a need to undertake research for assessing the value and identifying potential targets of cultural heritage as shared heritage. Given the vary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historic sites spread across 35 countries globally, it's imperative to develop phased project strategies tailore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site.

Keywords

Shared Heritage, K-Shared Heritage, Overseas Historic Sites, Utilization and Management